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1월호 통권309호



月刊 建築士 1995년 1월호 통권 309호(매월 5일 발행)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85년 12월31일 제3종우편물(나)금인가

January

1

신년사

변화의 시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 김규태

칼럼

협회는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조직인가 / 박서홍

회원작품

화성군립도서관 / 김의성
광주문화예술회관 / 김상식
덕양빌딩 / 정동명 + 김진균
의성원 / 주영장
신사동 씨트로엥빌딩 / 전태진
L주택 / 유원재

일하며 생각하며
시대변화의 대비 / 최영권

특집

건축사협회에 바란다.

연구

도시환경과 건축문화(1) / 황용주

토론회

도시·건축 법률세계 개편

기획연재

건축실무의 역사(5) / 송율

현장설계경기

국민연금증합유양시설, 태농국제스케이트장
수원화성지구 아파트

별행

건축사법 및 건축법 중 개정법률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에 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에 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사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자동화율과 주차공간 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체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벨린스를 맴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
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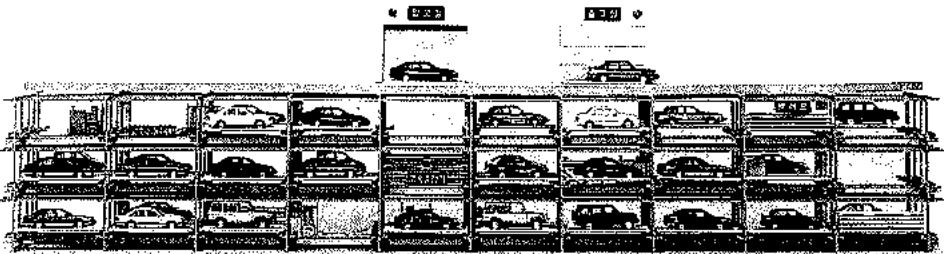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차를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다층순환방식

콘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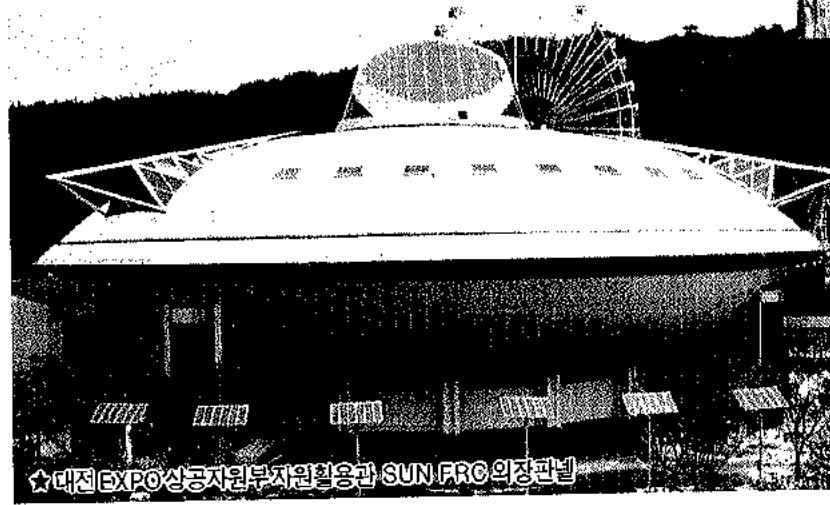
삼성중공업



하이테크 첨단 파인세라믹스 SUN FRC

SUN F.R.C 장기시험

장기시험 결과	
내연성(aA법)	불연성
인장강도(kg/cm ²)	254
압축강도(kg/cm ²)	663
휨강도(kg/cm ²)	407
충격강도(kg cm/cm ² , Charpy)	9.0
밀도(g/cm ³)	1.762
흡수율(%)	0.01
경도(Durometer, H _D D)	93
내열성(100°C, 2hr)	이상없음
내 약 품 성	• 10% 황산 이상없음
	• 10% 염산 이상없음
	• 10% 질산 이상없음
	• 10% 수산화나트륨 이상없음
	• 95% 베틸 알콜 이상없음



★ 대전 EXPO 상공자원부 지원 활용관 SUN FRC의 장관별



★ SUN FRC 지구관 세라믹 영상인공폭포

★ 한국통신
궤도전시관
세라믹
SUN FRC
고건축



1. SUN F.R.C 기술설명서

1. SUN FRC는 조형성이 뛰어나고 어떤 곡면이나 코기형태(디자인)의 제작이 자유로우며 1m/m~200m/m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파인 세라믹스입니다.

2. SUN FRC는 콘크리트에 비해 낮은 물의 계수에서 인장강도와 휨강도가 10배나 높습니다. 경화는 낮은 온도에서도 뛰어난 유연성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인장강도 시험결과 오랜 시간에도 일정성을 유지하고 100년에 준하는 가속실험 결과 외부노출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용력도가 뛰어나 어떤 형태의 변화에도 다양성있게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강도가 높아 300m/m~300m/m~3m/m의 평균무게가 450g 정도이어서 대략 FRP와 비슷합니다.

3. 온도 팽창계수는 강철과 비슷하게 낮은 F에서 inch당 7~10⁻⁶입니다. 충격에 강하며 하중에 의한 손상은 그 부분뿐이고 균열이 없어 보수가 용이합니다. 일반마모에는 물론 연마기에 의한 기계적 마모에도 저항성이 강하고 필요에 따라 페인트 등을 표면에 처리할 수 있고 판넬자체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4. SUN FRC의 가장중요한 특징은 완전 불연성이며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는 무공해 첨단 신소재인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접합 시공이 전기용접, 볼트 등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보온, 방수, 방음, 방사선 차폐, 낙뢰부전도 등에 효과가 커서 일반 건물내외 장제와 고건축 문화재 복원 등 조형물제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 물가자료 75쪽 참조



株式會社大陸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366-13 (大陸B/D)
TEL:(02)5555-056 (代) FAX:(02)538-3236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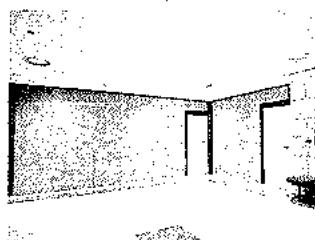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절대안전·아전성·편의성
공식만족 시기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방화설치업체

- 미도피 상가점
- 현대백화점 일구점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등점
- 경복밀 프리자
- 부산 리버리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조선호텔
- 위키힐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재약시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제작설계업체

- '93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설计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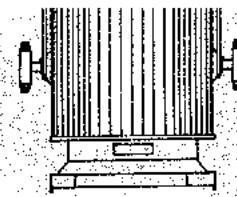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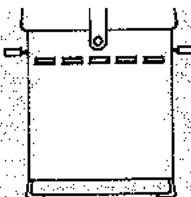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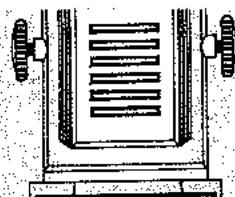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4545 (代)

FAX : 838-0474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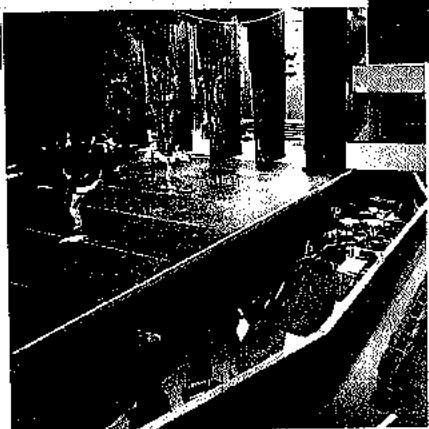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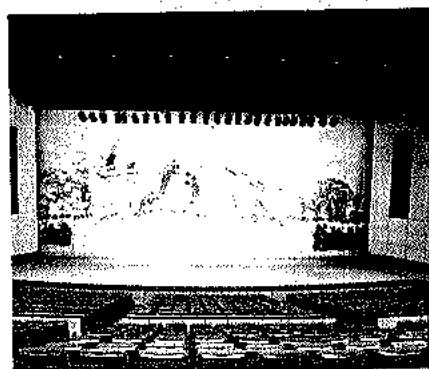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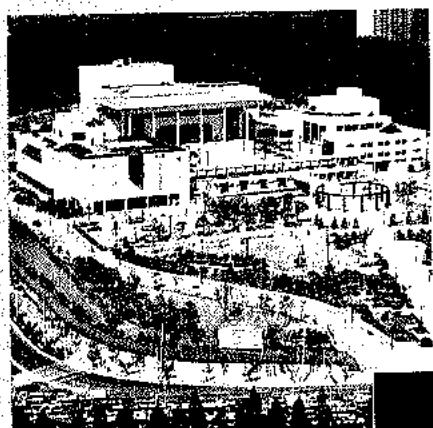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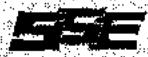
무 대 기 계

무 대 조 명

영 상 설 비



기획 · 설계 · 시공



(주)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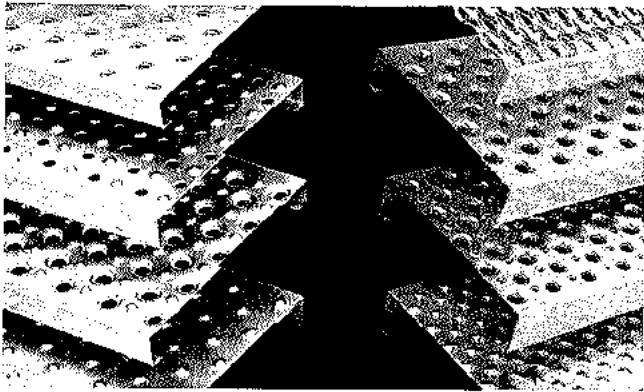
(시화공단 2나 209)

TEL:(02)855-5373, (0345)499-8100~4

FAX:(0345)499-8105

기술의 혁신, 가격의 혁신

주차설비 바닥재, HGI 개발!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공사기간이 빠릅니다.

포항제철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개발한 HGI소재—
강판자체에 도금까지 되어있는 새 차원의 주차설비
바닥재입니다. 이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빨리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차설비 바닥재인 CHECK PLATE, HR에 비해 도금과정이 생략되므로 공사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 보강재(CHANNEL 등)가 필요없어 공사기간이 단축됩니다.
- 내구성이 탁월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조립식으로 해체와 조립이 용이하고 미관이 우수합니다.



株式會社 忠一産業

본사 및 공장 : (032) 812-4141 서울사무소 : (02) 597-65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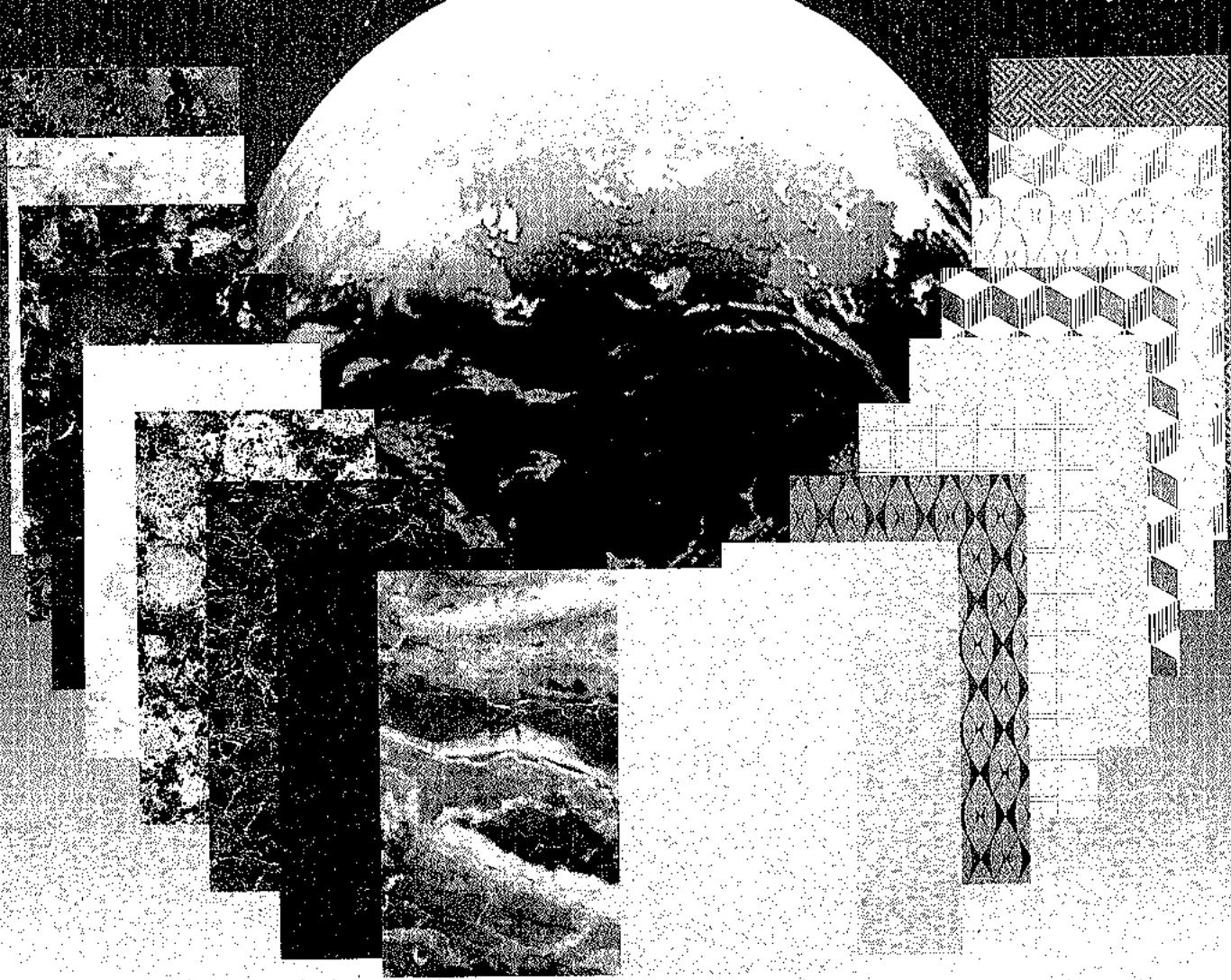
同星스페이스

본사 : (02) 786-4778 공장 : (0345) 491-9476

株式會社 大琥

본사 및 공장 : (051) 264-6067 (代)

세계의 내·외장재가 여기 다 모였습니다.



차원높은 품격의 건축물에는 아키텍스가 좋습니다.

백화점, 호텔, 병원, 주상복합빌딩, 주차타워 등 보다 아름답고 품격높은 건축물을 완성하시려면 이제부터 아키텍스를 선택하십시오. 아키텍스는 뛰어난 품질, 다양한 색상, 원하시는 사양대로 공급해 드리므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100% 천연대리석 질감의 아키텍스 – 더 이상의 선택은 없습니다.

• 생산품목

- 난연성 PVC 알미늄 복합 패널
- 밸포 P·E 알미늄 복합 패널
- 천연 대리석무늬 알미늄 복합 패널
- 금속무늬 알미늄 복합 패널
- 아연도 강판 복합 패널

• 주요용도

- 건축물 내·외장재
- 지하철 벽면 및 천정
- 광고판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고급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든 인테리어 공간

 **홍성산업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회회관 2층
TEL : 대표전화(02)553-0897, 562-1264, 568-3474~6
FAX : (02)568-6238, 566-0856

■ 전국 판매 대리점

- 서울지역 충판 : 홍성공영(주) (02)511-6431~5
- 전주 : 용신산업(주) (0652)224-9600

• 부산·경남지역 : 대양건설(주) (051)326-5060~6070

티파니 하우스 (051)463-5197~8

• 포항 : 유일테크상사(주) (0562)84-6100

• 대구 : 정건설엔지니어 (053)351-1212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식작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환기업, (주)삼환기계,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범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얼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심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구직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놓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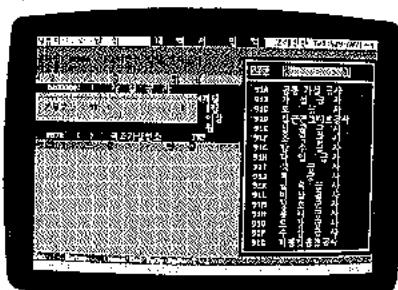
시장개방을 맞아 머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젠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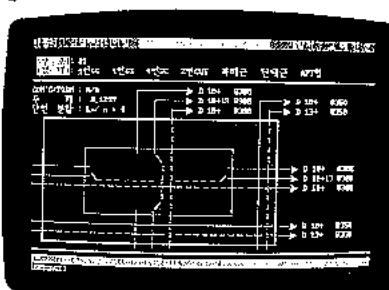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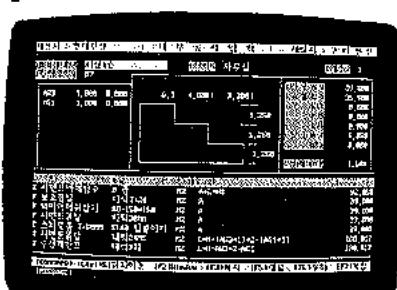
EMS-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효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S/W 목록

- EMS-I 내 역 관 리 SYSTEM
- EMS-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IV 토 목 내 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 재 관 리 SYSTEM
- P.M.S 공 사 관 리 SYSTEM
- A.M.S 전 설 회 계 관 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특징: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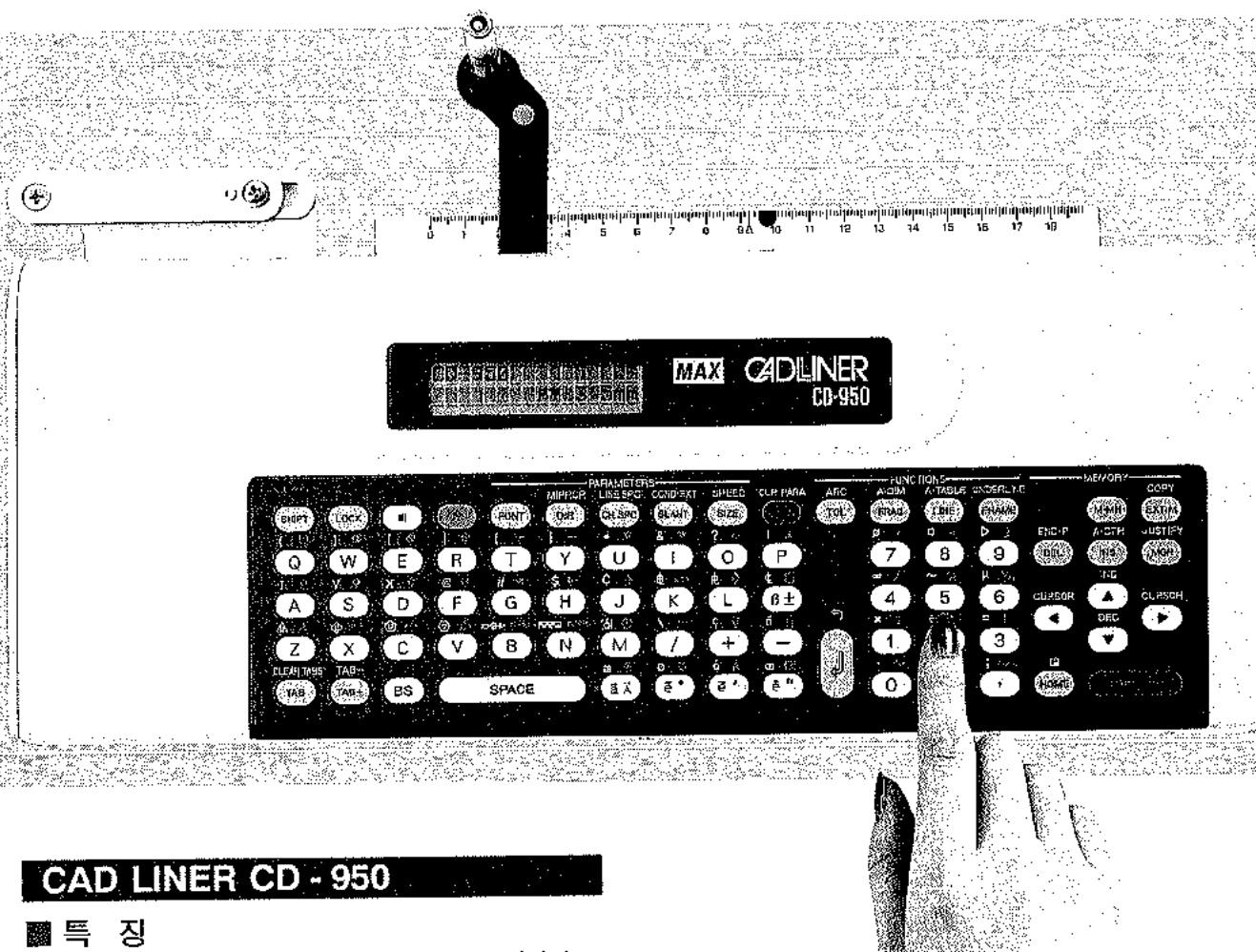
-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집계분석
-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아프터 서비스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CAD LINER CD - 950

■ 특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식이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컴퓨터식 보턴.

■ 용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 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LINER
CD-950

MAX®

수입원 : (주) 한국구영
유미교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옥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P. 011-272-1928



건축설계의 토탈솔루션제공

.....무한 경쟁시대의 동반자 선언 !.....

최첨단의 하드웨어와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로 건축설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젊고 창의적인 캐드전문업체인 청우시스템 — 청우가 여는 새로운 세계 — 나이나시리즈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Dyna-CAD — AutoCAD 3rd Party SW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축설계지원 프로그램.

- 한글 도움말
- 풍부한 심볼 제공
- 사용자 심볼 등록 기능
- 편리한 작도와 편집기능
- 한글 번역
- 철저한 교육지원



QE-Quick Estimate

건축물의 골조를 양식인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의 소요량을 내장된 수식과 사용자 정의 수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산출하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골조물량 산출 프로그램.



QUE

입찰전작에서 도급, 설계변경, 실행, 기성청구, 정산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여주는 공사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역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 융통성과 모든 메뉴에 대한 도움말 기능, 보고서 출력형식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Dyna P5 / Dyna 486

3차원 및 그래픽 작업이 요구되는 설계업무에 적합한
Dyna P5 시스템과 최상의 효율과 경제성을 자닌
Dyna 486시스템

모델명 : Dyna P560 / P566, Dyna 433 / 450 / 466V

Young Fellows System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TEL : (02) 587-5168 / 9
FAX : (02) 588-4156



587-5168/9

건축사·기사를 위한 소액대출 안내

1. 대출금액 및 구분

(단위 : 만원)

	1 군	2 군	3 군	4 군	5 군
무 보 증	3,000	2,000	1,500	1,000	-
보 증 1 인	-	2,500	2,000	1,500	500
보 증 2 인	-	3,000	2,500	2,000	1,000
건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업 3년 경과 또는 소득세 300만원 이상 · 개업하지 않은 건축사로서 연봉 4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로 개업한 자 · 개업하지 않은 건축사로서 연봉 3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업하지 않은 건축사로서 연봉 2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업하지 않은 건축사로서 연봉 1천2백만원 이상 	
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경과하고 종합소득세 350만원 이상 · 연봉 4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경과하고 종합소득세 300만원 이상 · 연봉 3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250만원 이상 · 연봉 2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250만원 이상 · 연봉 1천5백만원 이상 	연봉 (천만원 이상)
직	상장회사	15년 이상 근무 연봉 4천만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 연봉 3천만원 이상	7년 이상 근무 연봉 2천만원 이상	3년 이상 근무 연봉 1천5백만원 이상
장 인	20여 이상인 비상장회사 (주)학교· 재단·사단법인	20년 이상 근무 연봉 4천만원 이상	15년 이상 근무 연봉 3천만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 연봉 2천만원 이상	5년 이상 근무 연봉 1천5백만원 이상

2. 대출신청후 2일내 지급 : 맞보증 가능

3. 보증보험료 : 500만원당 5만5천원(1년 기준)

4. 대출금의 12% 보험료 적립(상해적금보험)

5. 구비서류

대 출 인		보 증 인 자 격	공 통 사 항
개 인 사 업 자	직 장 인		
· 자격증	· 재직증명서 1부	· 동등한 자격증소지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	· 공무원	도장
· 소득세 영수증	· 자격증(기사)	· 직장인	주민등록증
공 무 원	· 재직증명서 1부	· 일반체산세 납부자	

※ 취급품목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자동차신고 · 보상안내 · 화재보험 · 상해보험 · 적금보험 · 자동차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부출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88-8호 3층



삼성화재 ☎ 382-4894~6 FAX : 382-4896

* 상기 내용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콘크리트 보다 3배 단단한 시멘트 압출판넬

보이지 않는 곳의 충실함, 보이는 곳의 아름다움 - 서일에이스판넬



서일에이스판넬의 용도

- 고층빌딩, 아파트의 외벽재 및 바닥재
- 산업프랜트 및 공장의 내·외벽재
- 조립식 농촌주택의 내·외벽재
- 도로 및 철도변의 방음벽
- 주차타워의 외벽재, 지하이중벽

■ 서일에이스판넬의 특장점

- 얇고 단단하다.
中空구조이므로 경량이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납니다.
벽의 두께가 1/3로 줄어 보다 넓은 실내공간이 확보됩니다.
- 아름다운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양한 표면무늬의 연출이 가능하여 건축주의 취향을
100% 만족시킵니다.
- 빠르게, 경제적으로 시공한다.
건식공법이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서일에이스판넬

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8 선릉B/D (代)552-0945
광장: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운리 252-3 (0446)877-2916

전화문의 : (代) 552-0945

建築土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1월호 통권 309호

發 行 人 : 金桂泰
 編 輯 企 劃 : 編輯委員會
 委 員 長 : 李柱憲
 委 員 : 吳龍夫, 李柱勳, 楊海鶴, 崔泰容, 李 龍,
 金宗植
 編輯・取材 : 張超部 / 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發 行 處 :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 1955年10月23日)
 住 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 便 番 號 : 137-070
 電 話 :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 시 밀 리 : (02)586-8823
 登 錄 番 號 : 서울 11-26(月刊)
 登 錄 : 1967年 3月 21日
 U. D. C : 69/72(654-2) : 0612519
 印 刷 人 : 李厚秀 / 正友社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r/Lee, Joo-Hoon/Yang,
 Hae-Yoon/Choi, Tae-Yong/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D.C : 69/72(6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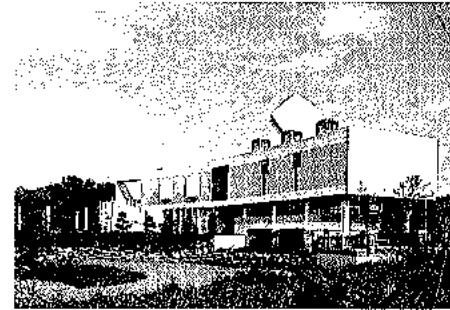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차례

1995년 1월호 통권 309호

신년사

변화의 시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 金圭泰	16
<hr/>	
협회는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조직인가 / 朴舒弘	18
<hr/>	
화성군립도서관 / 金義成	20
광주문화예술회관 / 金常植	26
덕양빌딩 / 鄭東明+金震均	34
의성원 / 朱榮正	40
신사동 씨트로엥빌딩 / 全泰鎮	46
L주택 / 楊元在	52
<hr/>	
관수빌딩 / 田炳植	56
<hr/>	
바다풍경 (27.5×39.5) / 李寬植	58
<hr/>	
건축사협회에 바란다	59
金正澈 / 吳元根 / 崔寬泳 / 崔東奎 / 金瑛燮 / 甫泰鍾 / 承孝相 / 趙仁淑	60
<hr/>	
시대변화의 대비 / 崔英權	70
<hr/>	
건축물에 대한 보존은 우리모두의 몫이어야 / 李應默	72
<hr/>	
도시환경과 건축문화(1) / 黃鏞周	74
<hr/>	
도시·건축 법률체계 개편 / 崔炳宣 / 金宇成 / 孫暉錫	84
<hr/>	
건축실무의 역사(5) / 宋 律	95
<hr/>	
국민연금종합휴양시설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 수원화서지구아파트	102
<hr/>	
건축사법 및 건축법 중 개정법률	112
<hr/>	
1994년 1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20
<hr/>	
1994년 1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24
<hr/>	
1995년 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26



표지사진/화성군립도서관(설계:김의성)

CONTENTS

VOL 309. JANUARY 1995

NEW YEAR ADDRESS

Our Attitude to Changes and Reformations/Kim, Gyu-Tae	16
--	----

COLUMN

Declare War Against Our Internal Absurdity/Park, Seo-Hong	18
--	----

WORKS

Hwaseong Inhabitant Library/Kim, Eui-Sung	20
--	----

Kwangju Culture & Artistic Center/Kim, Sang-Sik	26
--	----

Dukyang Building/Cheong, Dong-Myeong & Kim, Jin-Kyo	34
--	----

Eui Song Won/Joo, Young-Jung	40
-------------------------------------	----

Shinsa-dong Citroën Building/Chun, Tae-jin	46
---	----

L.Residence/Yoo, Won-Jai	52
---------------------------------	----

PROCESS WORK

Kwansu Building/Jeon, Byong-Jig	56
--	----

CALL ART

A Blue Landscape/Lee, Kwan-Jik	58
---------------------------------------	----

SPECIAL ISSUE

Hope for KIRA/Kim,Cheong-Chul/Oh,Won-Keun/Choi,Kwan-Young / Choi, Dong-Kyu/Kim, Young-Sep/Cho, Tae-Chong/Seung, Hchihoh-Sang / Cho, In-Suk	59
---	----

ESSAY

Provide for the Changeable Streams/Choi, Young-Kwon	70
--	----

CURRENT VIEW

The Preservation of Architecture is Our Own Duty/Lee, Eung-Mook	72
--	----

REPORT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Hwang, Yong-Joo	74
--	----

FORUM

Reorganization of City Planing and Architecture Law System/ Choi, Byeong-Seon/Kim, Woo-Seong/Son, Byeong-Seok	84
---	----

REPORT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5)/Song, Yul	95
--	----

OVERSEAS

National Annuity Recreation Complex	102
--	-----

Taeneung International IceLink

Apartment Complex in Hwaseo District, Suwon-shi

LAW & PLANNING	112
---------------------------	-----

STATISTICS	120
-------------------	-----

THE LIBRARY OF CONSTRUCTION IN KOREA(1994-2)	124
---	-----

BOOK REVIEWS	126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11·마포분회/882-6744·도봉분회/903-3125·영등포분회/632-2143·강동분회/494-1840·강서분회/604-7183·성동분회/446-5244·동대문분회/923-0156·중로분회/735-0905·여포분회/933-5251·송파분회/423-4158·중구분회/709-1415·용산분회/717-6807·서초분회/652-6805·은평분회/788-1466·동작분회/815-3026·강남분회/517-3971·노원분회/933-0159·양천분회/653-2892·종로분회/437-7356·성북분회/922-5117·구로분회/682-2275

■ 부산직할시건축사회/(051)634-4973~0

■ 대구직할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직할시건축사회/(062)521-0225~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042)256-9350~4

✓ ■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작현분회/031-43-6662·안성분회/010-319-2188·부천분회/02)634-1554·성남분회/034)715-5445·의정부분회/035)797-0458·송탄분회/033)66-6153·고양분회/02)61-6802·구리분회/030)58-2337·이천분회/036)65-6545·광명분회/02)684-5885·안산분회/035)30-9130·시흥분회/02)84-4121

✓ ■ 강원도건축사회/(036)554-2442

원주분회/031)72-7200·강릉분회/018)31-7371·속초분회/032)33-5081·삼척분회/039)31-9700·영월분회/033)374-2589

✓ ■ 충청북도건축사회/(043)56-2752·53-7342

충주분회/043)719-3102·제천분회/043)49-6251·옥천분회/045)33-5322

✓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041)551-4551·홍성분회/051)32-2755·부여분회/046)35-2117·대전분회/052)34-3387·서산/055)64-9800

✓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여수분회/065)32-3395·군산분회/063)48-3846·남원분회/067)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066)346-7567~8·9544

목포분회/061)27-3398·순천분회/061)31-3457·여수분회/062)23-5000 367-9544 364-0367

✓ ■ 경상북도건축사회/(055)742-8317~8

포항분회/052)14-0123·경주분회/051)2-4710·구미분회/054)51-1537~

8·인동분회/051)54-5103·김천분회/054)34-2541·영주분회/052)34-5500·경산분회/051)

34-5500·김천분회/051)53-1677·상주시/052)32-9688·경성분회/051)

312-6721·달성군회/053)604-6039·영천분회/050)34-9250

✓ ■ 경상남도건축사회/(055)46-4530~1

울산분회/052)74-8336·진주분회/059)73-6403·충무분회/055)

64-7420·김해분회/051)51-5002·밀양분회/052)335-4848·거창분회/058)

33-0930·양산분회/051)84-3030·거제분회/058)35-3402·삼천포분회/059)33-9779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52-2223

2010

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새 기운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으로 내려
지길 기원합니다.

해마다 맞는 신년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다짐을 요구합니다만 건축인으로서 유달리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을 보내고 올 해년을 맞는 저희는 그 어느 해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새로운 변화의 문턱에서 대한건축사협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첫 출발을 다짐하는 본인의 심정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숙연해지기 조차 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Our attitude to Changes and Reformations

金圭泰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전국의 회원 여러분 !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우리 건축계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대응논리 정립을 위한 개혁 욕구의 확산과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건설관련 대형사고로 인해 관련 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가는 가운데, 설계·감리 시장의 조기개방으로 예상되는 국내 업계의 어려움은 한층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지혜와 결집된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

혹자들은 흔히 현시기를 변화의 시기라고 합니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찾아든 평화무드에 편승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의 정치·경제질서에서 탈피하여 세계화, 개방화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 몇년간의 변화 추이는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정책의 바로미터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이제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벗어나려 할수록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습을 답습한 안일주의,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화·개방화를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우선 냉철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건축계에 내재해 있는 온갖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정비하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건축적 사고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전 건축사가 일반인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책이라고 봅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

본인은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계사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 땅에 진정한 건축 토양을 일구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협회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계에 만연된 비생산, 비능률의 구습을 떨쳐버리고 세계화속의 한국건축의 도약을 위한 과감한 변혁을 하나 하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과 이를 바탕한 전략적인 정책의 실현만이 진정으로 전회원을 위하고, 건축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름길이라고 확신하며 재임기간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회원의 권익보호와 대변을 위한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협회의 체질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의 각 부문이 변신의 용트림을 하고 있는 이때에 협회의 운영체계나 의사결정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고로 제도개선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협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협회 운영은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에 건축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위해 질 높은 건축환경을 조성,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의식변화, 협회의 체질개선을 함께 이루어 시대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체제기반이 구축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이 땅에 올바른 건축문화가 창달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과 화합을 반복하면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건축문화를 담당해 온 주체로서 건축사들이 이루어온 건축의 역사도 이러한 큰 흐름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의 변화 동인을 가지며 지금껏 이어져 왔고,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있는 이 자리도 미래의 건축역사를 이루는 한 부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움직임 하나 하나가 모여 이 땅의 건축문화를 이루고, 이 땅의 건축역사를 일구어 간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회원이 이 같이 투철한 직업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신년의 아침 햇살은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희망으로 뿌려지리라 확신합니다. 전 회원이 심기일전 하여 새롭게 펼쳐진 미지의 을해년을 힘차게 달려갑시다.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길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을해년 아침에

1 막 1장 : 지난 6월 22일 (수) 10시 15분, 교육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는 한국 건설 단체 연합회가 주최가 되고 건설부가 후원을 한 94 건설 진흥 축전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12개 연합회 구성 단체 중의 하나인 대한건축사협회가 보무도 당당히(!) 참석하였음은 물론이다. 광렬하게 터져 나오는 고직대의 음악과 약 10분간 진행된 대통령 축사, 그리고는 없었다. 모든 행사가 끝난 것이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각종 보고, 치사, 결의, 유공자 포상 등 모든 식순과 일정이 생략된 대한민국 건설 관련인 모두를 위한 한마당 축제였다.

1막 2장 : 장소는 바뀌어 식당. 대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서있는 줄 뒤켠에서 들려오는 폐나 격양된 목소리.

「무슨 놈의 대회가 이런게 있어?」

「그러게 말일세 상준다고 새벽부터 난리 법석을 피우지나 말 일이지, 나 원참.」

「포상 대상자 호명도 하지 않는
××들이 어디있어. 어디서 뭉텅
손금없는 ××들만 설쳐대니…」

씩 웃으면서 얼핏 뒤틀어 보니
동그란 베지를 단 초로의 두 분
신사.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우리와 함께 오신 훈·포상 대
상자 세 분(율령증이 생기실가봐
걱정되어 성명은 밝히지 않음)은
이디 계신가. 그리고 보니 우리
회장님도 보아시질 않네. 자리에
앉아서 두리번거리는데 일행 중
의 어느 분의 고함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중앙으로 향해졌다.

「단상에도, 중앙 테이블에도 어디에고 우리 회장님(대한건축사
협회) 자리는 없잖아. 이거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구먼.
자, 자 대강 들고 일어납시다.」

2. 2막 1장 : 시간은 바뀌어 10월 27일.

한강 다리가 무너져 내린 대 대한 대국민 사과문이 큼직하게 도하
신문을 장식하고 있었다. 건설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건설
단체연합회 명의에 대한건축사협회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은 물
론이나. 아 그렇구나! 이제 대한건축사협회가 다리 설계도 할 수 있
게 회원들의 업무범위를 넓히려고 애쓰는구나.

2막 2장 : 다음날인 28일은 서울건축사회 정기총회일. 1천여명이
꽉 들어찬 회의장의 열기가 전달됐음인지 내빈자격으로 참석하신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의 말씀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건축사법 23조의 문제는…설계자격을 법인에게 확대한 것은 건
설부와 법제처의 업무착오이며… 법인의 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건설부가 분명히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3. 인류의 역사란 전쟁의 역사라고 설파한 석학의 말을 되짚어서
음미해 보면 집단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는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한다. 전쟁이란 것이 하나의 집단의 지도층
과 구성원이 개인적 운명과 체계의 존망을 걸고 집단의 힘을 총동원
하는 승부라고 보면, 집단이나 민족이 전쟁을 결심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나 조직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행위는 책임을 지는 행
위다.

그렇지만, 역사에서 보는 우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적 기록을 갖고
있다. 수 많은 침략을 당하고 때론 수동적인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협회는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조직인가.

Declare War against Our Internal Absurdity

朴舒弘 / (주)회산 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eo-Hong

우리 스스로 전쟁을 결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멀리는 그리스부터 가까이는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통해 민족적 대각성을 이룬 나라는 존립하고 성장해 간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는 파멸의 길을 걸었다. 역사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결단력 부족과 조직내부의 갈등으로 지구상에서 소멸해 갔던 집단을 여럿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삼국시대만 예외일 뿐 그 어느 시기나(현재도 마찬가지) 전쟁으로부터의 도피를 최고의 선으로 치부하였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의 역대 지배층을 형성했던 지식인들 그중 특히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었던 집단의 논리와 윤리라는 것이 전쟁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로부터 나온 위선과 허구가 책임있는 거국적 승부를 해본적이 없는 민족집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다. 역사의 그와같은 필연은 집단 내부의 위선과 준비 결여로 귀결 되어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선 집단적 깨달음의 정각이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쟁 수행을 결심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 그것만이 최고의 평화를 보장하며 집단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최근 앨빈 토플러는 War and Antiwar에서 전쟁 억지력의 방안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조직(국가)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Antiwar의 구조야말로 철저한 준비와 최첨단 병기의 개발에 의해서 만이 가능하다.」

4. 열기를 뿐던 각종 선거가 끝나고 향후 2년을 이끌어갈 책임자들이 결정되었다.

지난 2년간의 시기가 어려우면서도 변화가 많았던 기간이라고 말한다면 앞으로의 그것은 지난 20년과 맞먹을 정도로 변화의 근본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이나 지방에서나 또 본부전 지역에서건 종회에서의 캐치프레이즈가 개혁으로 귀착됨은 대단히 다행스런 일이긴 해도, 우리들 앞의 현안문제로 다가와 있는 여러 사안들을 바라볼땐 부분적인 개혁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협회 자체의 존립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 정부에 의해 지적받은 도서등록제도의 모순점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 협회가 존재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인 회비는 정수나 운용이나 그 사용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협회의 조직과 구성이 하부지향적이며 수평적 연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가능한가.
- 새로이 구성되는 집행부가 논공행상식의 구태를 벗어날 가능성은 있는가.
- 집행부 책임자의 편향적인 독선이 물고을 집단내부의 파행은 누구의 책임이며 후일 후배들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자신은 있는가.
- 협회는 경험많은 원로 회원과 폐기와 의욕 넘친 젊은 회원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은 불가능한 집단인가.

- 대의제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제도가 과정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면 기회균등의 원칙은 우리의 집단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원칙인가.
- 협회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은 기본이지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회원과 그렇지 못한 회원의 구분마저 할 수 없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 7백여 회원이 소속된 지역회와 10여 회원을 갖고 있는 지역회를 공평한 시각으로 바라봄이 형평의 원칙을 견지한 민주적인 질서인가.
- 집행부 의결의 수준이란 것이 책임 회피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어용집단이라는 누명은 누가 어떻게 벗을 것인가.
- 정부가 건축을 보는 관료주의적인 권위의식과 기술 우선적 시각이 교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난 30년간의 정부와의 밀월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 사회가 건축을 보는 양극구조의 인식을 황변하고 홍보하기 이전에 우리 내부의 모순이나 잘못은 없는 것인가.

다음 세기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래에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로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며, 그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집단의 존재 가치 또한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때 집단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본질을 추구하고 근본을 파악하려는 방법론의 하나에 기존의 관념에 대한 해체적 방법이 있다. 변화라던가 개혁이라는 단어는 요즘 하도 들어서 전부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원래의 메시지는 강렬하고 신선한 개념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개혁의 대상은 과거의 청산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의 생각, 과거의 제도, 과거의 일상 등 모든 것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치 해부학자의 그것과 같은 날카로움을 동반한 채 선전포고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부를 다스려 나가야 하며 구속되어 있는 외부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협회 정관의 문제이든 아니면 건설부와의 관계이든 간에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자세만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현재 건설부 관변단체의 성격으로 되어있는 협회만 하더라도 임의단체로 빠져나와 우리의 삶과 공간을 위해 아니 한국건축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고 열정에 찬 재구성을 시도해야 할 적기가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내부의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과도 전쟁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말이다.

누구를 위해서 협회는 존재하는가?

이제, 협회는 전쟁을 결심하여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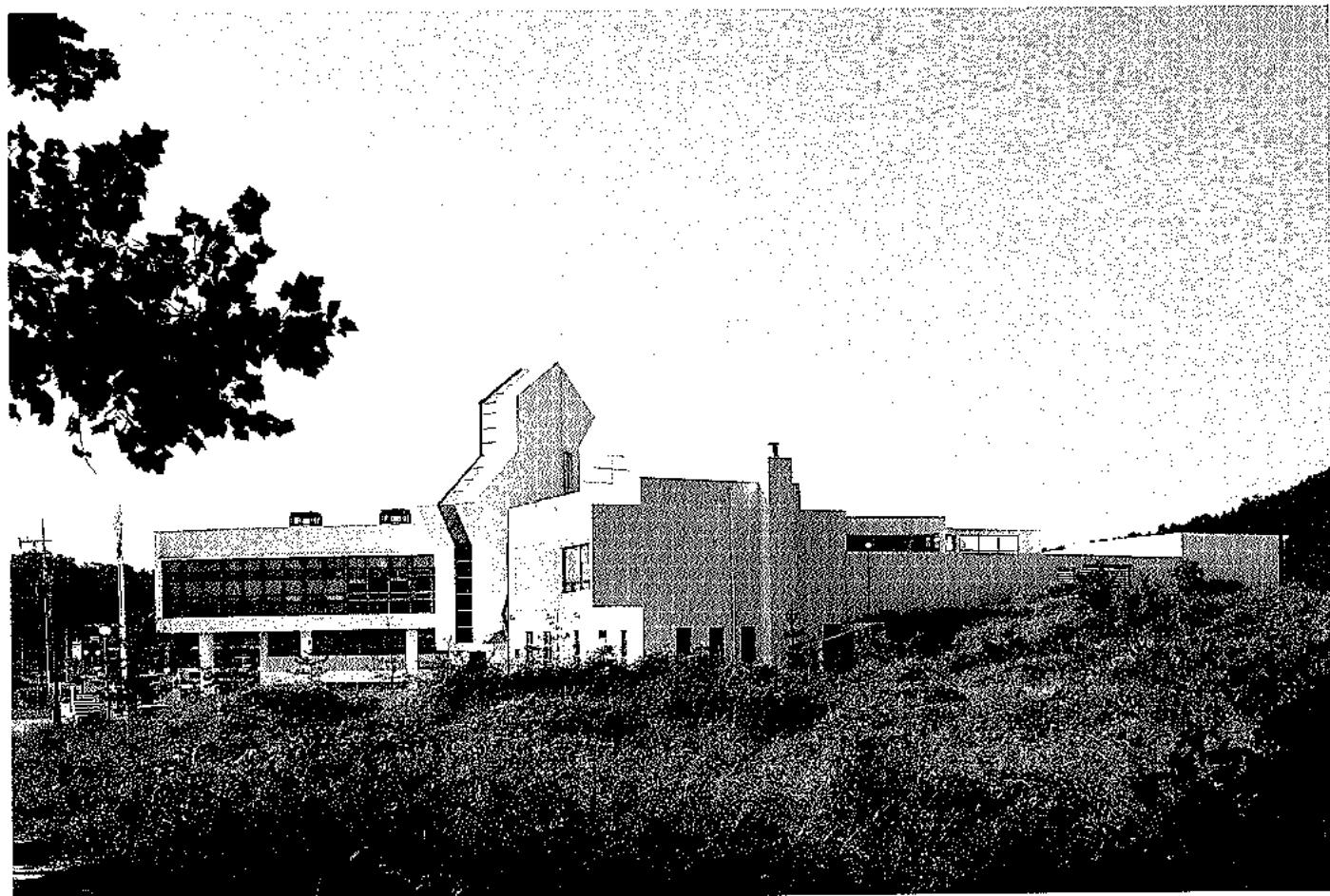


화성군립도서관

Hwaseong Inhabitant Library

金義成/건축사사무소 에이건축

Designed by Kim, Eui-Sung



남측전경

위치 /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1576

지역 /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3,405.00㎡

건축면적 / 674.20㎡

연면적 / 1,279.96㎡

건폐율 /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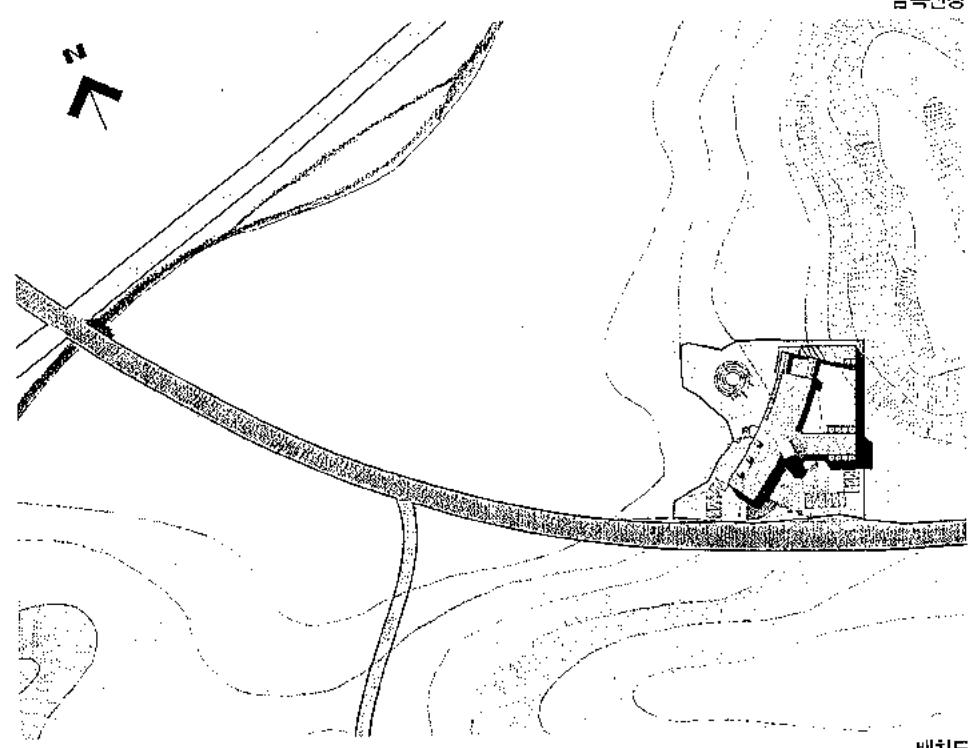
용적률 / 33.53%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외장타일+페인트+PC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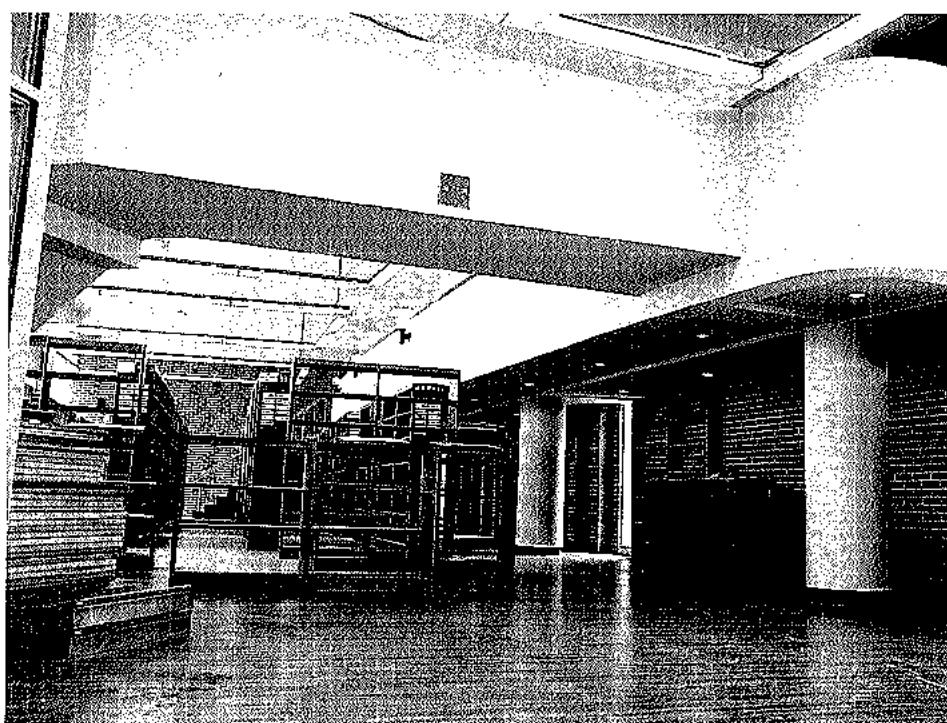
설계담당 / 단희철, 강숙형, 김의필, 최승숙



배치도



서측전경



Location / 1576 Namyangri, Namyangmyeon, Hwaseonggun,
Kyeonggi-do

District / Green District

Site Area / 3,405.00m²

Bldg. Area / 674.2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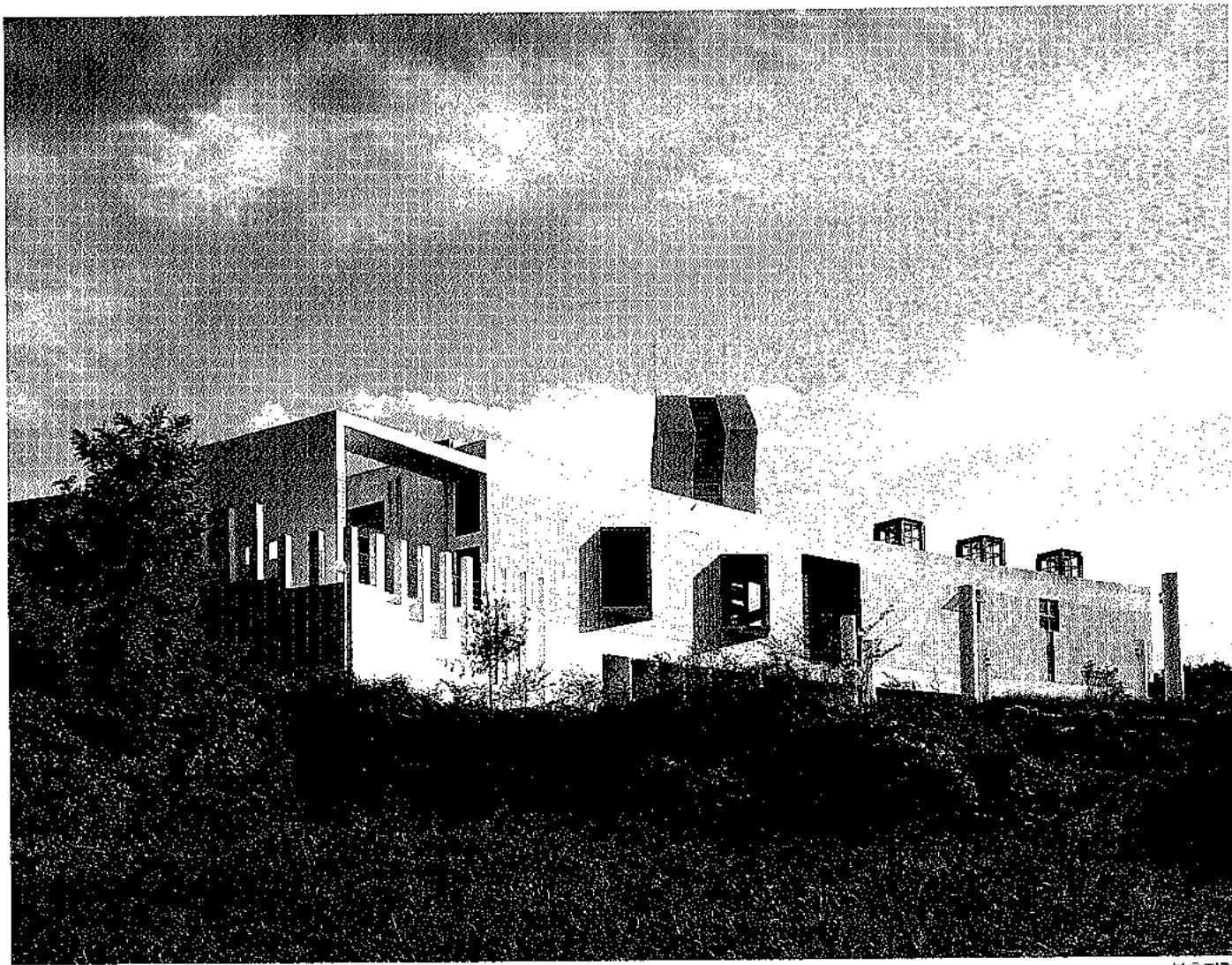
Gross Floor Area / 1,279.96m²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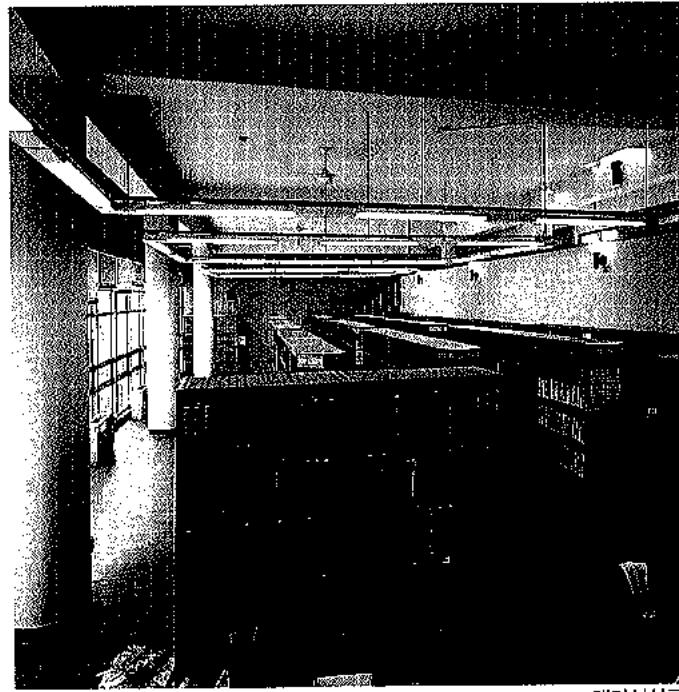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Exterior tile+Paint+Double Gla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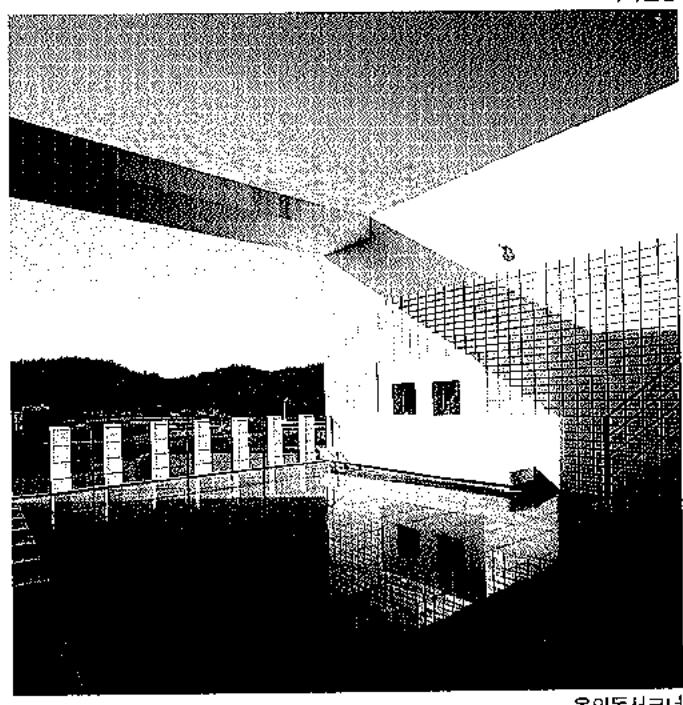
Project Team / Tan, Hee-Cheol, Kang, Suk-Hyeong, Kim,
Eui-Pil & Choi, Seung-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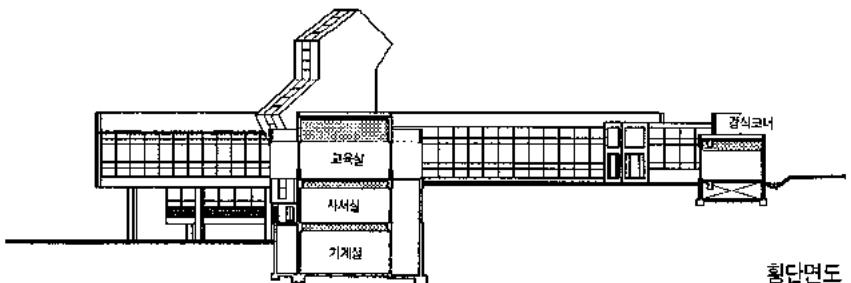
북측전경



개가식서고



옥외독서코너



횡단면도



서측근경

본 공공도서관은 면 중심기로부터 한적한 곳에 구릉지를 배경으로 위치하고 있다. 젖소들도 구릉지 위를 굴러다니고 자연풍광도 풍족하다. 마을에 어느 귀하신 분이 본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선뜻 회사하였다고 하는데 끈끈한 그분의 예정과 정서가 한 구석에 투영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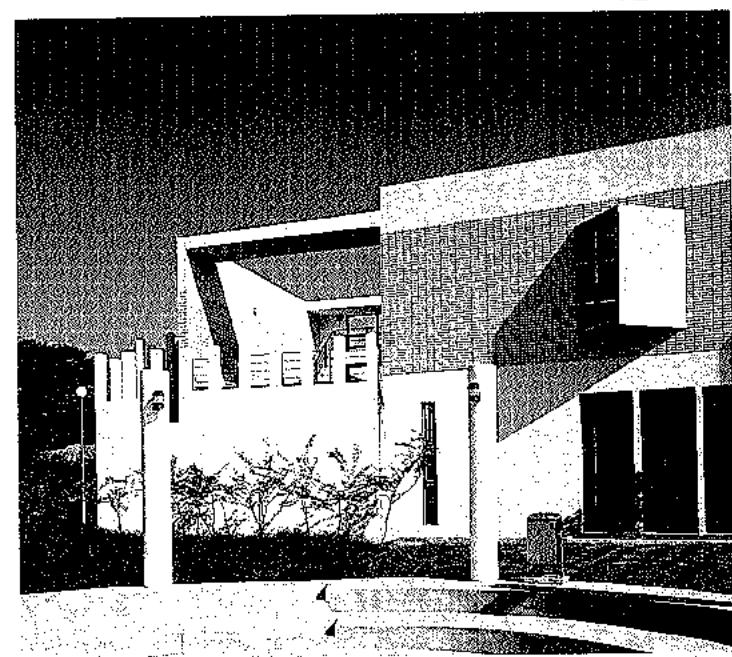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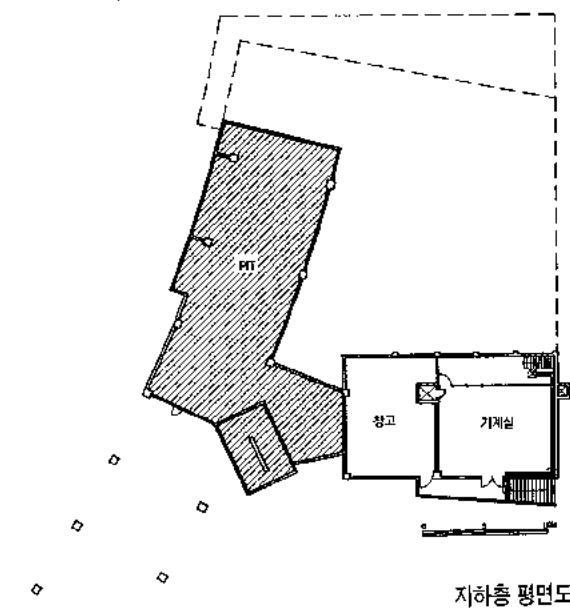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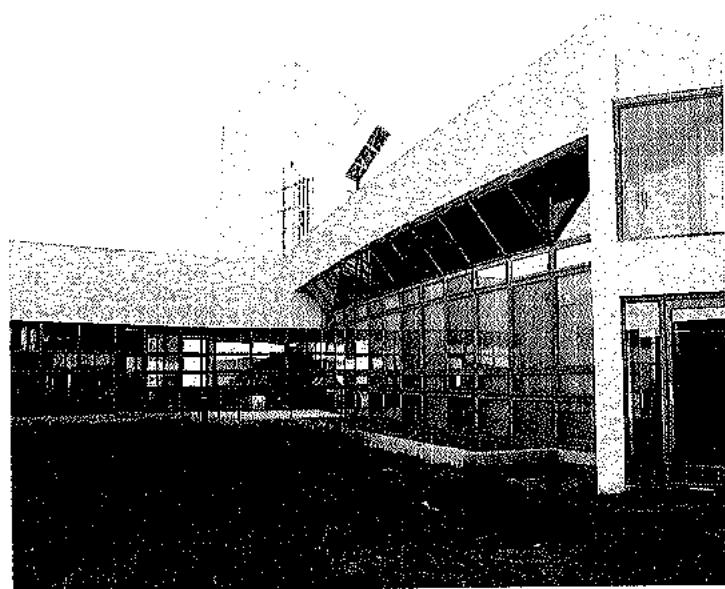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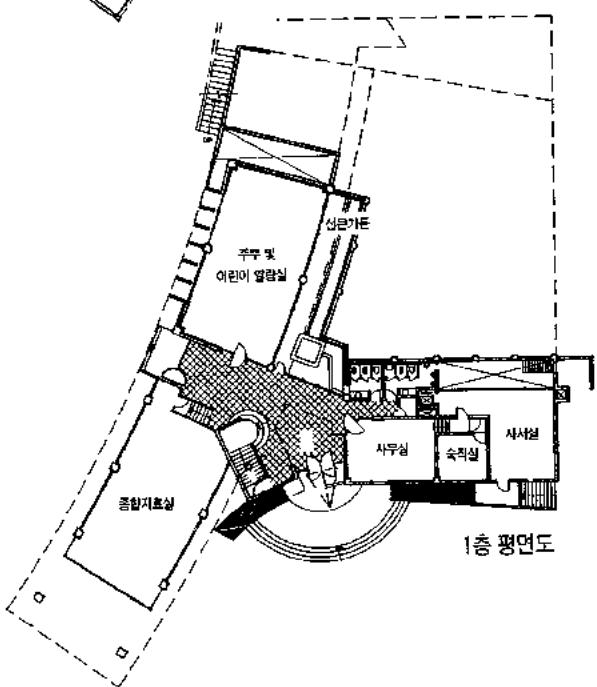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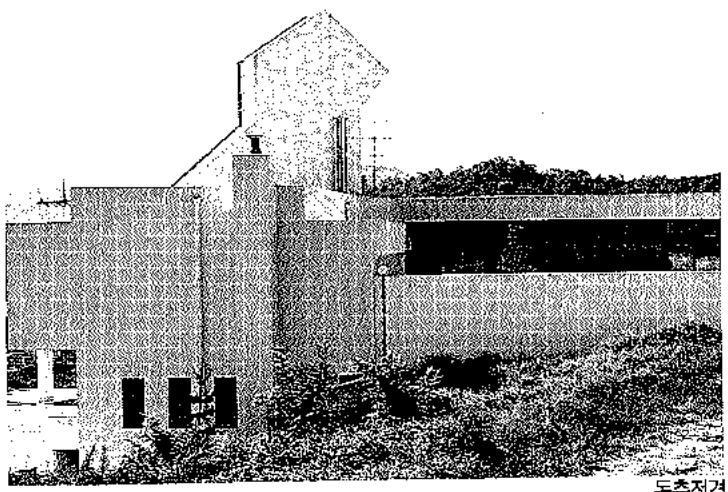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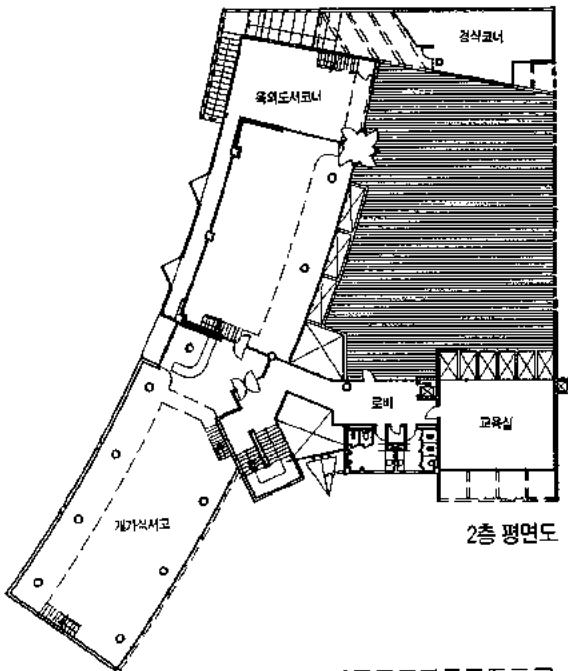
도서관은 이용에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대

전제하에 당장의 도서관 이용률 점검에 신경을 써봄 직도 하나 군 당국에선 도시계획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기억된다.

앞으로 이동순회 미니버스나 이동 도서관등 기동성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응지를 품은 농촌의 젊은이들은 10리를 걸어와서리도 이 곳에서 큰 뜻을 담을 것으로 믿는다.

1층은 구릉지 언덕이 끝나는 면에 배치함으로서 2층은 자연스럽게 구릉지의 큰 대지를 끌어 안을 수 있었고, 트인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다.

서쪽의 개가식 서고는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 장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옥상의 물탱크실은 자연수입을 고려하여 공중에 매달았는데 그것은 희망과 꿈의 덩어리를 매달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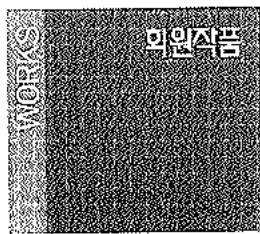




정원과 경식코너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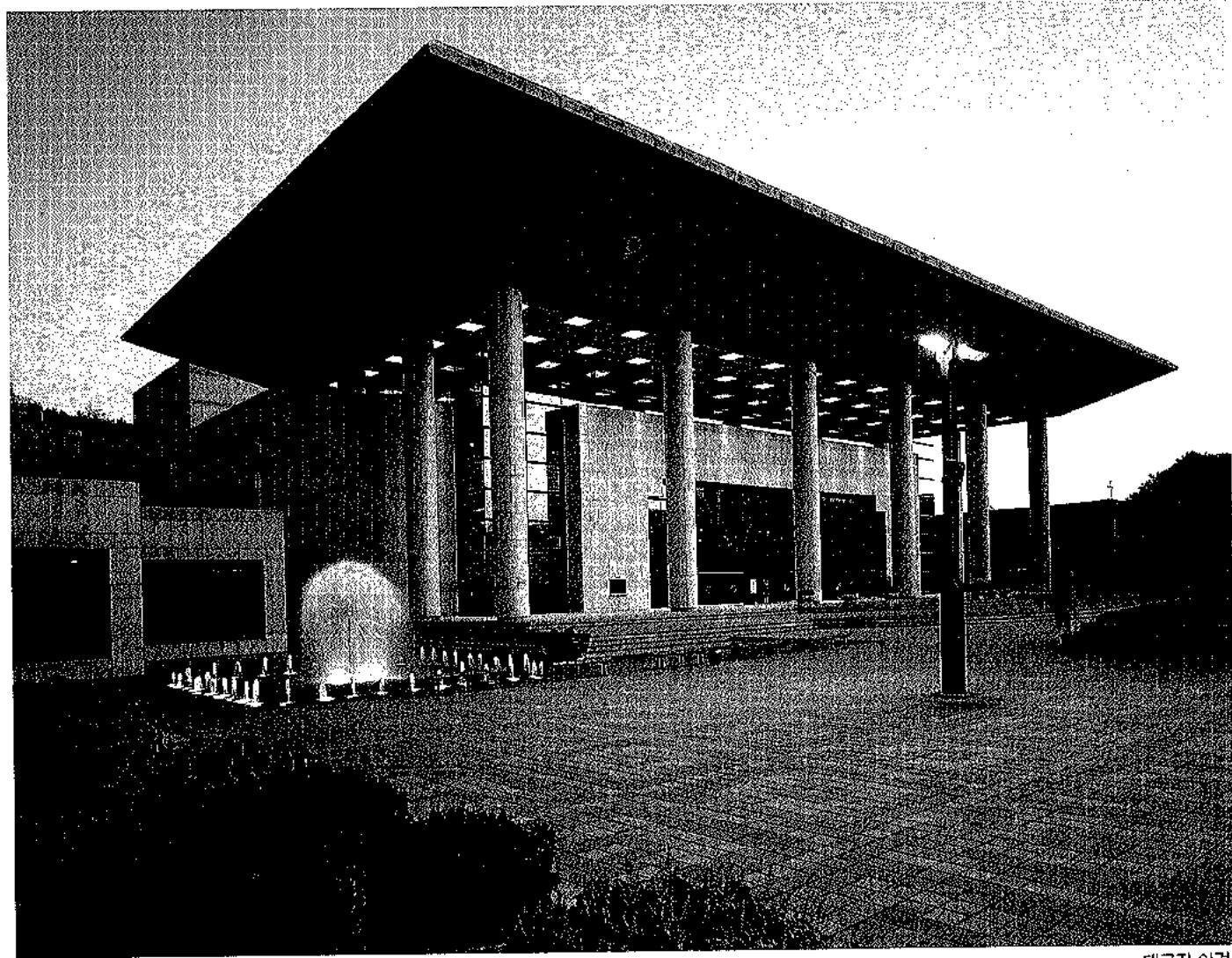


현관 홀 전경



광주문화예술회관 Kwangju Culture & Artistic Center

金常植 /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Sik



위치 /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산 34-1(중외공원)
지역, 구역 / 공원, 일부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86,903m²

거축면적 / 13.808m²

면적(만m²) / 13.000m²

간접적 / 40.57%

거제육 / 15.88%

간폐율 / 13.00%
유저률 / 39.00%

금액 / 1,900원

규모 / 네트워크 = 3,700m²(1,300)
주제 = 4,833m²(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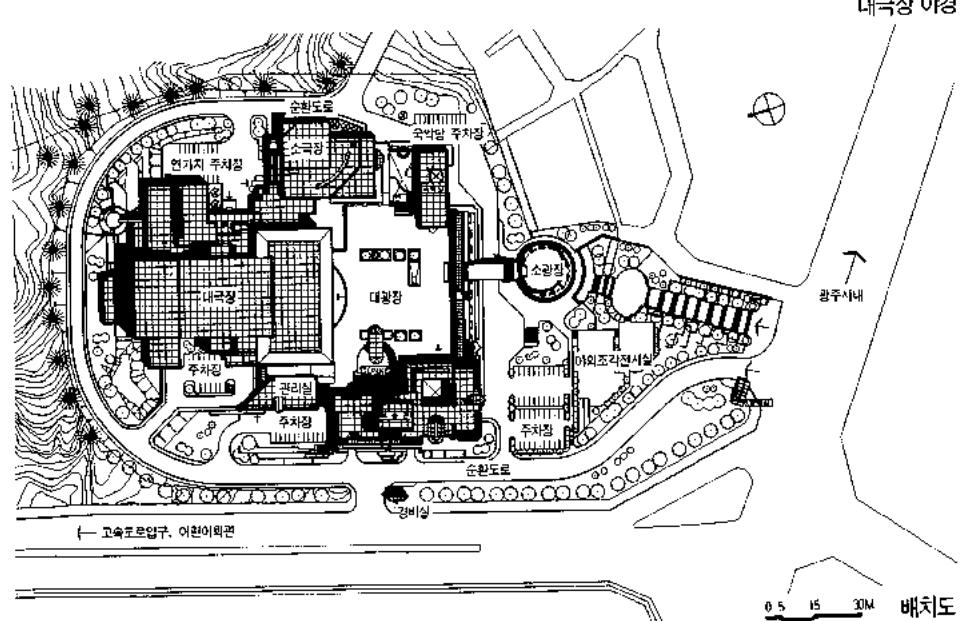
미술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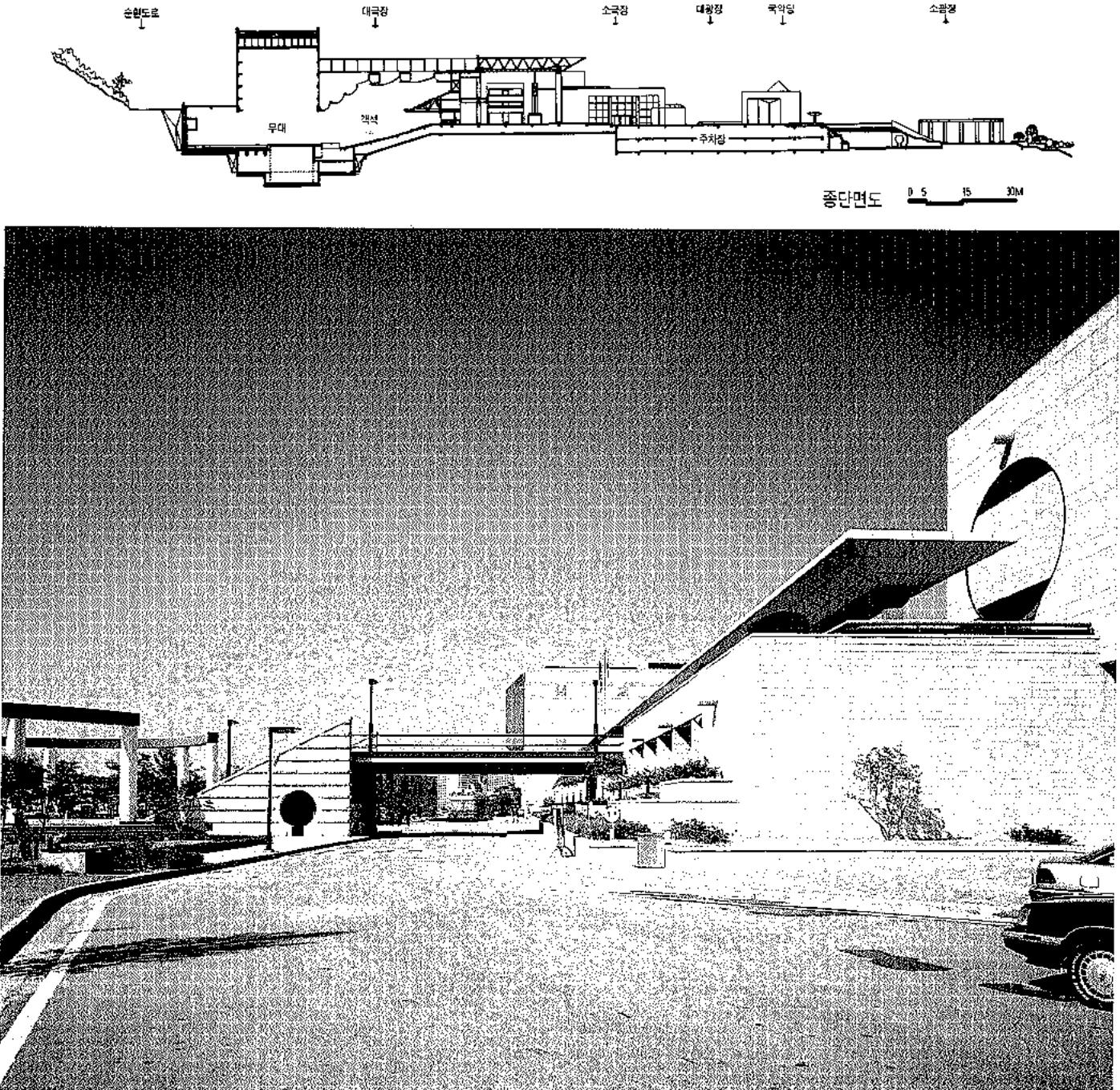
미술관-1,391쪽

국악당-1,603m
국립극장-1,22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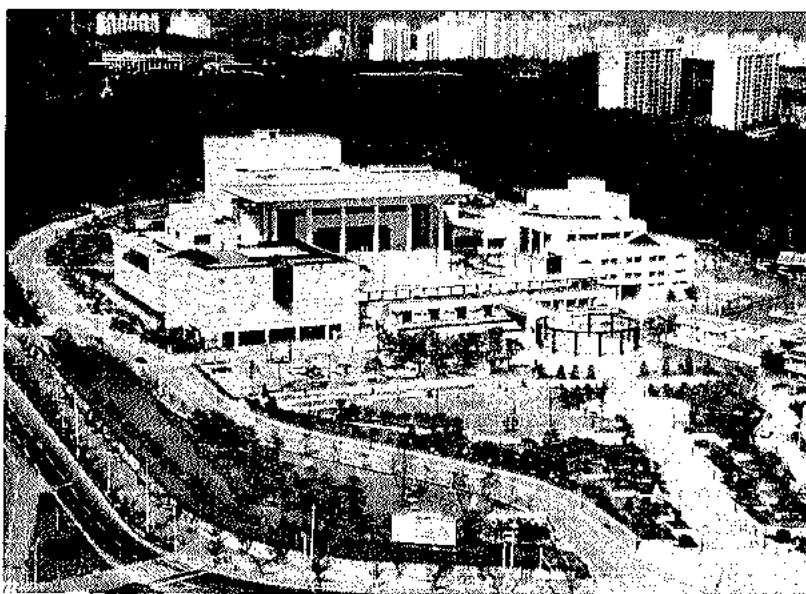
관리동-3,00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철골조)





남서측 순환도로에서 본 광장전면 및 보행용 Over Bridge



전경

Location / 34-1, Unam-dong, Puk-gu, Kwangju-shi

District / Park, House, Parking Space

Site Area / 86,903m²

Bldg. Area / 13,808m²

Gross Floor Area / 46,979m²

Bldg. Coverage Ratio / 15.98%

Gross Floor Ratio / 29.00%

Bldg. Scale / Large Theaters-13,705m²

Small Theaters-4,833m²

Museums-7,38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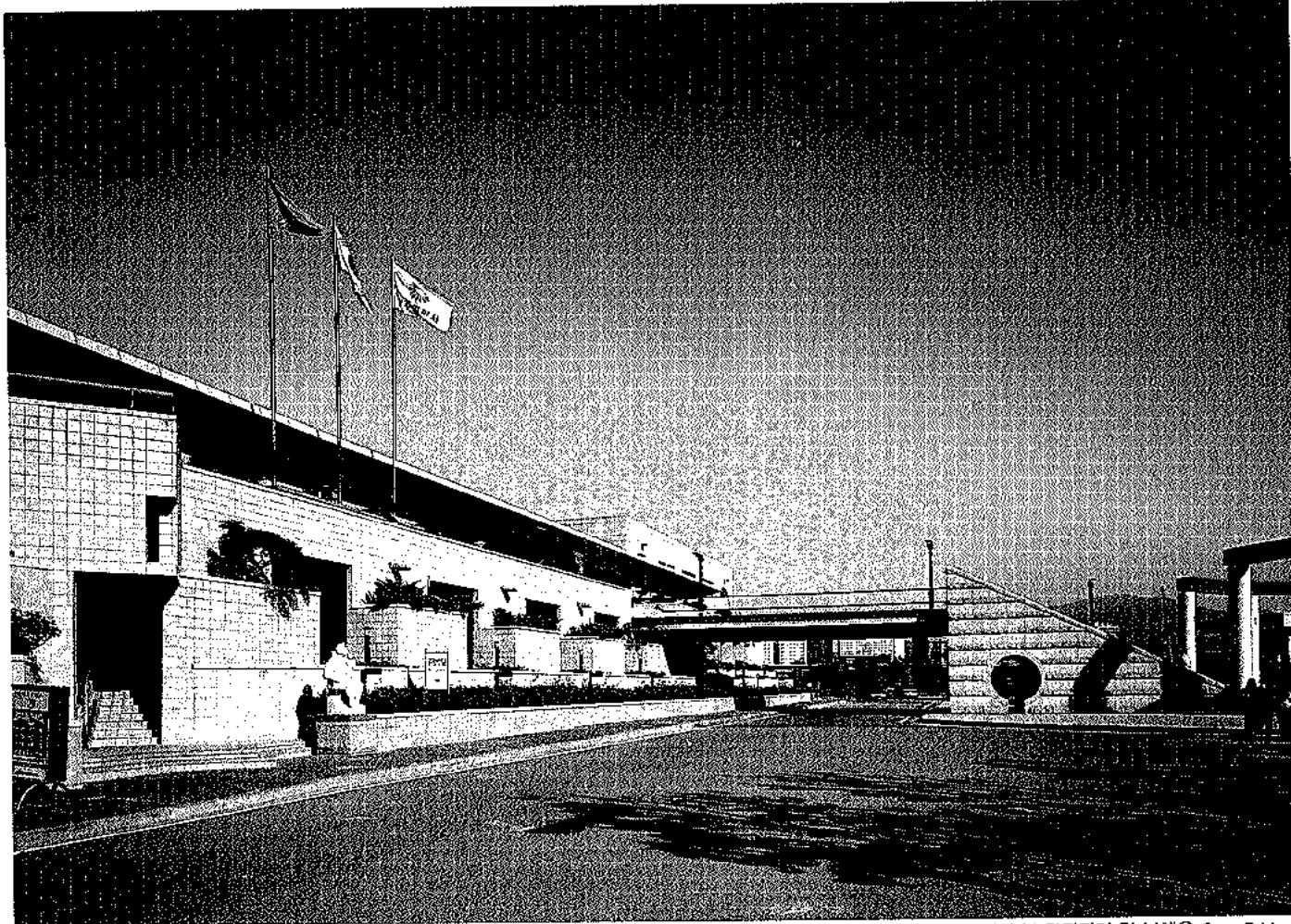
Korean Classical Music Hall-1,600m²

Administration Bldg.-3,00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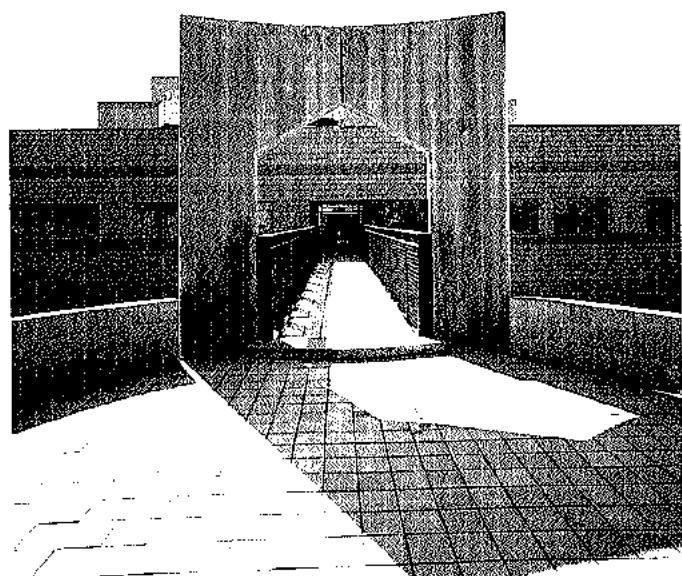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Exterior Tile & 18mm Color Double Grazing

Project Team / Im, Seong-chu, Lee, Nam-Haeng, Im, Dae-Seong & Kim, Se-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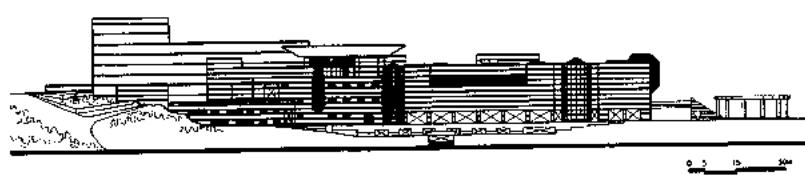
북서측 순환도로에서 본 광장전면 및 보행용 Over Bridge



연습실 연기자 출입용 Over Bridge



광장에서 본 대극장 전경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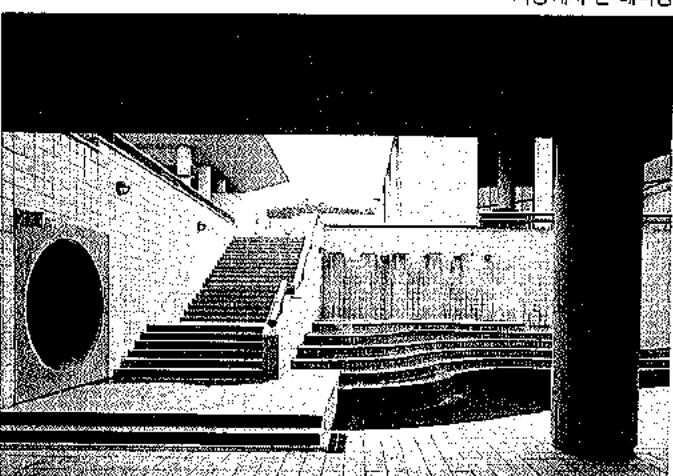
순환도로에서 본 소극장, 대극장 및 연기자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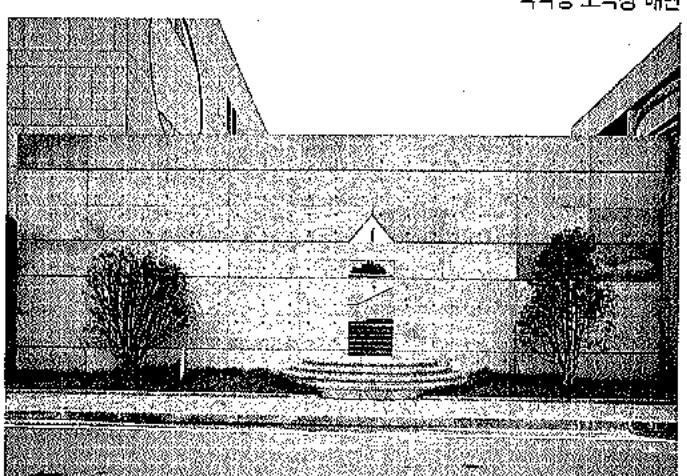
회랑에서 본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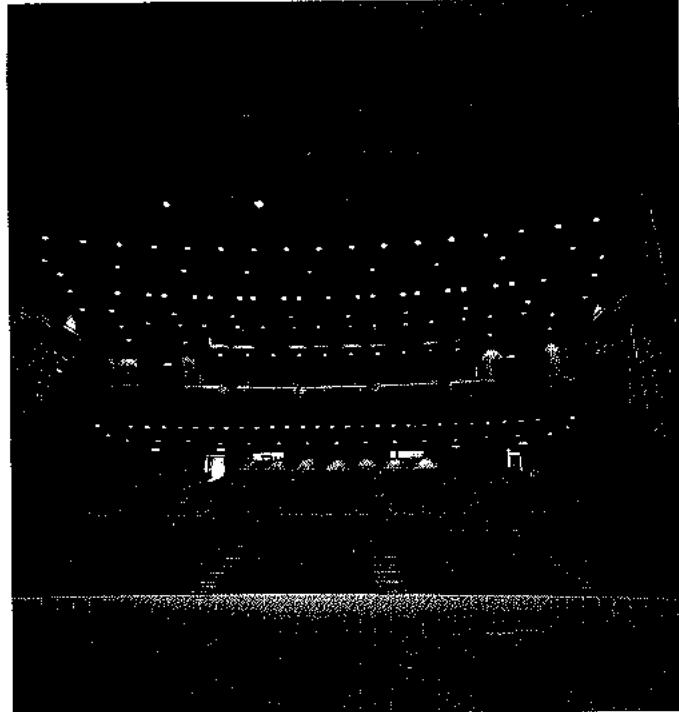
국악당 소극장 배면



국악당 선큰가든 벽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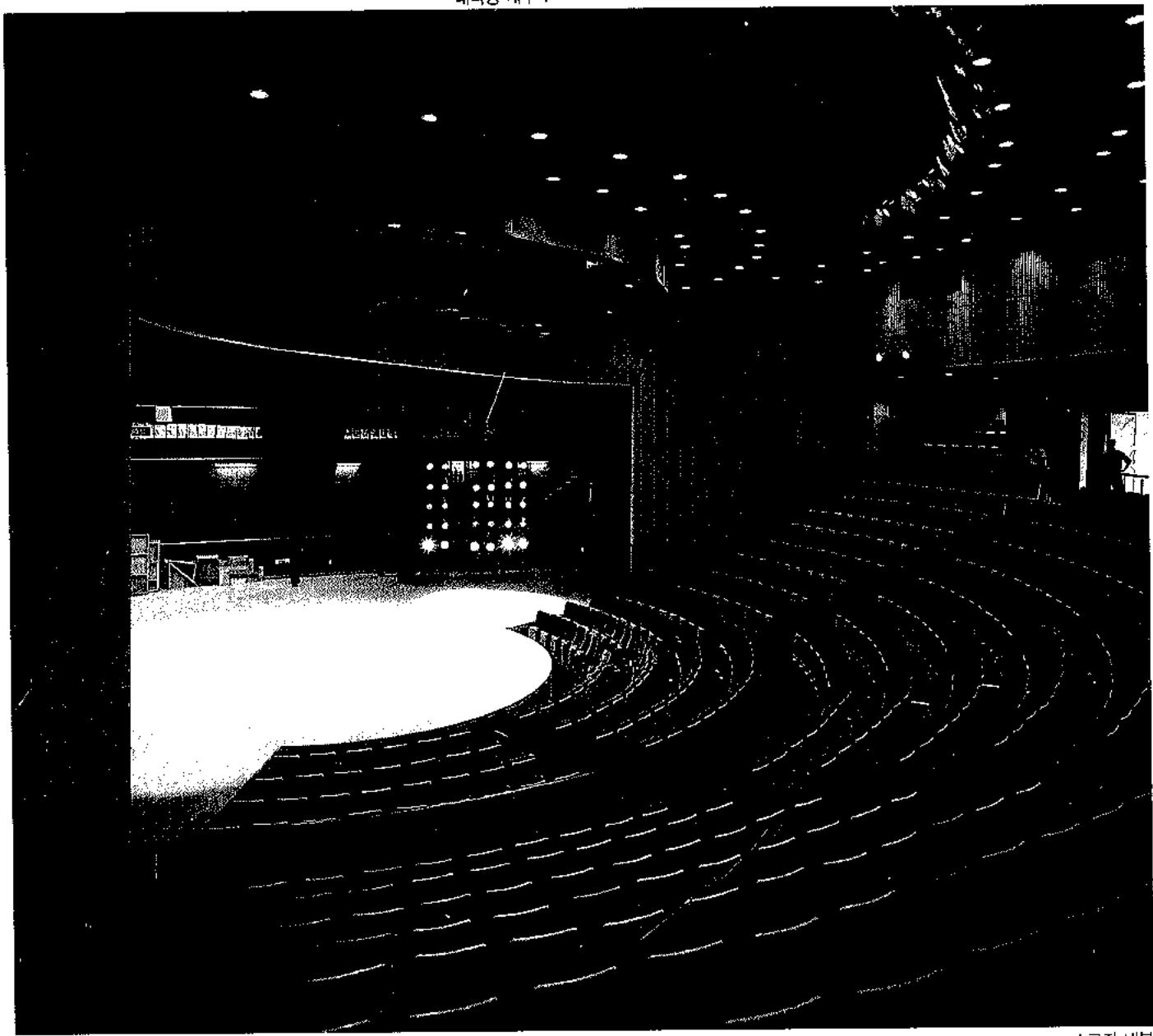
국악당 선큰가든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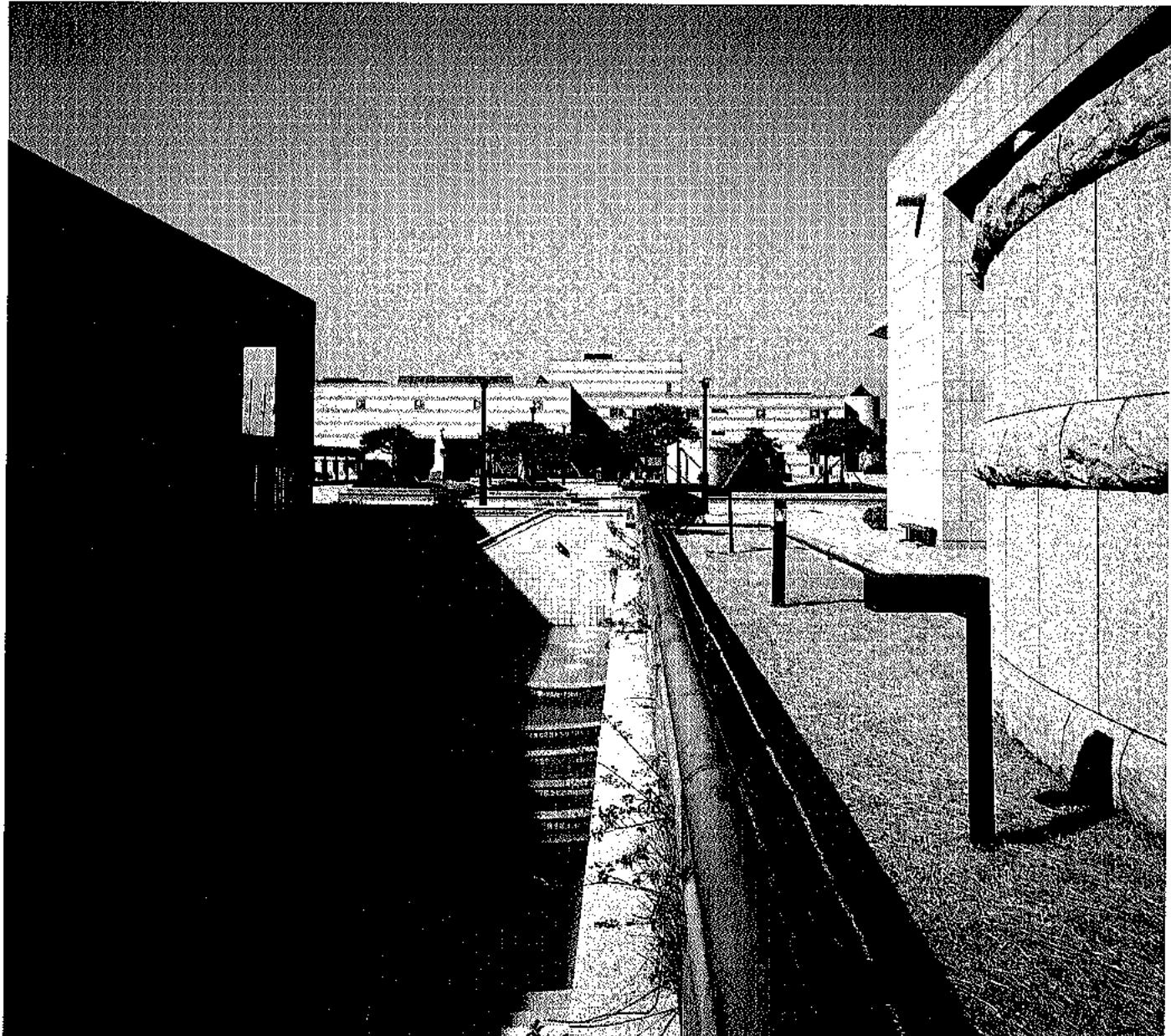
대극장 내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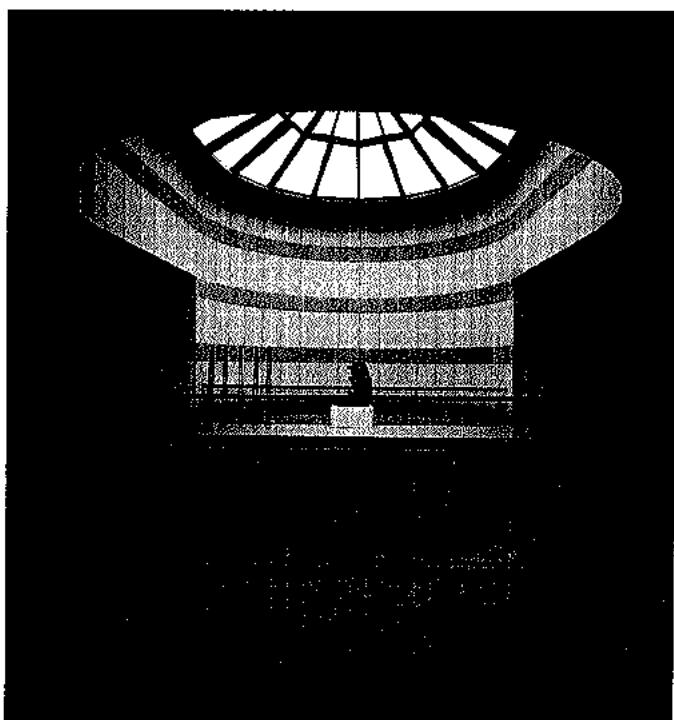
대극장 내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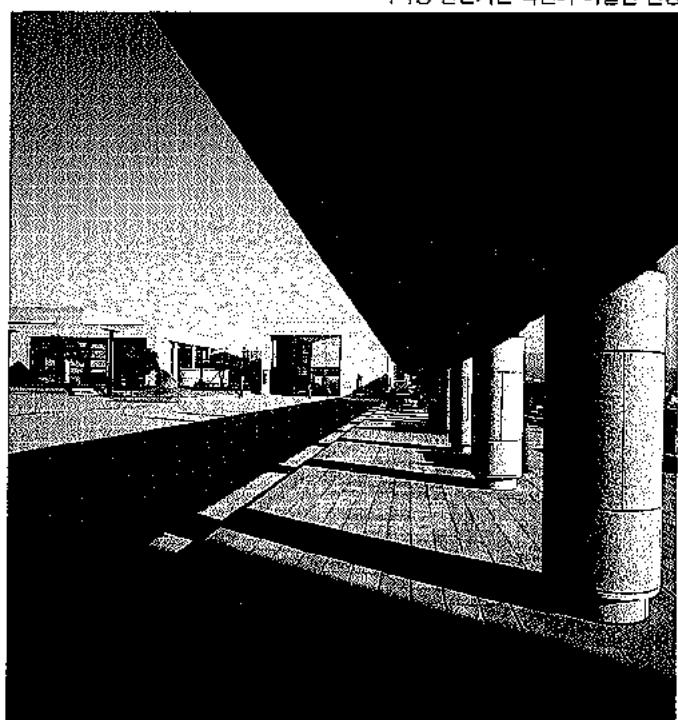
소극장 내부



국악당 선큰기든 벽천과 미술관 전경



미술관 로비홀 천장



회랑에서 본 소극장, 국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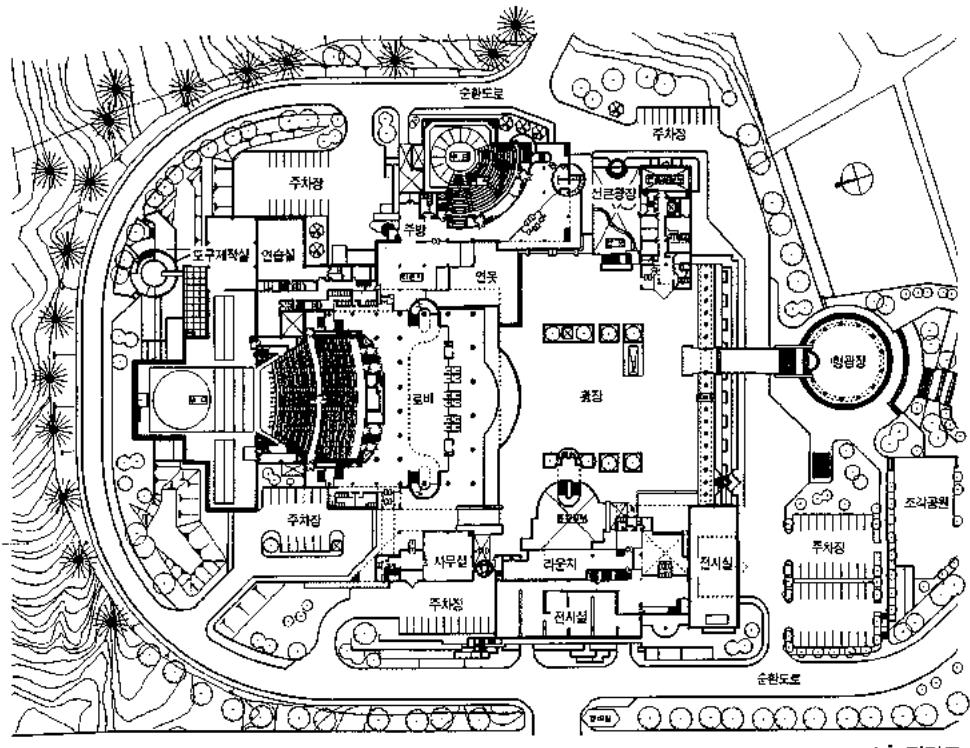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광주시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대공원, 민속박물관과 더불어 하나의 문화벨트를 이루고 있다. 부지의 형태는 남북으로 긴 고자의 경사가 흐르고 남쪽과 서쪽의 대로에서는 많은 차량의 소음이 발생한다.

설계자의 초기단계의 큰노력은 주어진 대지 분석과 지어져야 할 복합문화공간기능의 해석에 있었다. 공간의 구성과 조형의 해결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 조형언어는 그 해결의 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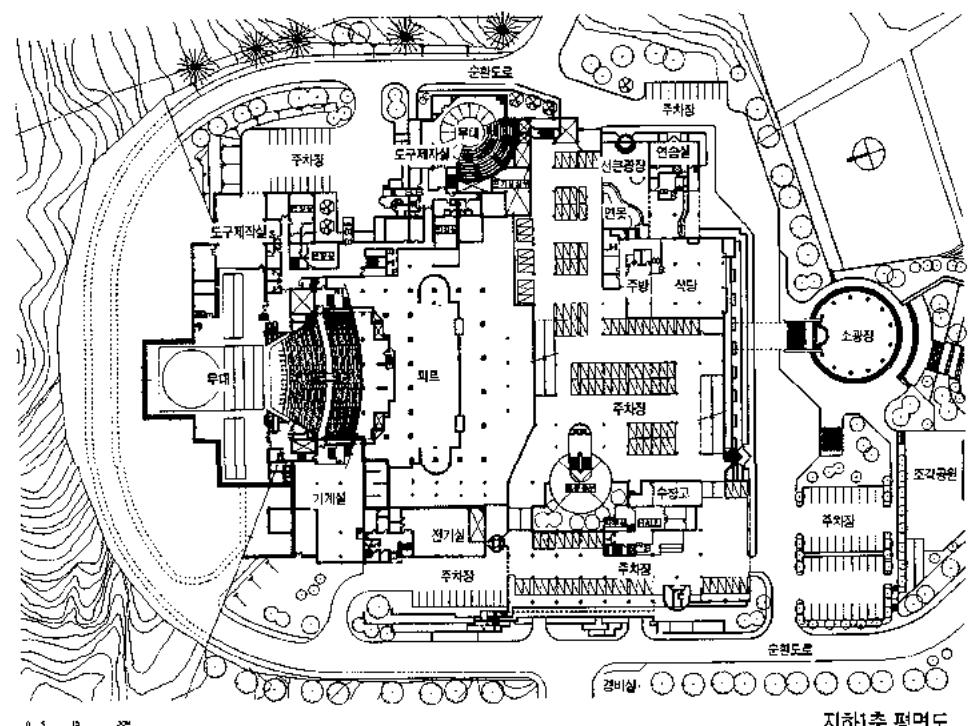
그리고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관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은 큰 고통이었으나, 다행히 설계와 감리에 주어진 9년의 시간은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큰 잊점이었다.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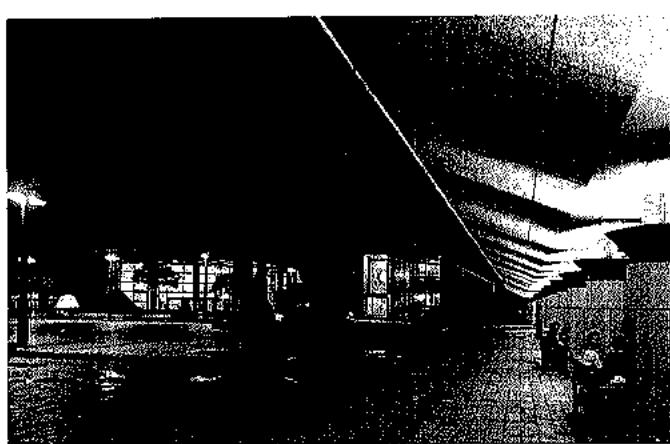
- 북에서 남으로 고저경사가 흐르는 간 주축 선상에 진입 소광장과 중앙대광장을 설정하여 진입 소광장을 전위공간으로하여 주차장과 조형공원에 연결하고 중앙대광장은 축제, 휴식, 대회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핵으로서의 각각의 시설물에 연결하였다.
- 중앙대광장 주축선상의 정점에 대강당을 배치하며 기타 시설물은 대강당 좌우에 위치시켜 전체적인 Volume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배려하고 주위의 Sky Line에 조화되는 건물군의 율동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 경사진 부지를 몇개의 단으로서 Level 차이를 해결하고 각단의 연결은 계단으로 처리하여 시각적인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였다.
- 서측 대로변쪽에 차음녹지공간을 설정하고 관리동과 전시관을 배치하여, 거울의 북서 풍과 도로의 차량 소음으로부터 대광장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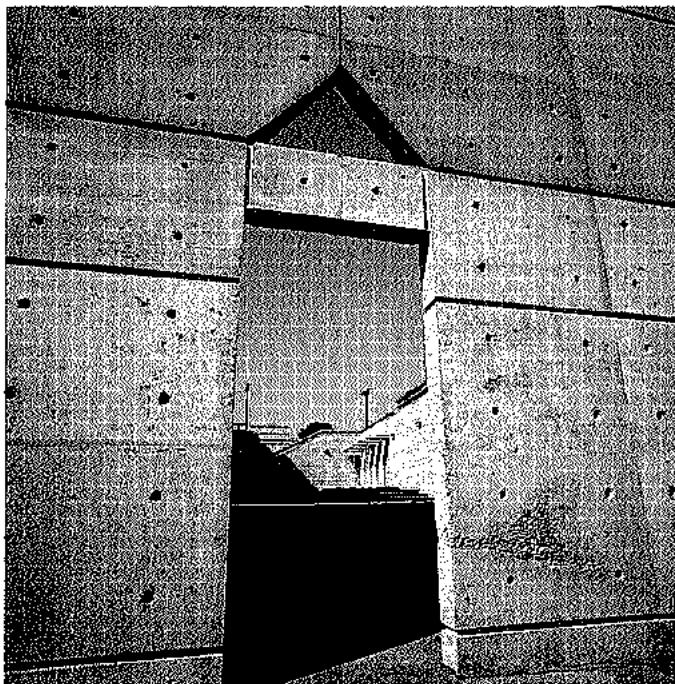
미술관 입구에서 본 대극장, 소극장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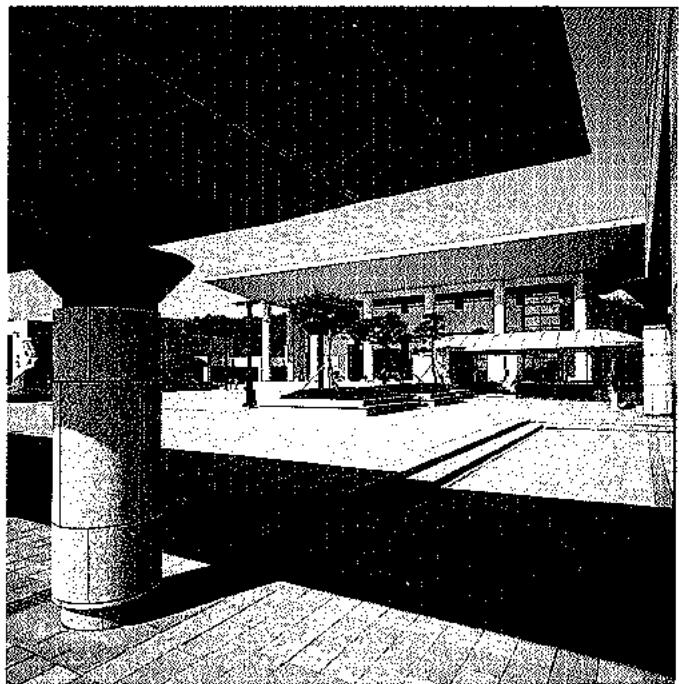
미술관 입구에서 본 소극장, 국악당 야경



미술관 입구와 선큰가든



국악당 선큰가든 출입구 벽면 상세



회랑에서 본 대극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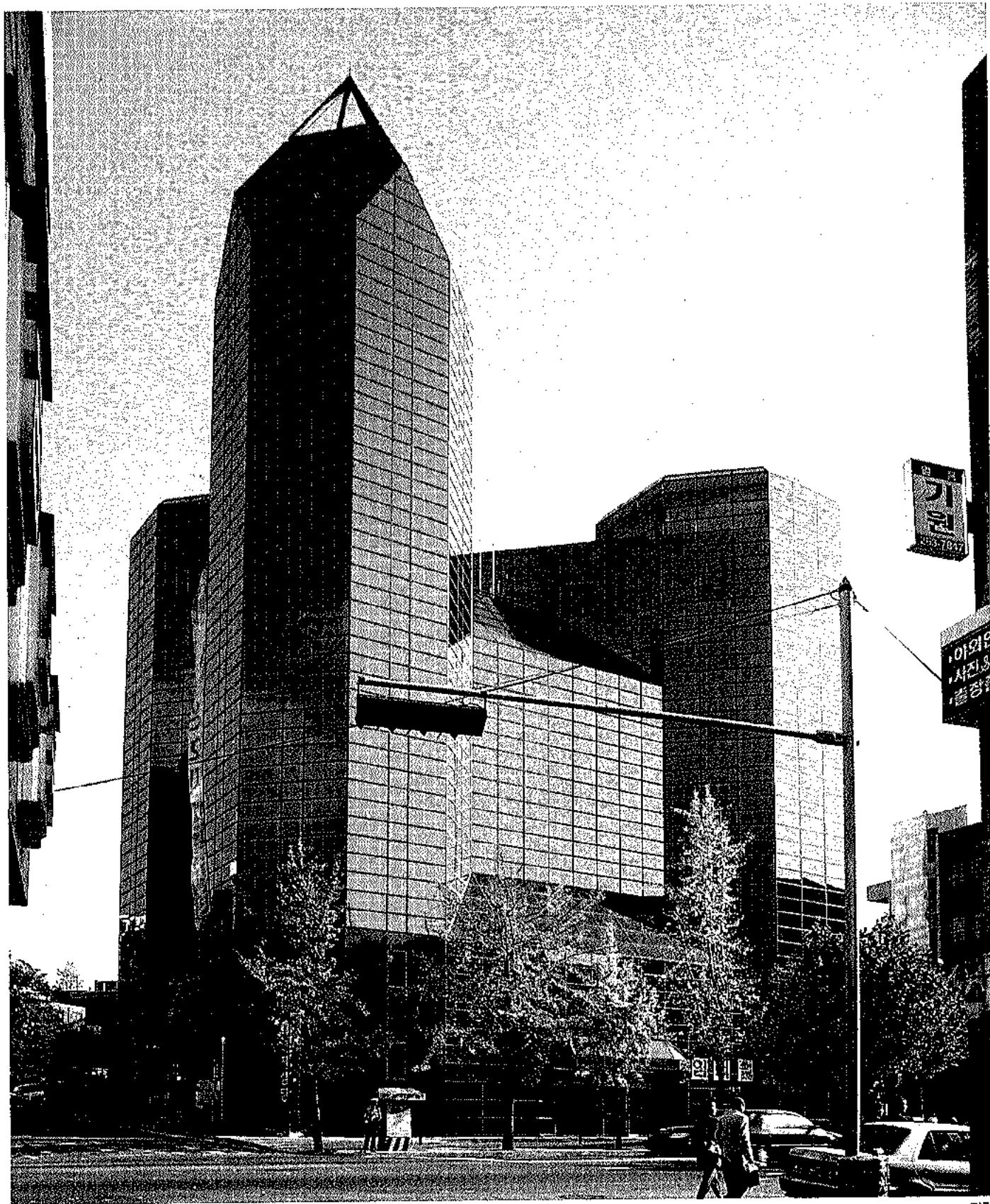


덕양빌딩

Dukyang Building

鄭東明 / 일간종합건축사사무소 + 金震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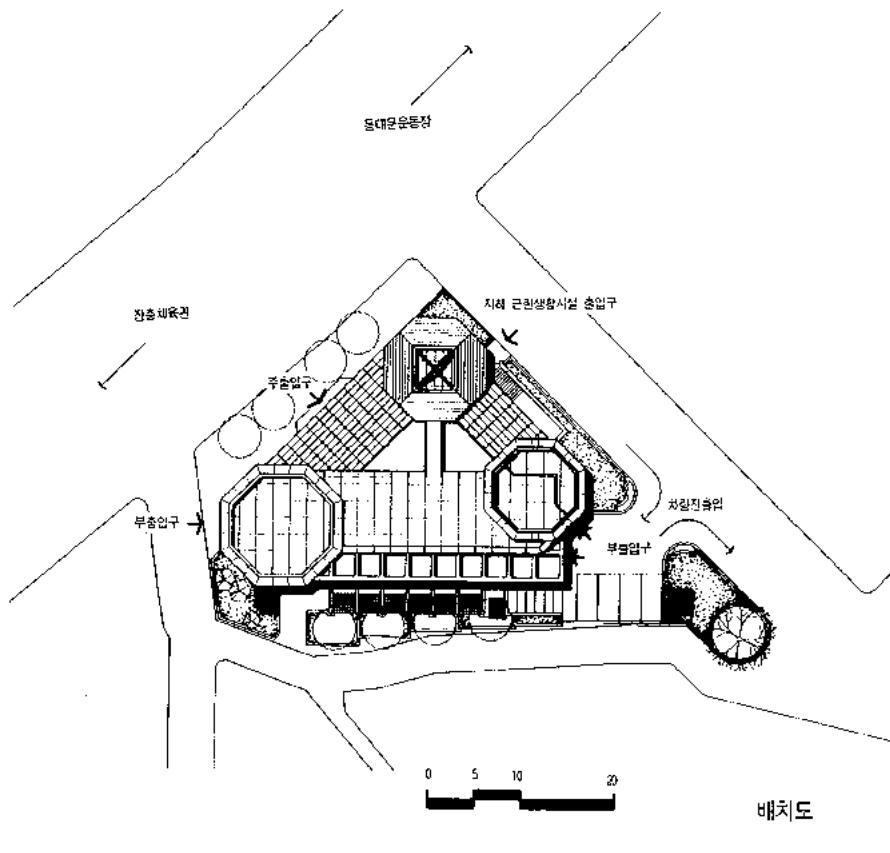
Designed by Cheong, Dong-Myeong & Kim, Jin-Kyun



진경



북쪽 도로변에서 올려다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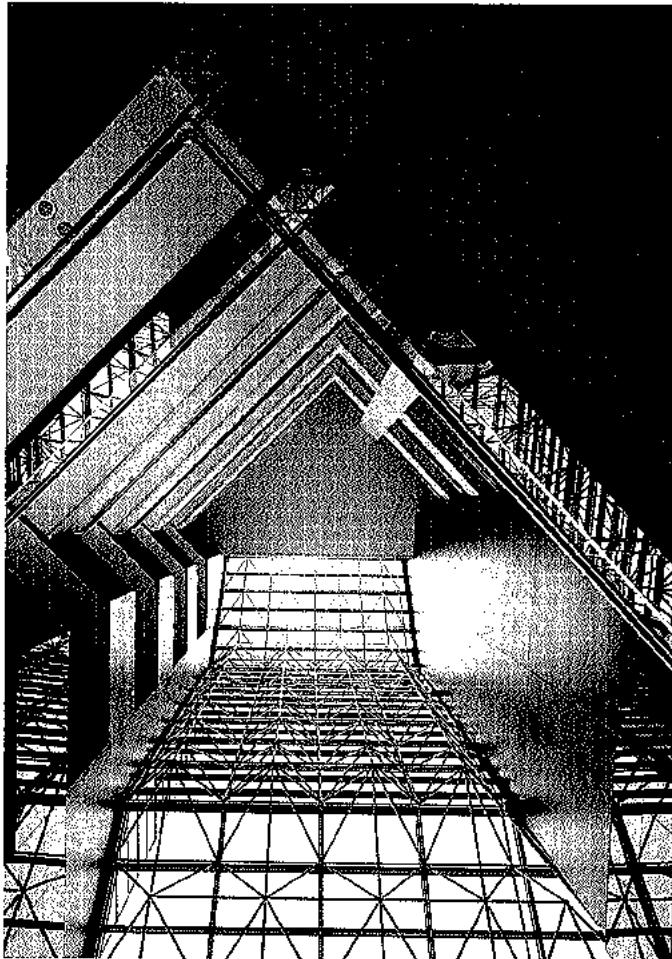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중구 정충동 1가
지역, 지구 / 일반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484.7m²
건축면적 / 735.9m²
연면적 / 7,887.6m²
건폐율 / 49.6%
용적률 / 299.6%
규모 / 지하층, 지상8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알루미늄 커튼월, 회강석 물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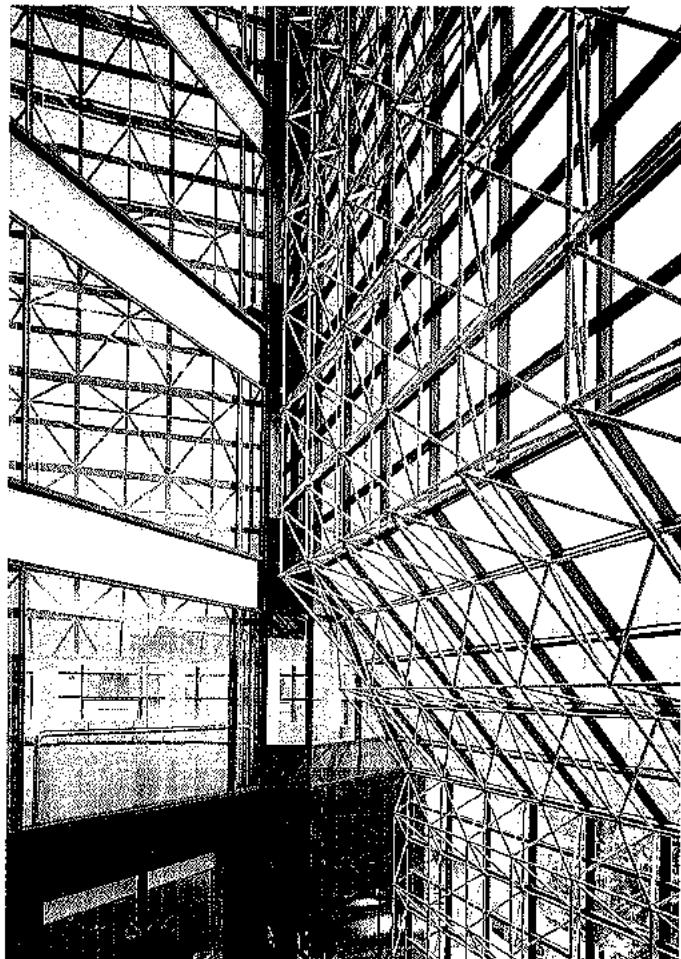
Location / 1ga, Changhung-dong,
Chung-gu, Seoul
District / House, Parking Space, Aesthetic zone
Site Area / 1,484.7m²
Bldg. Area / 735.9m²
Gross Floor Area / 7,887.6m²
Bldg. Coverage Ratio / 49.6%
Gross Floor Ratio / 299.6%
Bldg. Scale / 4 Stories Below Ground,
8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Aluminium Curtain Wall & Gra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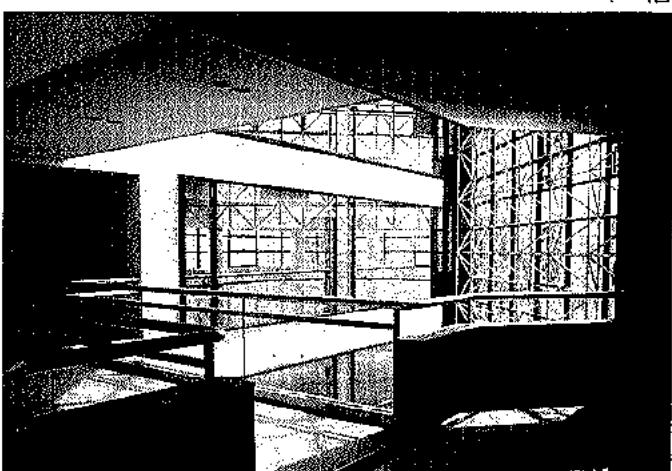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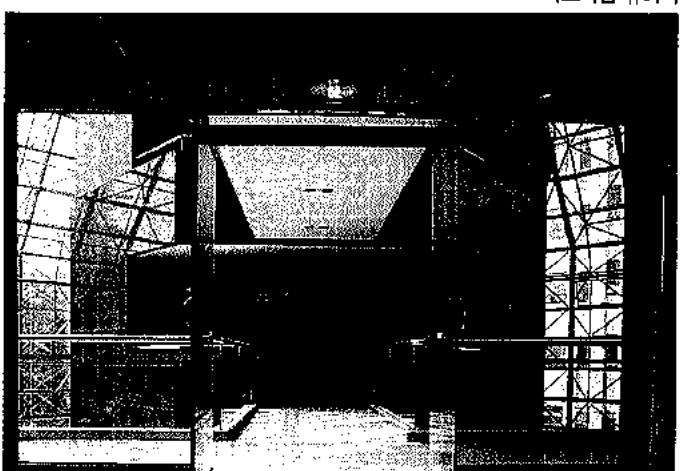
아프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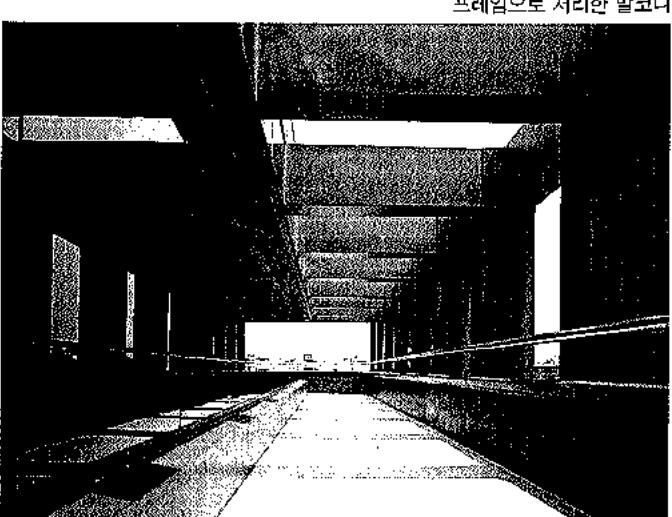
아프리움 유리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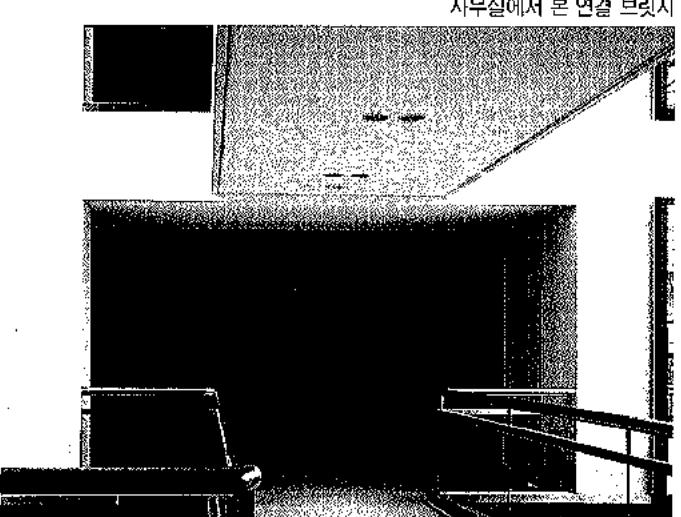
프레임으로 처리한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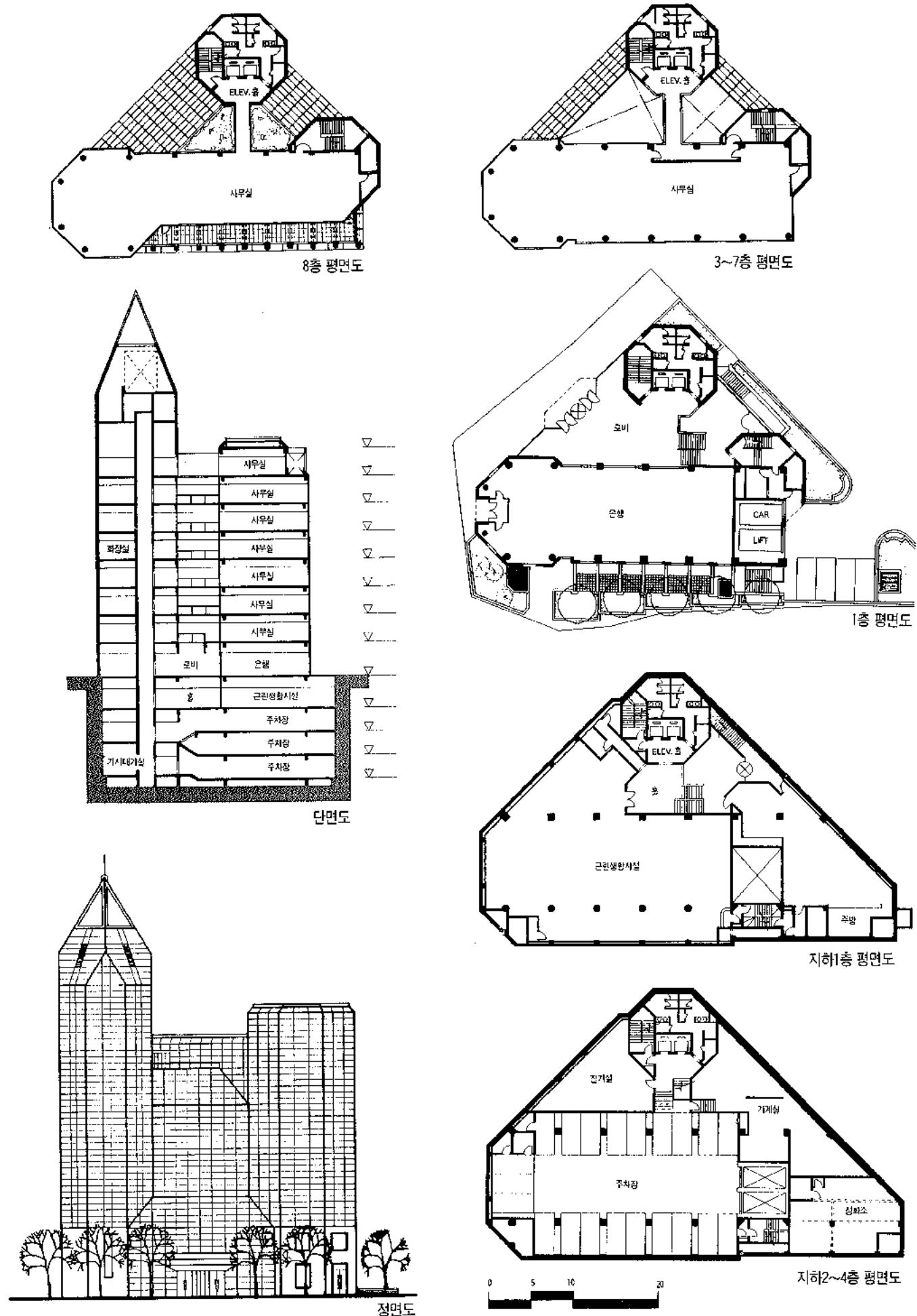
사무실에서 본 연결 브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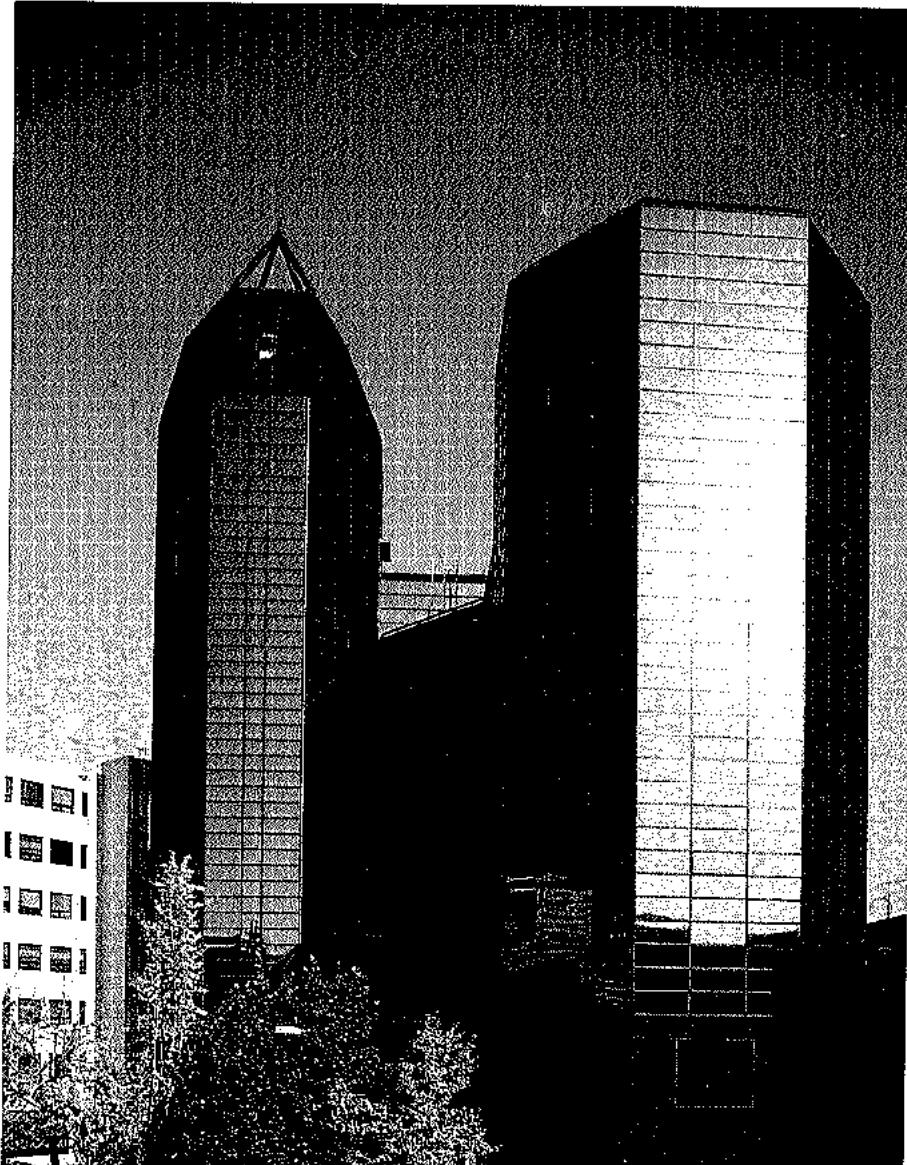


코어에서 옮려다 봄



코어에서 본 연결 브릿지





서측전경



로비

덕양빌딩은 '건축의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 건축으로서의 역할' 즉 위치하고 있는 도시에서도 인정한 자기역할에 대한 건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물이다.

본건물은 삼각형의 대지에 위치하여 정면의 주도로외에 후면과 측면 모두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일반 상업건축물이 지나는 정면성 과는 달리 '모든 방향으로의 정면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건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대지형상과 입지적 특성상 다면성을 지닌 건축적 매스를 중심으로 스타디가 이루어졌는데, 초기에 대지 형상을 고려하여 세개의 탑과 매스에 의한 형태계획으로 출발해 결과적으로 하나의 타워(코어부분)만이 남았으나 다면성을 지닌 매스개념에는 어느 정도 접근한 건물이라 생각된다. 또한 내부공간의 처리에 있어서도 임대 효율만을 고려한 일반 사무소 건물과는 달리 암대공간의 쾌적성 확보 또한 주요한 관심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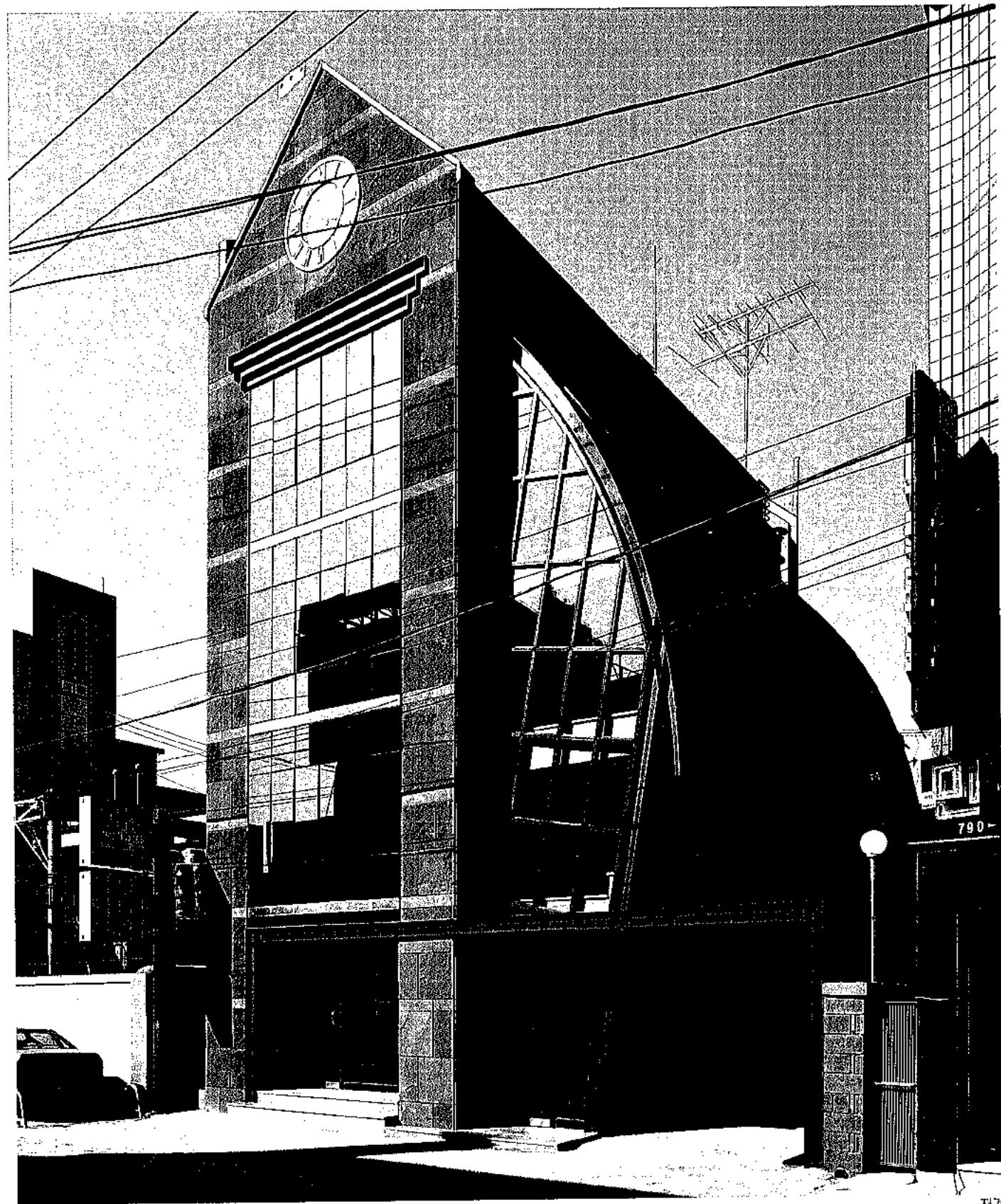
정형의 사무공간과 코어부를 비정형의 대지위에 구성하기 위해 도입한 아뜨리움과 공중보도(bridge), 이를 위한 스페이스 프레임은 내적으로 임대공간 쾌적성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는 다면적 정면을 갖는 주요 해결방법이 되었다.

외부마감에 있어서 일률적인 콘크리트로된 삼자형 건물보다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폭넓은 건축미감재의 선정이라는 측면에서 반사유리를 사용하였다. 반사유리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연출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료이고 그동안 실험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무더운 날씨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이 아직 미완이라 어려움이 있으나 아뜨리움은 사무공간측에서는 열적원충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특히 겨울철의 경우 난방에는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자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덕양빌딩의 건축작업은 비록 초기계획단계의 의뢰 내용이 중간에 여러차례 바뀌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본인의 의도에 대한 건축주의 폭넓은 이해하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 지하층의 경우는 공시중 용도변경으로 아뜨리움을 통한 외부의 진입과 지하공간과의 연결이 부분적으로 폐쇄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성원
Eui Song Won

朱榮正/예조종합건축사무소
Designed by Joo, Young-Jung



전경



2층한의원 내부



주출입구 상세

대지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640
지역, 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정비지구

대지면적 / 163.00m²

건축면적 / 95.37m²

연면적 / 456.56m²

건폐율 / 58.50%

용적률 / 219.34%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마감 / 인도 사암+드라이버트

설계담당 / 김민주, 안구섭, 정규정, 윤태환

Location / 40-640, 3ga-Hangang-ro, Yongsan-gu, Seoul

District / House, Parking Space

Site Area / 163.00m²

Bldg. Area / 95.37m²

Gross Floor Area / 456.56m²

Bldg. Coverage Ratio / 5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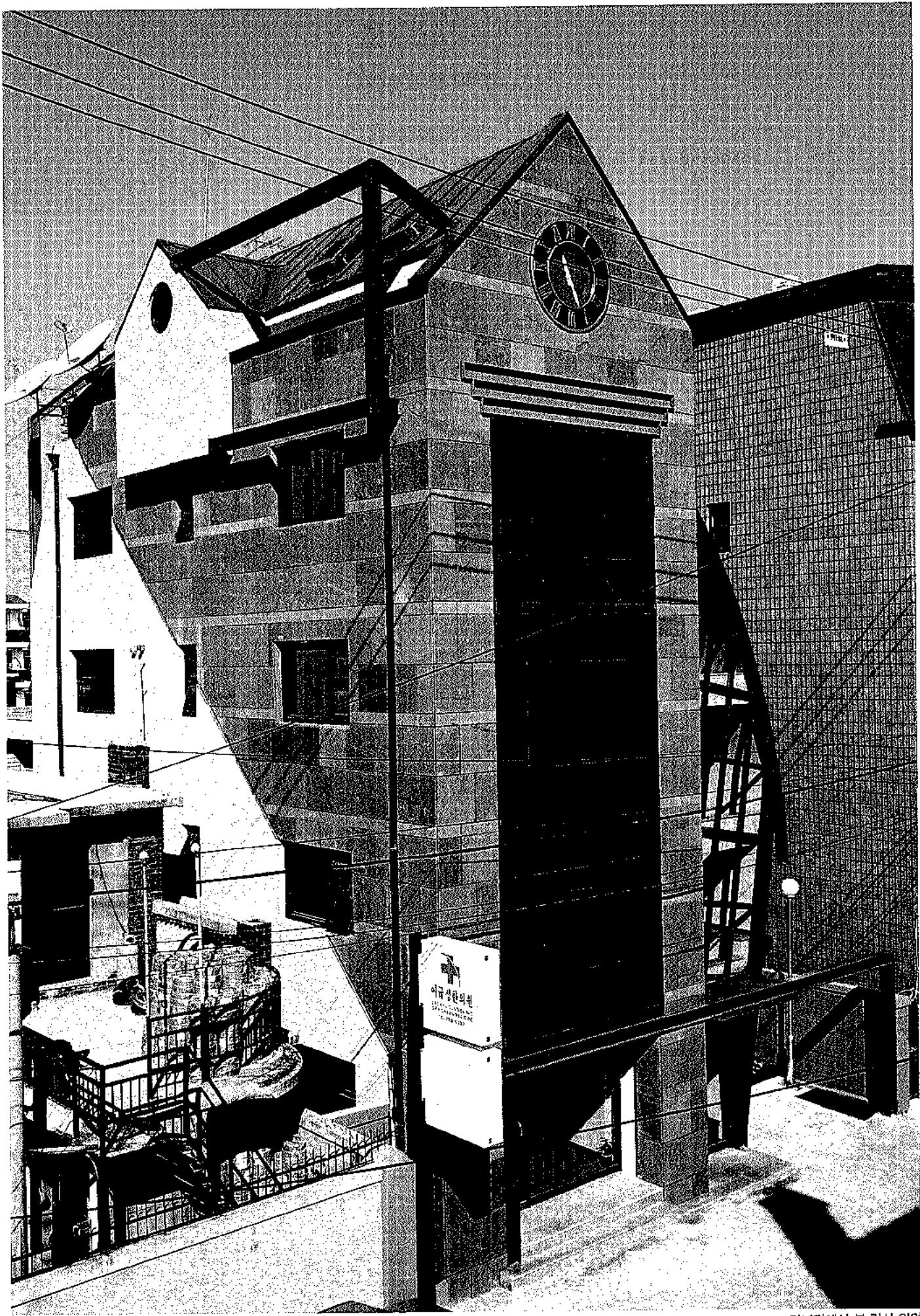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 219.34%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5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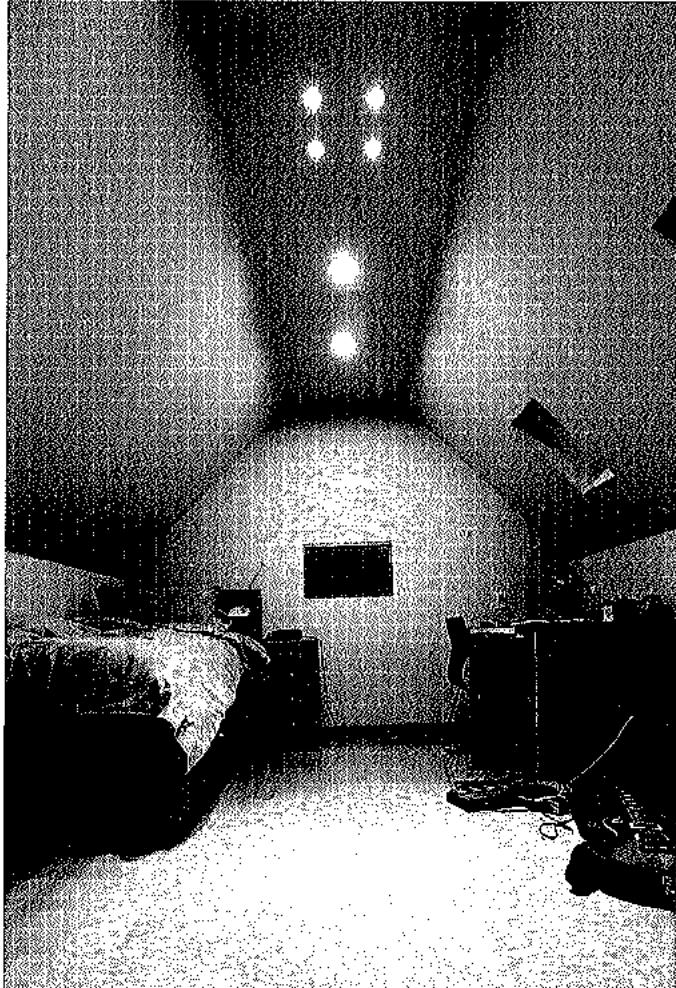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d Rigid Frame

Exterior Finish / India Sandstone+Dryvit

Project Team / Kim, Min-Ju, An, Kyu-Seop, Cheong, Kyu-cheong &
Yoon, Tae-Hwan



건너편에서 본 경사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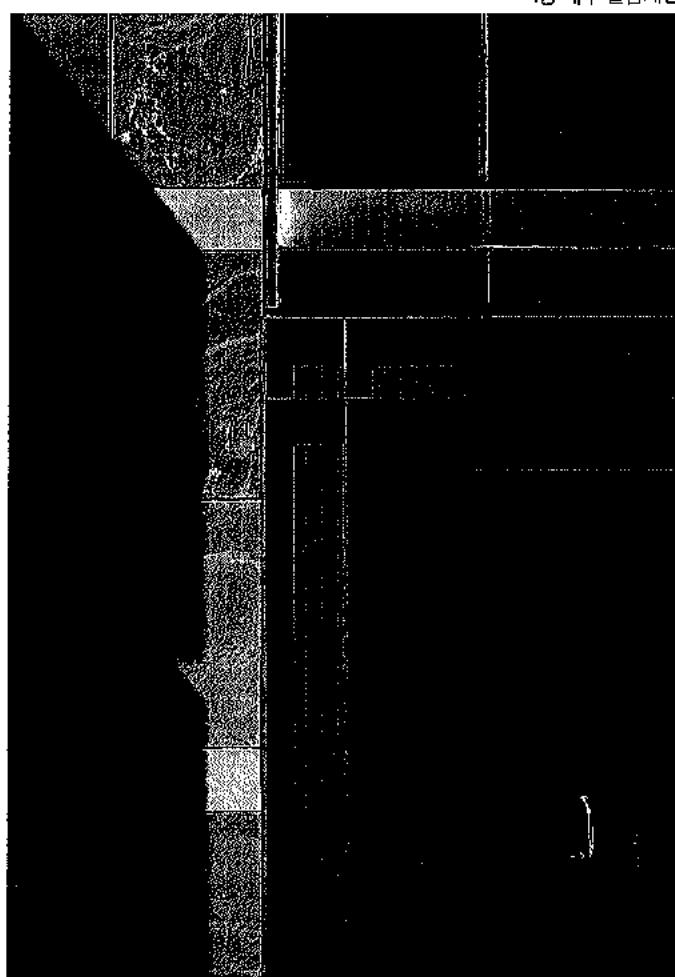
5층 다락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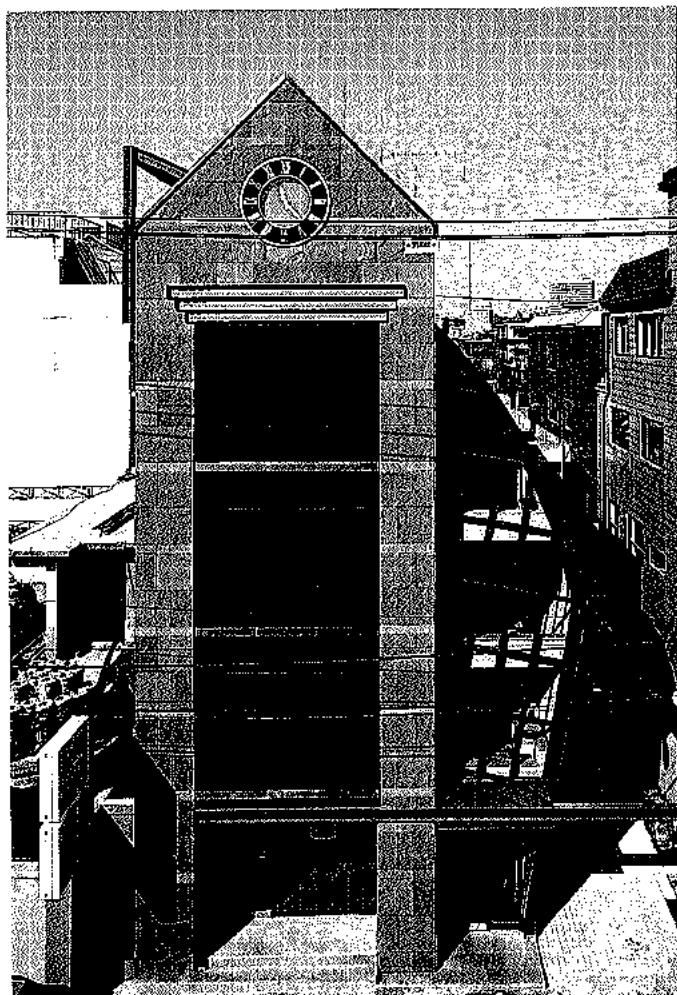
4층 내부 돌음계단



주택부분 내부계단(3~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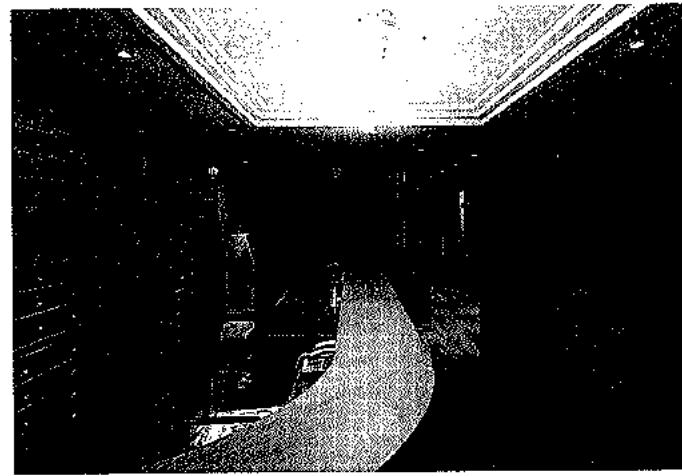
주출입구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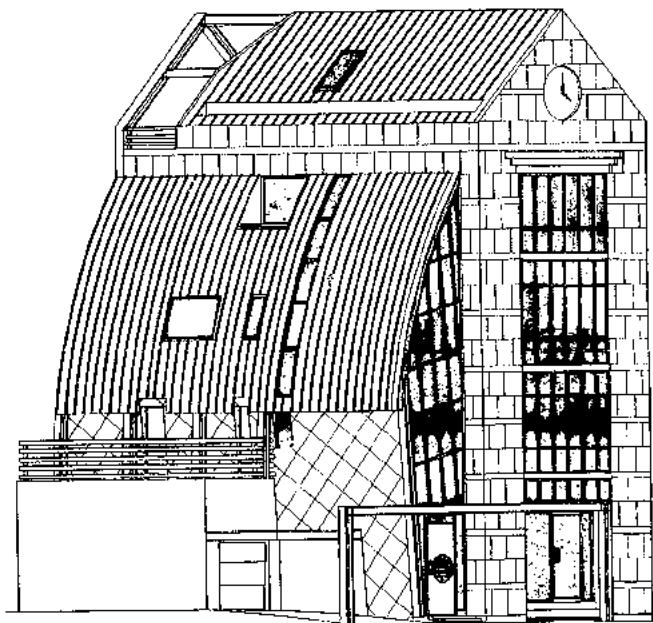
건너편에서 본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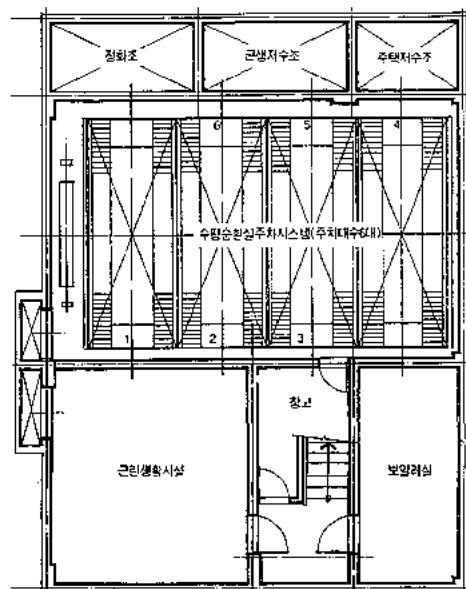
3층 주택 거실



2층 한의원 내부



격자 입면도



지하1층 평면도

용산구 신용산 전철역 부근에 위치한 본 대지는 근래에 들어 국제센터를 시작으로 데이콤빌딩 등 대형건물이 들어서면서 재개발이 되기 시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건물의 신축에 비해 중·소규모 건물들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상태여서 처음 대지를 접했을 때 주변의 무미건조한 형태의 근린생활시설들로 정체되어 있는 가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되었다. 현장에서의 Image Concept은 앞으로의 중·소규모 건물의 개발에서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는 개성있는 건축물을 계획하는데 중점을 두고 싶었다.(건축주도 주변의 성능답 같은 타 건물들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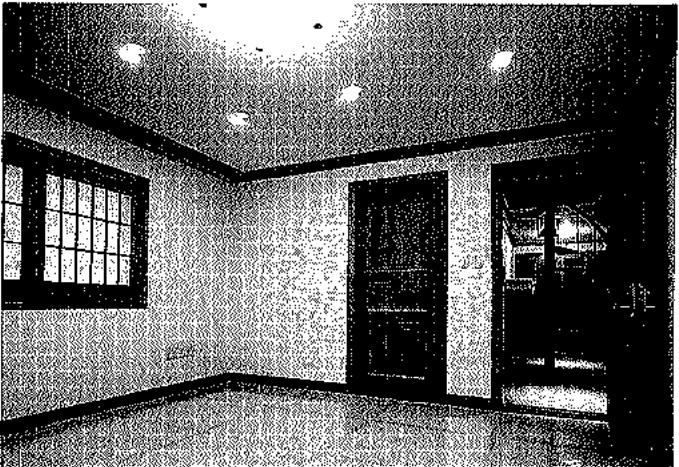
전체 건물의 Design Concept은 도시가로의 Context 속에서 박공으로 처리된 Mass로서 기존 질서에

개성을 부여하며, 무기운 재료(짙은 색의 인도사암)에 의해 전체의 무게중심을 잡게 하고 우측면의 일조권 사선에 의해 생긴 시면은 기존 질서와의 공존 속에서 새로운 개성창출을 의미하며 곡면 Frame의 관통에 의해 기존 중심으로서 Mass의 육중함을 해소하도록 시도하여 본다.

또한 새로운 질서라는 한 획으로서의 의미도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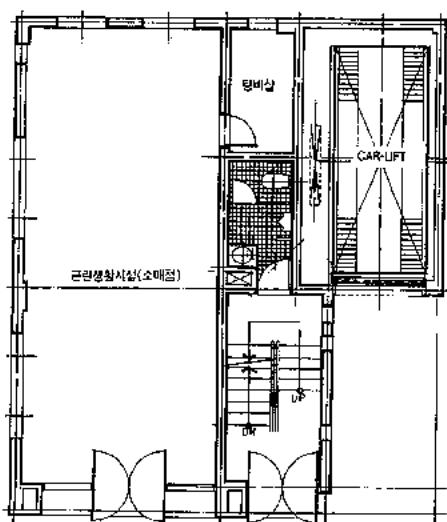
3층 주택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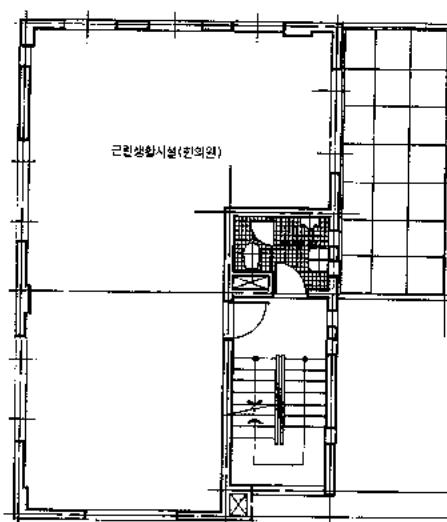
4층 침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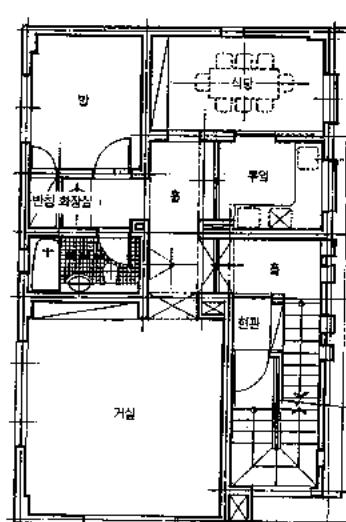
건물외경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리라.

한의원이라는 Image는 고전이라는 관념과 함께 Postmodern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은 박공처리로 이어지며 또한 중앙에 원형의 시계를 주어 고전적인 Image를 더욱 강조하도록 한다.(앞으로 시의 일본 후쿠오카 소재 일 팔라쪼 호텔의 내부 인테리어 입면과 연계성을 뛴다.) 우측 국면의 내부는

유리로 처리하고 Frame은 시선으로 처리하여 주 Mass의 강한 대조를 이루도록 하며 또한 상호관 입에 의해 각기 Mass의 Identity를 부여하였다.

또한 기단부는 입구를 부각시키고 측면 Car Lift 전면 차로공간을 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H형강의 Frame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둘쭉 날쑥 처리되어 입면의 부분 부분을 차지하고 단순하

지만은 않은 가로표정을 형성할 것이다.

한의원이라는 테마를 현대의 건축언어로 해석하는데 어려움과 무리가 많았지만 건축하는 사람의 욕심(?)을 잘 이해해 주신 건축주께 감사드리며 시공 후의 한술은 이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한번의 욕심으로 남는다.

의원제품

신사동 씨트로엥 빌딩

Shinsa-dong Citroën Building

全泰
金泰鎮 / (주)에정종합건축사무소

Designed by Chun, Tae-Jin



전경



1층 자동차 전시장 내부



모델 1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0-2, 3, 4, 5

지역, 지구 / 일반주거지역, 2종이관, 주차장정비

대지면적 / 1,037m²

건축면적 / 493.60m²

연면적 / 5,531.31m²

건폐율 / 47.60%

용적률 / 297.49%

규모 / 지하3층, 지상7층

구조 / RC조

외부마감 / 반시 복층유리커튼월+화강석 베니구이

Location / 630-2, 3, 4, 5 Shinsa-dong, Gangnam-gu

District / House, Parking Space, Aesthetic Zone

Site Area / 1,037m²

Bldg. Area / 493.60m²

Gross Floor Area / 5,531.31m²

Bldg. Coverage Ratio / 47.60%

Gross Floor Ratio / 297.49%

Bldg. Scale / 3 Stories Below Ground, 7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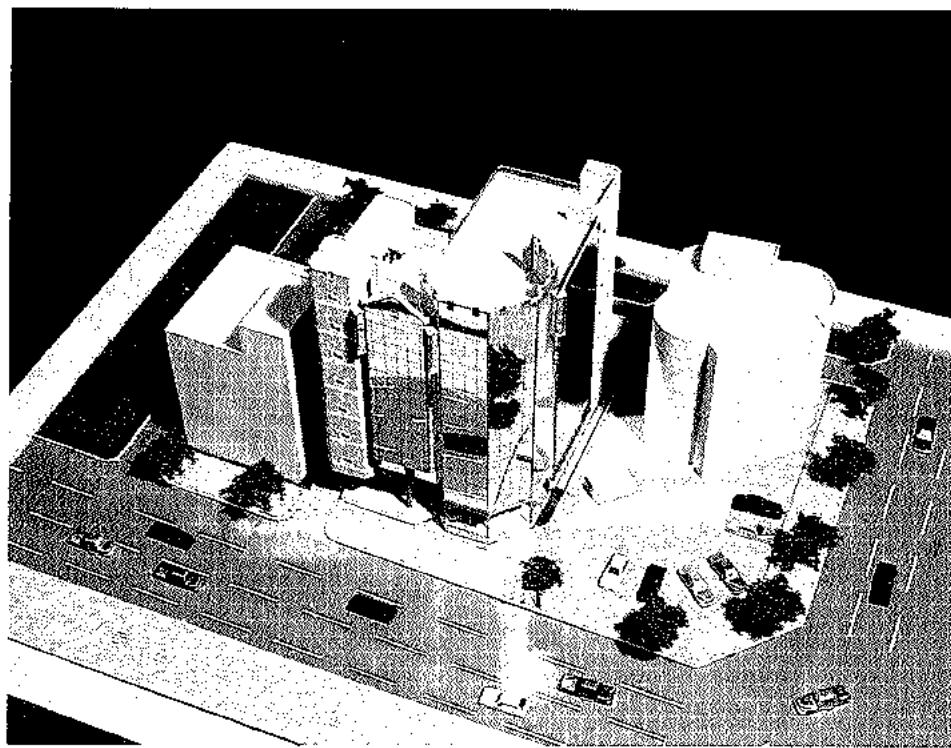
Exterior Finish / Double Glazing Curtain Wall+Gra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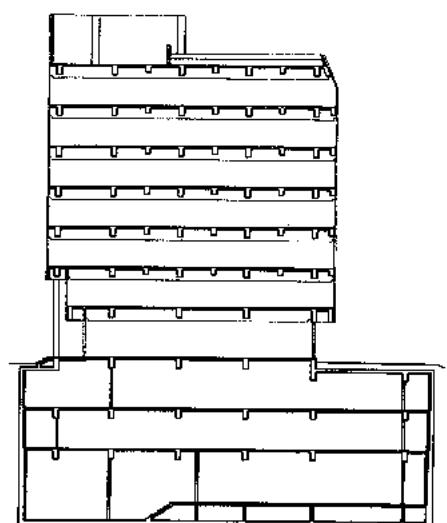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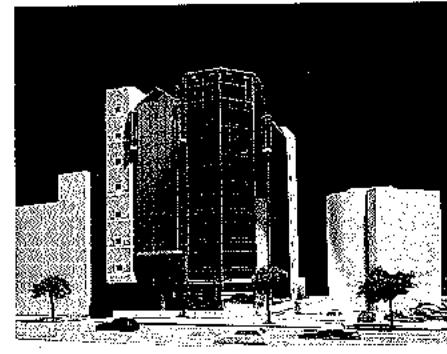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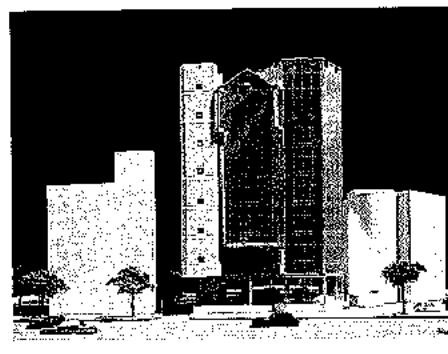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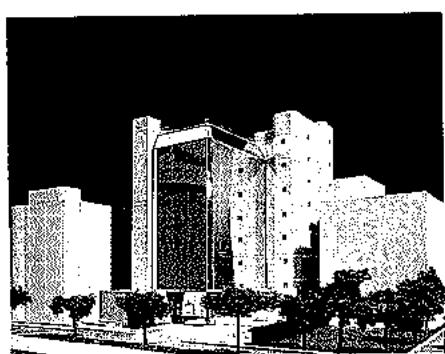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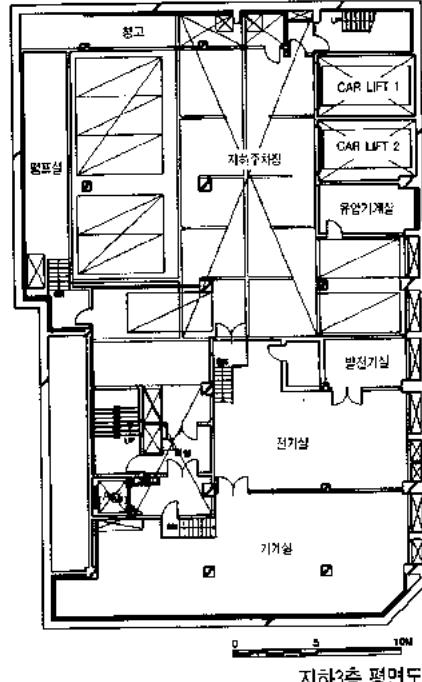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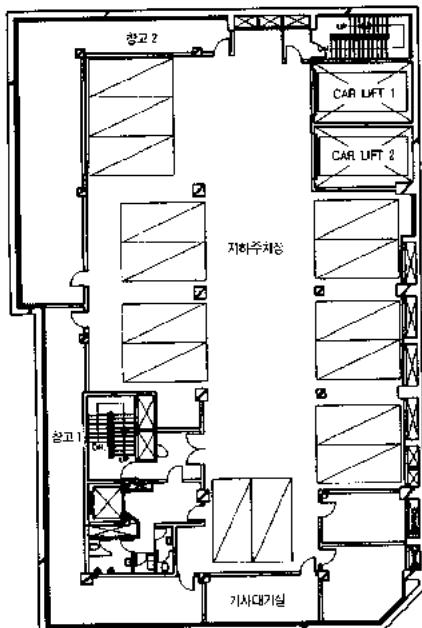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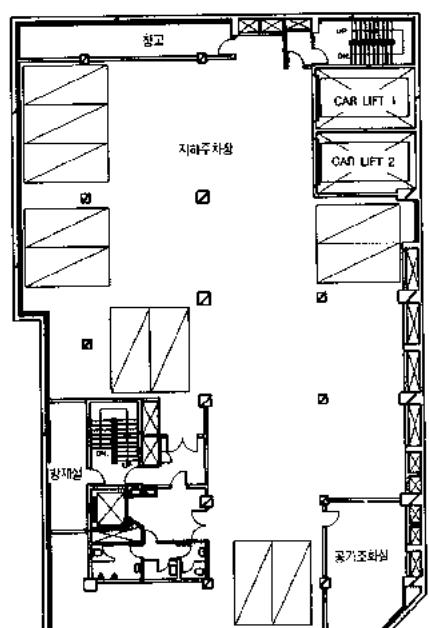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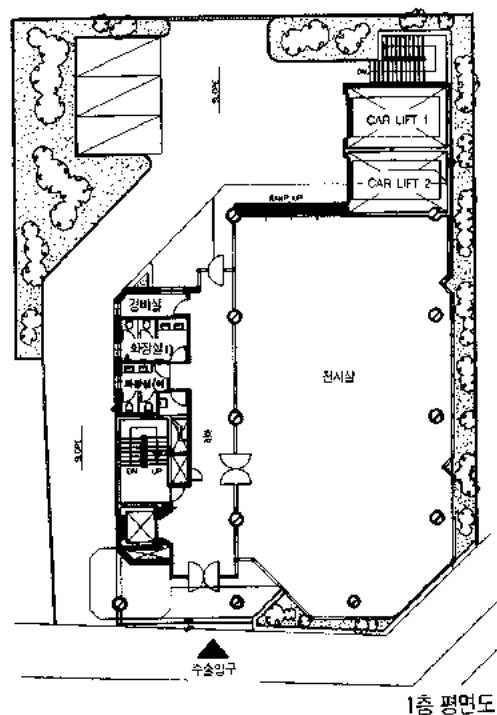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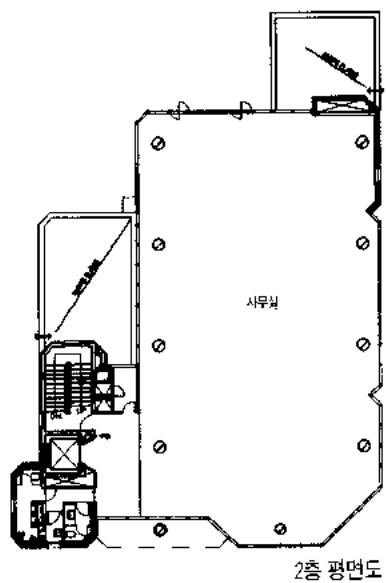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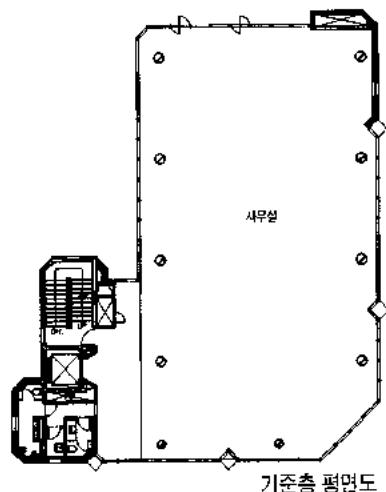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모델 2



단면도



설계작업에 임하여 요구되어진 사항들을 가시적인 실체로 객관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디분히 주관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형상의 표현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고심을 거듭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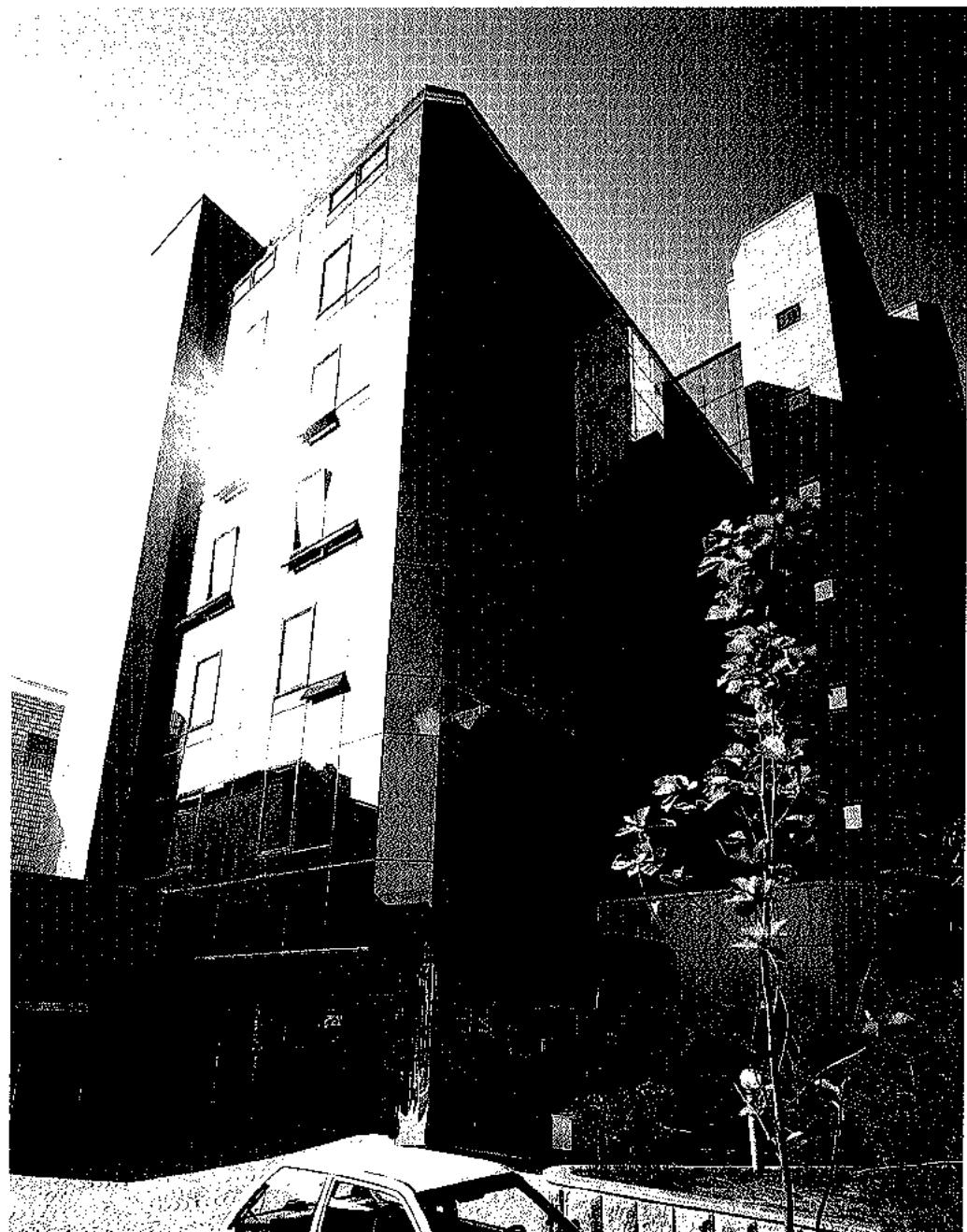
이 건물에서도 미천기지로 위의 두 가지 요소 사이에서 그 경중을 기능하기가 쉽지 만은 않았다.

요구되어진 사항은 1층에 프랑스 자동차 '씨트로엥'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두고, 그 이상의 기준층에 불특정한 업무시설을 수용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빌딩'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 설 도 신대로는 도산 사거리를 중심으로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기존 수입 자동차들의 전시장이 집중되어, 일종의 콘테스트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경쟁적 의미부여가 불가피했다. 따라서 기준층의 업무공간은 향후 입주하게 될 시설들의 용도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반면, 1층의 자동차 전시장은 '씨트로엥'의 기술적 성능과 판매전략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것은 외부의 형상에서도 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의도는 특정 상호에 국한된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현대 도시에서의 삶에 있어서 대표적인 상징성을 지니는 자동차 자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투영과 반사라고 하는 이 중적 특성을 지닌 유리의 재료적 장점에 부합되어 전시된 자동차를 투영시켜주는 기능적인 측면과 차갑고 매끄러운 시각적인 감촉 표현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여진다.

이것은 또한 건물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려주기도 하고, 기준층의 내부에서 가로의 경관을 받아들이는 넓은 창이 되기도 하면서, 도산 사거리의 모퉁이에서 커다란 유리면으로 이루어진 유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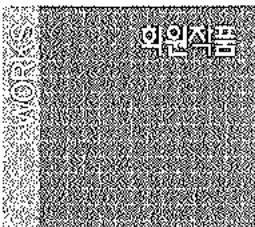
나에게 있어서 성과의 이미지는 베니하나 빌딩(1987)과 삼삼투자금융 시옥(1992)에 이어 즐겨 사용하는, 주관적으로 은유된 형상이기도 한데, 이것은 공격과 방어라는 대립적관계의 표현이기 보다는 오히려 옛것에 대한 그리움과 그에 얹힌 이야기와 주변의 불확실한 것들로 부터의 보호라는 긍정적인 의미들로 함축되는 것인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의미들의 주변의 무수한 건물을 사이에서 가로를 지나는 이들에게 혹은 그 건물에 머무는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배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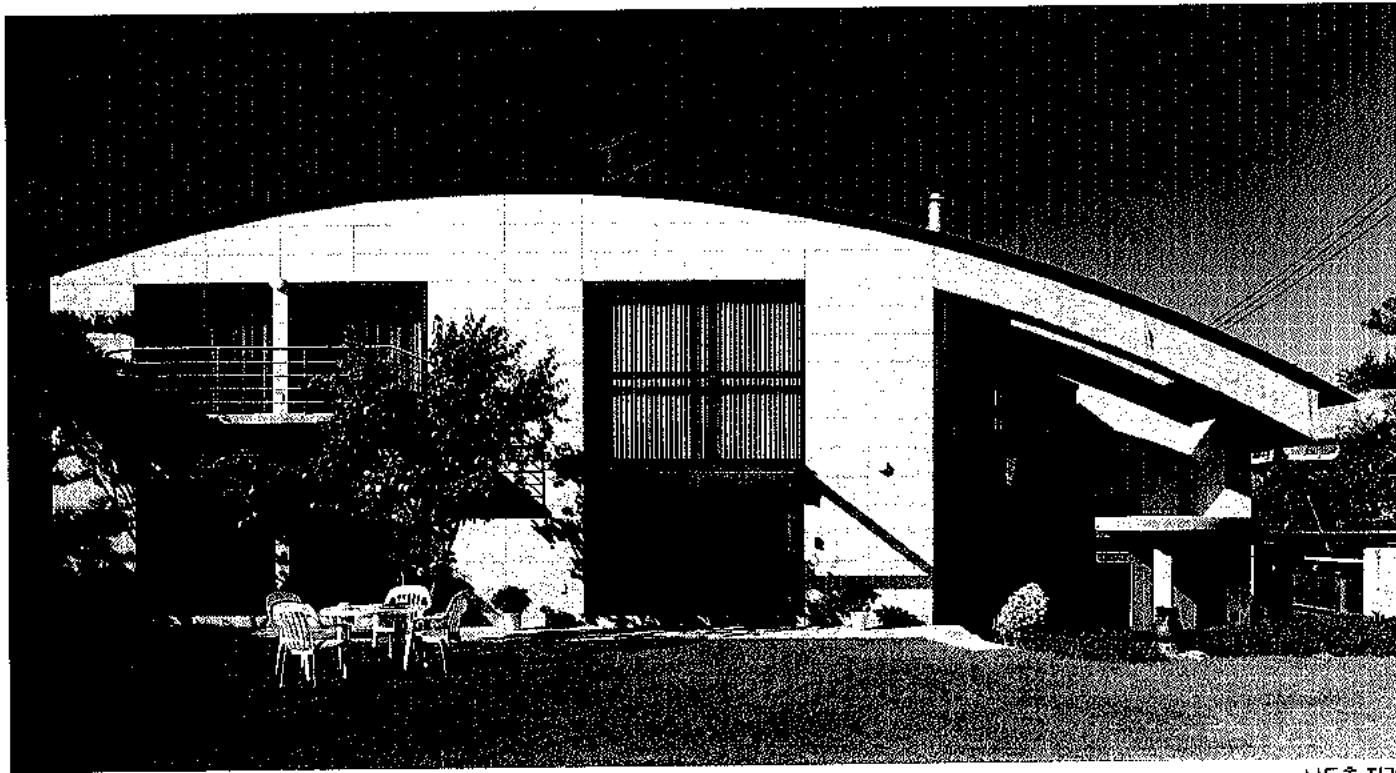
전시장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봄



L 주택

L. Residence

俞元在 / 다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oo, Won-Jai



남동측 전경

위치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4

지역, 지구 / 일반주거, 주차장장비

주요옹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643.7m²

건축면적 / 176.75m²

건폐율 / 24.46%

연면적 / 323.57m²

용적률 / 35.3%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방식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외장재 / THK 24mm 회강석 벽면구이

건축설계 / 이인수, 김영기

Location / 385-44, Hapcheong-dong, Mapo-gu, Seoul

District / House, parking Space

Use / Dwelling House

Site Area / 643.7m²

Bldg. Area / 176.75m²

Bldg. Coverage Ratio / 2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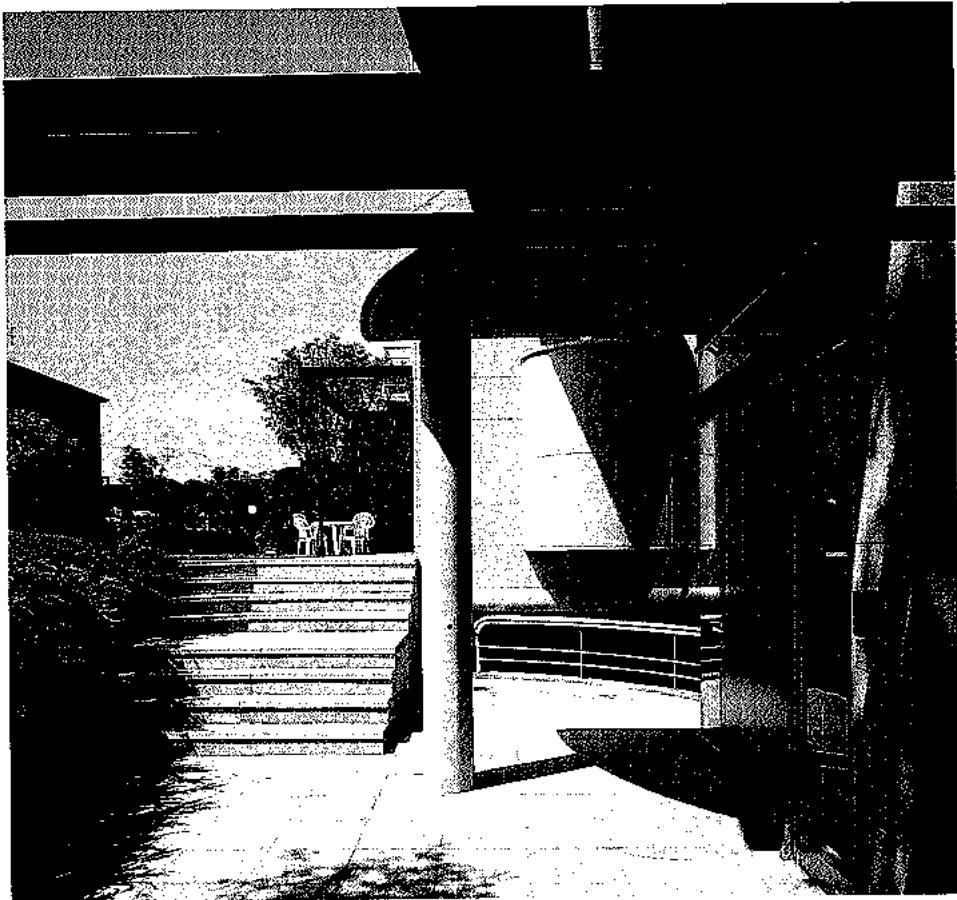
Gross Floor Area / 323.57m²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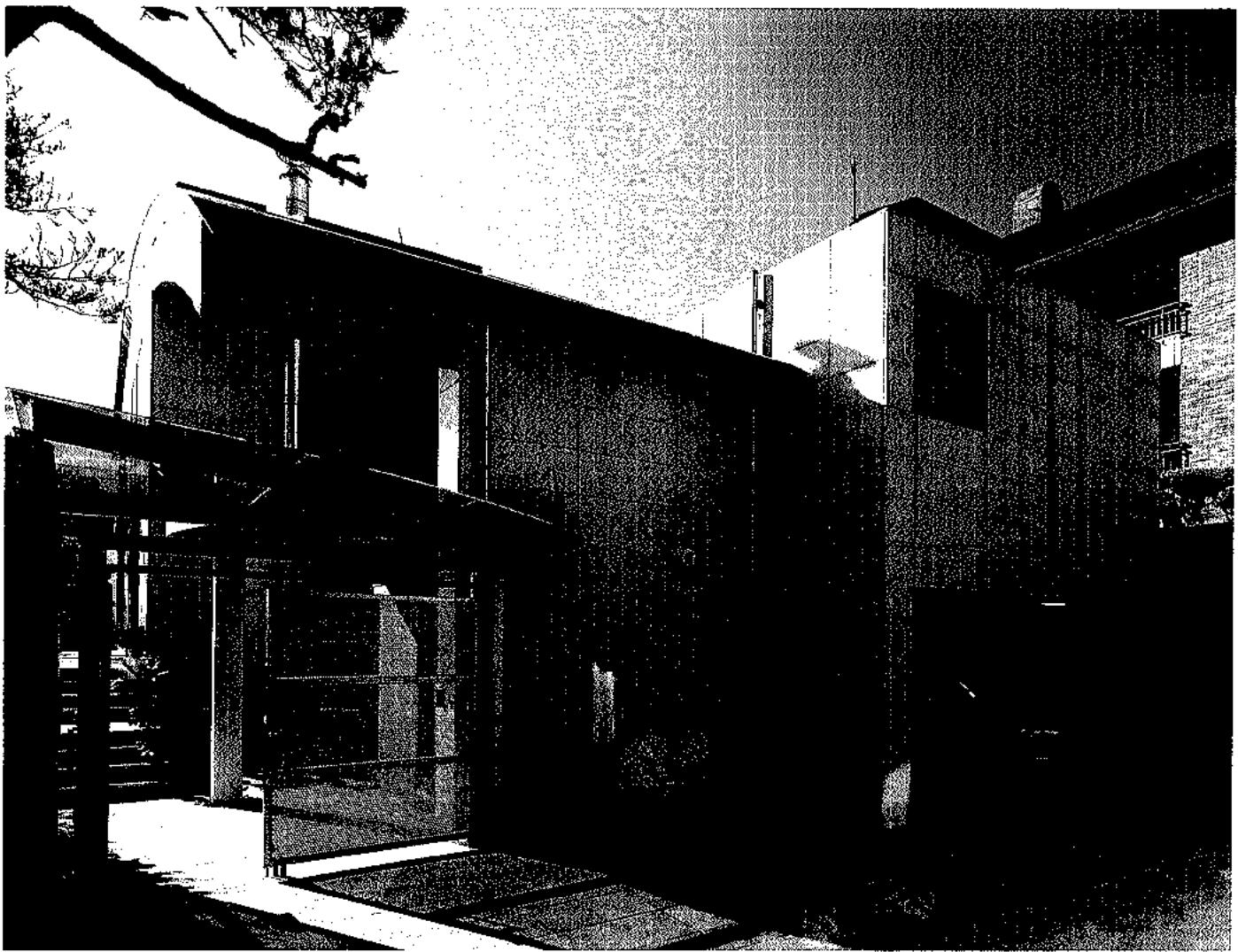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d Rigid Frame

Exterior Finish / THK 24mm Gra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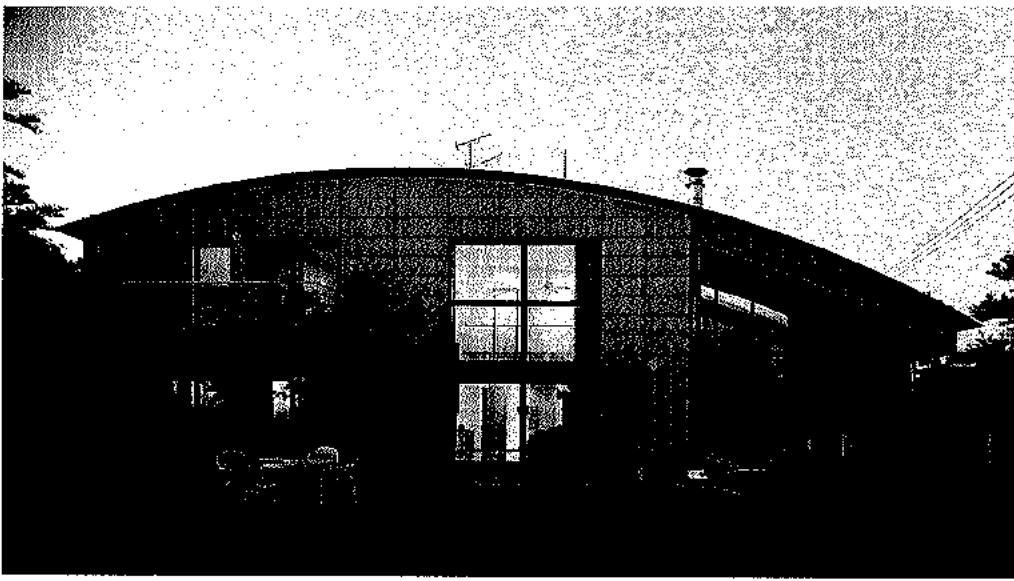
Project Team / Eo, In-Soo & Kim, Young-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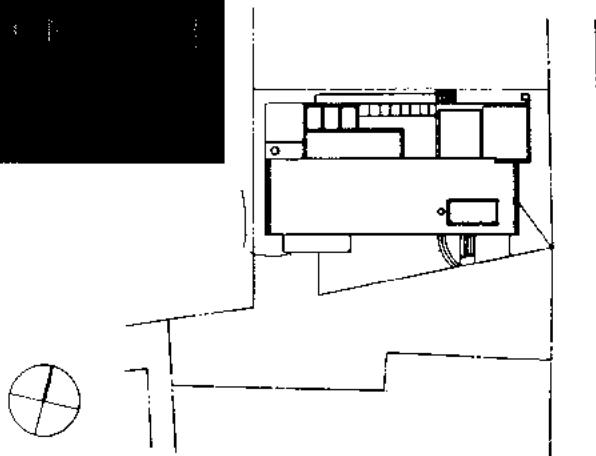
주출입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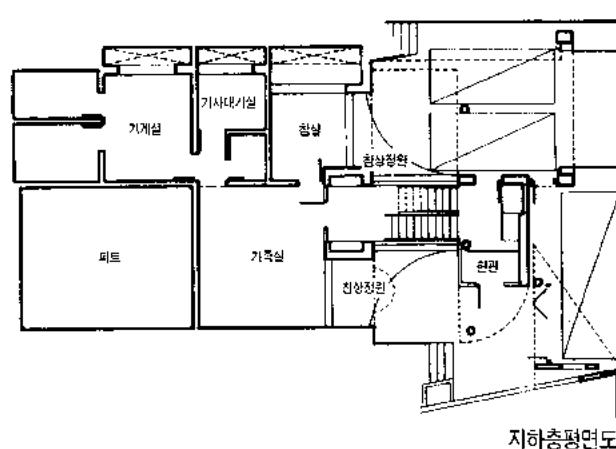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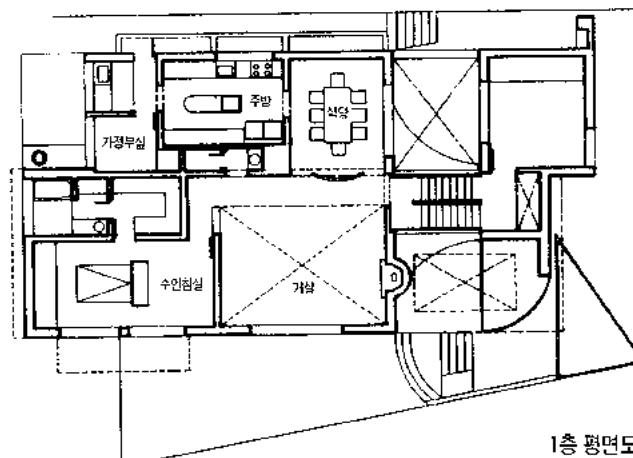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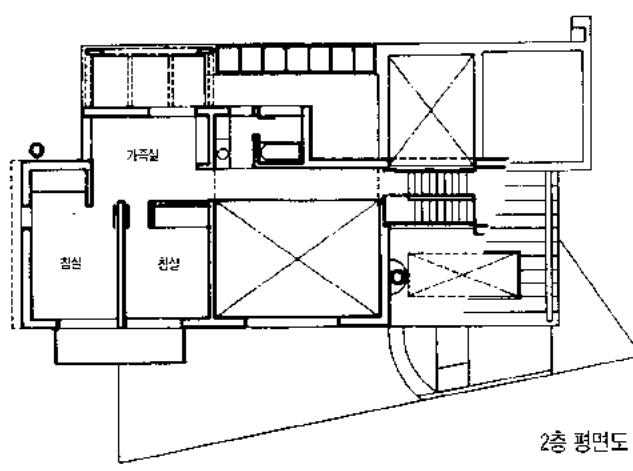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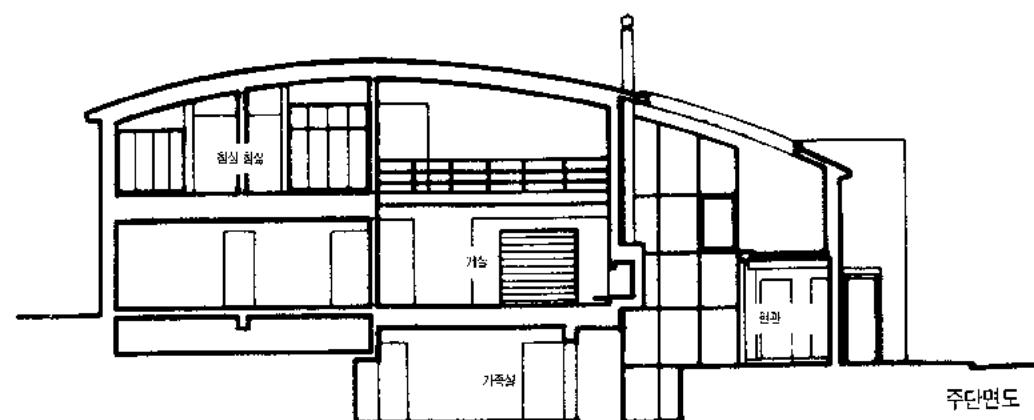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남동측 야경



배치도



20여년 살던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건축주는 설계자보다 더 많은 생각과 지혜를 갖고 있었다. 건축기는 그런 단편적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우선 순위와 취사선택을 정해 구성하여 새로운 삶의 틀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주택들로 둘러싸여 있는 동쪽 대문에 도로보다 1.5m 높은 정원을 갖고 있는 땅이다. 4m 높은 물련 힘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과 대문을 뒤로 물렸다. 반 층 정도 높은 앞마당에 의해 반층씩 서로 엇갈리는 단면을 갖게 됐고, 두 단면 차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려고 둑근 지붕으로 연결시켰다.

현관과 연결된 계단실은 유리 상자로 되어있어 오르내리며 정원을 실내로 끌어당기도록 했다.

평면의 구성은 이용자의 생각과 요구를 자연스럽게 풀어 설계자는 전문적 검토와 대안의 제시를 제외하면 손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설계 도중 도면을 읽지 않고 볼 뿐이다. 즉, 설계 설명에 대한 질문은 잘 안하고, 현장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자기의 생각과 거리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거나 질문들을 한다. 이런 경우 너무 늦어 도와줄 수가 없거나 아주 나쁘게 바뀌어야만 한다.

어느 미국 여행자가 식당에서 설렁탕을 이해 못해 주방까지 가서 확인했다는 경우와는 문화의 차이를 느낀다. 나의 생각은 주택만큼은 건축가의 욕심보다 집주인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이기에 인터까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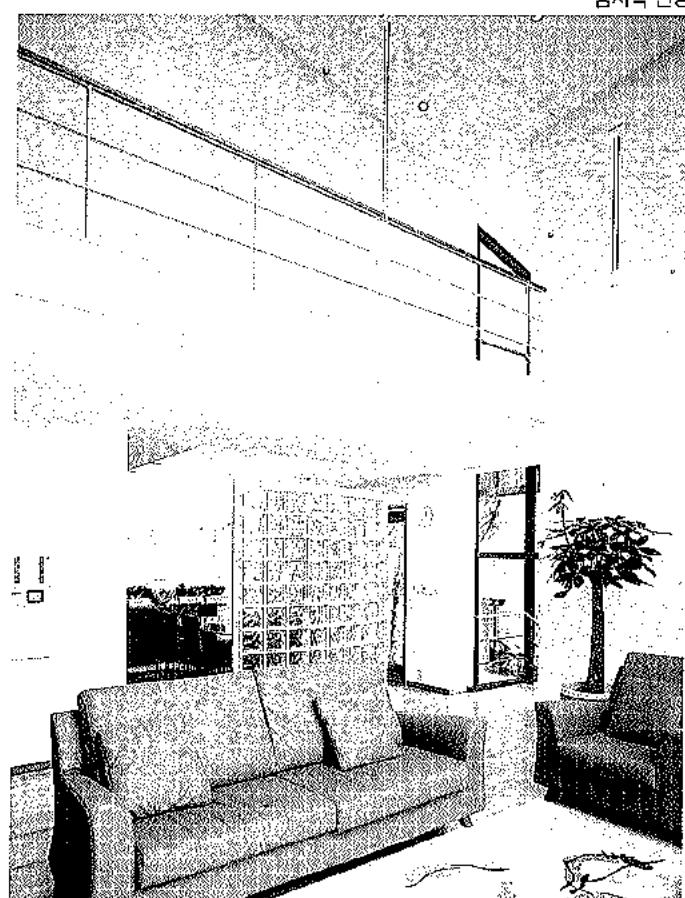
실내는 밝게 했고 주로 하얀 페인트를 칠했다. 벽 자체는 숨어버리고 집 주인의 손길이 잘 보이도록 했다. 즉 화초나 그림들, 소품 등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쉽게 하고 싶었다. 나 자신은 이것이 강한 틀이 안되려고 했으나, 이용자에 따라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집을 마치 텅빈 추상적 무대로 만들어 놓아서 그인에 정성을 들인 연출이 펼쳐져 채워졌으면 한다.



남서측 전경



거실 내부 1



거실 내부 2

기획작품

관수빌딩

Kwansu Building

田炳植 / (주)코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eon, Byeong-Jig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관찰동 28-9번지의 1필지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구

대지면적 / 1,159.11㎡

건축면적 / 665.72㎡

연면적 / 11,988.99㎡

건폐율 / 5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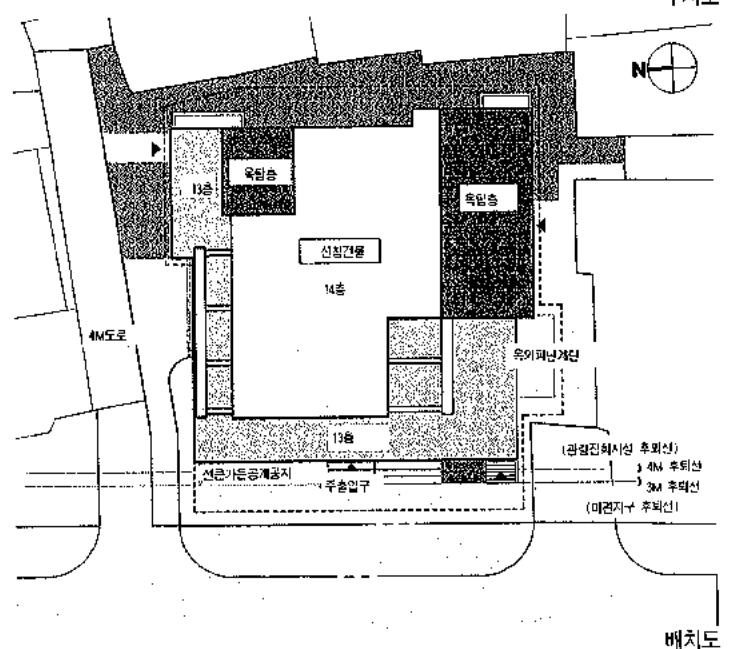
용적률 / 074.64%

규모 / 지하층, 지상4층

용도 / 국장(5개관)+OFFICE+근생시설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

외부마감 / 허강석, 컬러 알루미늄 카튼월, 노출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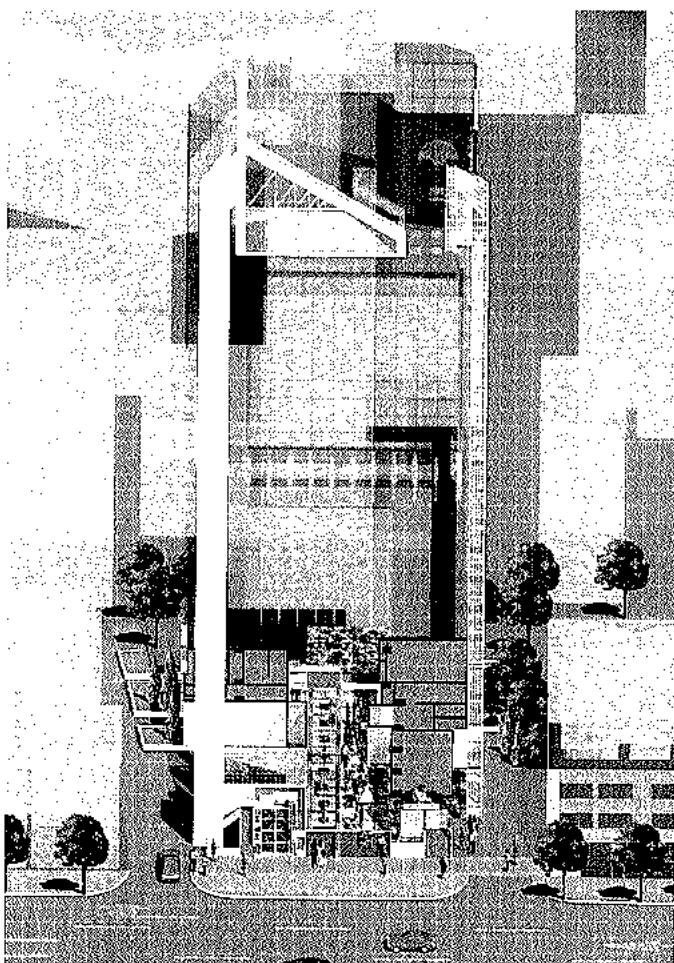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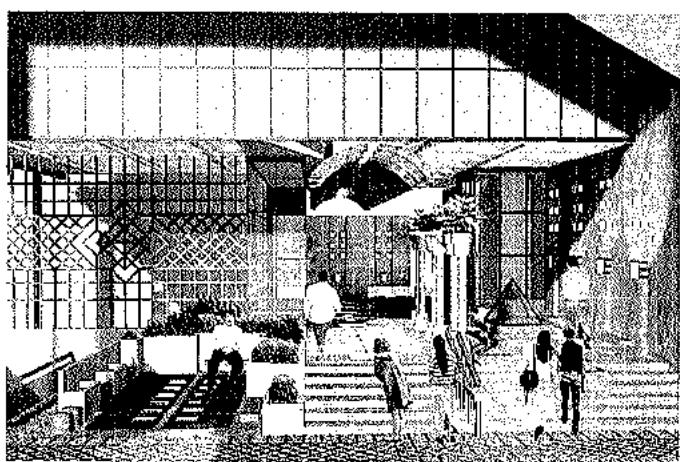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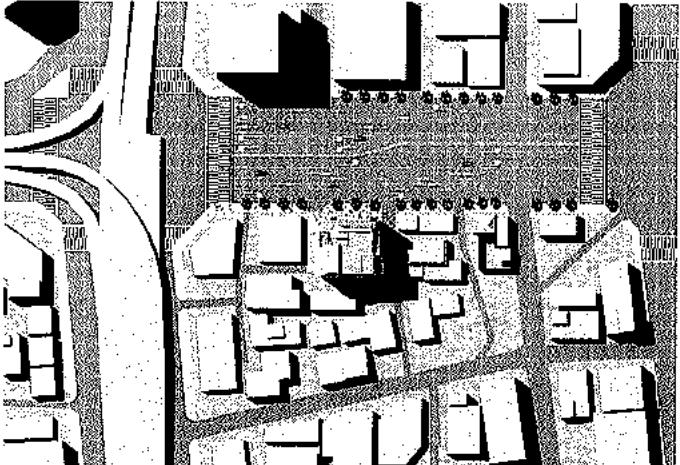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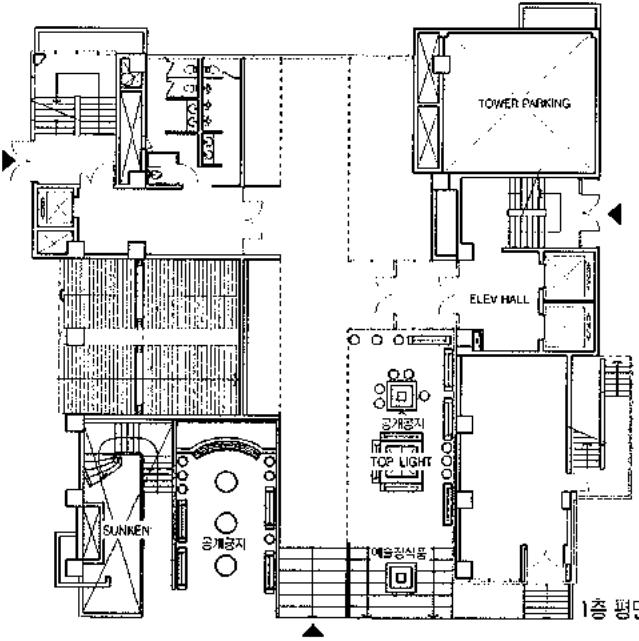
Image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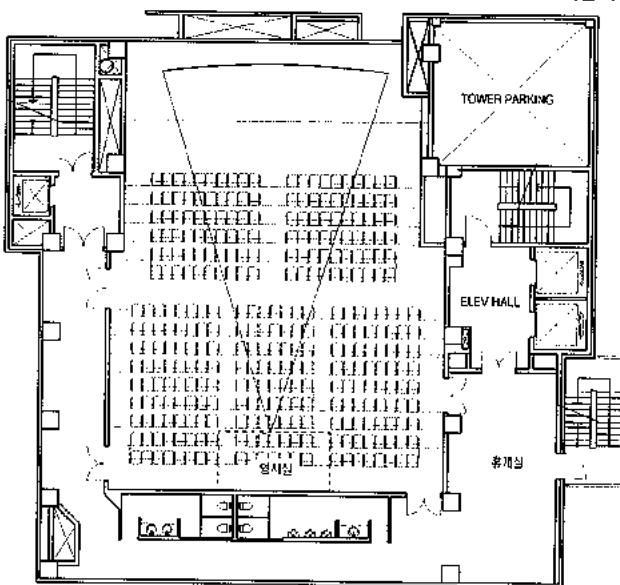
1층 로비계획



CAD 시뮬레이션



1층 평면도



4~7층 평면도

*본 계획은 영화관 중심의 복합빌딩으로서 협소한 대지에 최대규모로 개발하여 각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연계가 가능도록 하면서 기능적 안전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갖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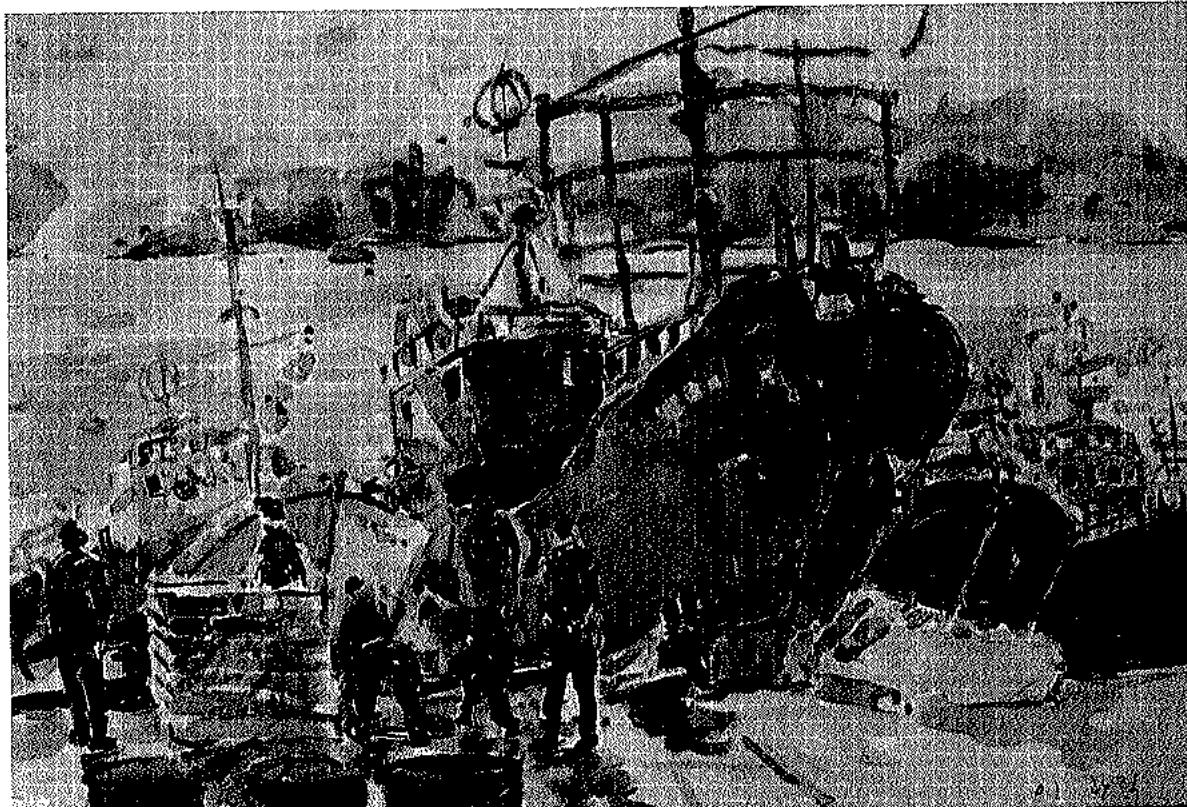
*배치 및 공개공지—좁은 대지에 많은 관람객과 주차량의 해결에서부터 배치계획에 접근하였다. 법정 주차 대수 충족의 어려움을 지상에는 타워 파킹 시스템과 지하에는 기계식 주차방식을 이용하고 사람과 차량의 안전과 평면의 기능적 효율성을 위해 1층 바닥높이의 변화로 해결하여 극장 배치를 고려하여 전체 평면을 구성코자 하였다.

공개 공지는 시민과 이동객의 편의를 위해 전면개방시킨 1층을 공공의 장소와 공개공지로 활용하여 법정 공개공지 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인접부지의 파출소를 본 건물 1, 2층에 유치하여 파출소 부지는 다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중간층에 공중정원 성격의 갤러리층을 형성하였다.

*평면구성 및 형태계획—평면의 형태는 극장(총 1, 700여석)을 중심으로 코어를 구성하고 극장 입출구를 분리하여 동선의 처리와 기능적 원만함을 도모하였으며 비상시 3개의 계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승강기는 극장, 사무실용으로 각각

분리 사용토록 하였다.

형태계획의 개념적 모티브는 이집트 오벨리스크에서 유추하여 전체 건물의 수직축을 이루기하고 동서남북의 패를 이용 방향성을 주었다. 기존 31빌딩과의 이질적 혼텍스트의 방지를 위해 현대적 감각으로 형태맥락적 관계를 유지시키며 하이테크적인 감을 표현하였다. 마감에서 정면과 측면은 그린 미들과 커튼월, 배면과 다른 측면은 노출콘크리트와 커튼월을 사용하고 형태상 오피스층과 극장층은 블룸의 변화를 주어 기능적 실의 분리가 형태에서도 나타나도록 의도하였다.



바다풍경(27.5X39.5 종이에 수채), 1994, 이관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겨울의 바다엔 생기가 있다
바람도 차고 노동도 벅차다 물통의 물도 화판의 물감도 얼어 붙는다
그러나 그 바람에 그 노동에 그 추위 때문에 오히려 나는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언제나 보아도 삶과 노동의 근원 주문진황
노동과 생산이 있는 곳에서 나의 계으름을 뒤돌아 본다
새해에는 보다 열심히 살아야지…

건축사협회에 바란다

Hopes for KIRA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체제와 대응논리로는 더 이상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변화에 낙오되지 않으려는 사회 각 부문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우리 건축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번 막을 내린 전국 시·도건축사회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새집행부가 하나같이 “변화와 개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사실은 이를 잘 반증해 준다.

이에 본지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건축사협회의 나이갈 길”이라는 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인의 의식개혁, 협회의 체질개선을 포함한 협회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등을 전반적으로 모색해 협회발전의 기틀을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새로운 위상정립과 조직활성화를 金正澈
- 바람 '95 吳元根
-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崔寬泳
- 변화가 사랑받는 협회를 만든다 崔東奎
- 미운 오리새끼 키우기 金瑛燮
- 처사 건축사는 다다익선이다 曹泰鍾
- 새해에는 일을 하지 말자 承孝相
- 세계화, 국제화로 趙仁淑

새로운 위상정립과 조직활성화를…

Make a Change for the better

金正澈/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eong-Cheol

한해가 가면 의례히 돌아오는 새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기대에 부풀어 보게 된다. 그래서 인간사회는 살게 마련인가 보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한심하고 끔찍해서 생각하기 조차도 싫어지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우리는 더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더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방식은 “대강 대강 주의”였다. 기본과 원칙이 없고 무엇이든 기준이 무시되므로 합격, 불합격의 검사제도가 없는 사회가 된 것 같다. 모두가 나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합부로 해치운다. 그리고는 모르는 척한다. 한강 다리도 대강 세워 놓으면 되었기에 불안전에 대한 보고도,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관리도 제대로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성수대교의 참사도 생겼고, 거의 모든 다리의 안전도가 뭇미더위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만 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이래가지고 선진국 문턱을 넘겨다 볼 수 있을까? 선진국 문턱이 아니라 중진 상위권도 좋으니 되돌아가고 싶은 심정임은 어린 마음일까? 우리는 3공 이후 너무나 물질중심의 고도 성장에 몰두하여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우리에게 중요한 정신문화의 발달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격차와 괴리만 더 심화되어 심각한 가치관의 혼돈이 초래되었다고 본다. 선진국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래가지고 악 국제 경쟁에서 게임이 될 수 없지 않는가.

21세기를 향한 국제화 사회에서는 강자논리의 무한 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96년 이후에야 개방하려던 기술분야의 지적분야에 있어서도 조기 외국기술의 도입이 검토되는 등 범석이다. 이런때 '95의 새해를 맞는 건축계는 어떻게 해야 하며 건축사협회에서도 설계의 실무와 설계감리 분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가.

첫째는 건축사의 직능적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축설계에 있어서는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셋째도 신뢰라고 생각한다. 건축주로부터의 신뢰, 더 나아가서 사회로부터의 신뢰가 없이는 건축사들은 존대받을 수 없고 직능을 통한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

므로 설계를 의뢰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사들은 겸손한 가운데 품위를 지켜야 하고 각자가 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하며 뛰어난 기술력으로서 건축주와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전문성과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나친 상업주의적 적당주의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기존의 독점적 보호주의에서 탈피하여 인류에 봉사하는 직능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인식하여 장인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건축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건축사협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한해는 건축사협회의 운영에 많은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다. 건축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건축사협회의 잡안 분장을 개탄할 수 밖에 없었다. 올 한해는 이러한 아픔을 능동적으로 극복하여 더이상 내분없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건축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건축사협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본적 취지도 기득권이나 이권만을 위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사회가 요청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각 회원사들이 협회의 방향과 의지를 밀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지만 무조건 다수의 논리에 따른다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협회는 각 회원사들이 직면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판단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 회원사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 협회의 역할이 회원사의 권리보호에만 머물게 되면 점점 사회로부터의 신뢰는 멀어져갈 것이다.

건축사협회에 주어진 앞으로의 사명에는 대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국제문제, 국내문제를 비롯 건축문화의 계몽과 발전을 위해 협회의 위상을 다시한번 재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3단체로 분화되어 있는 건축계의 현실을 건축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연합적 활동을 모색하여 대사회적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협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건축사에 대한 직능적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협회차원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사들의 자체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홍보 프로그램, 예를들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시민건축대학 등을 개발하여, 협회가 건축설계 문화에 대한 총체적 대민접촉 창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각종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화하여 회원사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자세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더욱 확장시켜 종합적으로 건축정보센터로 육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대관업무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관련 대내외 정보를 구축하여 회원사 등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한다면 정말로 획기적인 업무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제안들은 지난해 건축사지의 지면을 통해서도 수 차례 논의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다면 2~3년만에 활용 가능한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협회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래 협회라는 조직체는 독자적 운영을 모색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일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면 협회 운영은 늘 수동적이 되어 항상 문제를 뒤쫓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회원사 모두는 협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기 이전에 협회의 전체적 방향을 더 중요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협회에 상근하는 임직원들의 자율적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새로 구성된 임원단과 직원들은 건축사협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하는 협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로 건축사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기업으로 본다면 흥망성쇠가 판가름나는 시간이다. 청년의 혈기에서 노련미를 보일 때이다. 더 이상 지난날의 협회상에 연연해서는 안될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환경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만 하던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뛰어들어 하나씩 해결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리다” 그리고 “사천몇백명 우리를 대표하는 회장과 회장의 명을 집행하는 사무처라는 기구로 구성된 조직이다”라고 정의하고 이야기를 풀기로 한다.

우선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린 가끔 준공식장에서 현장소장 다음에 설계사무소장 감사패주겠다는 건축주를 만나면 난감해 하지만 그래도 설계를 단종 하청업체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건설회사 임원보다는 유식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쓴웃음을 짓곤 한다. 어찌나 우리가 이지경이 됐을까. 이제는 더 갈곳도 없지 않은가. 나락의 끝인데...

가끔 소장을 모이면 요즘 애들 일 안한다고 홍분한다. 소장들은 밤낮없이 일하는데...

내가 설계에 직접 손댄것이 언제였든가 생각해 본다. 무엇으로 UR을 대비할 것인가. 현재의 설계비 수준이면 미국에서도 설계하겠다는데 어쩔 것인가.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당당한 전문인이다. 허가나 내주는 “설계업자”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의 내자리를 찾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건축가로서 존경은 못 받더라도 전문가로서 신뢰는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감리문제만 해도 그렇다. 감리업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불법건축물 발생억제차원에서 관청업무를 대신한 것에 불과하며, 지하실, 건폐율, 최고높이 등의 적법성 여부에 있어 배근검사 정도에 그치는 업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심사숙고하여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공사감리라는 새로운 업종을 인정하자. 물론 당분간 경제적 손실은 예상되지만 남의 전문성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영역을 확실히 보장받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둘째, 회장과 조직에 대한 바람이다. 온 세상이 개혁해야 산다고 아우성인데 협회는 어떤가. 물론 협회는 건축사의 권익을 위한 집단이고 따라서 수구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버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퇴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협회도 성인병 걸릴 나이가 됐으니 건강진단 한번 받아 보자. 배설 기능이 나빠져서 노폐물이 쌓이지는 않았는지 암세포 때문에 뇌나 심장에 장애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정부도 기구를 축소하고 임무를 민간과 지방에 이관하는데 우리 협회는 어떤가. 무슨 시험소 만든다고 조직 하나 없애더니 이름 바꾸어 존속시키고, 신문 만드는데 돈 모자란다고 그 귀한 돈 몇 억인가 쓰겠다고 하고, 집행부는 놔둔 채 비상대책위원회인자를 만들어 많은 예산을 써 버리고...

물론 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행한 것이니 집행하는 사람이나 무슨 죄가 있겠는가만 좀 심하지 않은지.

심기일전 새로운 협회를 만들기 위하여, 조직은 잘짜여 있고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인력은 적재 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으며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자체 시험소는 꼭 필요하며, 자체 신문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종 기금은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바람 '95

Hopes for '95

吳元根/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by Oh, Won-Keun

“협회에 바란다”라는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은지가 3주가 지났는데 아직 가닥도 잡히지 않는다.

왜 일까. 만인이 감탄할 명문을 쓸 수 있는 글쟁이가 아닌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치졸한 문장이 겁나서도 아닐텐데... 아 그거였구나. “협회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으니 UFO라고 우주여행하는 계획을 세우라는 주문 받은거와 같은 수밖에.

과연 협회란 무엇인가. 고심끝에 협회는 “나”고 “우

운용되고 있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직이 크고 쓰는 돈이 많아야 협회가 공신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다섯 명도 안된다는 일본 건축사협회에는 건설대신이 취임하면 인사를 온다지 않는가.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을 내분의 적이라고 지적한 어느 사가의 말을 생각하며 신임 회장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다려 본다.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Starting Point for the New Face Who
Fills his Niche

崔寬泳/일간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Kwan-Young

1995년은 처한 바 어울리는 협회의 새로운 모양을 갖추기 위한 시작의 해로.

(Starting Point for the new face who fills his niche)

1995년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획하고 시행하는 시작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몇 년전부터 변화와 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가 정치쪽에서 사용되어 오면서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얘기하고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지난번 세집행부를 탄생시킨 전국 시·도 건축사회의총회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후보자가 없었다고 한다.

주변이 모두 그렇게 '외쳐대니 그냥 따라서 같이 떠들기가 쉬운 것인가? 아니라면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성찰에 근거하여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하는지의 정확한 분석과 확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스스로를 지성인들의 단체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그 지성적인 판단에 의해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맞게 옳고 발전적인 변화를 소리없이 꾸준히 추구해 왔다면 오늘 이렇게 거창한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를 내걸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적당히 말로만 하다 보면 내년이면 또 같은 탈을 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즐음하여 협회는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 봄이 바람직스럽게 여겨진다.

우리 모두는 바람직한 건축환경의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삼중한 뜻을 해야 한다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뜻외에 회원 개개의 차원에

서는 할 수 없는지 하기엔 힘겨운 일들을 하기 위하여 협회라는 단체를 통하여 즉, 모아진 힘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존재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대 사회적으로 전문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힘은 물론이며 정당하고 성실한 건축행위를 하는 모든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과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협회가 처한 바 어울리는 모양의 것이며 모든 회원에게는 그 소속됨이 자랑스럽고 유익스러움으로 느껴질 것이다. U.R이나 개방이니 무한경쟁이니 하는 것에 의하여 변화와 개혁을 말 할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당연하고 꾸준한 발전 추구때문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연한 사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어렵고 귀찮은 역할일지라도 해야 할 일은 능동적으로 책임있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비록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되는 역할은 오히려 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회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에 옳은 컨센서스(Consensus)를 가지고 있는지?

꼭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반대로 대외 명분없는 잡다한 일들로 오히려 조직과 인력이 낭비되어 회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기직인 발언보다는 올바른 회원들의 발언이 수용 선별될 수 있는 의견 수합체제에는 문제가 없는지? 좋은 건축을 위해서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건축 행성체계나 법령 등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에 의한 순발역 있는 대응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쏟아지는 정보들을 정리하여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회원에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는 없는지?

양질의 설계인력이 오랫동안 부족한 상황을 적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세울수는 없는지?

대 사회적으로 건축행위와 연관하여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능동적인 노력과 행위를 등한하지는 않는지?

이외에도 협회의 존재의미와 시대상황에 비추어 자문(自問)할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으로도 지나친 기대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한 자문에 대한 올바로고 정확한 답을 진지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위한 과감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실천력과 추진력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도부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 변화와 개혁이 금방 될 수 없는 것이니 1995년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가는 탄탄한 전도의 시작점이 되어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냄과 동시에 그 소속됨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를 바란다.

변화가 사랑받는 협회를 만든다

Makes a Fresh Start

崔東奎 / 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 Kyu

건축사협회로 부터 글을 부탁받고 나는 건축사 협회에 대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본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전회원의 바람을 상상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내 생각인 만큼 나의 생각만 이야기하기로 한다.

건축사지에 최근에 게재되는 회원들의 글들을 보면 요즈음 들어 특히 한탄조의 이야기들이 많다. 어찌다 건축사의 위상이 이렇게 됐냐는 등, 그리고 너무 단합이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다. 지금이 일제 식민지시대라면 곳곳에서 우국지사의 충정과 탄식이 배어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겠지만, 모두가 이런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연히 사기만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바라기는 건축사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취급해서 잘하는 사람은 대단한 건축사로 대접하여 일반에게 최대한 알려서 건축사의 위상을 높여주고, 반면에 자기의 최소한 소임마저도 다하지 못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협회에서 그부분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제 오늘사이 대한변협에서는 최초로 악덕변호사를 제명하였다고 한다. 강력한 징계권이 있는셈이다. 현재 협회에서는 징계권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셈이다. 의사들도 존경받는 의사가 있어 깍듯이 선생님 대접을 받는가 하면, 악덕의사나 돌팔이 의사도 있기 마련이다. 단지 그 비율이 문제가 되는 셈이다.

그러니 굳이 건축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부 회원들로 인해 같이 상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회워을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사회에 대해 존경받는 건축사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쉽다고 생각된다.

한가지 예를 들면 동아일보사 주최로 사진, 미술, 음악 등 예술부분의 상이 있는데 이부분에 건축이 빠져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건축부문의 상이 신설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바로 할일인 것이다. 요는 잘못된 것은 매스컴이 귀신같이 알아내어 어떻게든 대중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반해서 잘된 것에 대한 홍보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상이 격하된다고 생각된다. 즉, 대국민 홍보의 방법을 다양화시키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이 수시로 바뀔뿐 아니라, 또 바뀌어진 법도 오래지 않아 뜯어고치는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사실은 법규가 건축사의 창작행위와 불가분의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미리 외국의 잘된 건축법규를 검토 조사하여 우리나라 설정에 맞는 법규를 연구하고 먼저 행정 당국에 제시하여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즉 법규개정에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 아는 일일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법규 개정이 잦은 나라도 없을 것 같다.

나는 변호사법이나 의료법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지는 파문한 탓인지 잘 들어보지 못했다. 결국은 건축분야에서의 잦은 법개정도 건축부문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시행하는 한국건축전은 사협회가 서울경제, 건설부 등과 합동으로 주최하는 큰 행사이다. 이 한국건축전의 심사에 저명한 외국건축가를 참여시켜 우리의 건축수준을 알리고 그들이 보는 건축미학의 잣대로 우리도 한번 평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건축사들 마저도 사대주의 사상이라고 불아부치곤 한다. 요는 한국에는 한국 고유의 건축을 보는 잣대가 따로 있다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 이것 또한 편협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당분간 외국저명 건축사와 같이 심사를 하는것이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수준을 그들에게 알리고 우리것도 이들을 통하여 좋은것은 세계에 알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점이다. 요는 세계 유수의 건축사들이 우리보다 실력과 창조성이 뛰어남을 인정하되 이것이 무서워 대문을 걸어 잠그고 중요 대소사를 집안잔치로 만들리는 것이 바로 문화적 쇄국 내지는 열등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1동안 보고 평가해왔던 시각과 그들이 보는 시각과의 차이에서 우리는 대승적으로 좋은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냉철히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건축이 지금처럼 세계건축과의 교류에서 담을 쌓고 지내는 듯한 상황도 해소되고 또, 이렇게 합동으로 심사를 거친 건물들에 많은 건축사들이 공감하게 되면 좋은 봉토 조성이 될것이라 생각된다. 이를테면 건축사들 사이에 퍼져있는 냉소주의는 여러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의 공정성과 또한 심사위원의 안목에 승복하지 않는다는게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구성에서의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상당히 신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건축사의 강연회를 직접 듣는 기회도 자주 마련하여 기성건축사들도 자극받는 것 또한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예를하나 들어본다. 인도에서 국부인 간디 기념관 경기 실계를 국세 경기로 치렀다. 심사위원장은 영국 건축가인 제임스 스터링. 뽑힌 작품은 미국건축사의 안이 뽑혔다. 상상을 해보라, 인도와 영국은 우리 대한제국 시절

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문화적인 행사를 이렇게 치루어내는 인도는 쓸개도 없는 형편없는 나라인가? 문화에 있어서는 한차원 앞서가는 나라인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 멀거한 방법들이 채택되어 바뀌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변화되고자 이러한 주제를 내놓았다면, 형식적으로 건축사지의 페이지나 메모기 위해 이런 주제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면 변화되어야 사랑받는 협회가 되는 것 만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이외에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을 줄이나 나에게는 이러한 몇 가지가 가장 절실하게 느껴져서 이야기해 보았다.

미운 오리새끼 키우기

Bringing Up the Ugly Duckling

金漢燮/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by Kim, Young-Seop

최근 한 3년전 쯤부터 나는 건축사협회의 가장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다. 나는 6공화국 밀기에 「설계·감리 분리확대 저지운동」을 계기로 새건협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택 설계나 성당설계를 일년에 너댓 작품 정도하고 그것을 짓는 과정을 즐겁게 지켜 보는 익명의 중견 건축가였으며 모짜르트와 바하 그리고 서양의 중세음악을 즐겨 듣는 소박한 아마츄어 음악애호가이자, 일주일에 한번씩 혼자 공부해온 다듬어지지 않은 미술시를 국민대 조형대학에 강의하러 다니는 시간강사의 일상들을 사랑하였던—학교 가는 출거움, 삼청공원의 뒷길과 성북동에서 정통골을 넘나드는 길을 사계절 내내 사랑하던—그야말로 작은 꿈을 가지고 스스로의 분수에 만족해 하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그러나 「설계·감리 분리확대 시행」을 계기로 세상 놀아기는 치열함이나 집단이익이라는 단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나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건축사 협회”라는 단체가 뚜렷이 실체를 드러내었고 그 내면을 들여다 본 순간 나는 갑자기 싸움때로 변신한 것이다. 하지만 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일관된 생각은 그 싸움의 대상은 차서 무찔러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왔던 관행과 제도를 바라는 것과의 싸움이었기에 무척이나 망설여졌던 일이었고 그 과정 또한 힘겨운 일이었다. 더구나 나는 이 싸움의 대상 속에 이미 한 일원으로 자리잡은 터이었으므로 더욱 그려하였다.

처음의 싸움은 이미 모든 회원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뜻을 같이하는 몇몇의 회원과 만나 토론하고 뜻을 결집하여 “설계·감리 분리확대”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일이다. 혹자는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문민 정부가 들어서며 벌인 개혁의 시류에 편승하여 건축백서 등 건축관련 행정제도개선안을 정부의 행정체신위원회에 내고 새건축운동을 벌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으나 처음의 시작은 바로 그와 같은 소박한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년에 한 두채, 보통 5~6개월 걸려 설계하는 주택을, 즉 자기가 이렇게 낳은 한 두 자식을 자기가 정성들여 키워보겠다는 소수의 애정이 깃든 건축가의 의지가 일년에 수십건, 수백건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설계를 양산해 내는 일부 건축사사무소의 “양”의 논리와 건축사 협회 각 분회 내지 분소의 유지비용, 그리고 분리 감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었던 집단의 경제논리에 회생당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던 건축사협회의 회원들이 설계·감리 분리반대운동에 서명한 것이다. 1992년 서울건축사회 정기총회 날 하룻 동안에 서명에 참가한 회원이 600여명에 이르러 그 사이 말없이 침묵하던, 아니면 침묵해야 했던 다수 회원들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제1회 건축문화 대상을 수상한 연남동 주택과 연이어 수상한 제2회 때의 서대신동 주택 모두를 내가 직접 감리하기 위하여 “주택 및 전시시설”로 바꾸어 허가를 낼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돌아보며 내친 김에 그 동안 왜곡되어 왔던 각종 제도와 법, 그리고 관행들에 대하여 들여다 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협회에 개선안을 제출하였고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절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것은 스스로 감리를 원하는 건축사에 한하여 선별 구제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협회의 내용과 위상도 바뀔 수 있으리라는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회장단이 문을 안 협회는 곧바로 건축법과 건축사법 개정 과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고 곧이어 스스로 뽑은 회장마저 끌어내리기에 이르렀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나를 포함한 소위 새건협의 7인의 의견은 체재 내에서의 개혁이었다. 그러나 설계·감리확대 고수에 급급한 일부 회원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자신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건축사회를 대표하는 회장마저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바꾸어버리는 막강한 권위를 과시하였고 이어서 서울시 설계·감리에 관한 지침 공문 번조와 관련해 서울시 전회원에게 긴급 전송되어진 FAX발송사건에 대해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소집한 원로와의 대화에서 합의된 사항을 당시의 서울시 건축사회 회장이 일방적으로 “새건협이 다시는 둘출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사과 일변도의 조작된 기사를 막발간을 시작한 건축사 신문에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벽”이라는 단어를 실감한 새건협 회원들은 1993년 5월 14일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뜻있는 건축계의 중진들과 함께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였고 이 건미준은 경실련과 같이 분명한 대안제시를 통한 온건한 방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후 건축가 선언을 비롯하여 건축

백서, 건축민원해소 방안, 건축교육제도개선 그리고 최근의 공동주택 백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활동을하게 되었다.

새해를 맞으며 과거를 회고해 보는 이야기를 늘어 놓는 이유는 분명하다.

즉 이른바 “바보론”이 그것인데 요지는 이미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한 자가 가장 큰 바보라는 것이다. 최근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건축사협회는 내외부로부터의 많은 변화와 시련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올해야말로 건축사 협회가 정말 새롭게 탄생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다수의 올바른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기구와 체제를 갖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본회장을 선출하고 협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최고 기관인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을 서울시 건축사회와 경우와 같이 대의원선출방법에 있어 서울시 회장에게 20%의 선출권을 위임하고 분회에서 80%를 선출하고 소위 이른바 2·8제로 안배하는 식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새로운 탈바꿈은 이미 물건너 간 일이다. 이 개명천지에 이와같은 원시적 관행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알고 있는 회원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의원을 민주적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든지, 선출과정이 복잡하거나 아직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을 경우, 잠정적으로 차량 10부제처럼 끌자리 회원번호순으로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의무 대의원제도”라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토대없이 치르어지는 회장단 선거는 과거와 같은 지역과 연고, 학연 등의 분파작용의 악순환만을 낳을 것이다.

둘째로, 나시는 건축사협회의 회장이 T.V에 나와 컨닝시험을 변명이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축사협회는 회원의 자격시험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건축사가 협회내에 많아질수록 건축사협회의 위상과 힘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려면 건축사 시험은 암기 위주의 필답시험이 아니라 설계와 표현능력 위주의 실무시험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의사시험 중에서 전공의 시험도 수술 등 현장시험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지 않는가.

셋째로, 건축사협회는 진정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로서의 역할정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선 기술과 문화라는 21C를 주도하는 두 상징 단어의 뿐만 아니라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축교육의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바로 건축교육의 개혁이야말로 진정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또 다른 미운 오리새끼를 기르고 키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미운 오리새끼가 결국은 백조가 되리라는 희망으로…

저사건축사는 다다익선이다

Architects of Good Character

曹泰鍾/종합건축사사무소 마당

by Cho, Tae-Jong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내 판매시설을 가능케하여 가격과 과혁명을 선도한다고 연구중이라고 한다.

즉 건축법이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시계획이나 건축이 그 고유의 목적과 목표만으로는 존재의미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이라고 본다.

우리 협회의 현안들을 보자.

맨날 건축법에서는 사소한 지하층 노출등으로 벌칙규정이 강하다고 완화했으면 하고, 건축사법에서는 종합이나 단독이나 등으로 화합보다는 개인위주형태의 사무실유지를 주장하였으며 다른 부분은 월정회비미납, 도서등록제도 폐지 대처방안, 연금회비 등의 납부액과다 등을 와치고 있었다.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는 건축의 개념이 공학과 예술의 개념을 뛰어넘어 국가 경쟁력 제고의 수레바퀴속에서 힘차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생각은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일까?

한정된 공간에 쥐를 기르며 수를 짐차 늘려가면 어느 한계를 넘으면서부터 쥐들은 병리적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동물형태학자 존 켈흔은 12년간의 실험을 통해 발견한 이같은 현상을 지난 1958년 「싱크(Sink)현상」이라고 명명했다.

협회도 이미 싱크현상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 강제적 징수방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예속된 협회에 대하여 무능한 소치의 결과론, 해체론, 필요성 존재여부, 노골적인 공격성, 도덕적 불감증 등이 쥐들의 실험과 같은 징후일지도 모른다.

도서등록제도가 없어진다고 알려진 이후에 많은 관심 있는(?) 건축사들께서 협회의 존재유무를 사돈 남 말 하듯이 하고 다닌다.

예전에 무엇을 도와주었나느니, 회원들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하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구시대적 산물의 하나인 반 강제적 징수방법의 일환으로 협회가 존재된 것이었다면 그동안 일부 건축사들은

협회에 소속되어 살아오면서 오로지 반감만 키워 온 것 같다.

또 10년 가까이 소규모건축물의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른 많은 건축사들은 일을 찾아서 연구하는 습성에서 벗어나 관에서, 협회에서 반 강제적으로 돈도 벌어주고 권한도 갖게 해주던 제도에 동경의 눈초리로 타성에 젖은 양심을 찾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제 구시대적 산물은 다 사라지고 신천지가 협회앞에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기하급수적으로 건축사들은 많이 탄생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설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15%를 넘지 않고 있고, 유럽, 미국,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건축경기도 점점 퇴보될 전망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미래에는 건축사는 존재할 것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미래에 건축사가 없다면 협회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이제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존재되어지는 협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신개척지로 향해가는 원년에 서서 협회를 위한 제언을 몇가지 나열해 보면서 다함께 화합해야 하는 협회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1. 다 함께 참여시키자.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의 평균년령이 45세 정도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듣고 있다.

불혹의 나이를 넘지 않은 건축사가 과반에 조금 미달 된다는 뜻이다.

젊은 혈기는 건축을 사랑하고 건축의 언어로 우리네 세상을 되짚을 용기이기도 하다. 젊음의 소리는 아직도 십리밖에서 맵들 뿐이다.

5년 단위로 나이 그룹을 만들고 그 비율대로 협회 이사부터 분과위원까지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다함께 미래의 협회를 걱정하고 연구하자.

2. 지역건축사회를 소규모 정예화시키자.

시·도 건축사회보다 큰 구건축사회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은 위계질서나 조직의 원리를 무시하는 개념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정상적활동이 상식으로 통하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다. 1개구에 여러개의 건축사회가 존재하지 말라는 논리도 당위성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너무 많은 인원으로 조직을 존재시키면 비대해져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질 수도 있다. 선의의 경쟁이 더 나은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지역건축사회 활성을 위하여 50~10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 건축을 예술로 토론시키고 연구하자.

3.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예를들면 각 시, 도, 구의 건축조례,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심의기준, 날짜, 위원 등도 가능할 것이고 각 회원 작품의 개요,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을 필요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자. 부족하고 배우고 싶은 회원에게, 후배들에게 정보를, 지식을 선사할 수 있음도 미국의 심리학자 마슬러교수가 제창하는 덕을 지난 사람(자아실현)의 10가지 특성에 포함될수 있을 것이다.

4. 수익사업으로 회원의 부담을 줄이자.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작가의 제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사용료를 내게하면 소정의 수수료는 협회의 수익 사업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아도 가능하므로 적극적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가능할 것임).

신문, 잡지, 입찰정보통보(회원대상), 도서목록 정보제공(건설, 단종 및 자재회사대상)등이 가능할 것이며 수익사업의 대상이 도처에 있을 것 같다.

5. 미래를 연구하는 협회를 이루자.

미래의 건축사는 있는가라는 의문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연구보고서보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멀리내다보는 보고서가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엘리트 지식층 집단으로서의 역할에 비중가는 보고서를 창출하여 미래사회를 제시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자.

6. 국익에 기여한 건축사를 지원하는 협회가 되자.

외국에서 설계공모한 국제현상경기에서 입상하였다고 협회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국익에 기여한 노력이 현저한 건축사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지원금액이 올림픽 입상자처럼 상상을 초월한다면, 유능한 건축사들의 혁신과 용기는 외국에서 협회를 빛낼 것 같다. 외국의 건축주로부터 수주된 경우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세 협회도 국익에 필요한 단체가 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7. 회원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최상으로 선사하자.

지역가입회비 철폐, 도서검토제폐지, 도서등록처의 자유화, 새로운 정보의 최단시간내 전달, 필요한 회원에게만 제공비 받고 자료제공방안, 회원의 주문에 따라 유료 정보제공제도 신설, 각종계약서의 보증제도입 등을 통하여 불편했던 과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현재와 미래에 무궁한 도움이 되고, 또 꼭 회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최상으로 선사하는 협회이어야 되겠다.

조선조 중엽의 남명선생과 퇴계선생은 도학의 쌍벽을 이룬 분들이다. 퇴계선생이 밀하기를 평생에 처사(處士)가 되기를 원하여 죽을 때 영정에 벼슬이름을 적지말고 '처사(處士)'라고 써주기를 희망했다지만 그는 처사 지망생이었지 처사는 못 되었다. 진짜 처사는 남명선생뿐이라고 한다.

처사 남명선생의 자세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입장은 승화시켜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 대비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인격을 지녔던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시대의 處士建築士는 과연 누구이고 몇명이나 될까

處士建築士는 多多益善이다.

새해에는 일을 하지 말자

Don't Ardently Attached to Work

承孝相/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by Seung. Hchioh-Sang

몇주전 노출콘크리트로 된 소규모 빌딩을 구경시켜 달라는 어느 예비건축주의 청으로 함께 오사카와 교토를 다녀왔다. 교토는, 일본의 고도로 역사의 흔적이 두드러지게 남아있고 일본문화의 전통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인지, 번씩거리기만 하는 듯한 일본의 여타 도시들에 비해선 부담이 덜한 도시이다.

이 도시에 몇해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기다야마도리(北山通)라는 거리에 가면 다까마츠나 안도 등 일본의 톱레밸에 있는 건축가들의 고도로 집적된 개념을 갖는 건축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 거리는 전에 두어번 와본적이 있어 나에게는 더이상 흥미롭지 못하였으나 지난봄에 준공한 안도나나오의 「陶板名畫의 정원」이 다시 가게 만들었다.

850여평의 좁지 않은 땅에, 세계적 명화들을 도자기판으로 만들어 세우고(일본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아리저리 전시부트를 설정한 옥외 전시장격인 이 건축은 안도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일상의 폐폐에서 벗어나 정신의 생기를 회복”하고자 세웠다는 것이 다소 상투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기회만 되면 문화를 가꾸고 만들고자 하는 기획과 발상은 우리로서는 부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정작 이 건축에서 주목하게 된 바로는 그 선에 느끼고 본 바 있는 안도의 전축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안도가 흔히 쓰는 브릿지도 있고 네크라든가 경사로, 소위 회유(回遊)를 위한 장치가 곳곳에 있으며, 그의 대명사처럼 된 노출콘크리트, 단순한 디태일등 그의 전축어휘와 기교가 총출동하여 이 건축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하여도 내 가슴에 남는 감동은 전무였으며, 기억되는 이미지는 그의 상투적 어휘일 뿐이라는 데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스미요시주택에서 보는 긴장도 없고 BIGI에서 보는 도시와의 관계도 없으며 육갑(六甲)의 교회에서 만나는 드라마도 없다. 필시 남작(瀧作)의 결과일 것이다.

김수근 선생은 살아생전 25년간의 길지 않은 작업기간 동안 줄잡아 250여개의 프로젝트에 관여하신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그중 실제 지어진 것이 100여개에 이르며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40여개로 추정된 바 있었다. 결과적으로 1년에 2개는 채 못되는 건축을 남기신 것인데, 만약 1년에 2~3개 정도의 프로젝트만 집중적으로 열중하셨다면 선생의 건축이 이미 동서를 뛰어 넘는 명작의 반열에 섰을 수 있음을 공상하는 것이 다만 부질 없을 뿐일 것인가.

종종 만나는 외국 건축가들에게 내가 하는 일의 양을 설명하면 놀란표정 짓기가 일쑤이며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인사를 받기도 하지만, 나는 그들의 표정이면에는 내가 하는 작업의 수준을 비웃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들처럼 1년에 1개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너무도 일이 많다. 일이 많으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하니 부실이 되고, 애절함이 없어지니 감동적인 건축이 없을 수 밖에 없고, 처절하지 못하니 영혼의 존재를 알게하는 건축을 보기란 무척 어렵다.

그러나 무너지고 떨어지고 갈라지고… 드디어 우리의 자존심은 어느새 시나킬하게 변해 있다.

우리가 비자니스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우선 일을 하지 말자. 처절하고 간절할 때에 그때에 일을 하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때에만 팔 걷어 붙이고 마친듯이 일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일을 하지 말자.

새해에는 일을 하지 말자.

결코 안도처럼 되지 말자.

세계화, 국제화로…

Strives for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趙仁淑/다리건축사사무소

by Cho, In-Sook

1. 건축교육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

명실공히 국제기구의 주요회원국으로서 최소한 그 기구에 있는 위원회는 갖추어야 한다. 몇 년 동안 국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시아건축협의회(ARCASIA) 교육위원회(ACAE)회의 참석 후 보고서에 수년 동안 되풀이 하였지만 아직도 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필자의 전임위원을 비롯한 당사자들뿐이었다. “교육(Education)”이라하면 무조건 대학교육만 생각하는 사고의 한계 때문에 교육이야기만 나오면 본

협회의 이사진들은 그것은 학회가 할 일이라고 한다. 건축교육에는 1) 첫째, 미래의 건축가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있고 2) 둘째, 학교마친 후 건축사가 되기까지의 교육이 있고 3) 셋째, 면허를 등록하고 진정한 건축가로서 일해 나가야 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Academic Architectural Education)에 관한 것은 건축학회 등을 통해 많은 자료가 이미 축적되어 있지만 전국의 “건축과 교수 협의회”라는가 하는 모임 등을 통해 의견교환 및 개선점들을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우리협회가 지원내지는 창구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협회는 이미 학생작품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고무적인 일을 해왔고 해마다 두 명을 선발하여 해외전학 또는 학생챔버리대회 파견을 해왔으니 사실상 이미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던 셈이다. 좀 더 나아가 국제사회—적어도 아시아지역 내—에서 학생교류라든가 교수교류 등을 담당해야 할 창구역할을 우리협회가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협회가 건축사협회이니 만큼 건축사 본인들과 건축사사무소 구성요원들의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 계속 교육의 부재때문에 건축사보들은 궁지나 도덕이 없고 건축사들은 도덕이나 윤리를 저버린지 이미 오래되었다.

학교마친 후 설계내지는 감리분야에서 일하는 건축사보들을 위한 교육(Professional Training + Development after Graduation)에는 기본소양교육을 곁들여 건축사가 되는 자세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단순히 면허증을 따내기 위한 시험준비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사무소에서 견습을 몇 년 하면 저절로 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하고 갑자기 면허증이 생기므로 해서 특별한 부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적절한 건축사보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이웃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업 후 일해나가는데 필요한 평생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fter Registration as an Architect)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과 윤리교육이다. 공정한 경쟁 및 거래를 바탕으로 하여 기술력을 축적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국제사회에서 도태되어 고립될 것이다.

종전에 해왔던 형식적인 연수프로그램은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일환이 되게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사 스스로가 맑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도 억울함이 없도록 도덕 및 윤리를 포함한 기술교육의 평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단 건축사협회 회원이 되면 더이상 유럽이다 미국이다 거울거리지 않아도 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여 중요한 사항들은 애초에 Bilingual로 만들어야 한다.

해마다 KIRA 활동보고서를 준비하다 보면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큰 제목이라든가 주제, 사람이름, 사무소이름, 그리고 요지들은 처음부터 영어로 표기해 놓으면 전달하고자 하는 글 또는 작품의 내용이 국제화된 사고로 정리가 될 것이고, 필자나 작가의 의도와 맞지 않는 영문표기나 번역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나라보다도 국수주의적인 민족이다. 상대편의 입장이나 상황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내 편리한 대로 해 놓고 남이 나를 이해해주기 바라는데 이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우리 협회지(Journal)만 해도 세계각국 안가는 나라 없을 정도로 보내신다. 회원작품의 경우 최소한 작가 스스로가 만든 작가 의도를 단 몇 줄이라도 영문으로 표현해주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기 쉽겠는가, 아울러 그 자체로서 국제무대에 이미 서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민간외교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다.

3.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협회가 방패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어떤 개인사무소가 예를들어 중국같은 나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임받았을 때 과연 주변에서의 반응이 어떤가?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 주기보다는 어떻게든 헐뜯어 그 프로젝트를 빼앗아 보려는 심사가 크다. 개인이란 아무리 키도 5천여 회원의 협회만큼 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중국 등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뒤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무난히 돈 받고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 회원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다도 협회차원에서,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므로 우리 협회가 든든한 후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대국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4. 위원회 위원 위촉의 신중성 검토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들을 구성할 때 신중하게 선임해야 한다. 종전처럼 이권이 개입된 비객관적인 인원구성이 계속된다면 우리협회는 소생불능이다.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개개회원을 대변하는데 순색이 없어야 한다. 적어도 50대 전후의 회원으로서 사무실도 어느정도 안정이 된 상태라야 위원으로서 또는 임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해도 스스로에게 그리고 협회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회원 스스로는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말고 적합한 분야에 나서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봉사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위원회 경우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교류할 것이고 누구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충분히

실력발휘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 권유하여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회원 스스로의 도덕재무장

우리 협회 회원들은 스스로가 자기 값어치를 격하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관공서에 머리 조아리기, 구차하게 굴기 등은 오래된 얘기이고, 대학교수들에게 비열하게 굴기 등등 건축사의 위상이란 바닥에 있는 것이다. 기술계 면허자격 중 학제의 박사학위나 기술계의 건축사가 등등한 레벨이지만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평상시 대학교수들에게 계획설계 용역 의뢰하고 훗날 현상설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잘 봐달라고 하기 등등, 그러려면 대학교수로 하여금 설계하고 법률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할 일이지 설계사무소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D사무소의 경우 너무나 버젓이 현상설계 심사위원명

단을 스스로가 작성해주고—물론 참고용이겠지만—(소장이 관공서 출신이라나)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되지 못한 작품 가지고 밀어달라고 부탁한다. 현상설계의 당선작과 아닌 것은 실력차이는 별 개 아니지만 결과차이는 크다. 수십억 내지는 수억원짜리 설계권을 부여받느냐 아니나에 수 천 만원 짜리 계획설계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속셈이다. 그것을 수임받은 교수들 입장은 어떻겠는가? 건축사들을 우러러볼까? 건축사들이 못할 일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할 것이고 건축사들을 모자라는 인간 취급밖에 더 하겠는가. 우리 협회회원들은 대학교수들을 이런식으로 대접해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최소한의 도덕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관공서나 대학교수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할 때 좋은 게 좋은 것 이지 먹이 사슬관계로만 계속되면 평생 건축사협회는 소수의 몇지각한 건축사들 때문에 Unqualified 집단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 이런 회원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회원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원고모집

「건축사」지는 건축사 여러분의 대화의 “場”입니다.

월간 「건축사」지는 회원 여러분의 대변지이며, 모든 건축인을 위한 잡지로 항상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에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 ☆ 시, 수필, 수상, 건축기행문
- ☆ 건축관련 연구논문 또는 기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글
- ☆ 회원작품(최근 1년이내 준공된 작품)
- ☆ 계획작품(현재 계획중이거나 계획으로만 끝난 미실현작품)
- ☆ 작품스케치(작품과 관련된 개념스케치)
- ☆ 회원 갤러리(그림, 사진, 조각 등)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우편번호 : 137-070)
전화 : 587-8504(직), 581-5711~4(교) FAX : 588-8823

1

난 94년도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넘겨 본다.
(그곳엔 이미 지나간 94년 1년간의 연중 계획이 있다.)

계획대로 시행된 것 보다는 예정으로 그친 것이 항상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리라. 그래도 계획한 것은 지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던 만큼 그 자체로 하나의 보람일 수도 있다.

결과에 만족지 않음은 앞으로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게 하며, 또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계획했던 것들이 대부분 사업확장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던 만큼 지난 1년은 잠깐 돌이키고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보다 많은 회합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한 해로서 기억하고 싶다.

시대변화의 대비

Provide for the Changeable Streams

崔英權 /건축사사무소 21
by Choi, Young-Kwon

세미나나 전시회 참관에 더욱 많은 시간을 갖기로 예정하였던 것은 평상 시의 건축계획에 임함에 있어 이미 사회의 타성적 관념과 건축관계법 규정만을 먼저 떠올리는 무의식적 행동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픈 의도적 계획이었고, 학생작품 전시회나 건축전을 보다 많이 찾음으로 고정관념 탈피의 계기로 삼기 위해 가능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본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법규정을 벗어난 작품세계는 실현불가능의 그림일 뿐이라는 의미를 지울 수 없게 된다.

창작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실무에서 법규정의 신축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필요성에 따라 관계 규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한 예로서 약 10여년 전의 서울시 주차관계규정을 떠올려 볼 때, 당시 총주차대수에 대한 옥외 주차 의무 비율에 있어서 25%~50%를 옥외에 의무적으로 확보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 총주차대수 400여대의 건물을 계획할 경우 옥외에 100여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였고 대지내 공지는 은통주차장으로만 넓이며 녹지나 광장의 개념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억이었고 최근 신축된 빌딩가의 광장을 거닐다 보면 이 조항의 삭제는 필연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때로는 외국의 Land Mark적 건물에 감탄하고 국내에도 그와 비슷가는 작품을 추구하고픈 바람은 모든 건축가의 공통점이랄 수 있다. 그러나 고층 빌딩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관여하여 보았던 건축가라면, 국내에서는 실현기 어려운 것을 종종 느끼게 된다. 일례로 뉴욕의 City Court Center, Dallas의 Allied Bank Tower, 홍콩의 중국은행 타워 등은 건물 상단이 예각을 이루는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국내법상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일 경우 옥상에 10~22m의 헬리포트가 의무조항인 것을 감지할 때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형태인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재해시의 피난에 불가피한 규정이라면 건축가의 디자인적

Scheme에 우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다 상징적 이미지의 건물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창작세계에 그 상상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기도 하다.

이와는 또 다른 하나,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극히 일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 곧 북측 일조권 제한의 모순이 그것이다. 기존 북측대지의 민원을 고려한 부득이한 사안일 수도 있으나 언제가는 바꿔어야 할 모순된 규정인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것이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나간다. ‘희망’이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미화되기도 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을 생각할 때도 이미 북측 일조권의 불합리함이 노출되어 있었으나 시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금 까지도 계속되어진 것을 기억할 때 앞으로의 모습도 같은 모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주택이라면 통상 ‘20년’을 ‘가치적’수명이라고 추정할 때 앞으로의 20년후(서기 2015년)의 후회를 눈에 떠올릴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 건축인으로서의 나자신을 비춰본다. 일상 접하는 모든 환경자체가 우리의 작품대상물이며 작품의 배경 역할인 것은 건축인의 행운인 것으로 느껴왔다. 연극인이 가상의 많은 삶과 환경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작품세계는 실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 방식에 보다 가까이 하려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심리적 효과까지도 고려한 고차원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형적 요소를 기본으로 한 설계로 그치지 않고 색감과 음향, 빛을 통한 인간본위의 환경계획이 될 때 비로소 효과적 건축물의 역할을 이를 수 있음에, 우리에게 보다 많은 연구과제와 노력을 요구하는 분야인 것은 틀림없다.

좀더 아름다운 건물을 계획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건축사의 바람이겠으나 최근의 여론과 시선은 오히려 예술 창작의 작가적 영역보다는 부수적 영역의 공사 감리자로서의 감시인적 역할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때 심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싶다. 도면에 표현되지 못한 부분의 보충으로서 또는 설계상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의 보완을 위한 ‘감리’형태가 우리의 염원이라면 이 또한 앞으로의 바른 인식을 얻기 위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기본으로 한 준비과정으로 삼는 계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

기술 수준에 있어서 우리는 국제 경쟁력에 대비하는 준비가 점진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잘못된 진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 돌

이키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변화로의 선택은 단지 우리 자신의 앞에 가로놓인 유리 한장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 유리면을 사이로 안쪽이 밝을 때 빛은 투과되어 들어오나 반대로 안쪽이 어두울 때는 그 빛을 되반사하고 바는 거울의 모습일 수도 있다. 최근 수년내에 컴퓨터의 보급이 급속히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되며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작업이 수작업에서 컴퓨터화한 경우도 보게 된다. 실무작업을 전담직원이 맡는다 하더라도 실제 관리자가 컴퓨터를 모른다면 그 효과적 운영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때로는 관리지침까지도 실무자에게만 의지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컴퓨터의 활용은 워드프로세서의 기능,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 디자인 수단으로의 기능을 망라하여 사용자의 활용도에 따라서는 그 가치를 달리하고 있는 현실이며, 컴퓨터의 활용은 그 기기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 자신의 무던한 노력과 연구만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AD에 있어서 컴퓨터적 요소만을 과신하여서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 CAD는 그 원어 대로 ‘컴퓨터의 도움에 의한 디자인’인 것이므로 순수한 디자인적 아이디어는 사용자의 머리에서 착안되어져야 하며, 디자인적 요소가 빠진 CAD는 이미 작도로서의 역할이나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단순 기능역할에 그치므로 그 용용은 건축사를 포함한 계획자 모두의 과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작업에서는 힘들었던 대형라운드형 건물의 예에서도 CAD작업으로는 자유로움을 쉽게 느낄 수 있으며 디자인의 상호보완적 활용으로 그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건축사사무소의 컴퓨터화가 보편화한 것에 비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아직 예전의 모습인 것을 볼 때, 수험생의 입장이라면 컴퓨터나 CAD로 평소 작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험문제에도 컴퓨터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극복해 나아가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지만 모든 것을 동시에 이루기는 힘든 것이며, 모든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단계적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내 모습일 듯 싶다.

예

술가는 누구든 자기영역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그간 수련해온 모든 체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온갖 정열과 혼(魂)을 투여하여 작품을 완성, 세상에 내 놓는다. 그러므로 그 완성된 작품앞에서 “쁘듯 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만끽하며 때에 따라선 결과물에 대한 신랄한 비평과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이 건축설계일 경우 그러한 산고(產苦)의 역정이 뒤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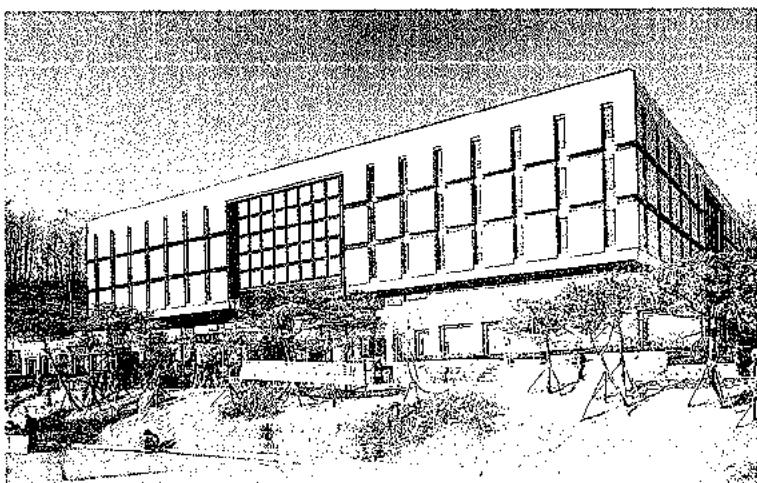
우리는 얼마전 납산 외인 아파트 철거광경을 지켜보면서 철거공법의 치밀함과 신속함 그리고 대단한 기술발전에 대해 세상사람들과 함께 경탄스러움을 표했지만, 한편 건축인으로서 빼아픈 반성과 허망감 또한 저버릴 수 없었다.

그 건물이 어떠한 동기와 사정으로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었고, 세워졌던 간에 그것이 서울 도심의 유일하고 상징적인 영산(靈山)의 자연경관을 가로막는 홍물로 더 이상 존칭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의 고난에 찬 결단을 우리 모두가 환호 하였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낯선 손님 맞을 우리의 주거환경이 충분치 못했던 터라 당시로서는 매우 앞서가던 건축전문인들(도시계획가, 설계가, 건축행정가, 시

공자) 다수가 참여하고 놓원되어 이룬 업적(?)이 그들자신 또는 직후 배들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지워져버리는 해프닝이 한 장인(匠人)의 마음에 시원스러움과 함께 허탈감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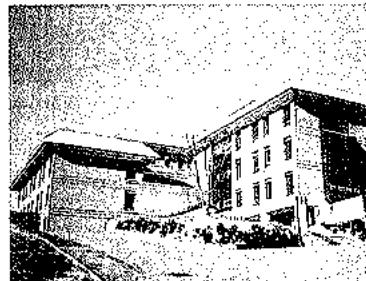
또 근간의 보도에 보면, 그 납산기술 아랫자락에 바로 인접해서 터전을 잡고, 40여년간 유지되어 왔던 한 사립대학 캠퍼스가 이전계획되면서 그 자리엔 대단위 고층아파트 군락이 들어선다는 공고이다.(15층 내외 31개동 4천여 세대)



퇴계기념 중앙도서관(정림건축 김정철 설계)



단국대 한남 캠퍼스 전경



미술관(미술대학)

이 발표를 보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한 사학재단의 비장한 결단, 혹은 발전지향적 새로운 계획을 탓하거나 무작정 주거공간 확대만을 위해 주변 환경을 위해 할지도 모를 우려에 대해 염려해서라기 보다는, 우리는 개인이건 공공(公共)이건 간에 우리삶과 활동의 터전인 건축공간 및 그 자취에 대한 애정과 전통, 환경을 너무도 쉽게 바꾸어 버리는 현상과 세태(世態)에 대해 당혹감을 갖게 된다.

이 대학 캠퍼스는 독특하고 풍족한 부지여건과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기엔 부족함이 많고, 역사있는 종합대학교로서는 열악한 편이긴 하지만 십여동에 달하는 교사동과 운동장,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음악당, 학생관, 기숙사 등 간소하게나마 캠퍼스가 갖출 시설물과 자연스러운 조경이 구비되어 많은 수의 젊은 인재들을 사학에 배출해 왔었다.

특히 근년에 건립된 개별 건물중에는 우리 현대건축계에 돌보이는 활약을 해온 정열적인 건축가 몇분이 심혈을 경주해 설계하여, 지어진 건물들과 낡은 교사동을 개조하여 재창출시킨 조형경관으로 캠퍼스의 면모를 점차 새롭게 꾸며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들 10년 안팎의 근작들에는 퇴계기념 중앙도서관(김정철 설계), 난파기념 음악당·석주년기념 민속박물관, 미술관, 기숙사(이상 김인석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뛰자는 이 건물들의 작품론이나 조형성, 또는 캠퍼스 구성의 적합성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고 정상적 대학교육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으로서 건립되어 일정기간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시설물들이 사용주체나 관리자가 바뀔 형편이 되었더라도 적어도 이와 비슷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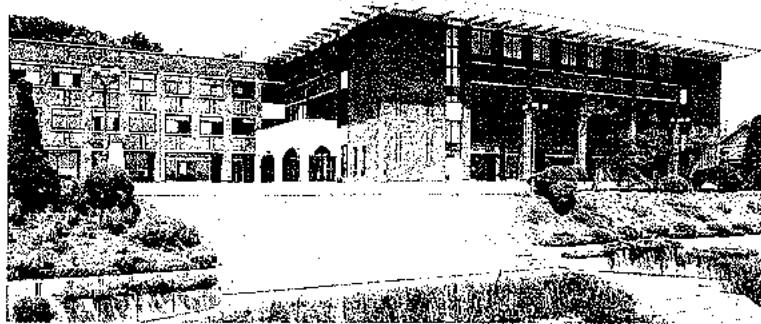
용도로 재활용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근래에 신·증설되는 여러급의 교육기관들(단과대학·전문대학 등), 공공단체나 대기업들의 연구소, 연수원, 공·사립의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공간들이 계속 증가되는 수요속에서 이만한 여건의 기존건물들을 그대로 재활용하거나 부분적 개축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부가해가는 적극 활용(Renovation)의 건축적사고와 크라이언트의 문화통찰력 발휘는 기대할 수 없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근자에, 고궁의 유구를 파헤쳐버려 역사성의 상실 또는 말살해 가면서까지 시립미술관, 박물관을 경희궁터에 짓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음을 상기할 때, 또 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재건축·재활용을 통해 문화와 역사보존하는 사례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점차 과대하게 도심확산, 고밀도화 해가는 우리의 도시환경하에서 경제 편의성만을 취해 “고층아파트”단지화로 쉽게 귀착되어지는 우리의 경제, 정신문화수준을 되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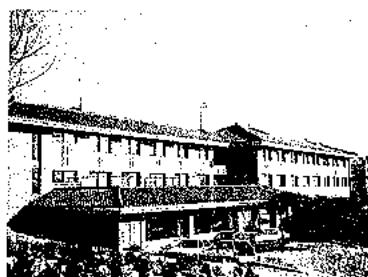
이제 우리의 주거개념이 대도시는 물론 지방의 중소도시나 시골마을에 인접해서까지 주변의 자연환경과는 조화됨 없이, 획일단조, 고층, 회색으로 특징지어지는 주거양상으로 탈바꿈해가고 있음을 볼 때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고, 예스러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자연과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건축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난파기념 음악관(음악대학)(일전증합건축 김인석 설계)



석주년기념 민속관



기숙사동

■ 현대도시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현행 법·제도의 개정)

1. 개요

부른 모든 법, 제도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질차·체제·방식 등을 그 법 등을 시행하는 사회현상을 집약한다.

따라서 현실을 규제하는 그 법과 제도 등은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그 때 그때의 사회현상을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시대에 인간들이 살고 간 아름다운 문화의 양식을 포함하는 도시공간과 환경형성에 관한 법과 제도는 한 시대를 표상하는 건축문화의 도시문화를 특징짓는 것이라야 한다.

해방후 혼란한 사회현상으로 점철되어온 우리나라의 20세기 말 반세기의 도시는 「도시」라고 이름하기에도 부끄러운 생존집단의 혼란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규명할 수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다른 나라의 법과 제도, 특히 일본의 그것들을 복사하여 우리사회와 도시환경에 억지로 맞춰왔던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발은 오늘에 딛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사는 건축가들의 사고와 행동방법을 규제·억제하는 형태가 일상화 되는 것으로 전이되었다.

그러므로 21C의 우리의 도시건축환경에 관한 법과 제도는 한국적 건축문화의 창달과 그를 위한 건축가들의 자유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알맞는 법과 제도의 개편대안은,
첫째, 현행도시개발·관리체제를 지방적 도시개발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거시적으로는, 도시건축관련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미시적으로는, 건축관련 기본법의 독소조항·부적합 조항들을 개정하는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설계용역 및 건설업체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되, 설계분야의 전문성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2. 도시개발·관리체제의 전환

2.1 지방적 도시개발의 지향

가. 국가적 도시개발과 지방적 도시개발

도시개발은 누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적도시개발(National Urban Development)과 지방적 도시개발(Local Urban Development)로 나누어 진다.

국가적 도시개발은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부분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개발시키는데 반하여, 지방적 도시개발은 계획과 개발주체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개발방법이다.

영국·미국·독일·인도와 같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방적 도시개발방식을 중심으로 하는데 반하여, 프랑스·이탈리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적 도시개발방법을 택하고 있다.

국가적 도시개발체제에서는 지방정부의 도시개발역할이 극히 제한

도시환경과 건축문화(1)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

-21세기를 대비한 한국도시의 발전방향-

黃鍾周/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by Hwang, Yong-Joo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성장해 왔으나 도시의 구조와 기능등의 변화는 따라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성장 속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도시환경과 건축문화를 창출, 문화의 질적향상을 책임져야 한다. 더불어 기성 건축사의 획기적인 역할증대와 위상제고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과 위상의 변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여야 하므로 건축사들은 현재 잘못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중앙의 획일적인 도시행정관리체계의 개선 등 현안문제를 시정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본 협회는 중앙대학교 건설산업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 21세기 한국도시의 고유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건축사의 역할제고와 사회적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본지에서는 이번 연구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소득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반하여, 자방적 도시개발방법은 단일의 지방정부 또는 수개의 지방정부가 협의체 또는 새로운 개발기구를 창설하여 공통 이해를 가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역사적 바탕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국가적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소도읍개발사업추진을 이유로 내무부에서 이에 개입하기 시작하여 도시개발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의 번잡·증복·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지원기능도 건설부(국토계획·도시계획 기능 등), 상공자원부(산업지원기능), 농림수산부(농어촌 공단유치기능), 내무부(지역경제담당기능), 경제기획원(예산지원기능)으로 분산되어 분할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도시개발행정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부문이 허다하다.

따라서, 첫째, 도시계획기능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건설부로 일원화하고 그 기능을 기능재배분의 방식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야 한다.

둘째, 다원화된 도시지원기능은 내무부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면적인 시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하여 수행하는 인사·예산·감사 등의 전제기능은 축소되더라도 이의 행사로서 도시지원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계획구조적 행정

도시개발계획은 그 도시의 장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개발하려는 기본방향을 담고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뒷받침은 행정조직이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행정기구를 위와 같은 계획구조적 행정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가는 것이 미래지향적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기본계획·개발계획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그 집행을 뒷바라지 하는 도시관리행정은 모두가 공무원들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만약 인력기구와 조직이 계획추진에 뒤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 계획집행을 적극 유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2 도시개발·관리기능의 재배분

가. 기능재배분의 필요성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방화의 시대는 지방의 특수한 실정에 알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권한내에서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은 일관성있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져 국가·사회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각 나라의 기능배분방식은, 예시적포괄배분방식(일본), 개별적수권방식(영국), 자치현장제정방식(미국), 업무목록선거방식(나이지리아) 등 다양하다.

일본의 임시행정조사회의 보고서('64)에 의한 기능배분 원칙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보면,

첫째, 도단위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치리사항(예, 국토 종합개발, 국민경제개발, 국가간신도로, 국유림 등)은 중앙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어 도단위의 국토 및 지역개발의 범위나 명확하다.

둘째, 도와 시·군에는 특히 도가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외에는 모두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광역적 처리를 요하는 사항, 보완적 처리의 사항, 조정·연락사항 등의 사무 이외의 사항은 시·군에 위임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집권적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폐습에 얹혀 획일주의·등제주의로 지향하다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야 대한건축사협회 등 전문가집단에 의하여 기능조정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관리기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도와 시·군의 지위·성격·역할에 부합하는 원칙에 관하여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적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동법 §3)라고 일률적·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본의 경우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중간자치단체의 구분과 각 단체의 주요기능 등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각 사무에 있어서 지방행정계층간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주관생의가 일어나기 마련이며, 이렇게 될 때에는 지방행정계층간의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마직으로 권한이 상위계층으로 집중하는 이른바 중앙집권화의 현상이 가중되어 간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전제로 하여 도시개발관리기능의 재배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기능재배분의 기준과 사례

도시개발·관리기능의 중앙집권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개발의 비효율성, 비능률, 획일성 등은 도시계획법, 지방공업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부기관에 이양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개발·관리의 모태가 되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방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제반기본계획결정권은 국토계획의 통일적인 시행을 위한 현행대로 중앙에서 행사되며, 도시재정비와 세부사업계획 및 시행에 관한 결정권이나 승인권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전담부서(도시국)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합하게 하고, 중앙각부처의 소관사항은 시·도단위 관련부서에서 관할토록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보강하여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담당케 한다면, 현행 중앙집권적 계획결정절차가 추구하는 국토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의 현지성·통일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중앙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야 할 도시개발 관리기능은 도시계획(제정비)의 결정, 지방공업개발기본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 등이며, 이에 따른 관계법규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중 중앙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제위임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마당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상급기관이 통제한다는 것은 자발정부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기초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도시개발관리기능은, 도시 계획사업의 허가,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의 인가 및 고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지의 지정권 등이다

2.3 도시개발·관리절차의 법제화와 전문공무원제의 도입

가. 도시개발·관리행정과 행정절차

도시개발관리기능의 지방화·자율화에 있어서 제일 먼저 법제의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그 행정절차의 성문화이다.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서 사전·사후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미흡한 상태이며, 절차의 혼란과 용어의 불통일, 절차기준의 애매모호 등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행정청문(hearing)에 관한 규정도 도시계획법 등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단순한 의견진술에 그치고, 그것조차도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많아 현재로서는 행정절차가 우리의 경우 거의 채택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위한 행정개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유통 행정절차의 법제정에는 무관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개발·관리행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법적규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첫째, 행정절차의 법제화는 도시개발·관리행정의 민주화와 공정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절차의 법제화는 도시개발·관리행정의 수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권익의 사후구제만 가지고서는 그 피해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여 주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절차의 법제화는 도시개발·관리행정의 원활화와 능률화를 촉진시키며, 행정결정의 타당성을 확보시켜 준다.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에는 개별법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행정절차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과정을 절차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의 성문화는 후자의 채택을 의미한다.

나. 도시개발·관리전문공무원제의 도입

도시개발관리전문공무원제는 두 가지 측면에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도시계획 등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공무원 조직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극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외부전문가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둘째, 일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현장성있는 극소수의 공무원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결여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권한을 가진들은 중앙정부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대체로 비현실적이거나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공무원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도시·지역계획 및 환경의 직군·직제를 신설하는 안과 계약직공무원제를 활용하는 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직군의 신설방안으로는, 국가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현재의 16개 직군에 도시·지역계획, 환경계획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도시행정의 전문가라고는 토목·건축적 밖에 없는 현실과 비교하여 장단점이 있으나, 계획행정수요의 증가추세나 전문성제고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직군의 신설은 절실한 과제이다.

계약직 공무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도시개발관리분야의 전문가중 5급 이상의 상위직에 임용하고 그 보수를 현실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개발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율성의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제와 함수관계에 있어 자율성은 특히 지방공무원에게 강조되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개발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도시의 개발이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우연한 입지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계획과 예산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개발수단을 추출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거시적 접근

—도시건축관련 법체계의 개편구상

3.1. 현행법 체계

도시건축관련 현행법체계는 규제일변도와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난맥·혼란을 그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나의 도시공간을 놓고 국토계획·도시계획시설 등 무려 16개 분야의 법군에 200여개의 개별법률로 규제하는 법체계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선·후진국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와같이 혼란된 법체계가 형성된 원인은 매 사회적 이슈(Issue)가 제기될 때마다 그 사안에 상응하는 법률을 특별법형식으로 제정하다 보니 거대한 법군이 겹침을 수 없이 형성되었고, 이렇게 되다보니 그 법령을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그 도시공간형성에 관여하는 전문가 또는 행정가들도 가닥을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제는 개별사안에 대한 개별법의 부분적용이

상례화 되다시피 한 것이 우리의 도시건축관련법의 현실이 되었다.

3.2. 도시건축법체계의 정비방향

도시건축분야 법체계는 다음 두가지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도시건축분야의 법을 총망라하여 도시관리법, 환경기준법, 계획수립관련법, 개발사업관리법 등 네개의 체계로 분류,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위와 같은 법체계는 모든 법을 기본법화 함으로써 특별법·개별법성격의 것을 궁극적으로 통폐합 하여야 한다.

가. 각 법체계의 기준과 내용

첫째, 도시관리법체계에서는 토지이용관련 일반규제와 도시계획시설(도로·교통·녹지·교육·하부시설 등)을 총괄하여 규정한다.

규제에 있어서는 기본규제만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위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도시 관리법체계는 기타 관련법에 우선하는 준수원칙을 도입하여 일관성이 있는 환경목표를 달성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계획법을 정비하고, 건축법의 토지 용도규제에 관련된 규정을 흡수하여야 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법, 공원법 등 통·폐합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기준법체계에서는 건축법을 건물성능기준법(Building Code)화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현행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정비하여야 하고, 국민복지 및 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제시하는 주택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계획수립관련법체계에서는 국토개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근간법을 하나의 얼개로 제시하고, 그 상관관계(재량위임사항, 협의사항, 조정사항 등)에 대한 조정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계획법의 도시기본계획·광역기본계획 등의 연계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넷째, 개발사업관리법체계에서는 새개발·신도시개발 등 특별사업에 대한 근간법을 제공하되, 기본적으로 관리법체계의 하위법으로 제정하여 도시환경관리의 기본목표를 준수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추진시에 필요한 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재개발법을 정비하여야 하며,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을 종합신도시법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현행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법을 통합하여야 한다.

나. 각 법체계의 성격

위의 각 법체계는 해당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현행 특별법 개별법 성격의 법은 궁극적으로 통폐합하여야 한다.

기본법의 체계는, 도시관리법체계에서는 「도시관리법」, 환경기준관련법체계에서는 「건축법」, 「기간시설기준법」, 「환경법」, 계획수립관련법체계에서는 「국토계획법」, 개발사업관리법체계에서는 「도시개발법」, 「종합신도시법」으로 편성하여 각각 분야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SOC개발법과 민자유치법은 성격의 강화가 필요한 부문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하면〈표 1〉과 같다.

〈표 1〉 도시건축법체계의 개편구상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도시관련법 체계 정비	· 네가지의 법률체계로 정비
· 개별법 위주의 법과 제도 -부처별, 관리부서별의 분열적인 개별법 운영에 의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절차 및 미리의 발생 요인이 된.	-200여개에 이르는 도시관련법률을 네가지의 체계로 분류 정비
· 특별법의 난무	1. 도시관리법/토지이용관련 일괄 규제, 일관성 있는 축수원칙 제시
-국가 주도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촉진법)의 확대로 법률서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국토개발 및 관리의 기본정신을 교란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토공간 활용계획수립 및 추진의 장애가 된.	2. 환경기준법/도시, 건축, 주택의 개별지 기준 제시
· 국책사업의 상호연계미비	3. 계획수립관련법/국토개발, 광역개발, 도시 계획 등의 수립에 대한 근간제시 및 상관관계 명시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SOC사업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호연계성과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사업추진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4. 개발사업관리법/재개발, 신도시개발 등의 특별사업에 대한 근간 및 기본 목표 제시
·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중앙집중 관리	· 특정 특별법 성격 강화
-현상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국토관리로 인해 사역특성이 무시되고 미시적 시각이 결여된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따라 환경파괴의 한 요인으로 작용됨.	-21세기 국가비전에 관련된 특수 국책사업 연관 법률 강화(예: SOC개발법, 민자유치법)

4. 미시적 접근

—현행 도시건축관련법 및 행정절차의 정비

4.1 건축법·도시계획법의 체계정비

도시는 곧 건축이라고 규정된다. 따라서 미시적 시각에서 볼 때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은 건축법·도시계획법의 체계를 정비하여 도시건축문화창달에 여지(Room)을 부여하는 일이다.

가. 정비의 기본방향

첫째, 도시건축환경의 문화적 발전에 관한 인식을 세고하여야 한다.

즉, 도시건축은 생존환경이 아니라『역사를 증명하는 시대적 문화』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에는 주체적인 문화 경쟁력의 확보가 제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산업경쟁역량의 배양과 국제문화물과의

〈표 2〉 도시계획체제 개편안

요 목	현황 및 문제점	개 선 방 안
도시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상호간 환류조정 미흡 - 주요개발사업의 이탈 - 정책목표제작 미흡 - 수립절차의 복잡·기간 장기화 - 계획기간(20년) 장기화로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어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성 지향 - 관련부서의 계획수립 참여 - 정책기술중심으로 전환 - 승인절차 간소화 - 계획기간 재검토 및 중간 수정의 탄력성 확보
도시계획 재정비 및 상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본계획과의 경직된 연관 관계로 인해 부문별 계획의 융통성이 없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견지하면서 여타의 개별 계획도 반영되는 도록 정리
도시계획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집행프로그램이 상호 연계, 조정되지 못한 - 투자 우선순위 조정 프로그램 미비 - 부문별 중장기 사업계획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조정프로그램 도입 - 중기자방재정계획과 연계 - 도시계획집행프로그램 제도화

차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둘째, 각 부처 구분 개별법 위주의 법과 제도에서 아기되는 복잡한 절차, 비효율적인 형식적 행정관리, 실적위주의 행정관행을 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위임업무 및 시행업무를 감축하고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을 절감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일반도의 건축법의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건축법의 구성체계는 운용규정, 개체규정, 집단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적·임의적인 수치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운용규정과 집단규정만으로 축소하고, 개체규정은 설계기준으로 코드화하며,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체제의 개편

도시계획, 도시계획재정비 및 상세계획, 도시계획집행체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야 한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은 정책목표의 제시가 미흡하고, 계획기간이 20년 이상의 장기화로 인하여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주요개발사업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획수립을 정책·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책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기간을 단축하여 도시변화에 부응하는 주요개발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재정비 및 상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의 경직된 연관관계로 인하여, 부문별계획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견지하면서 여타의 개발계획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계획집행은 종합프로그램제를 도입하여 중기자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부문별 중장기사업계획과 연관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표 2〉

다. 도시계획법 내용의 정비

도시계획법상의 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구역지정은 협행 6개 지역의 지정이 상호관련성이 미흡하여 구역특성간에 융통성이 없으므로 시가화구역, 시가화예정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3개 지역으로 대체하여 지정하는 것이 마땅직하다.

둘째, 용도지역은 현재 13개 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그 용도지역내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 규제를 보다 상세화하여야 한다.

셋째, 용도지구의 지정·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4.2 유사법의 정비와 통폐합

도시건축활동주체에 대한 확실한 예측성제고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처간 분할체제에서 통합체제로 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 협행법운영의 실태

분할체제로 운영되는 협행법체계는

첫째,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중복규제, 각 규제의 상충 등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둘째, 산발적인 법과 제도를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법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법상호간의 상충이 야기됨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육성법 등 상호관련있는 법제의 공동심의·공동개정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세화 내용이라는 명분하에 종합건설면허, 입찰제도 등 기득세력권화 하려는 움직임을 봉쇄하여 개발공익성과 생산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유사법의 정비방안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기술관리법 등 유사법을 건축문화창달과 전문성확보차원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표 3〉

4.3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가. 개정필요성과 방향

첫째, 주택정책기조를 재편하여야 한다.

물량공급위주의 주택정책기조를 주거환경의 질과 양적 공급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국형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물의 형태규제에 치중해 온 협행제도에서 시장경쟁에 의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공동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확보를 강조하는 체제로 재편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설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정 등을 폐지하고, 도시경관보전·옥외공간확보에 주력하여 도시환경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환경향상을 위한 관련 주체들의 노력을 결집시키고, 시민운동 및 관련지원제도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개정대안

첫째, 고밀도개발기능지역과 고밀도개발억제지역에 대한 차별적 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표 4〉

13개 용도지역별로 건축상한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성시가지 등의 환경파괴를 초래함으로 초고층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적정밀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거지개발정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주택의 총량공급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환경의 질과 보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건설기준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여러가지 획일적 규제를 시행함으로, 이것은 건축문화창달을 위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동 규정중 건축물의 안전·위생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은 건축법에 통합하고 우량주택자재인정제도 등 주택생산합리화 관련사항은 별도의 제도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표 5〉

셋째, 창의적 설계를 제약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26조 등 독소조항들은 우선적으로 폐지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주택내부마감재는 입주자의 선택사양으로 변경하고, 단지내 도로폭·놀이터·휴게시설의 규격, 계단·복도

등의 규격에 관한 규제 등을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구장 위주의 운동시설설치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표 6〉 넷째, 인동거리규제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건축법 제51조, 제53조에서 건물의 향은 건물간 대향하는 길이에 관계없이 높은 건물 위주로 인동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높이건물의 일사방행배치가 가장 유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일조시간확보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건물의 주개구부 방향으로 대향하는 건물 높이 기준으로 인동거리를 변경하고, 대향하는 건물의 겹치는 길이 정도에 따라 인동거리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표 7〉

다섯째, 획일적 설계를 조장하는 주택분양관련제도는 개정되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 및 예금제도가 일정주거규모별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설계가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택청약대상규모를 범위제로 변경하고 청약예금액을 전용면적당 일정금액제로 변경하여 청약주택규모를

〈표 3〉 유사법정비의 예

형 목(예)	개 선 방 안
① 법 규정의 명확한 개념설정과 그에 따른 유사법을 정비, 통폐합해야 한다.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에 충복 규정 〈건축사법〉 제2조 4 정의 “공사감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기술관리법〉 제2조 6 정의 “책임감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맡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감리자의 자격등 법 제33조의 6항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기술관리법〉 제2조 7 정의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3. 6. 1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 6(감리자의 자격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장사현장에 양주시기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	→ 설계와 감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사 고유 일부인 설계와 감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으로 통합 제조정되어야 한다. → 도시건축부분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디자인 산업을 근간을 이루는 설계와 감리는 건축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감리를 이분화 -개별사안에 따라 추진, 유통하는 개별법이 난무하여 법 기준정선을 왜곡시키고 행정난백상을 초래하는 바 모든 법을 기분법화하여 특별법, 개별법 성격을 통폐합하여야 한. 에)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설계와 감리업무는 건축사 고유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도록 되어 있어 감리업무를 이분화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기술관리법에서는 감리전문회사에 중시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자체은 건축사가 아닌자도 가능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상충되고 있다.	

(표 4) 개발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45조와 제46조에 의하여 13개 용도지역별로 상한을 정하여 운영하여 가성시가지, 신도시, 경사지, 강변지역, 지방소도시에 대한 구별없이 무차별 고밀도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환경파괴를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제고를 위해 초고층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경관 보전, 무차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적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거지 개발 정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주택의 총량공급 목표와 함께 환경의 질과 보전이라는 양대 목표를 균형있게 추진. 이를 위해 도심지 및 도심 인접지역 등에서는 불요 불급한 건축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고밀개발이 가능한 여건 조성

(표 5)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규제폐지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제45조 등에 나타나는 주택건설촉진법 하위 규정인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규제가 행해짐. 입법 취지상 “주거문화 창달”보다는 획일적 단지 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촉진법은 건설사업질차, 규율 등에 관한 시장으로 국한하고 설계에 관련한 사항(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주축법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취지를 갖는 조항들은 취지에 적합한 제도로 분리 운용 건축물의 안전/위생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은 건축법에 통합 우량주택자체 인정제도 등 합리화 관련사항은 별도의 제도로 운용

(표 6) 설계제약사항 개정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내부 마감재 규제 폐지(입주자 선택사양으로 변경) 단지내 도로폭, 놀이터/휴게시설의 규격 규제 폐지 계단/복도 규격 규제 폐지(폐난계단의 경우 건축법 적용) 정구장 위주의 운동시설 설치 규정 개선 30cm 모듈 단위의 치수 규제 폐지 거실, 침실의 최소 단면길이 규제 폐지 공동주택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 폐지

(표 7) 인동거리규제 개정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51조, 제53조에서 건물의 향, 건물간 대향하는 길이에 관계없이 높은 건물의 주로 인동거리를 규정 동일 높이 건물의 일자 평행배치가 가장 유리하도록 유도 동지시 조례에서 정하는 일조시간 확보시 인동거리 규제를 감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례를 정하지 않아 유명부실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주개구부방향으로 대향하는 전류의 높이 기준으로 인동기리를 변경하고 대향하는 건물의 겹치는 길이 정도에 따라 인동기리를 적용도폭 변경 인동거리 규제조항 중 농지를 기준 필요 일조시간에 대한 규준 마련.

(표 8) 주택분양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와 같이 주택청약저축 및 예금이 $85m^2$, $102m^2$, $135m^2$ 등으로 등급화되어 있어 공동주택 규모가 여기에 집중됨. 모든 설계가 이를 전체로 이루어져 자유로운 설계를 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청약대상 주택규모를 범위제로 변경 청약예금액을 전용면적당 일정 금액제로 변경(예 : $m^2당 7만원$) 청약 주택규모는 청약예금액 해당 규모를 전후로 일정범위내에 가능토록 변경 (예 : 청약예금액 해당 규모의 전후 $15m^2$까지 청약 가능)

청약예금액 해당규모를 전후로 일정범위내에서 청약이 가능토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입주자의 취향이 부합하는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여섯째, 경관관리지구를 신설하고, 경관보존시에 개발밀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시내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여 건축심의시에 경관보전제어를 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관리지구를 지정·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공동주택에 대한 건폐율을 폐지하고, 옥외공간율과 순옥외공간율을 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행법에는 옥외공간의 양과 수준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장치가 없으며, 아파트지구개발계획규정 제8조에 의한 건폐율규제로는 개발밀도에 따른 상대적 옥외공간면적 확보를 규제하기에 부적절하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폐율제를 폐지하고 옥외공간의 양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4.4 도시건축관련행정절차의 개선

가. 건축인·허가 및 심의관련절차〈표 9〉

도시관련법체계와 병행하여 도시건축에 따른 행정운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행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첫째, 도시건축심의에 있어서 건축·경관·에너지·남산경관심의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색채·외산자재심의 등 현실성이 결여된 것은 통합 심의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도 개별심의제는 불력단위 심의제로 심의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건축허가제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축물의 중간검사제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가 일정한 진도에 이를 때마다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물의 공사로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제도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감리자와 감리비보고서로서 사용검사신청에 가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축사의 상계에 있어서도, 이중(중복)처벌을 지양하여 원인행위자만을 처벌도록 하고, 그 양형도 경제처벌로 전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건축관련 민원행정관리

건축관련 민원행정은 복합적인 문제발생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해결방안과 관련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실시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 보다 나은 개인생활의 질과 도시환경을 구현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건축관련민원행정의 개선에 있어서는 현행 각종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여 민원절차를 확립하고 준사법권을 가진 민원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악성집단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제기에 있어서 당사자 부담원칙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법·부실공사 방지에 치중된 현행제도를 건축물의 품질관리, 성능보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다.

부실공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가격의 보장, 부실별점제의 도입, 감리전문집단의 육성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다. 공사업찰제도의 개선

건설시장의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프로젝트의 내형화 복잡화가 예견되는데, 이에따라 시설물의 고품질, 고기능, 첨단화 등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여야만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긴설품질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건설기술개발과 경쟁력있는 입찰제도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

부실공사방지라는 차원에서 현행 저가입찰제도를 지양하고, PQ입찰제를 확대 적용하거나 성능발주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표 10〉

라.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도시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일정지역에서의 대

〈표 9〉 행정절차의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한 심의절차(증복·유사) 및 협의처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제도 통폐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성/증복성(건축, 경관, 에너지, 남산경관 심의 등) ◎현실성의 부족(수도권, 색채, 외산 자재, 국토, 예술장식품 심의 등) ◎심의 대상 조정 및 폐지(교통영향 평가 개별심의→불력단위심의 또는 폐지) ◎법령으로 이관(도소매 진통심의, 학교환경 정화위원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증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전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놓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 제18조(건축물의 사용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의 신고제 전환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가 일정한 진도에 이를 때마다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하는 감리자와 감리보고서로서 사용검사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인행위자 처벌 →이중(중복) 처벌의 지양 →경제처벌(손해상보협 의무화)로 신환

양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국한하여 시행하고, 지방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건축심의에 통합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도서교통정비촉진법 제 13조에 의하면, 건축안작성→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사업계획작성의 3단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그 삼의위원회의 주요심의결과는 ① 법정주차대수의 120~150% 확보, ② 간선도로변의 완화차선의 설치, ③ 차량진출입위치의 조정, ④ 대지내 주차동선조정 및 옥외주차장요구에 그치고 있고, 각 개별 건축물마다 독립심의절차를 거치므로 연관단지의 전 건축물에 대한 교통평가를 하지 못하며 도서교통 혼잡반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표 11〉

5. 설계용역 및 건설업 관련제도의 정착

2IC의 국제건설시장에 대비하고, 건축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의 한국식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법·행정체제의 정비와 아울러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설계용역 및 건설업제도의 개선이다.

5.1 설계용역 및 건설업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의 설계용역 및 건설업제도는 첫째, 설계조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설계와 시공을 연결하는 기술조직이 없으며, 셋째, 설계보다 시공조직의 경제논리가 우선하고 있다.

특히 시공조직 우선논리는 설계(Design), 기술

〈표 10〉 공사업체제도의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①정책입안자 또는 관련행정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입찰제도 변경 ②입찰제도는 정부·정부투자기관, 공공업체에 국한 적용→민간투자시설에의 입찰제도 적용 미흡(민자 시설공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실공사방지 등 필요) ◆현행 입찰제도 ③제한적 서가 낙찰 - 100억 미만 규모에 적용 - 최소공사금액 확보로 부실공사방지에 도움 - 예정가누설에 의한 미리 문제발생의 개연성 ④지가 나찰 - 100억 이상 규모에 적용 - 탑평→부실공사의 원인 - 차액 보증금액을 크게하여 탑평 경제 나. 입찰 방식 ⑤대안입찰: 적용기준 모호, 토목 산업시설에 적용 가능, 건축에는 곤란. ⑥면허 입찰: 면허발주기준 모호, 평가기준 모호, 산업시설 및 전문화 시설 적용. ⑦내역입찰: 건축·토목 금액 별도산출, 전기·통신부문 미실시, 건축 능력 향상 및 기술개발에 도움이 안됨. ⑧PQ입찰(PQ심사참가 제도) - 세한된 프로젝트 적용 - PQ내용 진실성 및 평가기준 보호 ⑨일반관리비 산출: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에 곱하여 산정, 공사품질관리의 주요요소인 공사기간에 의한 관리비계상이 되지 않고 있음.	①낙찰방식: 공사의 대·소규모를 막론하고 제한적 서가입찰제도 적용, 적정금액 공사비 확보→부실시공의 방지, 석정수익성 보장 ②입찰제도 연구기관 건설계약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 양성·자격제도 및 경쟁기구 신설 - 국제 claim 및 분쟁문제 해결 - 발주사 계약조건 검토 - 국제 공사 입찰조건 검토 등 ◆입찰방식 개선 ③면허발주조건 구체화 및 평가기준 마련 대안입찰의 채택기준 및 평가기준 꽂관화 ④PQ입찰방식: - 확대 적용 - PQ제도 적용기준 마련 - PQ내용 평가 방법의 두정성 확보 준공사 검사관 평가-기록-입력-활용 공인기관 지정 및 확보 품질평가(감사, 민원, 상벌) 평점 제도, 수행능력, 평가기준(설자, 인적사항, 부재율, 투수공사실적, 신기술 보유 등) ⑤심능발주방식(설계도나 사양서 없이 시공결과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만을 지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계약 내용의 발주 방식)의 도입 ⑥공사기간에 의한 일반관리비 산출 기준 마련.

〈표 11〉 교통영향평가의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현실적인 평가대상의 설정으로 과도한 평가 용역비용의 지출 개별 팔자단위의 평가로 도시교통의 균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주차장법 등 기준관련법과의 충복규정으로 범 적용의 비 효율성 건축개혁심의와 중복으로 건축행정의 비 효율성 평가기준이 모호함으로 객관성 있는 평가의 어려움 용역발주 및 심의결과에 따른 부조리 발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통영향심의일 경우 폐지 또는 건축심의에 통합 지방심의 대상의 경우 현재의 팔자단위 평가에서 불리단위 평가로 전환 (교통영향평가시 재출대신 일정금액의 불리단위 평가 분담금 낸부) 대지내 공공화(완화차선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도입 현행 지방심의 대상은 건축심의에 교통 전문가가 참여하여 통합심의 평가심의 기간의 난축(현행의 1/2로 간소화) 평가비용의 표준 평생 마련 중앙교통영향심의일 경우 현행 평가대상규모의 최저한도를 상향 조정(일반업무시설 20,000m²→40,000m²)

(Engineering), 시공(Construction) 간의 업역이 상호중첩되어 구분이 불분명한데에서 비롯되므로 이의 업역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 12)

5.2 설계용역 및 건설업제도 개선방안

설계용역 및 건설업은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부문의 다양한 결합에 의한 완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설계와 시공의 완성도제고는 다음 두가지 방향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디자인과 기술이 합쳐진 중·대형설계조직에 의한 설계의 완성도가 제고되어야 하고, 둘째, 시공과 기술이 융합된 시공조직으로 현장의 완성도가 향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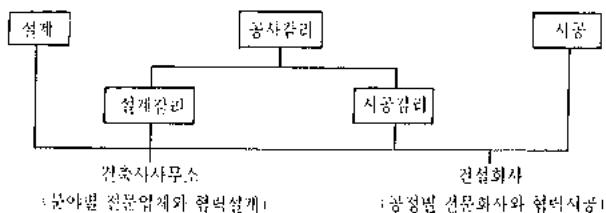
이러한 완성도의 전제조건은 설계, 기술, 시공간의 명확한 업역구분이다. 설계(Design)는 일반설계조직이 전담하여야 하고, 기술(Engineering)은 전문용역조직이 전담하여야 하며, 시공(Construction)은 일반건설조직의 전담 부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분야와 시공조직이 중첩시행할 수 있는 기술부문은 설계와 시공 양부문의 대형조직이 협의 시행할 수 있는 분야로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나 건축문화창달과 전문성 보장의 차원에서 설계분야의 전문성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대형시공조직에 의한 종합화구상·방안에 관한 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표 13)

(표 12) 설계와 시공의 업역차이

설계	조형예술성, 작가의 창의적 성신 과 design oriented 작품성 추구, 공공성의 강조	기획,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관련 분야와 협력설계, 설계 감리
	기술성, 경제성 자본과 기술중심 의 engineering oriented로 이윤주 구의 상업성의 강조	설계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진 립-사공관리, 품질관리, 현장에 대한 통제관리, 시공감리



(표 13) 설계용역 및 건설업 제도개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조직의 전문성 결여 -설계와 시공을 연결하는 기술조직의 부재 -시공조직의 경제논리 우선 -설계 :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설계의 기술화를 초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출에 각종 제약. -엔지니어링 : 기술에 대한 책임전가로 인하여 협력관계 성립 불가 -시공 : 기술에 의한 해결보다 노동력에 의한 처리에 의존 -행정당국 : 상호견제의 관계로 유도하여 실증식 해결을 주도한 방관자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과 기술이 합쳐진 중·대형설계조직에 의한 설계의 완성도 제고 -시공과 기술이 융합된 시공조직으로 현장의 완성도 향상 -각 부문간의 다양한 결합에 의하여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욕구 충족 -업역의 구분과 중첩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설계 design</td> <td style="width: 33%;">시공 construction</td> </tr> <tr> <td>일반설계조직</td> <td>전문기술용역조직</td> <td>일반건설조직</td> </tr> <tr> <td colspan="3">대형설계조직</td> </tr> <tr> <td colspan="3">대형건설조직</td> </tr> </table>	설계 design	시공 construction	일반설계조직	전문기술용역조직	일반건설조직	대형설계조직			대형건설조직		
설계 design	시공 construction											
일반설계조직	전문기술용역조직	일반건설조직										
대형설계조직												
대형건설조직												

■ 제1주제
건축·도시계획법 체제개편

1. 문제의 제기

- 현행 도시계획법은 1971년에 1962년 법의 전면개편을 통해 제정된 후 그간 8회에 걸친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오늘날의 사회적 여건은 1971년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골격과 내용이 구체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법과 사회적 현실사이에 부조화와 괴리현상이 증폭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법의 구조적 틀은 그대로 둔채 단편적으로 시행된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으로 말미암아 법 규정체계와 규정자체의 왜곡, 부실도 적지 않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문제의 유형

구 분	구조적 측면	개별규정측면
외적여건 변화에 대한 적용미흡 내부적인 규정의 일관성·합리성 결여	관련 법 간의 중복·충돌 규정의 혼란적응성	규정의 혼란적응성 결여
		부실규정의 문제

도시·건축법률체계 개편

Reorganization of City Planning
and Architecture Law System
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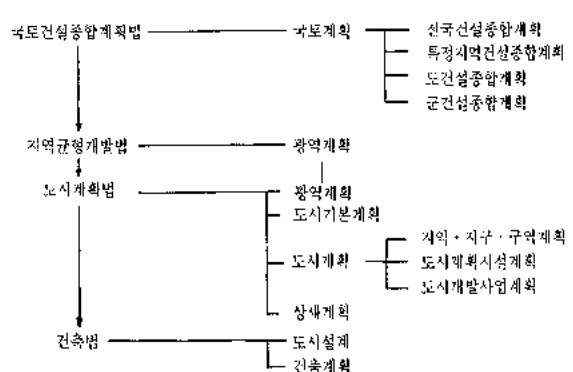
- 제1주제/건축·도시계획법 체제 개편 崔炳宣
- 제2주제/상세계획과 도시계획체계 정립 金宇成
- 제3주제/구역·지역·지구제도의 개선 孫暉錫

— 도시계획법의 주요현안 과제

문제의 유형	주요현안과제
관련법 간의 중복·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건축법의 중복·충돌 ○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특별법 ○ 도시계획법과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규정의 혼란적응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과 행정법의 중앙집중 ○ 민간참여와 계약 및 지방의회의 역할 미흡 ○ 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 개별도시특성을 도와서한 법규정의 확장적 적용
규정체계의 왜곡· 혼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체계의 혼란: 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상세계획 ○ 도시계획명칭의 혼선 ○ 형질변경허가 등 계획체계규정의 혼란
부실규정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문화 또는 주상적 규정 ○ 합리성이 약한 규정: 지역·지구·구역제, 도시계획시설 구분 등

2.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관계

가. 계획체계와 법체계



도시건축연구원은 지난 94년 12월 7일 「도시·건축 법률체계 개편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현재 관주도의 도시환경콘트롤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과 도시계획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공공부문의 조정능력을 제고시킬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체계개편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는 최병선(경원대 교수), 건축·도시계획법 체계 개편), 김우성(아키프랜 소장, 상세계획과 도시계획체계 정립·특별구역제도 개선), 손병석(서울시 중구청 과장, 구역·지역·지구제도의 개선)씨가 참여, 토의를 가졌다.

본지에서는 이날 포럼의 주제 발표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나. 도시 계획법과 건축법의 구조체계

다. 도시계획과 건축법간의 중복·혼선의 문제

(1)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중복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는 그 목적이나 계획대상구역, 계획의 내용등이 대단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법이 상이함으로 인해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주체와 절차가 달라 불필요한 중복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도시계획법	건축법
1장 : 총칙(목적, 정의, 계획구역 등)	1장 : 총칙(목적, 정의, 건축위원회 등)
2장 : 도시계획(입안, 결정절차,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도시설계지구 및 상세계획구역 포함)	2장 :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견사·공사관리)
3장 : 도시계획사업시행	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4장 : 비용	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건축선 등)
5장 : 도시계획위원회	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장 : 보칙	6장 :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건축폐물, 용적율, 대지면적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시, 높이 제한 등)
7장 : 법칙 부칙	7장 : 건축설비
	8장 : 도시설계 등(도시설계, 특별개발사업구역, 특정사구정비지구)
	9장 : 보착
	10장 : 법칙 부칙

·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비교

구 분	상세계획	도시설계
근거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지구지정) 건축법(시행규정)
목적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계획입안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자체, 공사, 기타
승인 또는 결정	건설부장관이 결정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
입안기준일	구역지정 후 2년 이내	지구지정 후 1년 이내
대상구역	- 토지개발예정지구 - 공업단지 - 재개발구역 - 도시구획정리사업구역 - 일단의 시가지 조성사업구역 - 역세권지역	도시계획구역내의 필요한 곳
계획내용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 도시계획시설계획 - 가구·회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 - 건축물 규제계획 - 공공시설계획	- 도시계획시설계획 - 가구 및 회지분할계획 - 건축물 규제계획 - 기존 건축물의 처리 및 대지정리계획 - 광공시설계획
심의기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2) 용도지역, 지구, 구역관리체계의 이원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관리(용도지역·지구제)를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

○따라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분류, 지정목적, 지정절차, 규제방식 등은 일관된 체계 아래서 운용·관리되는 것이 도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분류, 지정목적, 지정절차 등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지구·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토지이용의 일관된 계획과 관리가 해손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경향은 특히 양법의 관장부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부서간의 협조가 용이치 않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지역·지구·구역의 분류, 지정절차 등—도시계획법—도시국 도시계획과

- 지역·지구·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건축법—도시국 건축과

○한편 동일한 사안을 두개의 법에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관리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법이 갖는 거시적 측면과 건축법이 갖는 미시적 측면의 중간에 지역·지구제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아 도시계획법, 건축법과도 분리하여 별도 법령을 제정·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도시계획법(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도시 및 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건설법전(Baugesetzbuch)
도시지역제(Zoning Ordinance)	용도지역제(Zoning Act)	건축용도령(Baunutzungsverordnung)
건축조례(Building Code)	용도 분류령(The use Classes Order)	건축조례(Bausatzung)
	건축조례(Building Regulation)	

3.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체계의 개편방안

가.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제도의 개편

(1) 기본방향

○법령간의 불필요한 중복을 배제하고 단순·투명화 함.

○법의 세정목적, 내용들과 일관체계를 유지하여 제도의 효과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

○거시적 도시계획과 미시적 건축계획을 이어주는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의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의

성격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도록 함.

(2) 대안검토

○ 대안설정

- 제1안 :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차별화 함.
- 제2안 : 건축법의 도시설계를 도시계획법의 상세 계획에 통합
- 제3안 :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을 건축법의 도시 설계에 통합
- 제4안 :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통합하되 도시계획법, 건축법과 분리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독립시킴

○ 대안평가

- 제1안 : 현실적으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차별화가 불가능함
무리하게 차별화를 시도할 경우 도시계획과 건축계획간의 중간단계가 다단계화 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과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제2안 : · 현행의 도시계획법이 기시적 차원의 도시공간관리 뿐만 아니라 중간 차원의 도시 계획 시설, 도시개발사업 등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가 통합되어도 법의 제정목적 또는 주요 내용과의 상충문제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법상 상세계획의 위상이 도시 계획 체계내에서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 제3안 : · 도시계획법상의 유사계획을 폐지함으로 인해 법체제의 단순·투명화는 달성되지 만 건축법이 건축물의 개체규정과 더불어 일정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내용에 관한 규정까지를 포괄하게 되어 법의 성격이 모호해지거나 혹은 지나치게 복잡, 방대해질 우려가 있음.
· 도시설계의 포괄범위, 집행체계 등에 대한 규정보완이 필요함.
- 제4안 : ·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적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법령의 지나친 세분화에 따르는 부작용이 예상됨.
· 따라서 제4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있는 유사성격의 규정을 모아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제정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현행 법령체계의 전면개편에 따르는 과도기적인 혼란이 우

려됨.

(3) 개편방안

○ 실현가능성, 부작용, 기존체제와의 조화 등을 감안 할 때 단기적으로는 제2안, 즉, 건축법의 도시설계를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상세계획의 위상을 도시계획체계내에서 명확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세계획을 현행의 지역, 지구, 구역제도로부터 분리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계획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둘째, 상세계획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필요한 경우 어느 지역에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추어야 함.

셋째, 상세계획의 입안, 결정권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여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법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과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제4안에 의한 별도의 법령제정도 검토할 수 있음.

例 : 도시계획법-도시건축법-건축법
(상세계획체도 포함)

나. 용도지역·지구·구역관리의 일관체계 확립

(1) 기본방향

○ 도시계획법, 건축법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는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일관된 법체계 아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체계의 개편에 따르는 과도기적 혼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함.

(2) 대안검토

○ 대안설정

- 제1안 : 건축법 제6장(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의 규정을 도시계획법으로 이관함

- 제2안 : 도시계획법 제2장 제2절(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의 규정을 건축법으로 이관

- 제3안 : 건축법 제6장 및 도시계획법 제2장 제2절의 내용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

○ 대안평가

- 제1안 : · 도시계획법의 핵심내용중의 하나가 용도지역 지구제에 의한 도시내 토지이용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건축법의 관련규정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더라도 도시계획법의 범재정 목적 및 주요내용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밀도제한(건폐율, 용적률, 공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한 등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효율적인 규정은 법규정보다는 시행령 등에 규정하여 법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제2안 : · 도시계획법 제2장 제2절을 완전히 건축법에 이관할 경우 도시계획의 핵심이 건축법에 의해 관리됨으로 인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간의 상하위 체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건축법은 개체규정과 집단규정을 동시에 포함하게 되어 건축법의 고유의 성격이 모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도시계획법은 핵심이 누락되어 도시를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존재의의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임.

-제3안 : · 법체계의 단순·투명화, 일관체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다만 법령의 세분화에 따르는 복잡·다기성, 현행 도시계획법의 핵심 누락에 따르는 도시계획법의 제정목적, 내용 등에 대한 전면개편의 필요성 등 부작용이 크게 수반될 것으로 전망됨.

(3) 개편방안

○법규정의 일관체계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제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경우 법률 운용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에서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1안을 채택할 경우 건축법은 집단규정을 없애게 됨으로써 개별건축물의 건축관리, 유지관리, 구조 및 재료, 설비 등 개체규정에 충실히 되어 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준칙, 건축조례 중 집단규정은 도시계획관련 상기 법령체계에 이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지구에 크게 의존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을 선별하여 별도의 법령체계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구 분	도시계획법	타 법	
		사업유형	관련법률
신시가지 개발	· 협정변경사업 · 일단위 주택지 조성사업 · 일단위 공업용지 조성사업 · 시가지 조성사업 · 토지구획 정리 사업 · 도시개발예정 구역 지정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국민주택용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 공업단지 개발사업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건설촉진법 · 택지개발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개발사업	· 도심지재개발사업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 주거환경 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도시계획법과 기타 도시개발관련법간의 중복, 충돌에 대단히 심각하며 뿐만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결국 건축법, 도시계획법 체계가 효과적으로 정비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관련법의 정비가 동시에 수반될 필요가 있음.

○도시개발관련법의 정비방안으로는 영국, 독일식으로 도시계획법에 도시개발관련법을 통폐합하는 방법과 일본식으로 별도의 법령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이 분리방식으로 운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법령으로 관련법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요약 및 결론

○건축법, 도시계획법간의 중복, 충돌을 해소하고 법규정의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건축법 제8장(도시설계 등)의 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이관하여 상세계획 제도와 통폐합하고 아울러 건축법 제6장(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을 도시계획법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세계획제도, 지역지구제도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가칭 “도시 건축법”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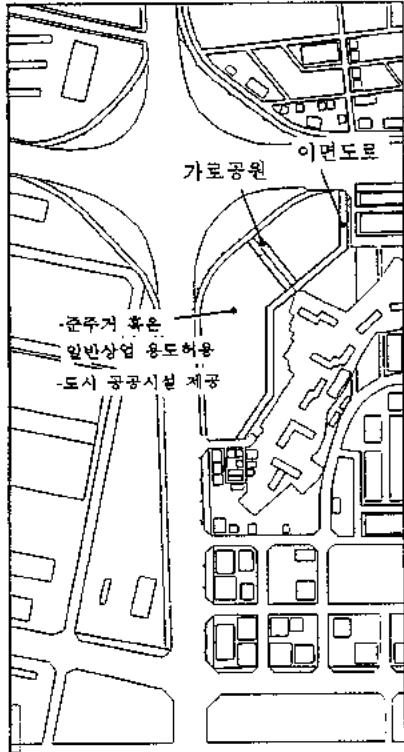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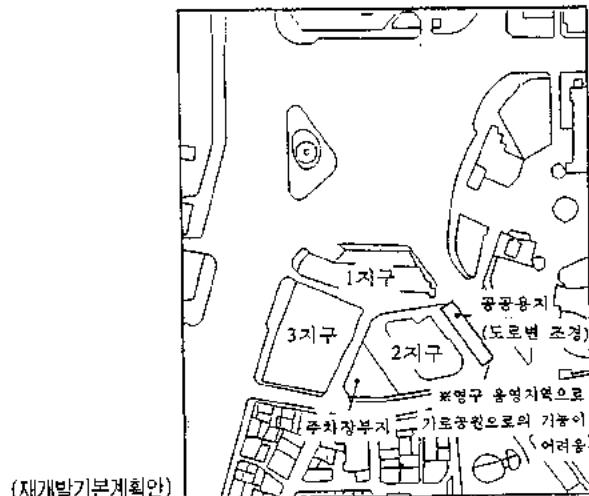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은 건축법상 도시설계의 개념을 수용하여 계획고권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지구제의 운용에 있어서도 법, 시행령, 자치단체조례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정립하도록 함.

○건축법은 집단규정을 폐지한 대신에 개체규정의 기준등을 상세하게 보완하여 건축기준법으로서의 성격

구 분	역 할
도시계획법	· 용도지역, 자구의 구분 · 용도지역, 자구의 지정복적, 지정절차
도시계획법 시행령	· 지역, 지구의 세분 · 지역, 지구내 행위제한의 원칙 및 기준 : 용도규제, 용적률, 건폐율, 대지인의 풍자, 최소내지규모 등)
자치단체 조례	·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 규제사항 명시

다. 기타 검토사항 : 도시개발법의 제정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양한 방식(13개 방법)으로



을 뚜렷히 부각시키도록 함.

○도시계획법은 계획법으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하는 방향에서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도시개발법으로 독립시키고 관련 도시개발특별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폐합하여 법체계를 단순화함.

■ 제2주제

상세계획과 도시계획체계 정립(특별구역제도 개선)

1. 목적

도시계획체계 개편에 즈음하여 현재까지의 관주도 규제위주의 도시환경 Control 방법에서 탈피,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계획에의 민간참여 기회제공과 공공부문의 조정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실제적인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문제의 제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법제의 보완 방향이 탈구제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제기하고자 함.

- 1) 현행 Zoning Ordinance의 체계에서 발생되는 건축허가·심의의 불합리성 문제
-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규제기준으로 인한 건

축행위의 자율성 저해

- 건축허가 또는 심의시 기준의 객관성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성
- 2) 공공부분의 규제에 대한 민간부문 조정 기회의 부족
 - 제도적 규제에 대해 민간부문의 계획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제도운영의 경직성과 탄력성 부족으로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Negotiation)하며, Site Oriented된 '특수해'를 수용할 만한 여건 부재
- 3) 상세계획 제도에서의 전문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제도개편이 포괄적(도시계획적), 구체적(=설계적, 건축적)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계획안 작성을 담당할 전문분야의 역할에 관한 제도적인 규정이 미비됨
 - 민간의 자율성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상세계획안의 수립에는 전문분야의 전문성이 필요

3.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의 분석

- 현행 Zoning Ordinance에서의 건축심의과정 분석
 - 심의 기준이 될 구체적(Detail한)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부재
 -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중(예: 미관심의)
 - 계획 입안자(민간부문)의 재심(조정) 기회의 부족
- 공공부문의 규제에 대한 민간조정 제도 분석

·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비교

	도시설계 (재개발 계획 등 포함)	상세계획 (현 행)	상세계획 지침 (건설부 시안)	문제점
시 행 여부	시행	미시행	미시행	
제작성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위주 · 주공·토개공 등 준공공기관 	공공부분 위주	공공부문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민간개발 사업 사례 · 민간부문의 계획 작성 기회 필요 (사업의 지반영)
계획안의 민간부문 조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안 심의 때 규제 저촉여부 만 판단 	특별한 조정제도 없음	특별한 조정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계획안의 의견, 의견(계획 대안)을 민간부분의 작성 제작할 수 없음 (개발의 지연, 민원 대상)

-사례

- A. 소공동 재개발 BLDG.
- 소공동 재개발 계획 대상구역

· 문제내용

- 재개발 기본계획의 경직화로 사업시행의 지연
- 기 작성된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 민간 개발자의 발전적 대안으로의 조정 어려움.

B. 가락동 특별사업구역

- 잠실지구 도시설계의 특별사업구역
- 문제제기
- 도시기능의 변화(계획 당시 주거기능에서 상업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변화)
- 민간개발가의 개발 Program 수용을 위한 도시설계 조정안 제시 실패
- 제도운영의 경직성으로 민간이익(토지 잠재력 극대화)의 공공이익(도시공공시설: 도시공원, 도시계획도로 확보)의 조정을 위한 Negotiation의 미시행

3) 상세계획제도에서의 전문가의 역할

-현행 도시설계 용역 수행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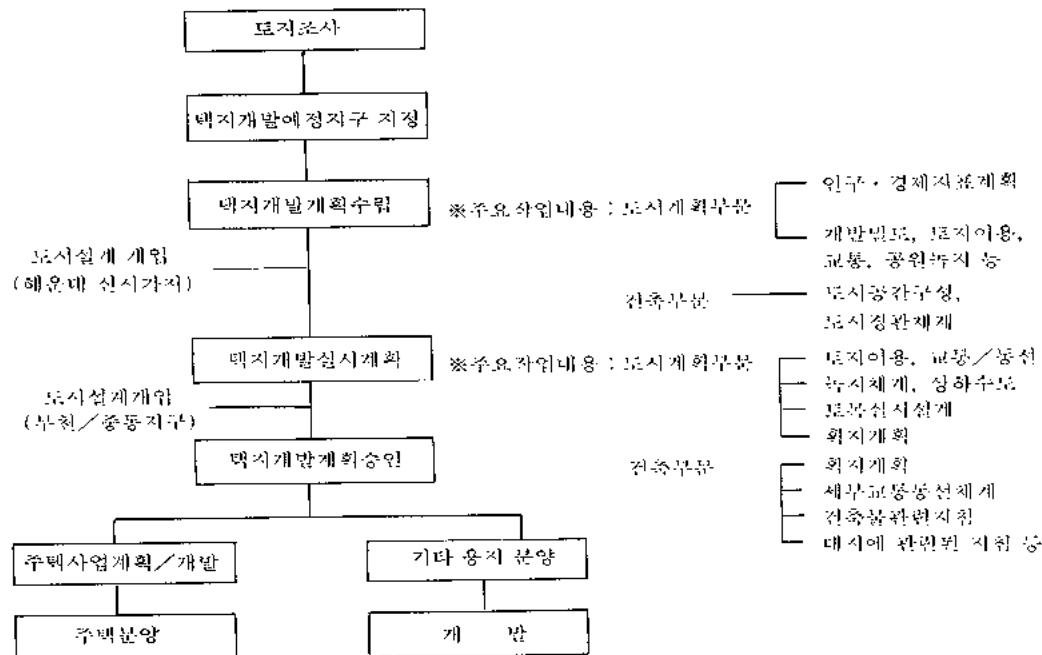
수 행 주 체	선정방법		비 고
	택지개발 용 역	도시설계 용 역	
성남/분당지구 도시설계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학술용역(국 개원)	수의계약
안양/평촌지구 도시설계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학술용역(국 개원)	수의계약
산본신도시 도시설계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주공 자체 작성 -건축사사무소 부문 용역	자제수행 김 전 애박사 (주공주택연구소)
해운대 신서 가지 도시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건축사사무소	협상설계
부천/중동지구 도시설계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건축사사무소 하청	입찰 택지개발용역에 포함
고양/화정지구 도시설계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입찰 택시개발용역에 포함
수도권 신공항 도시설계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건축사사무소	입찰

※ 문제점-현재 도시설계-상세계획제도에서 계획안의 작성 및 지침의 내용이 도시계획적 내용과 겸축적 내용으로 구분됨.

-현재와 같이 도시계획 영역에 포함된 상세계획 제도에서의 전문대행자는 도시계획 전문용역업체에 국한됨.(현재까지는 주로 개발사업 용역에 포함)

-즉,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 용역입찰을 통한 작성대행자 선정시 건축부문 전문가의 참여기회의 상실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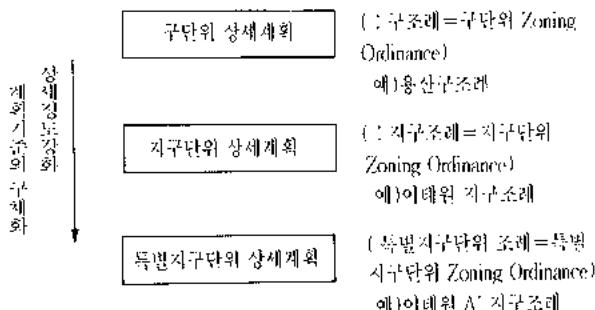
•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설계 Process의 예



4. 시행방안

1) 상세계획(Zoning Ordinance)의 세분화·구체화 시행

- 개요 : 민간건축 행위의 자율성과 예측기능한 건축행정 수행, 심의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단계적인 Zoning Ordinance(상세계획) 제도의 도입
- 방향 : 상세계획제도를 대상의 성격·도시적 Context에 따라 구체적이고, 즉지적인 계획(규제)기준을 작성하여, 기준에 부합될 경우 자동적인 건축허가 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 방안 :
 - 상세계획이 대상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계획내용이 구분 되어짐.
 - 계획단위 구분(예)



※ 상세계획 전설부 시안증 특별설계단지의 보완

- 특별설계단지는 유보 또는 현상설계 등에 의한 운영 방식이 아닌 보다 강화된(특별한 '해=3차원') 구체적 Zoning Ordinance로 관리
- 특별설계단지의 자정대상은 지하철 역세권, 중심상업지역, 대형공공시설개발지역,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 운영

• 특별설계단지의 민간개발가의 개발시 지침내용의 조정을 위한 자체 개발대안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며 그 개발 대안의 심의·승인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함.

2) 민간참여(조정)제도의 운영 방안

※ 민간조정 : 민간부문의 상세계획안의 작성과 조정을 의미

※ 역할

- 민간부문 : 개발사업 시행, 상세계획 작성
- 공공부문 : 계획안의 조정, 승인

① 민간조정의 목적

-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이익을 설계적 방법 극대화
- 개발가의 의지가 반영된 현실적 개발 대안의 체택
- Site 특성에 맞는 특수해 유추/총합설계(PUD) 유도

② 민간조정의 사유

- 상세계획 지침 내용의 조정(계획내용의 비현실성 / 특별한 민간이익의 침해)
- 개발가의 새로운 도시환경 개선의 대안 제시(민간부문의 개발 프로그램 포함)
- 특별한 Negotiation 요소의 제안시(공공시설의 설치 ↔ 인센티브)

③ 민간조정의 대상

- 일반적 상세계획이 수립된 지역(일반적인 Zoning Ordinance 적용지역)에서의 건축시
- 조정 또는 재심 신청시 재심위원회의 사전 검토도 가능

④ 조정방법

- 대안을 평가 심의 할 수 있는 전문적 조정위원회 구성
- 공청회 등의 민주적 결정과정의 도입 운영

- 협의 · 조정 가능한(Negotiation) 항목의 개발
- 현실적 인센티브 요소 개발

⑤ 민간조정의 효력

- 작성된 민간부문의 조정안(상세계획 대안)이 조정 위원회, 심의／공청회 등의 과정과
- 지자체 등의 승인시 상세계획의 변경(결정)의 효력을 갖도록 함.

※ 민간조정 체제의 From Work

3) 상세계획에서의 전문가 역할 방안

- 개요 : 상세계획의 내용의 도시계획 부문, 건축적 부문으로 구성됨으로써, 각 전문부문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 필요
- 방안 :
 - 입찰 또는 현상설계 등을 통한 작성자 선정 및 과업의 수행시 관계 전문부문이 공동참여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예, 발주시 참여 부문의 제시, 전문부문별 수행과업의 구분 및 용역 대가 기준 설정)
 - 상세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시 기 참여한 전문가의 조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 개념의 연속적 관리가 되도록 제도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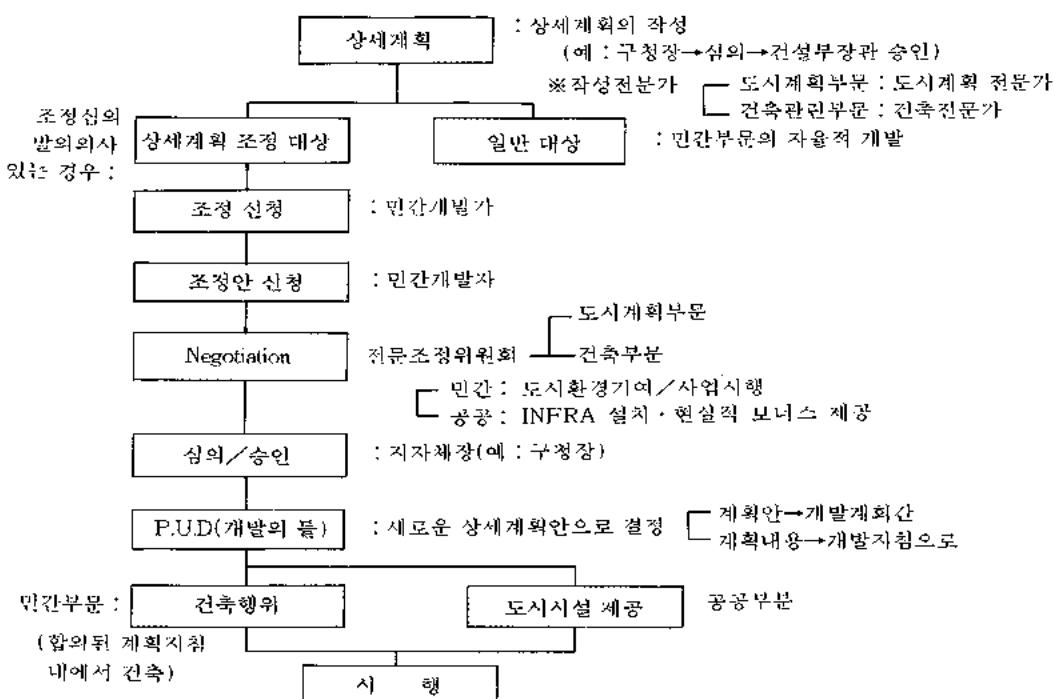
■ 제3주제

구역 · 지역 · 지구제도의 개선

1. 용도지역 · 지구제도의 연혁

토지의 이용을 제어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정비해 나가

· 민간조성 체제의 FRAME WORK



는 제반 제도적인 수단중 그 핵심은 도시계획법령상의 구역 · 지역 · 지구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는 1913년 서가지건축취체 규칙에서부터 개념적으로 활용된 이래 수차의 관계법령 제 · 개정을 통하여 지금과 같은 용도지역 13종, 용도지구 13종, 구역 6종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으며 동 지역지구제의 주요한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13 서가지건축취체규칙 제정

- 위생상 유해한 공장의 입지를 규제 : 현재의 공업 지역 개념이나 본격적인 용도 지역지구제로 보기에는 미흡

② 1934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 지역 : 주거 · 상업 · 공업(3개지역)
 - *'41 개정시 녹지지역과 혼합지역(유보적 성격)을 추가하였음
- 지구 : 풍치 · 미관 · 방화 · 풍기 · 특별(5개지구)
 - 특별지구는 공업지역내의 녹지지역 성격을 띤 용도지구임
 - 시행규칙상 고도제한 규정이 있어 사실상 고도 지구 역할을 할 수 있었음

③ 1962 도시계획법령 제정(미대위 입법)

- 지역 : 주거(주거전용, 준주거) · 상업 · 공업 · (공업전용, 준공업) · 녹지
 - *'63 법개정시 혼합지역을 부활시켰음
- 지구 : 풍치 · 미관 · 방화 · 교육 · 위생 · 공지
 - *'65 령개정시 고도 · 임항 · 업무 · 재개발지구를 추가하였음

④ 1971 도시계획법령 재정

- 지역 : 주거(주거전용, 주거), 준주거, 상업 · 공업 (공업전용, 준공업) · 녹지(생산녹지, 자연녹지)

※'73 슈개정시 공업지역을 추가하고 생산·자연녹지는 통합('76 재분리)

- 지구: 풍치·미관·방화·교육연구·공지(3종)·고도·임항·업무·보존·주차장정비·공항
- ※재개발지구는 도시재개발법에 흡수되었으며 '71~'73 법령개정으로 미관지구가 5종으로 세분되고 특정가구정비지역·자연환경보전지구 신설, '76 령개정시 아파트지구를, '77 슈개정시 시가화조정지구를 각각 신설
- 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지·도시개발예정구역
- ※'81 법개정시 시가화조정지구를 구역으로 명칭 변경·신설

⑤ 1988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 지역: 주거(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상업(근린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공업(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녹지(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 ※'92 슈 개정시, 유통상업지역 추가,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세분
- 지구: 풍치·미관(5종)·방화·교육연구·공지(3종)·고도(2종)·업무·보존·공항·주차장정비·방재·아파트·특정가구정비·임항
-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신설된 보전녹지지역에 흡수
- ※'91~'92 법령개정시 시설보호지구(3종)·도시설계지구·위락지구·자연취락지구 신설, 교육연구·업무·공지·특정가구정비·임항지구를 흡수·폐지 상세계획구역 및 광역계획구역을 신설

2. 지역·지구 및 구역별 지정현황(서울시)

2-1. 용도지역

① 개황

- 13개 지역중 주거·주거전용·준주거·상업·준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 등 7종만 지정, 활용 중
- 주거지역(일반 주거에 해당)과 자연녹지지역이 전체의 91%를 차지

② 주거지역

- 70년대초까지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확대

('91 현재)

구 분		면적(㎢)	구성비(%)
도시계획구역	총 계	708,387	100
주 거 계 열	소 계	302,962	42.7
	주 거 지 역	293,884	41.5
	주 거 전용지역	5,225	0.7
	준 주 거 지 역	3,852	0.5
상 업 계 열	상 업 지 역	21,634	3.1
공 업 계 열	준 공 업 지 역	29,084	4.1
녹 지 계 열	소 계	354,707	50.1
	자연녹지지역	350,082	49.4
	생산녹지지역	4,625	0.7

되어 왔으나,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적극적인 개발억제책에 의하여 계속 축소조정 -80년대후반 200만호주택건설, 개포·가락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임.

-준주거지역은 '76 최초 지정시에는 주로 간선도로변의 노선상업지역을 대체하여 선형으로 지정되었으나 '82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이 형성되는 중심지외 일정면적을 지정하는 형태로 전환(선형: 13개소, 면적형: 26개소)

③ 상업지역

-수도권으로의 인구·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부분 간선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되어 있음
(교통처리상 애로요인)

-강북: 강남=54:46, 강북중 종로·중구가 61% 차지하는 등 자치구별 과부족이 심한 상태임

④ 공업지역

-성동·도봉·구로·영등포 일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70년대이후 계속적인 공장 이전정책에 따라 축소조정되고 있는 상태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가화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준공업지역내 공장은 점차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공백에는 주거·상업기능이 침투하는 실정임

('91 현재)

용 도 지 구 명	개소	면적(㎢)	지 경 실 태
풍 치 지 구	24	21.48	공원주변, 그린벨트 연결 외곽부
미 관 지 구	243	22.62	주요 간선도로변
고 도 지 구	6	65.24	국회·경복궁 등 시설·문화재 주변
방 화 지 구	111	3.54	시장,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교 육 및 연 구 지 구	2	5.15	서울대·유사 주변
업 무 자 구	2	1.53	여의도·삼성동 일대
공 지 지 구	2	0.94	북악터널 양쪽 입구주변
보 존 지 구	1	5.84	군사시설 주변(강서구)
공 항 지 구	1	57.93	김포공항 일대
주 차 장 소 비 지 구	전 역	295.65	전용주거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역
방 재 지 구	-	-	마지정
아 파 트 지 구	14	12.76	강남 등 신시가지 개발된 아파트 단지
특 정 가 구 정 비 지 구	4	0.14	도심지(금문도·반도·세종·용자로)
임 항 지 구	-	-	마지정

⑤ 녹지지역

-'52 최초지정이후 '78까지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에 따라 비약적으로 증가되었으나 '78이후 신시가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타용도지역으로 점차 전용되는 추세임
-시면적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보지 역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2-2 용도지구

① 개황

- '92 개정 시행령에서 대폭 변경된 용도지구제에 따른 지구정비실적은 미미하므로 종전 14종의 지구중 병재·임항지구를 제한 12종의 지구를 지정·운영중임

※ 도시설계지구는 기존 건축법상의 구역 16개소를 용도지구로 전환자정 추진중임

- 교육 및 연구·업무·공지·보존지구 등은 지정면적 기타 효과 등이 미미한 실정임

② 풍치지구

- 도시의 자연풍치 및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강변·고지대 및 주요 간선도로의 가시권 20개소와 도시연접화 방지를 위한 4개소 등 총 24개소 21.48km² 지정·운영

-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구내 필지가 대개 소규모이고 영세주택이 밀집하여 현실적으로는 지구유지가 곤란함

③ 미관지구

- 도시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5종으로 구분하여 총 243개소 22.62km² 지정·운영

· 제1종: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 도심·부도심 지역 29개소 4.07km²

· 제2종: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준주거 지역 77개소 5.56km²

· 제3종: 관광상 중요한 도로연변 및 시가지 일대 25개소 3.57km²

· 제4종: 전통가옥·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해 105개소 7.83km²

· 제5종: 기타 미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7개소 1.23m²

- 지정형태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따라 지정된 노선형이 230개소, 16.47km²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집단형으로 지정된 경우는 13개소 5.79km²에 불과

※ 노선형의 경우에는 지정대상 도로의 폭원과 지정 폭의 기준이 정해져 있음.

(1·2종: 25m도로에 25m폭, 3종: 15m도로에 20m폭 등)

④ 고도지구

- 특정 시설의 보호 또는 천연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용도지구로서 국회·경복궁·김포공항·법원·성곽 등 6개소 65.24km²를 지정·운영 중

※ 도심토지의 고도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최저고도 지구는 미지정

3. 용도지역지구제와 건축물의 행위제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은 건축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분류하면 건축물의 형태·규모 및 밀도제한과 건축물의 용

도 제한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형태·규모 및 밀도의 제한

이는 건축물의 물리적인 성장을 제한하는 분야로서 건축물의 크기·구조·볼륨 등을 다각적으로 조절하여 도시환경의 정비,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지원 등을 꾀하는 것이다.

① 밀도제한: 용도지역지구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을 정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 밀도를 일정수준으로 제한(용도지역, 풍치·미관·공지·아파트지구 등)

② 규모제한: 건축물의 층수·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축면적 등의 상하한선을 정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용도지역, 풍치·미관·고도지구 등)

③ 형태제한: 건축물의 구조·모양·색채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형태를 정비·조절(풍치·미관·방화·아파트지구 등)

3-2. 용도제한

용도지역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용도 순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지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지역지구 지정취지에 맞게 제한하고 있다.

동 용도제한은 용도지역, 즉 당해 지역이 주거계열인지, 상업계열인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기본적인 틀이 결정되지만 거의 모든 용도지구에 의해서도 부가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 고도·방화·방재지구 등 건축물의 규모·형태제한이 주목적인 용도지구는 제외

4. 제도개선제안-실무 건축행정의 입장에서

일선 건축행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점·시민의 불편, 부조리, 도시환경의 난맥상 등은 사실상 제도적인 문제점 즉 제도화 현실의 괴리, 제도자체의 불합리성 등에만 기인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운영상의 문제점 즉 운영주체의 자질, 행정환경 등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도시·건축법령 및 제도만을 다루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본 주제에서 일탈할 우려가 있어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용도지역지구제와 관련하여 실무·건축행정에서 파악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은 크게 토지의 용도 및 건축물의 용도분야로 나누어 지는데 토지의 용도문제는 결국 용도지역지구제의 개편과 연결되며 건축물의 용도문제는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개편을 요하게 된다.

4-1. 용도지역지구 체제의 개편

현행 용도지역지구제는 다양한 도시토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운영상의 경직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용도지역의 골격은 유지한다 할지라도 용도지구는 자치단체별로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

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면적상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녹지개념과 유보적 개념으로 분리하여 보다 현실적인 제도운영을 기하고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현재의 획일적인 행위제한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 용도지구제 보완방안

-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부지구 예지 : 방화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등
- 관계법령에서의 유사 용도지구를 일괄흡수 : 문화재보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토지관련 공문에 종합적으로 표기 외무화
- 특수지구 개념의 도입 : 상세계획 또는 도시 설계와 같은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자치구 건축조례로써 조문형식의 개발지침(규제 및 유도책 병행)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가칭 특수지구제도를 도입→ 개발교착 상태를 타개

② 행위제한 방식의 개선

- 용도지역지구별 규모·밀도제한시 용도 순용도에 따라 차등규제
- 예) 주거지역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에 대한 보너스를 인정하거나 내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
- 용도지역·지구별로 가능·불가능 용도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한
→ 단일시설의 용도별 규모상한선을 폭넓게 도입

③ 용도지역의 합리적 지정

- 민선 자치단체장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는 도시계획상의 보다 많은 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전망이므로 세수증대와 민원해결을 노린 용도지역의 무분별한 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를 들면 용도지역 배분율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

4-2.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개편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는 32종 세분된 용도는 무려 100종 가까이 분류되어 있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대량으로 유발하고 있고 용도지역지구제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부속용도의 인정에 매우 인색하고 관련 영업허가시 무조건 특정용도명의 명시를 강요하여 통상의 영업행위가 대부분 건축법상 용도제한대상에 둘게 되는 무리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건축물대상 변경·정정 등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용도분류 방식은 용도지역지구제(Zoning Regulation)에 적용할 분류방식과 개별 건축기준(Building Code)에 적용할 분류방식을 혼용하고 있어 제도상 불합리는 물론,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는 Zoning 과 Building에 적용할 분류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되 현실적으로 제도운영상 꼭

필요한 분류만 하도록 대폭 축소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건축물 용도의 부속용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① Zoning용 용도분류

-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에 적용되는 분류체계이므로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와 당해 시설의 인구·교통유발정도 등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별로 5~7종의 대분류와 대분류별 3~4종의 중분류로써 용도지역지구제의 운영이 가능
- 부속용도 개념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에 해당하므로 토지형질변경 절차 및 영업허가 등과 통합하여 하나의 개발허가로 통합·운영할 수 있음

〈용도분류 예〉

- 주거용시설 : 저밀도주택, 중밀도주택, 고밀도주택, 근린생활시설
- 상업용시설 :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공업용시설 : 공장, 창고
- 문교사회용시설 :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병원, 종교시설
- 농림어업용시설 : 축사·재배사
- 기타 특수시설 : 위험물저장, 운수시설, 분뇨쓰레기 시설, 발전소 기타

→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할 건축물

② Building용 용도분류

- 건축물의 구조적·방재적 안전과 거주자의 위생상 필요한 세부 건축기준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분류체계이므로 건축물의 화재위험, 피난상 난이도, 적재하중 등에 따라 수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건축기준 운영
- 부속용도 개념을 인정할 수 없음
- 당해 건축물의 구조적·방재적 안전여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확인절차를 민간화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동 확인절차는 착공신고로 갈음될 수 있을 것임

〈용도분류 예〉

- 위험시설 : 위험물·가연성물질 등을 취급하는 시설
- 다중이용시설 : 공연장·관람집회시설·백화점 등 피난하중이 높은 시설
- 특수시설 : 병원 등 피난상황이 특수한 시설
- 일반시설 : 업무시설 등 평균적인 적재·피난하중이 적용되는 시설
- 주거시설 및 기타



기획연재

50년대 건축실무는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30년대 식민지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시작된 한국인 건축가들의 실무는 해방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격동 속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남기지 못하였다. 50년대 중반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런 과거의 축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의 사막과 다름없었다. 이런 시기에 이루어진 50년대의 뛰어난 건축은 어떻게 설명 가능할 것인가? 전화의 복구가 시급한 시기였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뛰어넘은 것은 건축가들의 정열과 우수함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50년대의 건축실무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시기에 건축실무의 사회화가 일어났으며 아직까지도 그 영향권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다.

건축실무의 역사(5)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5)
-50년대의 건축실무-

宋 律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카반, 공학박사
by Song, Yul

1. 건축실무의 발전

해방전까지 건축관련 대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등공업학교를 대학교로 바꾼 서울대와 한양대를 필두로 50년대는 대학의 건축(공)학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56년까지 건축관련 학과가 개설된 곳은 다음과 같다."

한양공학대학 건축공학과(47년 7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46년 8월)

홍익대학 건축미술과(49년 6월)

전남대학교 토건공학과(51년 10월)

청구대학 건축공학과(52년 4월)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52년 10월)

부산대학교 토건공학과(53년 4월)

충남대학교 건축학과(54년 4월)

전후복구사업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과 주택이 재건되면서 사회적으로 건축사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많은 설계사무소들이 전후 본격적으로 설립된다.

얼마만큼의 사무소가 생겼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건축』지의 광고와 일반 잡지의 광고로 개략적인 설계사무소들을 파악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일반잡지의 광고에 나타난 설계사무소의 개요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건축전문지 광고에 나타난 설계사무소 외에 이 시기에 활동한 설계사무소들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신신 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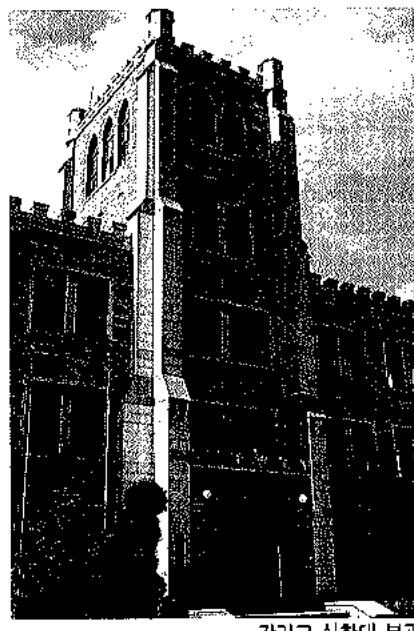
1) 건국기념사업회, 『대한민국 건국 10년사』, 1966년 5월 27일; 난도는 해당 대학교 또는 공과대학의 설립년도.

(표 5-6) 60년 이전 설립된 '서울의 유명 건축설계사무소²⁾

소개사무명	소장	창립일과 작품
경석구건축설계사무소	경석구	1945. 3. 8
(주)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배기형	46. 6. 1
구리사 건축설계사무소	김충득	50년, 52년 계량극장
고려건축설계사무소	강 윤	32년 4월
국보건설단	강봉진	60년 3월
국일건축연구소	임주남	49년 8월
김중업건축연구소	김중업	56년 3월 1일
남일건축연구소	이문복	50년 4월
대한건축기술공사	정향철	60년 5월 9일
동방건축연구소	이백길	60년 3월 3일
나상진건축설계사무소	나상진	56년 6월
문유현전기설계사무소	문유현	53년
신건축설계사무소	신현수	52년 5월
용산건축사무소	이중문	56년 6월 15일
용일건설사	이종억	45년 8월
황해건설사	송관식	53년 1월
이윤형건축사사무소	이윤형	59년 4월
이병근건축설계사무소	이병근	48년 3월
자유건축연구소	엄덕문	56년 8월
제네랄엔지니어링	한창진	60년 7월
종합건축연구소	강진성	53년 9월 1일
종합건축설계사무소	이승우	
종안건축기술공사	이종희	56한국마사57국회아파트 59대한제지공업주식회사
한양건축연구소	현종락	60년 10월 대구센漯

(표 5-7) 「건축」(58년과 60년)의 광고에 실린 설계사무소

강명구건축연구소	이희태 건축연구소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배기형)	종합건축연구소(김정수)
김중업건축연구소	충남건축설계사무소(최용현)
김태식건축연구소	배한구건축설계사무소(배한구)
신건축문화연구소(정인국)	무예건축연구소(이광노)



감리교 신학대 본관

(표 5-8) 건축사(1954-60년 사이 설계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³⁾

건축사	출신학교	졸업년도	설계주체	54년에서 60년사이 설계한 건축물
강 윤 (1899~?)	대관공업	1923	고려건축설계사무소	이대강당(56) 한국신학대학(57) 경신고(57)
이천승 (1910~1922)	경성고공	1932	종합건축(53)	신선백화점(56) 국체국장(57) 우남회관(57)
김경환 (1912~1988)	상해대	1940	이화대건설과장(53)	이대미래(58) 이대부속병원(61)
김재철 (1913~이민)	경성고공	1936	사무소설	YWCA(58) 동립산업(59)
차경순 (1914~사망)	소화공과	1936		중앙대약대(56) 중앙대도서관 (59)
김희준 (1915~1993)	경성고공	1937	서울대교수(53)	서울농대실험동(57) 서울사대 과학관 및(58) 배다
정인국 (1916~1975)	조도전공학부	1942	신건축(54)	인하대기공관(55) 홍대본관(57) 관상대(60)
김태식 (1917~)	일본대친문부	1940	김태식설계사무소	국영체육방송국(57) 경기고화 학관(60)
강명구 (1917~)	조도전고공	1940	설계자영	계열빌딩(54) 서울농대기숙사 (57) 부산지방해무
박재재 (1917~1981)	대관관석공	1942	한양대교수(46)	남대문시장(55) 한양대강당(58) 한양대공대(57)
배기형 (1918~1979)	부산공업		구조사	제일체당(53) 유네스코회관(60)
김철수 (1919~1985)	경성고공	1941	종합건축(53)	성진여중고화학관(58) 성모병원(58) YMCA(61)
김한섭 (1920~1990)	일본대학고공	1941		광주중앙극장(56) 광주YWCA (58) 광주용이빌딩(57)
송민구 (1920~)	경성고공	1941	오성건축연구소	동국대본관과학관(56.8)
김중업 (1922~1988)	황변고공	1942	김중업건축연구소	부산대(56) 건대도서관(57) 드 라마센타(59) 서강
나상진 (1923~1973)	전주공업학교	1940	설계사무소개소(52)	그랜드호텔(57) 유숙(59) 병동 성당신부관(60)
정경우 (1924~)	평양공업대학	1950	청구대학출입(57)	국세청(56) 경북대법대(58) 경 북여상(57)
이희태 (1925~1981)	경성공립직업	1942	이희태건축연구소	해화동상당(55) 베트로호텔(60) 결두산성당(67)
나상기 (1927~1988)	평양공업대학	1950		
이광노 (1928~)	서울공대	1951	무예건축연구소(56)	유엔전우탑(52) 대한극장(55) 행촌동(56) 아태네



성모병원

2)『대서울백과대판』, 동보출판사, 1970. 6. 이 자료는 교수 겸업금지가 취해진 이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50년대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활성화를 하다가 이후 교수로 돌아선 건축가들이 빠져있다.

3)이 외에 공군 시설감을 하다 설계사무소를 개업하여 성균관대학교 과학관을 설계한 김종식이 있다. 구조 전문인 건축가들로 김세연 (경성고공(20): 1897-1975), 김형길(경성고공토목과, 동경공대), 함성권(1918-, 와세다 대공학부 중퇴(43) 한양대졸업(61) 동아토목주식(47)한양대교수 (52) 남대문시장, 국립정신병원, 대한증券공사평로공장, 이대강당(김재철지붕트러스), 김창립, 이해성(한양대) 등이 있다.

이 자료로 보면 60년 이전의 설계사무소는 최소한 서울에만 30여개소 이상이 있었으며 이 중 소수의 설계사무소만이 건축 잡지나 서적에 소개된 건축가와 그 설계사무소인 것을 알 수 있다. 설계사무소의 성립은 설계라는 분야가 전문화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지와 건축전문지에서 개인 건축가를 특집으로 다룬 기사들, 그리고 건축사 문헌들을 통해 이 기간 중 설계한 작품이 있는 건축가는 다음과 같다. 결국 이 시기 건축사는 건축가와 건축작품이라는 연관하에서 연구하고자 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서술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당시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건축가들로 건축단체 활동 등을 통해 '건축계'라고 하는 핵심을 구성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 직후 대표적인 설계사무소는 종합건축(53)과 신건축연구소(52?)가 있었다. 50년대 중반들어서는 신건축연구소에서 배 기형이 나와 구조사를 만들었고 무애건축연구소가 생긴다. 또한 유럽에서 돌아온 김 중업이 56년 김중업건축연구소를 시작한다. 이들 설계사무소들은 동시대 다른 설계사무소에 비해 규모가 크고 활동도 활성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다 의의있는 것은 이들 설계사무소들이 이후 활동하게 되는 건축가들을 배출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 사무소와 건축가들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①종합건축연구소 '53

종합건축연구소는 1953년 이천승과 김정수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설계사무소로 당시 최대의 설계조직이었다. 건축물의 설계자는 종합의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종합건축연구소는 원래 학회가 주도해서 만든 설계사무소였다.⁴⁾ 학회에 설계부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학회로 의뢰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것이다. 동래조폐공사, 대한문교시직주식회사 등이 학회차원에서 설계된 건물이었다. 종합건축연구소 설립시에 교통부에서 제도판이나 기구를 들여와 사무소를 만들었다. 이천승이 실무를 담당하였는



인하대 기공관

(표 5-9) 종합건축연구소의 50년대 작품

이천승 주도시대의 작품(53~57)	김정수 주도 시대의 작품(58~60)
1953 고려방직공장	1958 성신여자 중·고등학교 과학관
1955 3월 이화대 강당 현상 1등 당선	1958 11월 공보실 영화과
1955 공군본부청사	1958 수도여사대 교사
1956 신신백화점	1958 성모병원설계
1957 한일은행 광교지점	1959 조홍은행 남대문
1957 우남회관	1959 웰치 감독 기념강당 10월
1957 9월 국제극장	1959 정신여중고 교사
1958 진영여고 강당 삼일당	1959 감리교 신학대학 여자 기숙사 4월
	1960 감리교 신학대학 본관 12월
	1960 YMCA
	1960 장충체육관

데 이후에 이천승이 독자적으로 종합을 맡게 되었다.⁵⁾ 김정수는 건설회사를 하다 이후 종합에 가담했다.

성모병원, 정신여중고 등은 김정수의 이름으로 우남회관, 국제극장은 이천승의 이름으로 주로 소개된다. 58년부터 김정수가 종합을 실질적으로 이끌게 된 것⁶⁾과 병행하여 이해하면 58년 이전은 이천승이 주도가 되었고 이후는 김정수가 주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신신백화점, 국제극장, 성모병원, 정신여중고 과학관, 조홍은행 남대문지점 모두 일관된 특성을 보인다. 즉 철제 멀리온과 유리로 이루어진 입면이라는 점과 신기술(신신백화점의 철골트러스, 국제극장의 코펜하겐 리브, 성모병원과 YMCA의 알루미늄 멀리온, 장충체육관 등)의 적극적인 도입이라는 측면이 종합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입면재료로 철재 멀리언과 유리외에도 한일은행 광교지점, 정신여중고 과학관, 감리교신학대학에는 연석을 사용한 예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김정수는 57년 미네소타 대학원을



미우만 백화점

4)이 광노 대답자료.

5)논자와 이 광노 대답

6)『종합건축 1953- 1988』, 창사 35주년 기념작품집, 18쪽

7)논자와 이 광노 대답

수료하고 돌아와 인석이라는 제료로 한 때 사업을 하였다.⁸⁾ 1970년 아스파문화센터를 계기로 이승우로 종합의 실질적인 권한이 임되며 작품으로도 이전의 철제 벌리온과 유리, 그리고 P.C판넬을 이용한 조소적 입면에서 타일 마감의 경향으로 전환된다.

② 신건축문화연구소 '54 (김희춘, 정인국, 배기형, 함성권, 김창집, 엄덕문)

종합이 설계경기의 대부분을 독점하였고 이에 대한 견제로 신건축문화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실제로 종합이 참가한 설계경기에 이 천승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천승이 이를 인정한다.

“종합건축에서 동대문 시장, 공군본부, 대구시청사 등 모든 현상설계를 따냈지요. 그 당시 내가 심사위원으로 있어서 말이 많았지요.”⁹⁾

58년 건축학회지 광고에 신건축의 소장은 정인국으로 나온 것 그리고 신건축에서 설계한 건축물 대부분이 정인국의 이름으로 소개된 점 등으로 미루어 신건축을 정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김창집, 함성권은 구조 전공이었고 엄덕문은 정인국의 조도전 후배였다. 물론 정인국은 공학부, 엄덕문은 교공 출신이었다.

(표 5-10) 신건축(정인국)의 작품목록

년도	건물명	년도	건물명
1955	6월 인하대 기공관	1960	국립중앙관상대 9월
1955	인하공대기숙사	1959	미우만 백화점
1959	충비주택	1958	서울 중부시장
1957	8월 홍익대 본관	1955	공군사관학교

③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53-4

신건축에 있던 배기형이 독자적으로 설계사무소를 개



유네스코 회관

설한 것이 구조사로 주로 철골구조 위주의 건축물을 많이 하였다. 배기형은 부산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최대의 제철공장인 팔번제철소의 건축설계부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해방후 공장 건축에서 일인자로 인정되었다. 부산 피난 시절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부산 제일제당을 설계하였고 삼성재벌에서 인수한 한일은행 건물도 많이 설계하였다.¹⁰⁾

(표 5-11) 구조사의 작품목록

년도	건물명	년도	건물명
1953	태창방직공장(반도호텔보수)	1957	파리마운트극장
1953	제일제당공장	1958	피카니리 극장
1953	대한중공업연공장(인천)	1958	공군사관학교도서관
1954	제일모직대구공장	1960-9	유네스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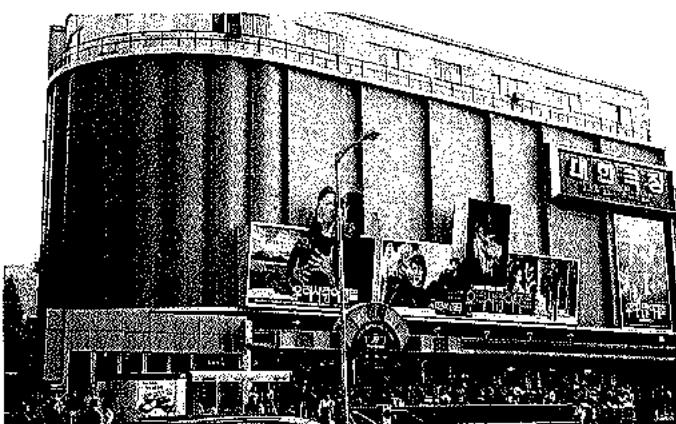
④ 무애건축연구소 '55

이광노는 50년대 건축가들 중 최연소로 6.25후 금자스림개 건축계에 등장하였다. 52년 국군충혼탑과 유엔전우탑 현상설계에서 1등을(2등 김중업) 차지한 이후 왕성한 작품을 남겼다.

⑤ 김중업 건축연구소

김중업은 52-56년 르꼬르뷔지에 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한 후 돌아와 김중업 건축연구소를 차리고 본격적인 실무활동을 전개 한다. 42년 횡단고공을 졸업한 후 마쓰다 하라다 사무소에 입소하였고 44년 귀국하여 평남도 청에서 기수로 있다가 그만두고 조선주택영단을 거쳐 조선비행기 공장에 잠시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후 서문여고에 재학하다가 월남하여 24군단 사령부 설계실에서 교회, 식당 등을 설계하고 47년에는 서울대 전임강사로 활동하였다. 전쟁 전까지는 알려진 작품이 없다. 월남하기 전에는 '공청'이라는 공산청년대장을 하면서 '건축동맹'을 만들고 연구부장으로 활동하였다.¹¹⁾ 활동이 부진한 대신 서울대 강의나 신건축가협단을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 김중업의 작품은 르꼬르뷔지에의 영향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1952년에서 56년 사이의 그 사건은 너무도 큰 것이었



대한극장

8) 원로와의 대화, 이 천승, 그 지나온 건축 50년, 『건축가』 805-6

9) 『崇山 함 성권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37쪽

10) 김중업 건축가로서의 회상과 전망, 『무임』, 8(05-6) 김정동과의 대담

(표 5-12) 이광노의 작품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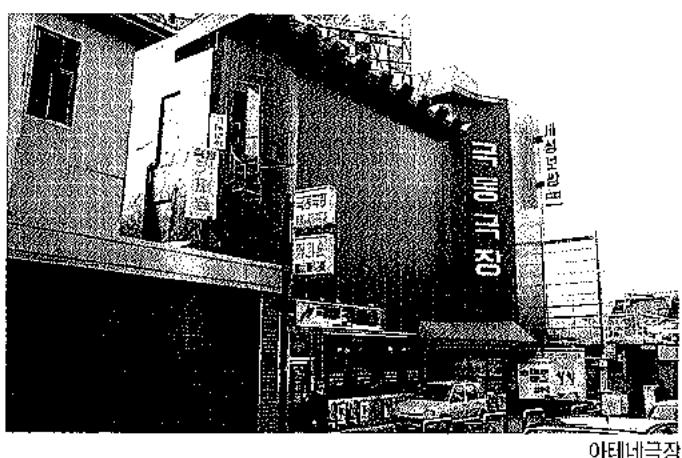
년도	건물명	년도	건물명
1949	대구사청사 현상 1동당선	1958	경상북도 청사 현상 3동
1952	유엔 전우팔 전립 현상설계	1959	무학여중 체육관
1955	대한국장 기본설계	1959	한독약품 공업주식회사 본관
1955	서울시 의사당 현상계 1등	1959	유네스코회관 현상 특선
1956	충주비료 외국인 사택 및 주택 현상 2등	1959	풍문여고 교실
1956	남대문 교회 현상 3동 당선	1960	아테네극장(현 국립극장)
1956	연세대학교 대강당 기본설계	1960	농림부 강릉 영림서
1956	한미제단 행촌동 연립, 아파트	1960	서울특별시도살장 5월
1956	한미제단 시범주택	1960-62	국립 가축 위생 연구소
1957	국전 건축부 특선	1959-64	무학여고 특별교실
1958	법양화학공업주식회사 (현 일성신약)	1958-64	경복고등학교 대강당
1958	한성 고등학교 교사, 마포구 아현동	1958-59	한독약품 계약공장
1958	서울특별시 제1도살장, 마장동		

습니다... 부산대, 서강대 본관 등에서는 로꼬르뷔지에
에게서 한 발자욱도 도망할 수 없었던 로꼬르뷔지에의
언어를 적설적으로 옮긴 것이라고 봐요.”¹¹⁾

조직적인 사무소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개인건축가의
실무활동도 두드러졌다.

(표 5-13) 김종업의 작품 목록

년도	건물명	년도	건물명
1952	충무당기념사업회 및 대한체육회	1958	미 제5공군 조종사 구락부
1956	부산대학교 정문 및 분관	1959	중앙공업연구소
1956	전국대학 도서관	1959	원자력원구소
1957	한국은행 신관	1959	경주시립도서관
1957	인천지방 해부청사	1959	드라마센터
1957	부산대분관	1959	경희대학교 도서관
1957	명보극장	1960	유유산업 공장
1957	전국대도서관	1960	고려인삼공장
1957	목호지방 해부청사	1960	서강대학본관
1958	수도의사대 기숙사	1960	서백센타계획안
1956	필립홀		



아테네극장

¹¹⁾ 『공간』, 803, 승호상과의 대담¹²⁾ 문자와 김태식 대담 자료¹³⁾ 김윤기, 「창간사」, 『건축』, 창간호, 이후 이광노, 이건영이 I.M. Pei사무소에 감

① 김태식 설계사무소 '45

김태식은 해방직후 전쟁 전까지 가장 왕성한 작품활동을 한 건축가였다. 그 기간 중의 대부분의 학교를 김태식이 설계하였다. 이는 학교들이 미국 원조 자금에 의해 지어지는 것이었고 해방직후 김태식은 미군공사의 경험으로 미국 원조 공사에 필요한 서류양식이나 자재의 칫수 사용법들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었다.¹²⁾ 전쟁 후 60년대 말까지 김태식은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그 중 50년대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김태식의 작품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수직 수평의 깔끔한 구성이 그것이다. 석탄공사, 경기고 과학관이 전형적인 김태식의 경향을 보이는 작품이다.

(표 5-14) 김태식의 50년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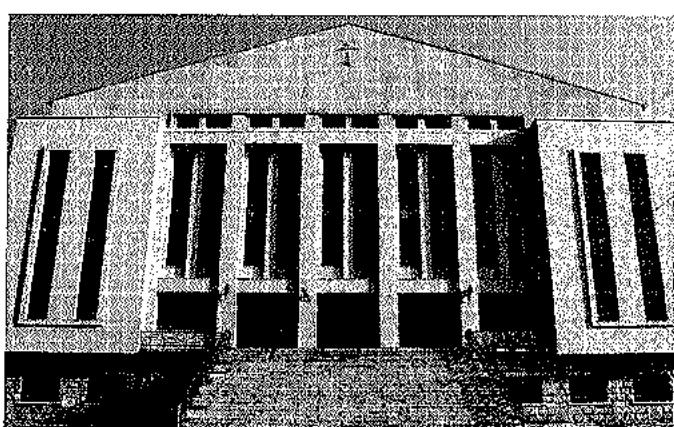
년도	건물명	년도	건물명
1955	덕성여고	1958	덕성여대 특별교사
1956	김태식 디자인 안국동	1954	성균관대학교 본관
1957	11월 제1방송국	1957	상명여중 고교사
1958	7월 덕성여대 특별교사	1955	성서공회관
1958	영창빌딩	1957	제1방송국
1959	충무빌딩	1959	성균관대 분리파대학
1959	무교빌딩	1960	석탄공사
		1960	경기고 과학관

② 이희태건축연구소 '46

이희태는 해방 직후부터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였다. 6. 25 전까지는 성낙천과 함께 신흥건축사무소를 한 것으로 이미 전 징에서 살펴 본 바가 있다. 그러나 이희태의 작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952년 명수대 천주교 성당이 처음이다.

③ 강명구 46'

강명구는 1940년 조도전 고공을 졸업하고 41년 다전공무소에 잠시 근무하다가 43년 귀국하여 조선주택영단 설계과에 근무하였다. 46년부터 설계사무소를 시작하였다. 전쟁후 미국의 한국 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4년 강명구와 유덕호가 미국에 파견된다.¹³⁾ 54년 12월 13일자 뉴욕



연세대 강당

(표 5-15) 이희태의 50년대 작품

년도	건물명	년도	건물명
1952	명주대 천주교 성당(파파)	1957	정준태 병원
1953	중동 중고등학교 본관	1957	해성 중학교
1953	경소아파	1957	전주 천주여자기숙사
1953	동아제약 주식회사 및 공장 신축 설계	1957	전주 천주교구 주교관
1954	인천 송림동 천주교회	1958	아현동 천주교회
1954	인천 박문여중고 본관	1958	공보부 남양 500kW 송신소
1955	혜화동 천주교 성당	1958	계성여고 교사
1955	진해 천주교 성당	1958	설악산 신종사 일부 복원
1955	경주 천주교 성당	1959	통계국 L.M.B. 청사
1956	제동 빌딩	1959	자치회관 신축 설계
1956	계성여자중고 본관	1959	계성여중고 특별 교실
1956	공보부 등록부 산송신소	1960	서강대학교 신부관
1956	신안과 병원	1960	메트로 호텔 11월

(표 5-16) 강명구의 50년대 작품

년도	건물명	년도	건물명
1954	종로 2가 13 계열 빌딩		
1957	12월 서울 농대 기숙사 및 식당		
1959	부산 지방 해무청사 5월		

헤럴드 트리뷴에는 ‘이곳에서 남한을 위해 1500달러의 집에 한 달에 5달러 짜리 집을 설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강명구와 유덕호가 작업하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었다.

④ 나상진

나상진은 1940년 전주공업학교를 졸업하고 42년 녹도조에 입사하였다. 해방 후에는 대양토건에 있다가 52년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다.¹⁴⁾ 60년 이후의 작품으로는 부산

(표 5-17) 나상진의 50년대 작품

년도	건물명	년도	건물명
1957	그랜드 호텔	1960	명동 성당 신부관
1959	유승코리아 12월	1960	대구 파티마 병원
1959	후암동 성당	1960	대구 수녀원
1959	돈암동 수녀원 및 신부관		



농림부 강릉 영림서

초량 전화국(64), 명동 한일관(65), 정부 종합 청사 현상 설계 당선(67), 서울 컨트리 클럽 하우스(68) 등이 있다.

⑤ 기타 건축가

50년대 설계 작품을 남긴 기타 건축가들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 강 윤

1932 이화대학 강당

1936 태화기독교 사회관

1947 조선감리교 신축공사

1952 안양보육원

1959 성루가 병원

1957 경신고등학교

1956 이화여대 강당

1957 ? 한국신학대학

· 김희춘

1957 서울 농대 실험동

1959 서울 농대 실험실 및 강당

1960 12월 서울 의대 부속

간호고등기술학교 기숙사

1958 서울 공대 기숙사

1959 서울 대 의과대학 여자 기술사

1957 서울 대 공과대학 기술사

1959 국회 의사당 현상 설계 당선안

1960 한일 나일론 안양 공장

1956 서울 대 농대 교사 및 강당

1958 서울 대 사대 과학관 및 도서관

1960-62 성 베다관

· 정경운

1956 국세청

1958 경북 대 법대

1957 경북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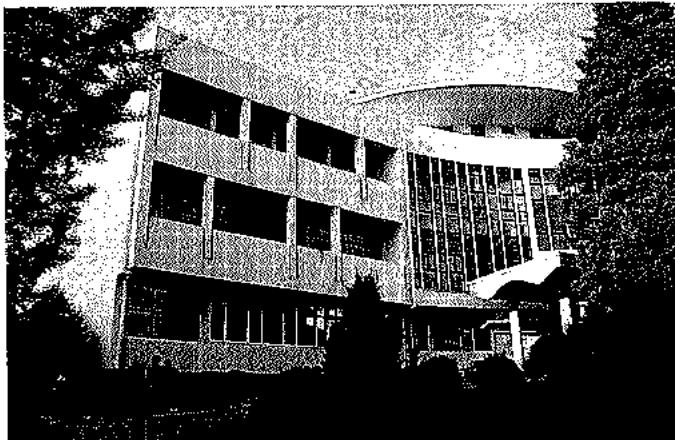
· 김한섭

1957-59 광주 사범 부속 국민학교

1957-59 광주 사범 대학

1956 광주 중앙 극장

1957 광주 용아 빌딩



건국대 도서관

14) 「나 상진 축보특집」, 『공간』 7304.

1958 광주 YWCA회관
 1960 서광주 세부서
 1960 전남의대 간호원 기숙사
 1960 광주 중앙여자중 고등학교
 · 차경순
 1956 5월 중앙대학교 약대 교사
 1959 9월 중앙대학교 도서관
 · 송민구
 1956 동국대학교 본관
 1959 동국대 과학관
 1956 12월 동국대본관 과학관
 · 박동진
 1955 고대 문리대 실험실
 1955 남대문 교회
 1955 고대 농대 본관

건축사사무소나 개인건축가들의 활동 이외에도 기관의 설계조직에서 건축가들의 실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관공서 설계조직으로는 교통부(운수부)와 공군, 그리고 각 관 조직의 영선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였다. 관공서 설계조직은 조직의 특성 상 민간의 설계사무소 보다는 설계되는 형태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통부에서 설계한 건물들은 민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건물과 다를 바가 없었다.

관공서 설계조직

1954 7월 불국사 철도호텔
 1959 8월 천안역사
 1960 김포공항 1월 1차 준공
 1959 8월 대전 역사
 1959 9월 청량리 역사
 1960 온양 온천 호텔
 1954 12월 서울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1952 12월 曾坪葉煙草재건조장
 교통부 시설국 건축과
 교통부 시설국 건축과(김용태)
 교통부 시설국 건축과(신국범)
 교통부 시설국 건축과(이상순)
 운수부 시설국 건축과(김홍균)
 운수부 시설국 건축과(진익상)
 총무처 경리국 영선과
 천매청 영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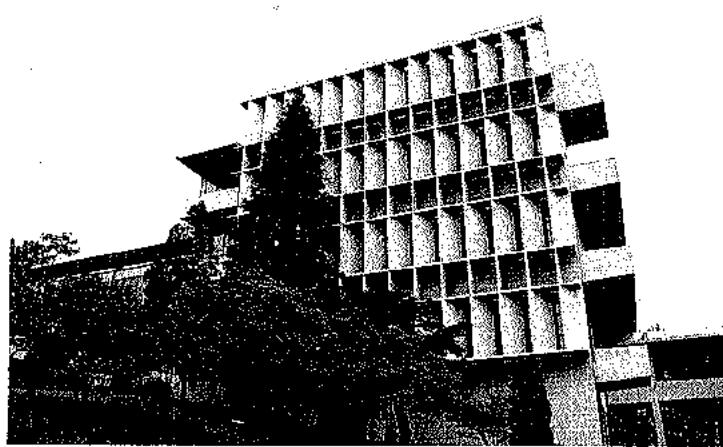
기타기관(학교, 은행 등)

· 이화여대(김경환)¹⁵⁾
 1954-61 이화 부속 국민학교
 1956-62 이화 부속 중고교
 1958 이화부속유치원
 1955-6 학생관
 1955-6 대강당
 1957 도서관
 1958-9 기숙사 신관
 1958-60 미술관
 1960-64 한미 과학관
 1964-65 체육관 신관
 1958 이화교
 1965-7 신 교육관
 1957 동대문병원
 · 한양대(박학재)¹⁶⁾
 1957 한양공대 제1이공학관
 1958 한양대학교 강당, 도서관
 1955 남대문시장
 1952 총무공기념사업 건설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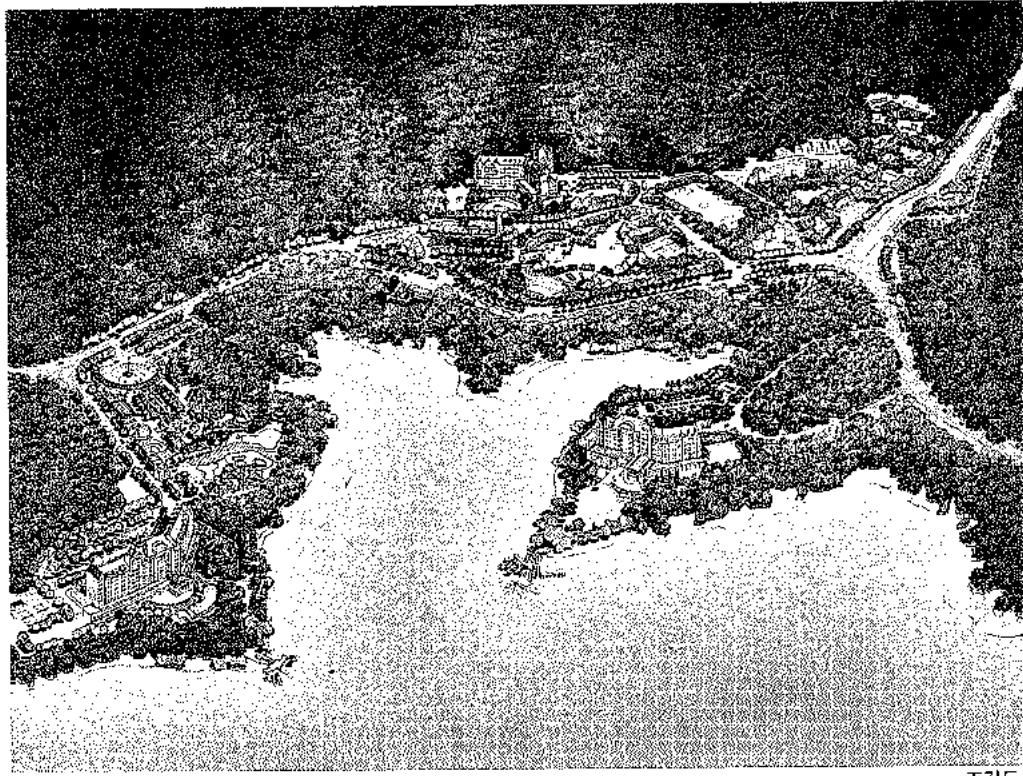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명보극장



서강대 본관



조강도

국민연금종합휴양시설

National Annuity Recreation Complex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과 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대국민사회보장제도의 능률적 수행 등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30일, 국민연금종합휴양시설 건립 현상설계공모를 마감,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에서 당선작으로는 창우정종합건축안이 선정되었고, 우수작으로는 동인·우양건축안과 선한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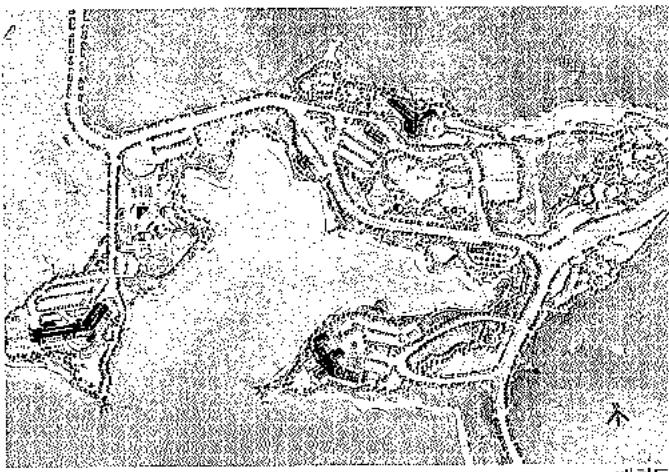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중 동인·우양건축안을 살펴본다.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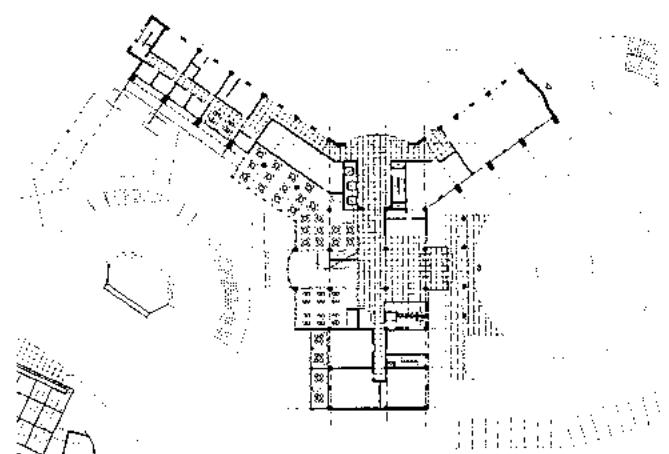
창우정 종합건축 (대표 : 오희영)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청원읍 교리일원
지역 / 도시계획의 지역
대지면적 / 332,917㎡
건축면적 / 12,327㎡
연면적 / 55,739㎡
규모 / 실버호텔-자하1층, 자상1층
국민연금호텔-자하1층, 자상8층
기족호텔-자하1층, 자상8층
식당-자하1층, 자상1층
상가-자상3층

계획팀 / Design Principal 김종혁
Project Designer 이용구, 배영준
Assistant Designer 윤재훈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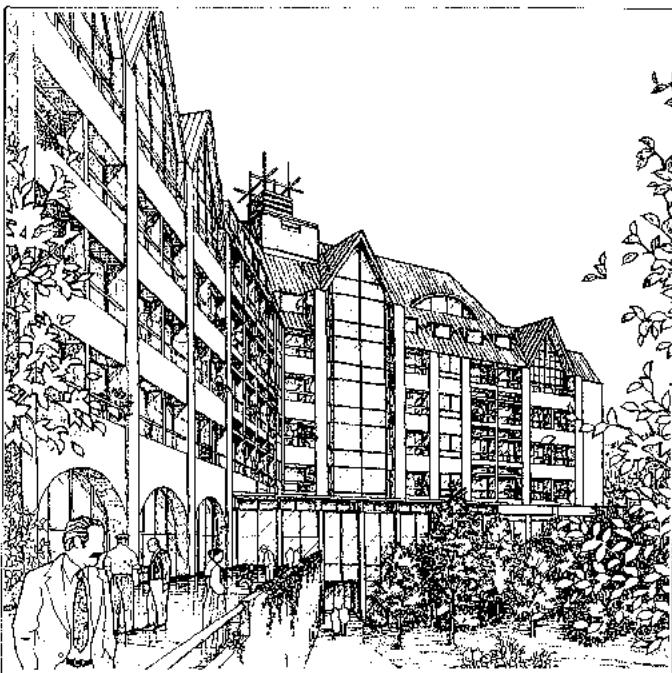


실버호텔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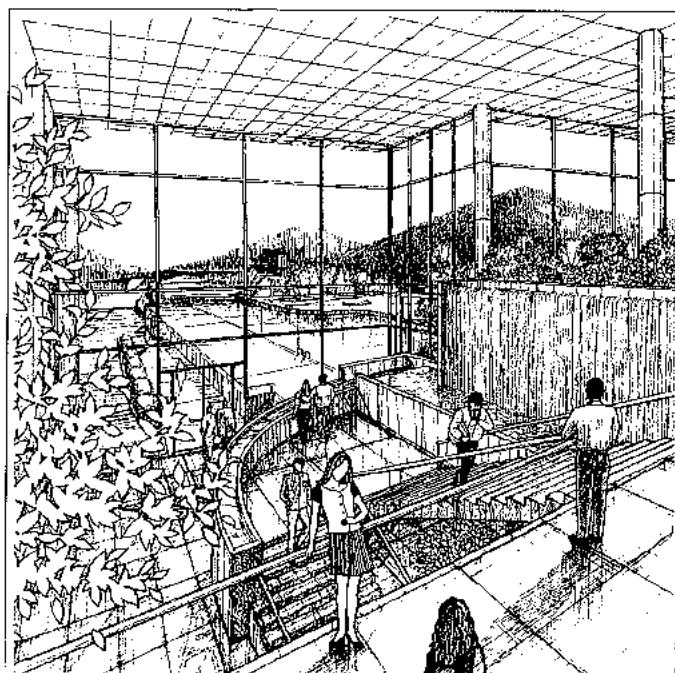
■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대국민 사회보장제도의 능률적 수행 및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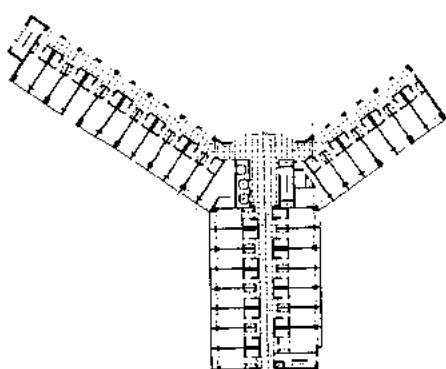
물자신투자를 통한 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노인 및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3세대(노인, 중장년, 청소년 및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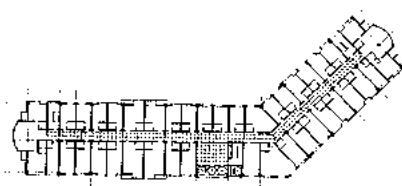
이미지 스케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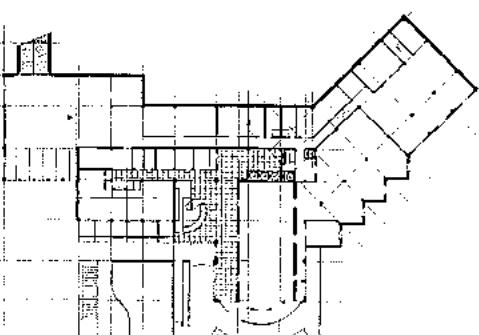
이미지 스케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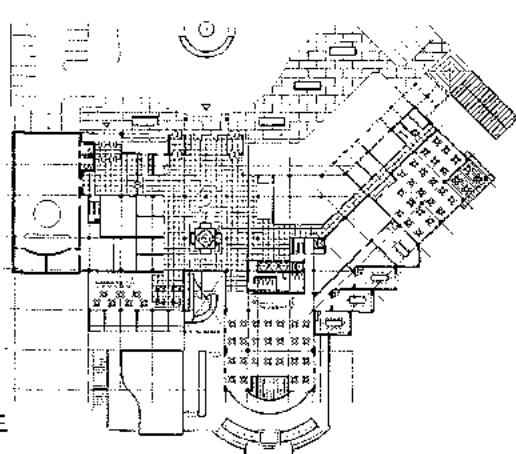
실버호텔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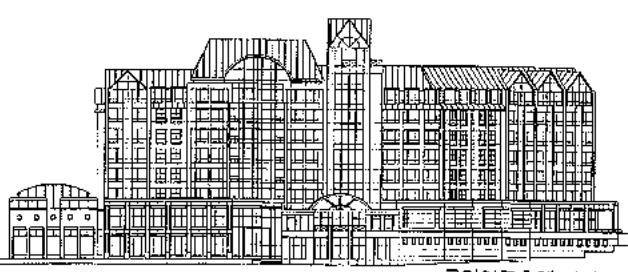
국민연금호텔 기준층 평면도



국민연금호텔 지하1층 평면도



국민연금호텔 1층 평면도



국민연금호텔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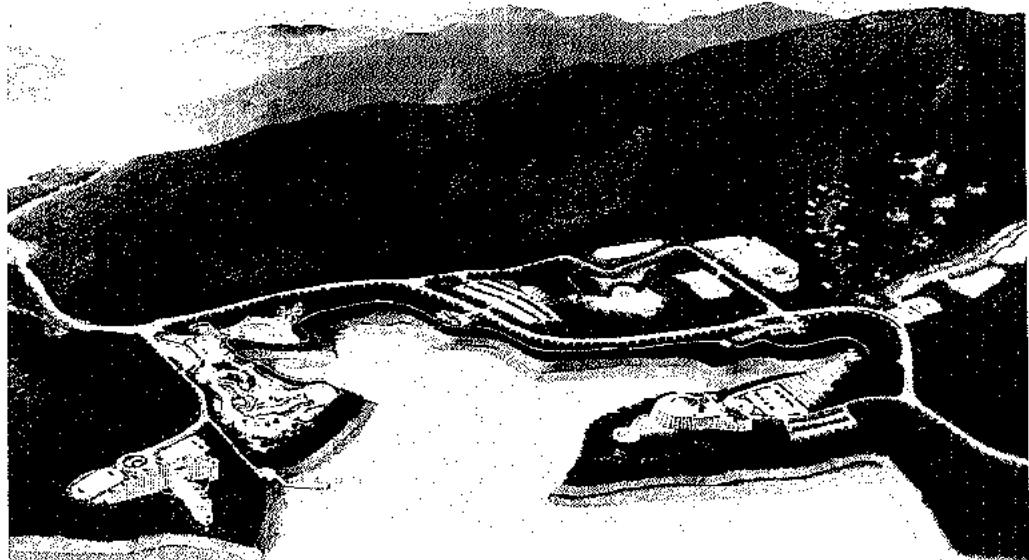
종합휴양시설을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계획은 자연훼손을 최소화로 하는 범위내에서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휴양지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계획의 방향

- 본 계획대상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등 전국의 주요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며,
- 모든 이용 계층별 관광수요패턴의 변화와 관광활동량의 증가 및 안정화를 금주 관광환경의 변화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
- 자연자원 및 관광자원 요소가 우수한 점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배치에 의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그에 따른 기능의 능률적 배분 및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고려한다.
- 이와 관련하여, 본 대상지가 속한 충주호권역에 대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의 개발방향과 관련상의 계획등의 변화추세를 바탕으로 본 계획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을 예측하며,
- 천혜의 호수, 각종 자연자원등 주어진 환경적 여건에 순응하는 개발과 인공의 조형미가 조화되는 휴양지 개발이 이루어져 누구나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다시 찾는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방대한 부지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국도에 의해 야기되는 시설물간의 분리, 단지의 연계성번익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지, 휴식공간, 친근감있는 건물디자인 또한 시설물을 긴을 연결하는 조깅 및 하이킹도로를 이용, 단지의 인지도와 연계성을 높이고 향후 개발계획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단지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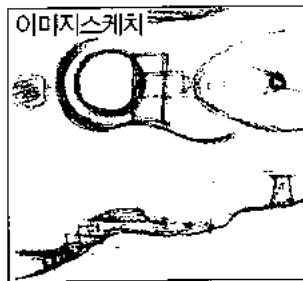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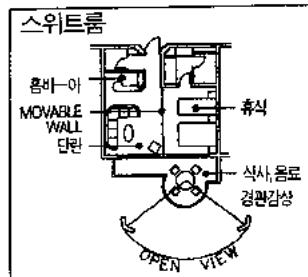
전체조감도

우수작

동인·우양건축 (운태웅+강기효+강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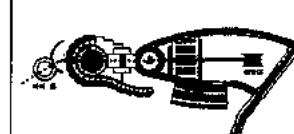
대지면적 / 270,844m²
건축면적 / 14,525m²
연면적 / 61,371m²
-국민연금호텔 : 16,711m²
-실태호텔 : 10,731m²
-기숙호텔 : 30,433m²
건폐율 / 6.4%
용적률 / 19.5%
계획담당 / 박규남, 임대수

■ 국민연금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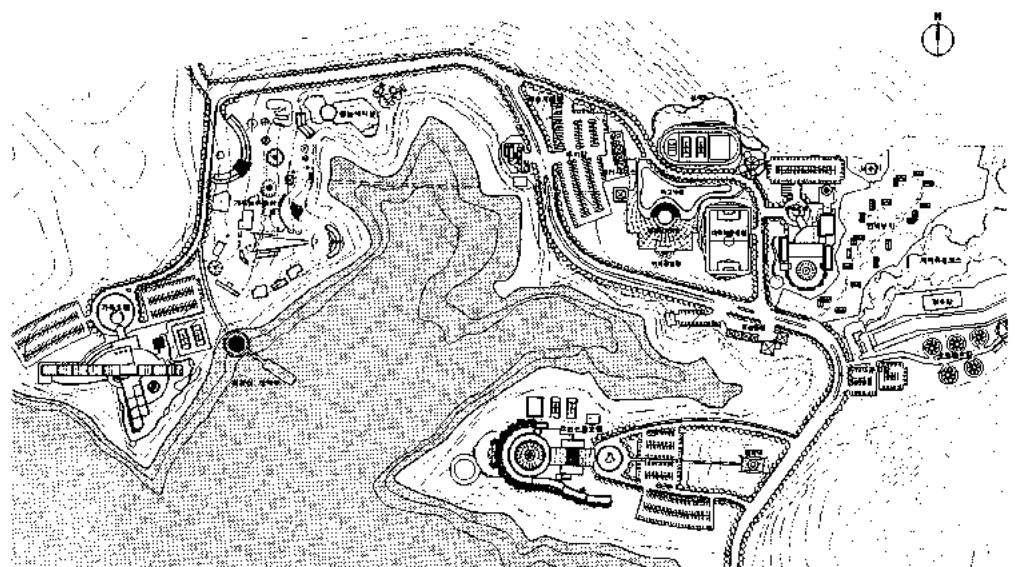
동선체계도

- 우회동선-기대상리자극
- 주차공간과 행위공간의 분리
- 행위공간의 다이나믹한 움직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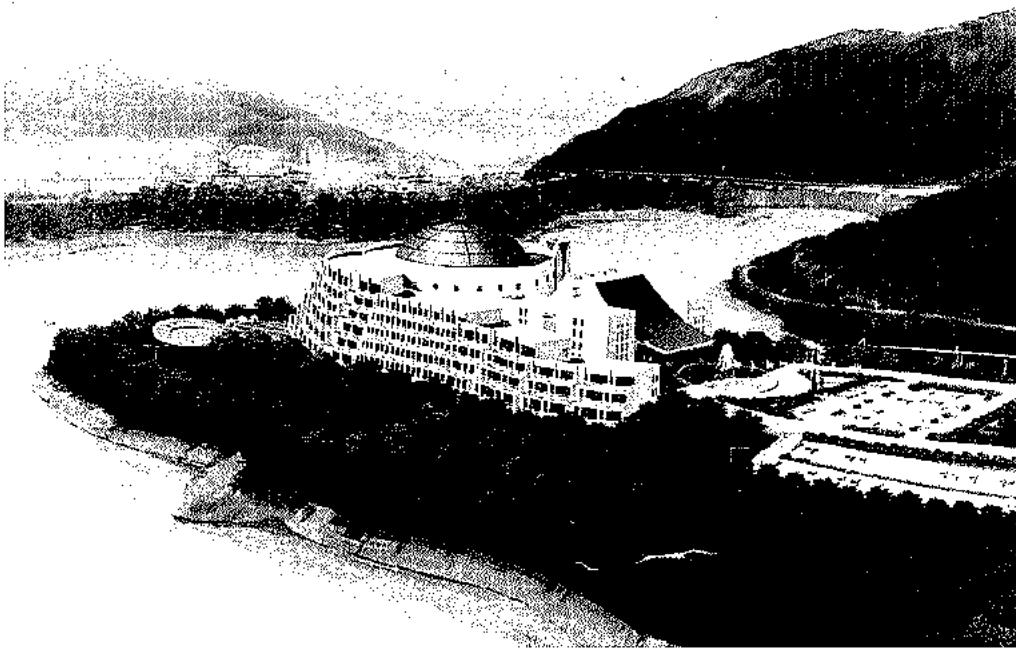


공간구성도

- 전통마을의 공간개념 도입
- 선-곡선의 유연한 흐름
- 드라마틱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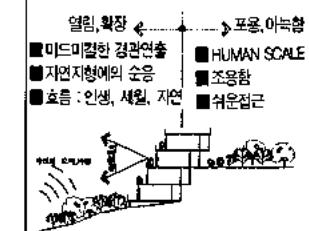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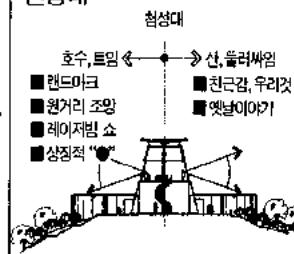
국민연금호텔 조감도

■ 건축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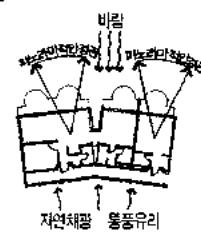
유기적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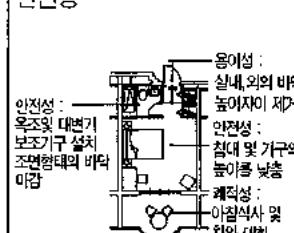
전망대



경관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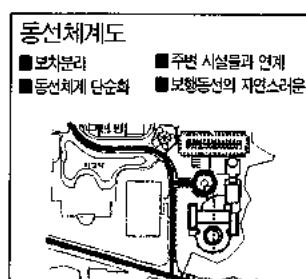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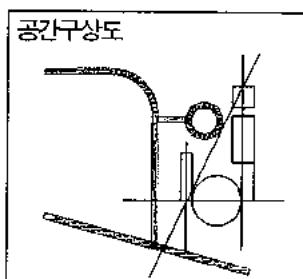
쾌적성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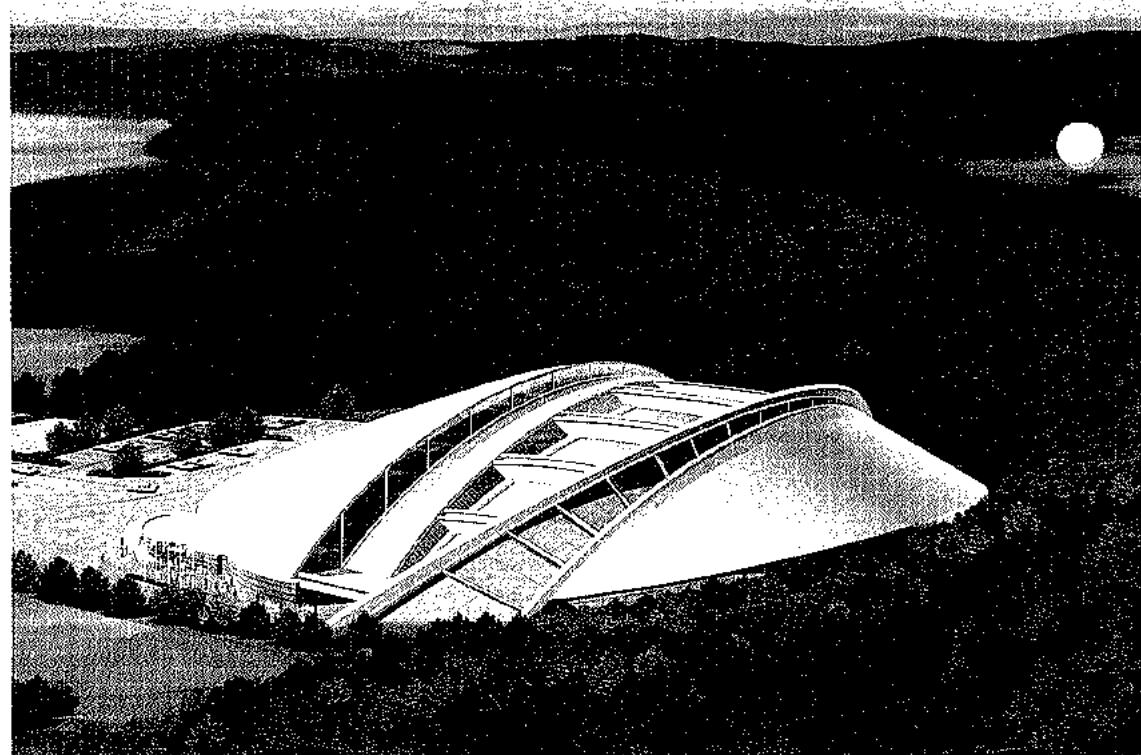
■ 실버호텔



실버호텔 조감도

현상설계경기

현상설계경기



조감도

태릉국제스케이트장

Taeneung International Ice R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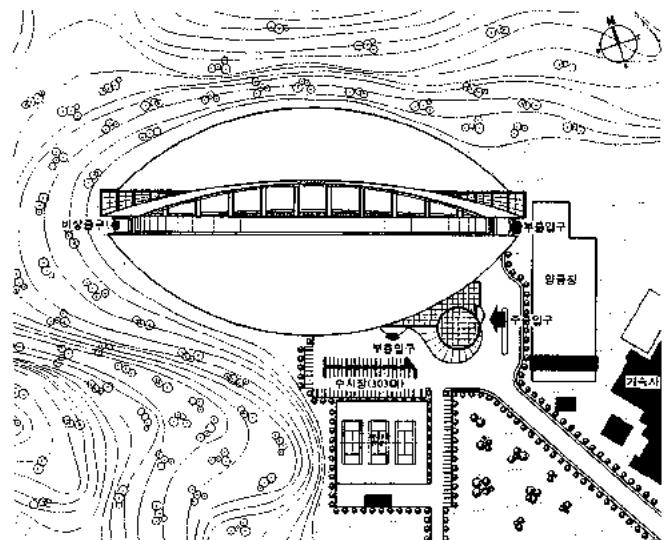
태릉 선수촌에서는 낙후된 동계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전전 후 경기시설 확보와 세계화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빙상경기 공간을 창출코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11월16일 (주)정일엔지니어링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지명설계로 이뤄진 이번 현상설계경기에서 우수작으로는 (주)서울건축인이, 기작으로는 (주)정림건축인이 각각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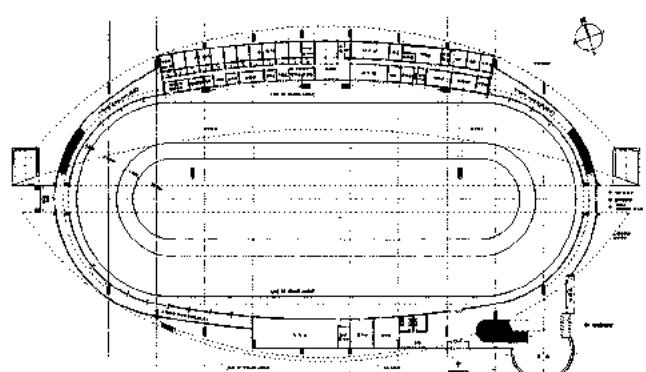
당선작

(주)정일엔지니어링
(대표 : 송기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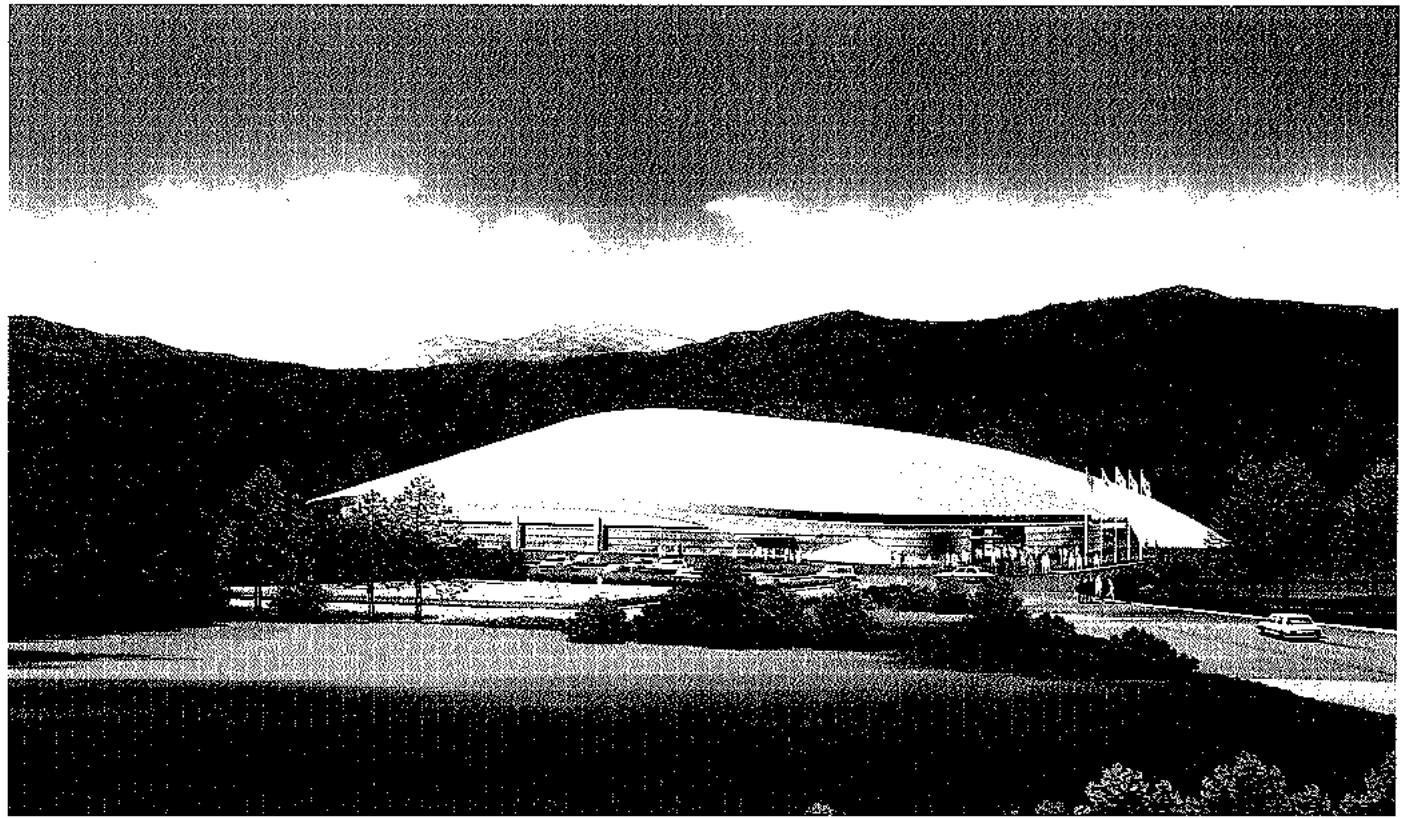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
지역 · 지구 /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대지면적 / 310,696㎡
건축면적 / 22,263㎡
연면적 / 26,532㎡
건폐율 / 7.1%
용적률 / 3.54%
규모 / 지상3층
구조 / 트러스+RC조
외부마감 / 메탈 Plate+ 24㎜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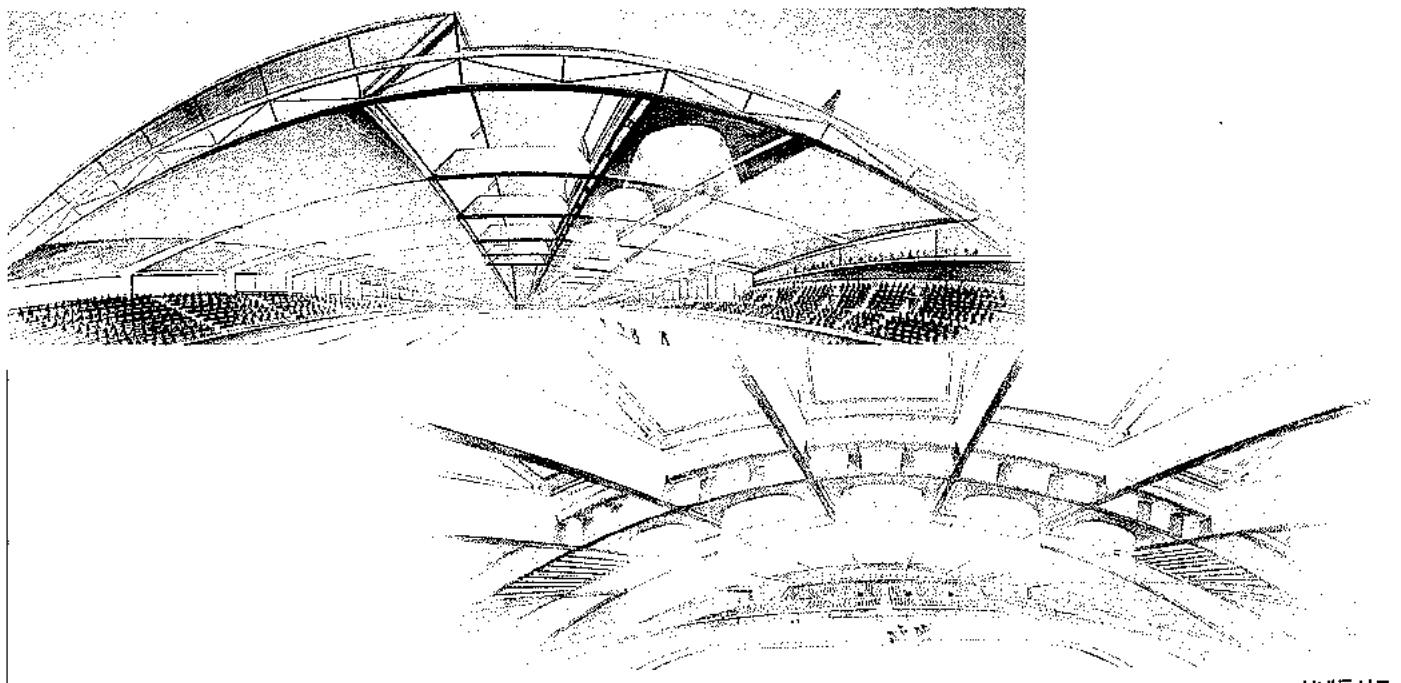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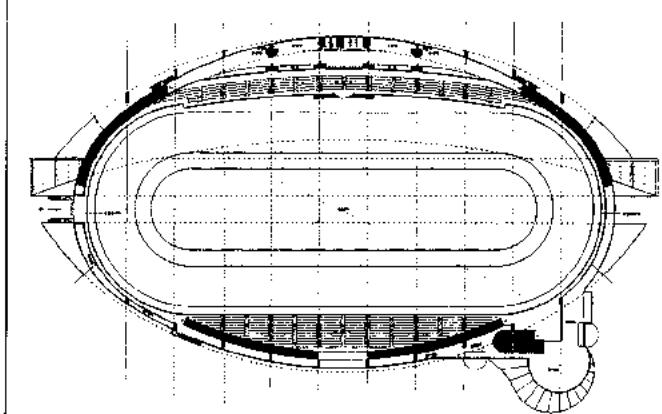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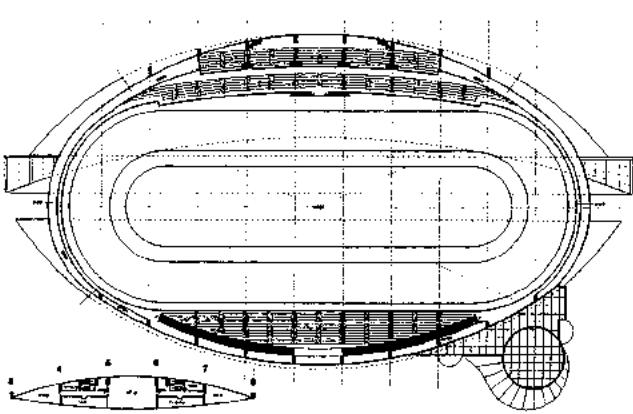
투시도



실내투시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조감도

우수작

서울건축 (대표 : 엄 응)

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선수촌내)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대지면적 / 310,68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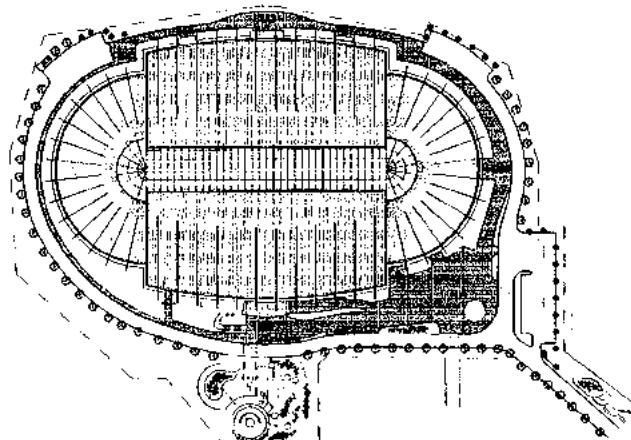
건축면적 / 19,930m²

연면적 / 27,450m²

구조 / 현기식 철골구조(Suspended Steel Truss Structure)

외장 / 알루미늄 복합판넬, 복층유리, 불소수지
화복 강판, 회강석

Fiber Insulation Panel, Steel Pipe, Steel
Cable



배치도

본 계획안은 현존하는 노천 아이스링크에 지붕을 설치하여 전천후 시설물로 활용코자하는 현상설계 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단기적인 시설 보완보다는 가능한 완성도 높은 실내 아이스링크 경기장의 구현에 그 근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하에 무선 경기장의 정면 성을 건물의 횡축방향 중심에 부여함으로서 경기장으로서의 격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능의 통선배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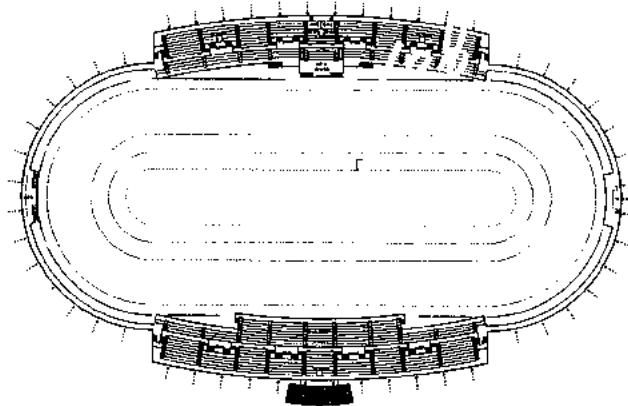
이러한 기본 개념은 현존 시설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이는 기존 경기장과 스탠드 및 하부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Mass 및 평면계획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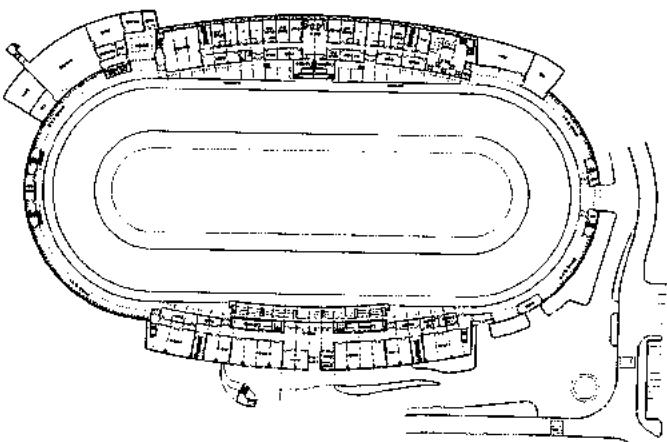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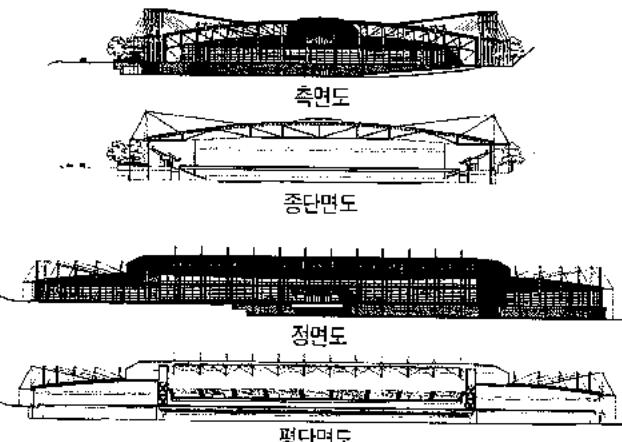
주변의 경사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관람객 출입레벨로 설정함으로서 경제성의 제고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Mass는 내부 기능에 적합한 움직임을 솔직히 표현토록 분절함으로써 일반적인 실내 경기장들이 비인간적인 척도와 단조로운 형태를 가지는데 반해 좀더 인간적인 척도와 풍부한 건축 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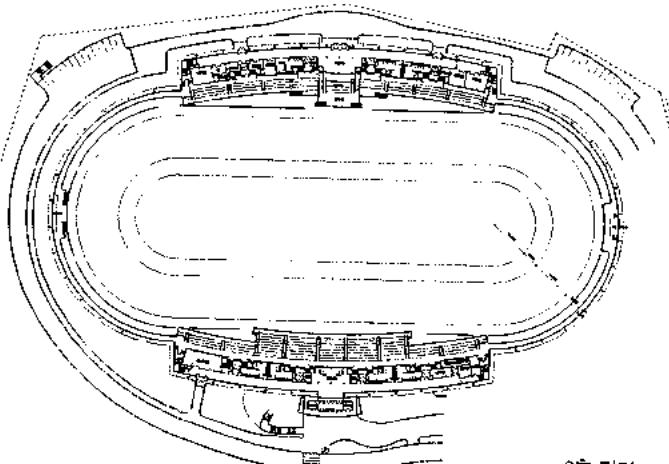
본 설계경기의 주인공인 지붕은 Suspended Steel Truss구조로 계획하여, 장



스탠드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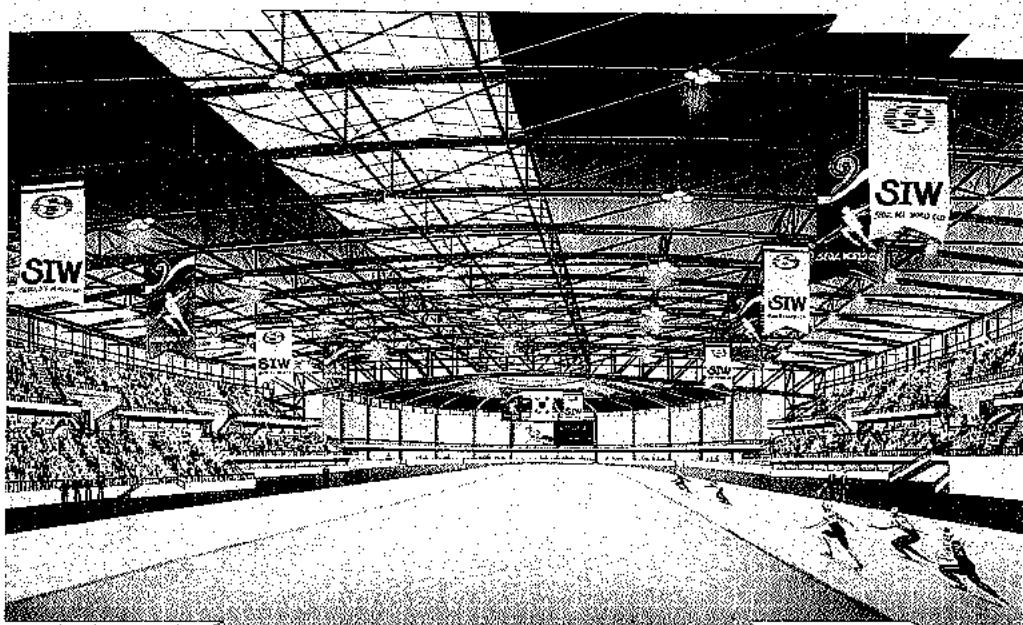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스팬에 따른 구조의 부담을 Truss의 Tension Rod로 상호보완 분담하는 것으로 하여 구조 부재의 최소화, 경량화를 도모하였고, 제작 설치가 용이하여 공비의 절감과 공기단축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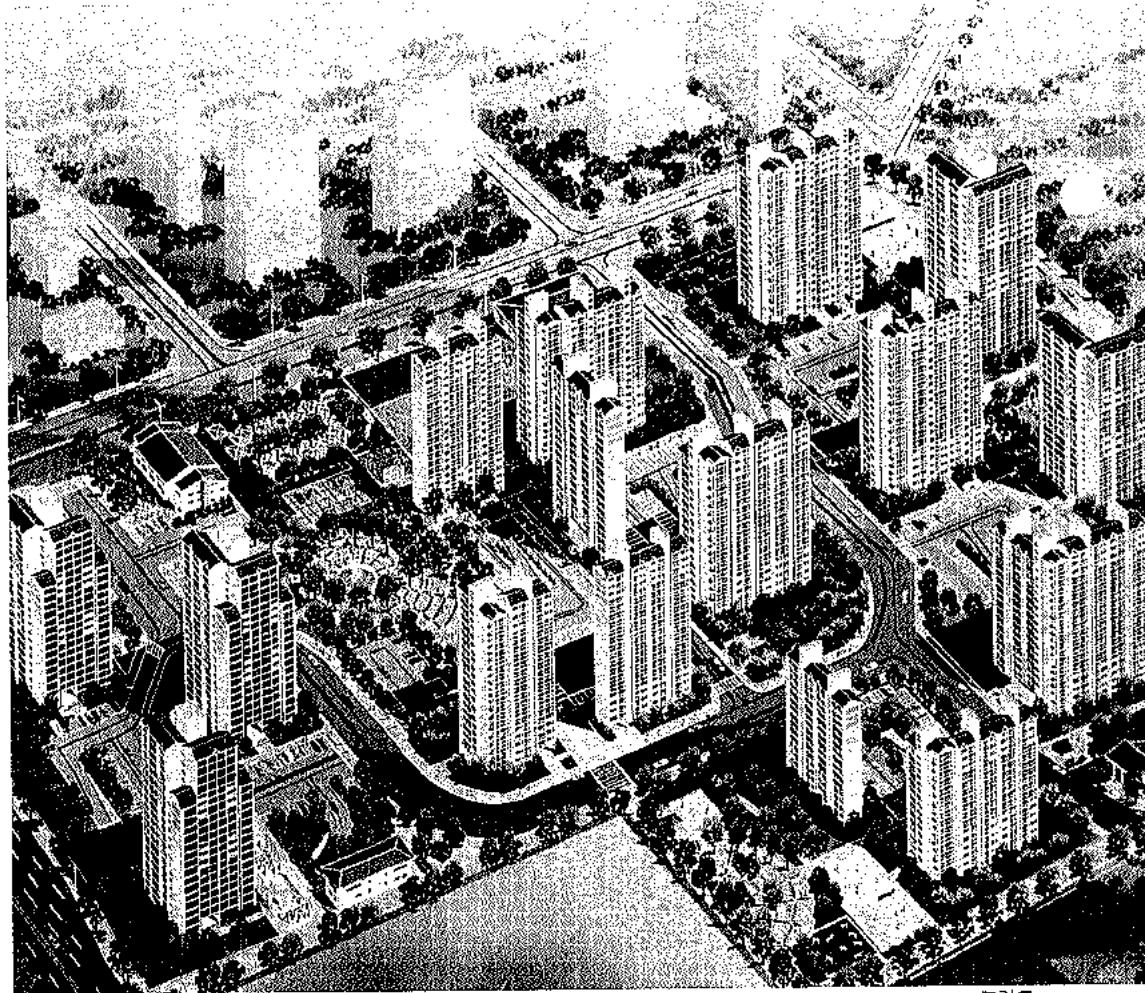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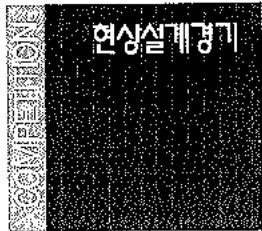
Tension Rod의 지지체로서 외벽 주위에 Mast를 설치하였고, Steel Rod와 함께 전체적으로 하이테크한 구조미를 표출도록 하는 반면, 기단부의 기둥 및 만곡선 형태의 지붕 3요소가 이루는 전통적인 건축미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현대의 첨단 기술과 재료가 전통적인 정서를 솔직하게 대변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자 하였다.

지붕의 미감은 단열 및 흡음성능이 있는 금속페널과 천장을 통하여 빛의 유입과 차단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 다양한 실내공간연출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존의 아이스링크 기능에 일반 이용객 및 관람객을 위한 편의 기능들을 추가하였고, 기타 지원 기능들을 보완함으로써 기능이나 형태상으로 본 시설이 한국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써 손색없이 자리매김 될 것을 기대해 보았다.



실내투시도



조감도

수원화서지구 아파트

Apartment Complex in Hwaseo District, Suwon-shi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변화로 수요자의 욕구 수준이 상승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턴키 베이스 방식의 아파트 현상 설계 경기를 실시하여 총 3개 사무소에서 출품한 결과 종합 겟죽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당선작

종현종합건축
(대표 : 최종철)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화성동 엑지개빌 사업지구
설명

지역·지구 / 디지털사업지구

대지면적 / 56,493.00m²

건축면적 / 9,280.45m²

연면적 / 15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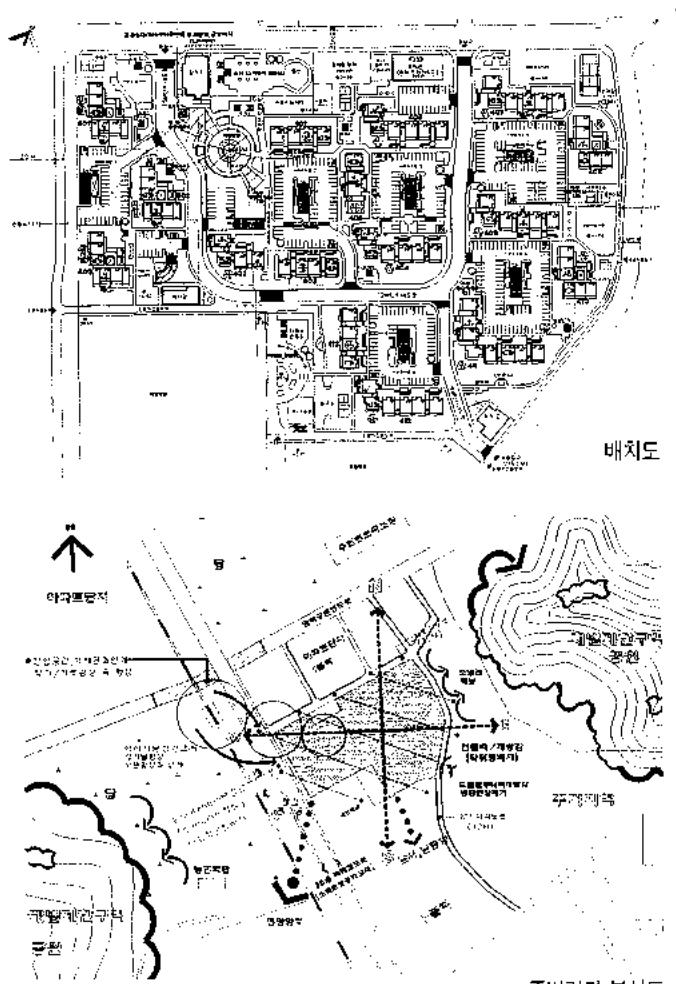
건폐율 / 16.72%

온라인판권
율적률 / 2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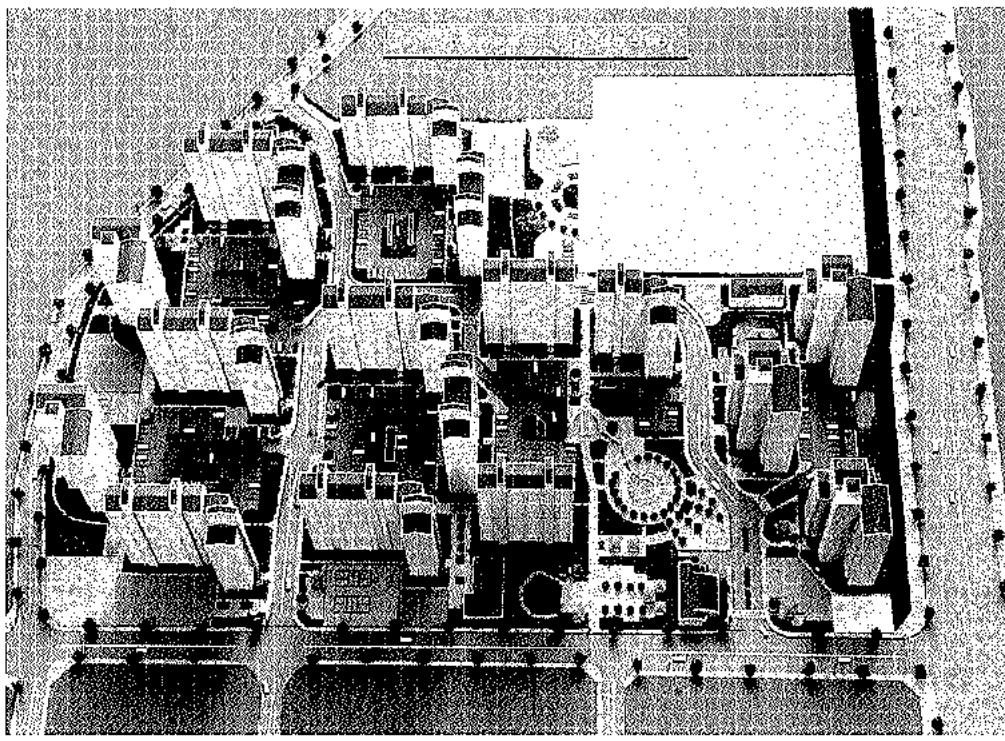
/ 고고일대아파트 - 306세대

분양 및 구로아파트-1.3[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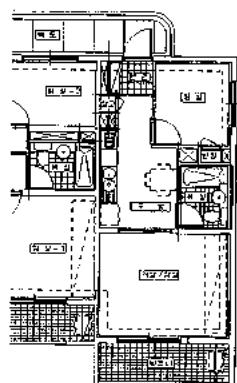
총 16개도 1개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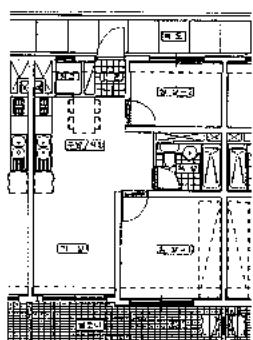
주변경관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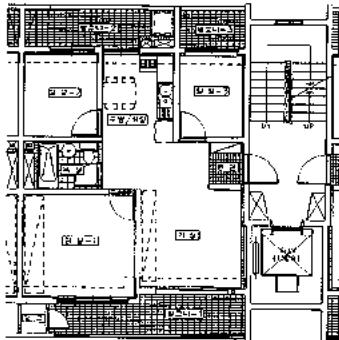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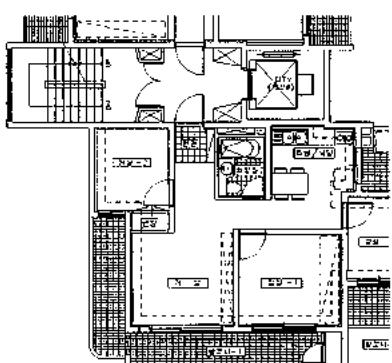
12평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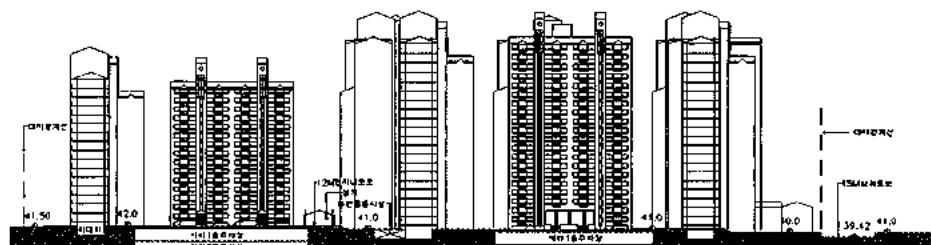
15평형 평면도



18평형(기본형)평면도



18평형(코너형)평면도



단지단면도 A



단지단면도 B

■ 계획개념

—진입부

화서역 중심의 역세권으로부터 단지 접근 1mage 고려

Tower형으로 공간 개방감 부여

-가로광장

남북 보행공간 축을 적극수용하여 진입공간과 연계된 큰 Open Space 확보

—배치계획

- 검토안 A : 단지 전체 Sky Line형성, Cluster형 배치안
B : 내부 큰공간 확보, 변화있는 Mass로 시각적 다양성 부여하는 안
 - 본 단지의 용적률이 높아짐으로 판단해서 A안의 경우 내부공간 조악해짐 따라서 B안 채택
 - 총수 : 20층 초고층화 + 15층 권장지역

—코너형평면

- 판상형 APT의 단조로움 탈피
 - 주거동 수 감소, 단지공간 확보와
- 주거동 계획
 - 진입부 Tower형
 - 중앙부 판상형 + 절곡형
 - 단지 우측 경계 Tower형(진입부와
Balcony 유지)
 - 시공 능률화
 - Half Slab의 부분적용
 - PHC Pipe(고강도 파일)
 - 기계화 시공(시스템화 거주집, 철근
기계화 시공)
 - UBR 적용

건축사법 및 건축법 중 개정법률

The Amendments of Architect & Architecture Act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며, 건설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본 협회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94.8.24), 양법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94.8.25)된 후 협회는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94.9.23)

이와 관련, 건설부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94.9.28)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94.10.29)를 거쳐 대통령의 재기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94.11.8),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했다.(94.12.16)

본지에서는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 공포될 건축사법 건축법 중 개정 법률 중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 건축사법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국 회 제 출 (안)	국 회 통 과 (확 정)	비 고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건축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의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①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건축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국회제출안에서는 건축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가 국회심의과정에서 부활
제11조(면허의 취소 등) (신 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업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6. (화 동)	· 책임범위를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으로 한정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제14조(응시자격) ①..... (단서삭제)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1.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1급 자격취득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	1. (국회제출안 제2호와 같음) 2. (국회제출안 제4호와 같음) 3. (화동) 4.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기사 1급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5. (화동)	· 기사1급 자격을 가지지 않은 건축사보는 건축사예비시험을 거쳐야 함.

현 행	국 회 제 출 (안)	국 회 통 과 (확 정)	비 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 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과 동)	
〈신 설〉	제15조(건축사 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 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1. 대학에서 2. 전문대학에서 3. 고등학교 또는 4. (과 동) ②(과 동)	· 국회제출안 중 “교육법에 의한” 삭제
제22조(설계도서의 신고)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2조(과 동)	· 행정개선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설계도서검토제는 폐지하며, 미신고서의 처벌 제도 폐지 예정
제23조(등록) ②건축사사무소는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한다.	②건축사사무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건축사사무소 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이하“소속건축사”라 한다) 및 건축사보를 들 수 있다. ⑥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탈련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등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한 건축사가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②.....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들 수 있다. ⑥..... 1.~2.(과 동)	*건축사사무소의 단독 종합 구분 완전 폐지
〈신 설〉	3.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기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회제출안은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건설업체도 건축사업부를 행할 수 있었으나 정부투자기관 및 기관으로 한정하여 확정됨으로써 일반건설업체의 설계겸업시도는 좌절

현 행	국 회 재 출 (안)	국 회 통 과 (회 정)	비 고
(신설)	<p>제31조의 2(사업) ①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에 관한 조사, 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부의 개선, 발전 4. 회원의 봄비보전 및 유통학습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p>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보상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공제사업</p> <p>8. 기타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p>	<p>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p> <p>제31조의 2(과 동)</p>	<p>· 협회사업의 내용으로 연구 및 공제 사업 포함</p>
제34조(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5인 이상 9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둘다. ②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③부회장은 상근으로 한다. ④회장, 부회장과 이사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제34조(임원) ①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한다.</p> <p>④회장과 부회장의</p>	제34조 (과 동)	<p>· 임원의 정원을 협회 정관에 위임</p> <p>· 건설부장관의 이사취임 승인권 폐지</p>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1000만원 이하의	제39조(벌칙)	
<p>1. 사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p> <p>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p> <p>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p> <p>4. 사외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p> <p>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p> <p>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 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p> <p>7.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검사를 업무를 행하는 자가 조사 및 검사를 하위로 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p>	<p>1. 건축사의 면허를 빙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p> <p>2. 〈식 제〉</p> <p>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p> <p>4. (현행과 같음)</p> <p>5. 제23조의 받지아니하고 건축사의</p> <p>6. 업무정지명령에</p> <p>7.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 요구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p>	<p>1.(과 동)</p> <p>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p> <p>3. ~4. (과 동)</p> <p>5.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p> <p>6. ~7. (과 동)</p>	<p>· 국회제출안에서 삭제됐다가 국회선 의시에 부활</p> <p>· 현행 중 “업으로서” 삭제</p> <p>· 현행 중 “건축사의” 삭제</p> <p>· 입법예고안에 있던 기술자를 이중 취업시킨 건축사 처벌규정은 삭제</p>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4조, 제15조 및 제	제1조(시행일) 제7조, 제13조	

현 행	국 회 제 출 (안)	국 회 통 과 (확 정)	비 고
	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제2조(과 등)	
	제3조(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축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기준에 불구하고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1. 대학에서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에서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4. 건축에 관하여 14년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과 등)	

◆ 건축법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국 회 제 출 (안)	국 회 통 과 (확 정)	비 고
제2조(정의)			
12.“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작물의 축조에(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12.“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13.“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축사”라 한다)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 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3.(좌 동)	
14.“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14.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4.“설계도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5.(좌 동)	
16.“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6.“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 건설촉진법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신 설〉	17.“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	17.(좌 동)	

현 행	국 회 세 출 (안)	국 회 통 과 (확 정)	비 고
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안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제19조(건축물의 설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19조(3) 동	· 입법예고안 중 오해 소지가 있는 “건축사 등”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 지역을 추가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디디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3) 동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자정을 취소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자연시키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할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제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제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제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④ 전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제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⑤ 건축주는 당해공사감리자 또는 공사 시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⑤(3) 동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사감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7조(건폐율)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5이하(산업입지 및 개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제70조(기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성명령 등)	· 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높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		

현 행	국 회 제 출 (안)	국 회 통 과 (확 정)	비 고
〈신 설〉	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79조(별칙) 3의 2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제19조 제19조의 2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세·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선설입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신 설〉	3의 3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80조(별칙) 1의 2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허위로 기재한 자 1의 3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1의 4 제1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 3. 세1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1의 4. ④(자 등) 1의 5.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부 칙		부 칙	
제13(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자 등)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2조 (자 등)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 등)	
제4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이법에 의하여 세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자 등)	